

2021

정책연구 2021-02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연구진 이주연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02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이주연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공동 연구 최지훈 | 전문연구원 | 제2장, 제4장 1절 일부

자문위원 전숙영 | 굿네이버스 전북지역 본부 팀장

양향환 | 고장 요엘원 원장

김미향 | 우리집 그룹홈 시설장

장화정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연구관리 코드 : 20JU3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연구 개요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정 외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고 있음. 이 중 98% 이상이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고, 매년 약 2,60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에 나오고 있음.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약 2,600명)의 약 56% 이상은 만 18세라는 연령 도래(아동복지법상 퇴소 연령 만기)로 시설의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음
- 전북지역은 2019년 310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12월 기준 55개의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약 1,90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고, 2019년에는 132명(매년 평균 약 140명 발생)의 아동이 연령 만기퇴소 및 연장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음(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 아동권리보장원, 2020)
-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¹⁾은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 경제·정서·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 역량의 부족으로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며, 보호종료아동의 약 40% 이상은 연락두절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전북지역 차원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실태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자립 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전북지역 시설 유형별 보호종료아동(종료 5년 이내의 아동)의 전반적인 자립 실태 및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파악과 (2)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문제점·개선 사항 도출 등을 통해 전북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을 퇴소한 아동

나.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학회지 논문 등을 살펴보고, 중앙(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아동분야 사업안내, 타 지자체의 행정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등을 검토함

2) 설문 및 면접조사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전반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총 121명(양육시설 90명, 그룹홈 13명, 가정위탁 18명)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다음으로 양적분석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정 및 자립 이후에 나타나는 각기 상이한 경험과 어려움, 문제와 정책적 욕구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시설유형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 17명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를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현장 실무자(자립전담요원, 자립업무 담당자, 그룹홈시설장 등)와 현장 전문가 21명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현실과 실태, 그리고 자립 현장에 기반한 지원정책의 문제점·개선사항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함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 학계·중앙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본 연구원의 내부전문가 등에게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연구범위 및 연구 내용·방법 등에 대한 심의와 연구결과 및 정책 지원 방향 등에 대한 논리성과 타당성 검증을 착수연구심의회와 최종연구심의회를 통해 실시함
- 전북 도청 보호종료아동 관련 사업 담당부서와 연구내용과 방향 등을 논의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다. 본 연구의 제한점

- 전북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도내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을 전수조사 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전북지역 내 보호종료아동 관련 기초 통계가 부재하여 시설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현장 종사자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보입수 후 성별, 지역별, 시설별 등을 구분하여 설문·면접조사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설문과 면접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은 자립지원전담요원(시설장)과 연락·교류가 되고 있던 보호종료아동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을 법률상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등 연락 두절된 사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시설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시설장)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잘 연계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실태 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잘 연계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 중 많은 비율은 무업형(니트형)으로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아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지속 연락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보다 자립 실태 환경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면접조사에서 지적됨
- 따라서 향후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연락두절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을 높여 그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 하며, 보호종료아동 관점에서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연락 두절되거나 연락이 끊기지 않기 위한 견인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가. (설문결과) 보호종료아동 영역별 자립 실태 및 욕구분석

-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북 보호종료아동 121명임
 - 성별 : 남자 44.2%, 여자 55.8%, - 연령 : 평균연령 21.6세 만 21세 이하 51.3%
 - 보호기간 : 평균 11.9년, - 보호종료 사유 : 18세 만기퇴소 70.9%, 연장종료 29.1%
 - 자립생활 기간 : 평균 2.5년, - 고등학교 유형 : 인문계 46.2%, 실업계 43.7%, 농업계 5.9%
 - 현재 상태 : 대학 진학준비 3.4%, 대학재학중 41.9%, 취업준비중 32.5%, 취업중 22.2%
 - 혈연여부 : 가족 있음 66.9% → 교류: 1개월에 1번 51.9% , 2-3개월에 1번 16.5%
- **(건강상태 및 삶의 수준)** 현재 건강상태는 37.0%가 '좋다'고 평가(5점 기준, 3.90점) 했고, 우울감은 총점 13.94점으로 '경도' 수준으로 나타남. 현재 삶의 수준(7점 기준)은 평균 4.2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생각함. 특히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삶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냄
- **(대학진학률 및 등록금마련방법)** 대학진학률은 84.2%였고, 등록금은 '장학재단 장학금'을 통해 마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대학의 장학금' 순으로 많았음
- **(대학재학중 생활비마련) 기초수급비(65.0%) > 자립수당(52.0%) > 아르바이트(37.0%) > 자립정착금(24.0%)**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기초수급과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활용률이 높았음
- **(현 취업상태)** 대학 진학을 제외한 보호종료아동의 33.3%가 취업하였고, 취업 준비는 66.7%로 나타남. 취업한 보호종료아동의 전문직(29.6%), 서비스직(14.8%), 기계조작·조립(14.8%), 판매직(11.1%) 등의 순으로 많았음. 이 중 정규직 80.8%, 비정규직 19.2%로 나타남. 세금 제외한 세후급여액 평균 약 197만원(최소 50만원 ~ 최대 250만원 범위)였음. 취업은 시설교사 도움 취업이 44.4%로 가장 많았고, 혼자 구직 사이트 통해 25.9%, 학교추천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 직업만족도는 57.7%가 '만족하다'고 응답함. 이직 경험 없음은 65.4%였고, 향후 이직의향은 '없다'가 53.3% 였음
- **(취업준비과정 시 어려웠던 점)** '나의 적성을 모름'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9.8%, 취업정보 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현 주거형태)** 55.0%가 LH주거 지원받고, 자립지원시설 16.7%, 월세 10.8% 등의 순임. 보호종료아동에게 LH주거지원 사업은 현재나 향후 주거형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거비용 부담)** 부담되지 않는다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부담 안된다는 응답도 29.1% 순으로 높았음. 동거인 없이 '혼자' 생활한다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음
- **(주거 관련 지원시설 이용경험)** 자립지원시설(삼성자립생활관)은 80%가 이용경험 없었으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또한 응답자의 72.3%가 이용경험 없었음. 주거 지원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를 몰라서'가 60.3%로 가장 많았음
- **(경제관련 내용)** 응답자의 55.5%가 '보통'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 수혜율이 약 70%로 나타남. 보호종료 당시 CDA는 평균 499만원, 후원금 460만원, 월평균 소득 95만원으로 평균 보호종료 시 약 1,000만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퇴소함. 자립 당시 수령한 자립금은 주로 거주지 마련 1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료품, 교통/통신비 등의 생활비(18.2%), 대학등록금/교재비(14.6%) 등으로 나타남
- **(현 생활비 지출내역)** 월 평균 약 9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이 중 식비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16.1%), 교통/통신비(14.9%), 주거비(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립준비교육)** 보호당시 자립준비교육 정도는 일상생활기술(요리, 집 관리 등) 교육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술과 직장생활 기술 교육이 가장 낮았음. 종료 후 도움준 자립준비교육은 직장생활기술(2.90점)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남.
- **(보호종료 후 어려웠던 점)** 응답자의 23.6%가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외로움(18.2%), 취업(17.9%), 자산관리(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재 가장 큰 걱정/고민거리는 30.0%가 '취업'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29.4) > 신체/정서 등의 건강문제(15.3%) > 학업(1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보호 당시 진로/진학/취업 등 고민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평균 2.6명으로 주로 시설(그룹홈)의 생활지도사,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가장 많았음. 종료 후 도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7명으로 시설(그룹홈)의 생활지도사 선생님 > 학교의 친구/선후배 > 형제/자매 > 자립전담요원 등의 순으로 도움을 주었음
- **(보호종료 연령 기준)**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 연령 만18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 중 적정 연령은 최소 19세 ~ 최대 26세 로 응답하여 평균 21세로 나타남.

-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 적절성은 81.4%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 응답자의 88.2%가 교류하고 있었고, 연락빈도는 ‘월 1회’가 58.6%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1회’가 26.7% 순이었음. 자립지원 전담요원과의 적정 교류 빈도는 ‘월 1회’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3개월(22.0%), 6개월(16.9%), 1년(14.4%) 당 1회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지원서비스 인지도, 수혜여부 및 필요성)** 인지율의 경우 LH전세임대주택(97.4%), 자립정착금(96.5%), 국가장학금(95.7%), 국민기초생활보장(95.7%), CDA(9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수혜율은 자립정착금(94.8%), CDA(89.7%), 자립수당(87.6%), 국가장학금(84.3%) 등의 순으로 높았음.
-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순으로 현금성 지원과 주거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정책영역별 필요도)** ‘현금성 지원’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지원(3.48점), 법률 및 문화 활동(3.3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나. (면접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 **(자립실태 및 어려움)** 퇴소 시점에서 홀로서기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을 지님. 밥·반찬 등 요리, 집안청소, 방 정리정돈, 빨래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큼. 대학·사회생활 시 대인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며 심리·정신적 지지자의 부재로 힘들어함. 무엇보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고,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보호종료아동의 취업난이 보다 취약했음. 수도권지역에 대학 및 사회 생활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거 관련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형식적·반복적인 자립준비교육으로 종료 후 필요 도움이 부재했으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의미 없는 인위적 연락에 대한 사후사례관리의 효과성이 저조했음. 매월 지급되던 30만원의 자립수당 종료 시기가 취업 준비시기와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이 보다 증가되어 자립수당 지원기간의 확대를 요구함.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자립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발생과 지원의 소외 대상자가 나타남
- **(정책적 욕구)** 시설 보호 중 자립준비 시기에는 홀로서기에 대한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진로·적성 검사와 체험을 통한 진로 설계와 진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정

신과 치료 지원을 요구함. 보호종료 이후에는 심리·정서적 의지가 될 수 있는 지지 체계의 기반 조성과 공연·전시 등의 문화와 여가·여행 등의 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연계의 요구가 높았음.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며 취업관련 정보 제공과 우선 채용기회 확대를 요구함

다. (면접결과) 현장실무자와 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 **(자립실태 및 어려움)** 금전적 관리와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여 1,000만원 이상의 자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시설 보호 중인 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와 동기가 매우 저조 했으며, 일상생활·자기관리 및 시간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심리·정서적 상처에 기반 한 심리·정신건강의 문제 호소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고민, 무엇보다 취업준비와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컸음. 최근에는 시설 내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과 종료아동 증가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원사업의 개선점과 주요 현안)**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부재하며, 자립관련 지원금(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최초 지급시기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됨. 현 자립지원 사업의 병폐와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사례관리비 용도 확대 및 자립정착금 활용 제고를 위한 지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개인별 능력 차로 동일 업무와 역할의 정도가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자립 관련 정책적 욕구)** 무엇보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을 필요로 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을 요구함.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일관된 사례관리지침 보다는 위기수준별·개인맞춤별 차별화가 필요하며,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보호종료아동의 심리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지체계 기반 모색, 경계선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화 자립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퇴소 후 원가족 복귀를 위한 부모교육·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과 취업 준비 과정 시 필요한 지원을 확대를 요구함

3.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방안을 3개의 정책목표별, 8개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총 2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과제의 시급성과 필요도 및 중요도를 고려해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함

〈표 3-1〉 정책목표별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방향 및 세부 과제(안)

정책목표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안)	추진기관	
보호종료 아동 자립역량 강화	심리·정신건강 치료 지원 강화	(단기) 보호종료아동 전문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단기) 지역 거점별 양육시설 임상심리사 공유 배치	여성청소년과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단기) 지역·시설 맞춤형 퇴소선배그룹과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기) 혈연가족 및 대안가족 연계·교류 강화 (단기) 자립한 퇴소선배와 토크 콘서트(퇴소선배의 자립이야기)		
자립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보호아동 자립 준비 현실화	(중기)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기)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진로·진학 컨설팅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퇴소 직후 초기 자립 지원 강화	(단기) 자립 초기정착을 위한 생활꾸러미 지급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후원 협조	
		(중기) 보호종료아동 (준)자립생활시설 설치·운영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단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전북차원의 사례 수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취업준비과정 지원 확대	(단기) 면접 정장 구입비 및 증명사진 쿠폰 지급	여성청소년과, 후원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단기) 현장종사자와의 만남 및 멘토 연계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장기) 지역 기업 연계 우선 채용 MOU체결		
	보호아동 자립 지원정책 기반 조성	추진체계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장기) (가칭) 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여성청소년과
			(단기)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시설 특성별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중기)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상시 운영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기) (공동생활가정) 사춘기 보호아동 양육코칭 교육 지원		
		(중기) (가정위탁) 지역 센터 추가 건립 통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충원		
		(중기) (공동) 사후관리 예산 지원		
자립지원전문요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단기) 자립 지원 업무 역량강화	여성청소년과	
	(장기) 자립지원전담요원 소진 예방·회복 프로그램 및 힐링시간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나. 연구 내용	5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6
가. 연구 방법	6
나. 연구 추진 절차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가. 선행연구 검토	9
나. 전북지역 관련 연구 현황	13
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 욕구 분석	14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15
제2장 전북지역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분석	17
제1절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및 특성	19
가.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19
나. 보호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	21
다.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24
라. 시설유형별 보호아동 현황	26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37
가.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37
나. 전국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38
제3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황	40
가. 보호종료 앞둔 아동의 자립준비 현황	40
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준평가 관련 현황	45
제4절 소결	51

제3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분석 53

제1절 중앙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현황 55

- 가. 중앙의 관련 법적 근거 55
- 나. 전국 시도별 관련 조례 현황 56
- 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동향 58
- 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60
- 마.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전달체계 69

제2절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현황 73

- 가. 관련 조례 현황 73
- 나. 관련 지원정책 현황 73
- 다. 전달체계 관련 사항 76
- 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한계 78

제3절 국내·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사례 분석 81

- 가. 국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사례 81
- 나. 국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사례 90
- 다. 정책적 시사점 96

제4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99

제1절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101

- 가. 설문조사 개요 102
-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104
- 다. 면접조사 개요 146
- 라. 면접조사 분석 결과 148

제2절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와 욕구 분석 166

- 가. 조사 개요 166
- 나.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 면접내용 분석 결과 168

제3절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199

- 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어려움 199
- 나. 지원정책의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202
- 다.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정책적 욕구 204

제4절 소결	208
가. 보호종료아동 관점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208
나. 현장실무자·현장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213
제5장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217
제1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219
제2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228
참고문헌	259

표목차 | Contents

〈표 1-1〉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선행 연구 고찰	10
〈표 2-1〉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원인(2019)	22
〈표 2-2〉 전국과 전북의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비교(2019)	23
〈표 2-3〉 전국 및 전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9.12.31.)	27
〈표 2-4〉 전국 및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 현황 (2019.12.31.)	28
〈표 2-5〉 전북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19.12.31.)	28
〈표 2-6〉 연도별 전국 및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성별 및 학교 급별 현황 (2016-2019)	29
〈표 2-7〉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 현황(2019)	30
〈표 2-8〉 전북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보호아동 현황	31
〈표 2-9〉 연도별 전북의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 현황(2016-2019)	31
〈표 2-10〉 연도별 전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와 위탁유형별 비율(2011-2018)	32
〈표 2-11〉 전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2018)	33
〈표 2-12〉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현황(2018)	33
〈표 2-13〉 연도별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와 위탁유형별 비율(2015-2018)	34
〈표 2-14〉 전북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 현황(2018)	35
〈표 2-15〉 전국 및 전북 아동복지시설 내 16세 이상(연장 포함) 보호아동 현황(2019)	36
〈표 2-16〉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2015~2019)	37
〈표 2-17〉 전국 시·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2019)	39
〈표 2-18〉 전국 및 전북의 보호종료 앞둔(16~18세)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현황(2019)	40
〈표 2-19〉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 아동(16-18세)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현황(2019)	41
〈표 2-20〉 시설별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 현황(2019)	42
〈표 2-21〉 시설별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성별에 따른 희망직종 현황(2019)	43
〈표 2-22〉 전국 시설별 보호종료 앞둔 아동의 희망주거 형태(2019)	44
〈표 2-23〉 전국과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중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2019)	45
〈표 2-24〉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대학유형 현황(2019)	46
〈표 2-25〉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등록금조달 방안(2019)	47
〈표 2-26〉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형태 현황(2019)	47
〈표 2-27〉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분야 현황(2019)	48
〈표 2-28〉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 현황(2019)	48
〈표 2-29〉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주거 현황(2019)	49

〈표 2-30〉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생존 현황(2019)	50
〈표 2-31〉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2019)	50
〈표 3-1〉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법적 근거(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55
〈표 3-2〉 전국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조례 현황(총 12개 지역)	57
〈표 3-3〉 보호아동 자립지원 관련 분야별 사업 현황	60
〈표 3-4〉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규모 및 참여 지역(2020)	61
〈표 3-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현황(2019. 4. 30.기준)	61
〈표 3-6〉 전국 시·도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현황(2020. 12. 31기준)	62
〈표 3-7〉 전국 지역별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성별 및 연령대별 현황(2019.12.31.)	63
〈표 3-8〉 전국 지역별 아동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현황(2020.11)	63
〈표 3-9〉 전국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2021년)	64
〈표 3-10〉 전국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2020년)	64
〈표 3-11〉 전국 시·도별 대학 입학금(대학생활 안정자금)	66
〈표 3-1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리 및 운영 체계	69
〈표 3-13〉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현황(2020년 12월 기준)	70
〈표 3-14〉 전국 시·도별 및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2021년)	71
〈표 3-15〉 전북 도청 및 14개 시·군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현황	73
〈표 3-16〉 전북 연도별 아동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입소 현황(2016~2019)	74
〈표 3-17〉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분야별 정책(서비스) 현황	75
〈표 3-18〉 전북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	76
〈표 3-19〉 전북지역 아동양육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2020. 7)	77
〈표 3-20〉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84
〈표 3-21〉 바람개비 서포터즈 기수별 현황	87
〈표 3-22〉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단별 활동내용	87
〈표 3-23〉 영국의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주요 역할 내용	91
〈표 3-24〉 영국의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6개의 사례관리 영역	92
〈표 3-25〉 일본의 아동양육시설과 자립 원조 홈의 차이	95
〈표 4-1〉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내용	103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4
〈표 4-3〉 시설유형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5
〈표 4-4〉 주관적 건강수준	106
〈표 4-5〉 현재 심리상태	107

〈표 4-6〉 삶의 수준	108
〈표 4-7〉 과거 대비 현재의 삶의 평가	109
〈표 4-8〉 대학진학 여부 및 등록금 마련 방법	110
〈표 4-9〉 대학 생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방법 (중복응답)	111
〈표 4-10〉 아르바이트 경험률, 종류, 학업병행의 어려움	112
〈표 4-11〉 대학생활 만족도	113
〈표 4-12〉 현재 취업상태 및 현황	114
〈표 4-13〉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116
〈표 4-14〉 현재 및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117
〈표 4-15〉 주거비용 마련방법(1-2순위)	118
〈표 4-16〉 주거비용 부담 수준	119
〈표 4-17〉 현재 함께 사는 사람 (중복응답)	120
〈표 4-18〉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121
〈표 4-19〉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경험	122
〈표 4-20〉 향후 거주지 이전계획 및 사유	123
〈표 4-21〉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24
〈표 4-22〉 아동자립지원시설 이용경험	125
〈표 4-23〉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경험	126
〈표 4-24〉 주관적 경제수준	127
〈표 4-25〉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	128
〈표 4-26〉 자립금 수령 현황	129
〈표 4-27〉 자립금(자립정착금/CDA/후원금 등) 지출사항(1-2순위)	130
〈표 4-28〉 생활비 지출 항목	131
〈표 4-29〉 자립준비교육 수료 정도	132
〈표 4-30〉 자립준비교육이 도움 된 정도	132
〈표 4-31〉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1-2순위)	133
〈표 4-32〉 현재 가장 큰 고민-걱정(1-2순위)	134
〈표 4-33〉 보호당시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중복응답)	135
〈표 4-34〉 보호종료 후 조언/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36
〈표 4-35〉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절성	137
〈표 4-36〉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138
〈표 4-37〉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 규모	139
〈표 4-38〉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 현황	140
〈표 4-39〉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적정한 교류빈도	141

〈표 4-40〉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수혜여부 및 필요성	142
〈표 4-41〉 자립기간(5년)동안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1-2순위)	144
〈표 4-42〉 정책영역별 필요도	145
〈표 4-43〉 보호종료아동 대상 면접조사 주요 내용	147
〈표 4-44〉 면접조사에 참여한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일반적 특성	148
〈표 4-45〉 보호종료아동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149
〈표 4-46〉 시설유형별 현장 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168
〈표 4-47〉 면접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 및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69
〈표 4-48〉 현장실무자 및 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분석결과	170
〈표 4-49〉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내용 요약정리	206
〈표 4-50〉 면접조사 결과 주요내용 요약정리	215
〈표 4-51〉 설문조사 주요 결과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216
〈표 4-52〉 면접조사 주요 결과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216
〈표 5-1〉 중앙의 자립지원 단계 및 김성경 외(2020)의 자립단계별 자립지원 사업 현황 비교 ·	224
〈표 5-2〉 정책목표별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방향 및 세부 과제(안)	228
〈표 5-3〉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참조	232
〈표 5-4〉 개정 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2 참조)	232
〈표 5-5〉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25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9
〈그림 2-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9)	20
〈그림 2-2〉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9)	21
〈그림 2-3〉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수(2019)	22
〈그림 2-4〉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원인(2008~2019)	22
〈그림 2-5〉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원인(2008~2019)	24
〈그림 2-6〉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9~2019)	25
〈그림 2-7〉 전국 및 전북의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9)	26
〈그림 2-8〉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19)	26
〈그림 2-9〉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비율(2018)	35
〈그림 2-10〉 연도별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와 위탁유형별 비율(2015-2018)	36
〈그림 2-11〉 전북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 현황(2018)	36
〈그림 2-12〉 전국 연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2015~2019)	38
〈그림 2-13〉 전북 연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2017~2019)	39
〈그림 2-14〉 전국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비중(2019)	40
〈그림 3-1〉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비전과 핵심전략	82
〈그림 3-2〉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조직도	83
〈그림 3-3〉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층별 안내	83
〈그림 3-4〉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시설 현황	84
〈그림 3-5〉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86
〈그림 3-6〉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추진 체계	89
〈그림 3-7〉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구성 요인	89
〈그림 3-8〉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시설	90
〈그림 3-9〉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20 살림기부캠페인(라이나생명 연계사업)	90
〈그림 3-10〉 자립 원조 홈 (모두의 집 외관)	96
〈그림 4-1〉 주관적 건강수준 평가	107
〈그림 4-2〉 보호종료아동의 우울감 수준	108
〈그림 4-3〉 삶의 수준	109
〈그림 4-4〉 과거 대비 현재의 삶의 평가	110

〈그림 4-5〉 대학진학 여부 및 등록금 마련 방법	111
〈그림 4-6〉 대학 생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방법 (중복응답)	112
〈그림 4-7〉 아르바이트 경험률, 종류, 학업병행의 어려움	113
〈그림 4-8〉 대학생활 만족도	114
〈그림 4-9〉 현재 취업상태 및 현황	115
〈그림 4-10〉 현 취업자의 취업 관련 사항	116
〈그림 4-11〉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117
〈그림 4-12〉 현재 및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118
〈그림 4-13〉 주거비용 마련방법	119
〈그림 4-14〉 주거비용 부담 수준	120
〈그림 4-15〉 현재 함께 사는 사람 (중복응답)	121
〈그림 4-16〉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122
〈그림 4-17〉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경험	123
〈그림 4-18〉 향후 거주지 이전계획 및 사유	124
〈그림 4-19〉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25
〈그림 4-20〉 아동자립지원시설 이용경험	126
〈그림 4-21〉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경험	127
〈그림 4-22〉 주관적 경제수준	128
〈그림 4-23〉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 현황	129
〈그림 4-24〉 경제적 상황	130
〈그림 4-25〉 자립금(자립정착금/CDA/후원금 등) 지출사항	131
〈그림 4-26〉 생활비 지출 항목	132
〈그림 4-27〉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	134
〈그림 4-28〉 현재 가장 큰 고만걱정	135
〈그림 4-29〉 보호당시 조연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중복응답)	136
〈그림 4-30〉 보호종료 후 조연/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137
〈그림 4-31〉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절성	138
〈그림 4-32〉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139
〈그림 4-33〉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 규모	140
〈그림 4-34〉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 현황	141
〈그림 4-35〉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적절한 교류빈도	142
〈그림 4-36〉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수혜율 및 필요도	144
〈그림 4-37〉 자립기간(5년)동안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	145
〈그림 4-38〉 응답자특성에 따른 정책영역별 필요도	146
〈그림 5-1〉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직 구성(안)	252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정이란 보호체계 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고 있음. 이 중 98% 이상이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고, 매년 약 2,60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에 나오고 있음.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약 2,600명)의 약 56% 이상은 만 18세라는 연령 도래(아동복지법상 퇴소 연령 만기)로 시설의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음(이상정 외, 2019)
 - 전북지역은 2019년 310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12월 기준 55개의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약 1,90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고, 2019년에는 132명(매년 평균 약 140명 발생)의 아동이 연령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음(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 아동권리보장원, 2020)
 - 일반가정의 아동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 후반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경우도 자녀가 부모 집을 떠나 자립하는 최초의 시도는 평균 23세에 이루어지고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으로부터 완전 독립은 평균 28세경인 것으로 나타남(이상정 외, 2019)
-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²⁾은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 경제·정서·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 역량의 부족으로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며, 보호종료아동의 약 40% 이상은 연락 두절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만 18세에 시설의 보호체계를 떠났을 때 자립과정의 어려움은 일반아동 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학업 중단, 조혼(조기임신), 범죄, 노숙, 실업, 사회 부적응, 빈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 제기로 2011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과 자립지원 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되기도 함

2)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을 퇴소한 아동

-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전북지역 차원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실태조사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자립 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적임
 - 2008년 이후 매 4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부재함
 -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31.1%)과 주거 문제(24.2%)로 나타났으며 이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과 주거지원(36.3%)이었음(2016 보호종결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 증대되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립수당, 자립 정착금, 주거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시적 지원에 머물러 있음
 - 특히 보호종료 후의 자립 지원 사업의 효과는 단시일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사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전북지역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종료 5년 이내의 아동)의 전반적인 자립 실태 및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파악과 (2)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문제점·개선 사항 도출 등을 통해 전북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무엇보다 시설유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의 관점에서 자립 과정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기존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문제점·한계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전북 도내 시설(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및 정책적 욕구 분석과 더불어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민·관 지원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전북지역 차원의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 방법과 연구 진행 절차,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인 기초 통계 현황, 보호종료 전 자립 준비 및 보호종료 후 자립 현황과 그 특성을 2차 자료(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2019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등)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봄
- 제3장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근거 법률을 살펴보고, 중앙과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 동향과 주요 분야별 정책·전달체계·관련 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전북지역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시설 유형별(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정책적 욕구를 파악했음. 다음으로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실무자를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필요한 지원 정책 욕구를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의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다층적 측면의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함
- 제5장에서는 3장의 중앙·전북의 지원정책에 대한 한계점, 국내·외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4장의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정책적 욕구를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설문과 면접조사, 그리고 시설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과 현장 전문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전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안)를 제시함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학회지 논문 등을 살펴보고, 중앙(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아동분야 사업안내, 타 지자체의 행정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함.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제도 분석, 관련 정책 동향, 지원정책 분석 및 현 지원정책의 쟁점과 한계점 등을 분석함
- 또한, 타 지자체 및 해외 관련 연구보고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사례 수집 및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 아동자립 지원통계현황보고서 등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요)보호아동·보호종료아동 현황, 자립 준비 및 자립 현황, 관련 시설(종사자) 현황 등을 분석함

2) 설문 및 면접조사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욕구 파악 및 현 지원 사업들의 인지도·수혜 받고 있는 사업 현황과 만족도 등을 양적 수치로 살펴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21년 3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총 200부 이상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24부가 수집되었고 이중 누락된 응답이 많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21부(양육시설 90부, 그룹홈 13부, 가정위탁 1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함
- 다음으로 표준화된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 및 자립 이후에 나타나는 각기 다양하고 상이한 경험과 어려움, 복잡하고 다층위적인 문제와 욕구 등에 대한 자립 경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시설유형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총 17명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이후 자립 지원 관련 사업 및 사후관리를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자립전담요원 및 자립 업무 담당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와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와 자립 현실 및 자립 실태, 그리고 자립 현장 경험에 기반 한 기준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했음. 또한 전북도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도 모색함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 학계 및 중앙 정책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의 외부전문가, 본 연구원의 내부연구위원 등에게 본 연구의 연구 방향과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한 심의와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과 정책제언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리성·타당성 검증을 착수연구심의회와 최종연구심의회를 통해 실시함
-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경제·진로·건강 등 분야별 전반적인 내용과 타 지자체의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용 실태, 자립 관련 주요 현안 및 쟁점 도출, 전북형 자립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및 민·관 자립지원 사업 발굴·연계 방안 모색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전라북도청 보호종료아동 관련 사업 담당부서와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방향 등을 논의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나. 연구 추진 절차

○ 지금까지의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음

단계	⇒ 연구방법	⇒ 연구내용
1 단계	⇒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연구 방향과 범위, 연구 내용과 방법 심의 및 기획
2 단계	⇒ -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 중앙·타지자체의 행정자료 분석 - 국내·외 자립지원 사례수집·분석 - 보호종료아동 관련 중앙과 전북의 기존 통계자료 수집·분석·정리	⇒ -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제도 분석 - 관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분석 및 한계 분석 - 타 지자체 및 국외 자립지원 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전북 보호종료아동 현황, 보호종료 후 자립현황 -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분석
3 단계	⇒ - 전북 보호종료아동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현장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 -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 - 현장실무자·전문가관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기존 지원정책의 문제점·개선사항, 필요 정책적 욕구 분석 - 보호종료아동의 분야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
4 단계	⇒ - 전문가 자문회의 - 담당부서 의견수렴	⇒ - 전북 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방향 도출 - 세부 추진 과제(안) 도출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가. 선행연구 검토

1)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연구(정책연구보고서 중심)

- 최근 5년간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립 과정과 자립 경험을 다룬 실태조사부터 자립 준비와 자립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립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관련 연구대상도 시설보호 아동에서부터 보호종료아동(시설퇴소 아동)부터 연장보호 아동 및 시설 종사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함
- 한편,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중요시되고 있으면서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접근성의 취약성 때문에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관련 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증진 방안에 대해 연구(김형모 2019; 송은이 외, 2019; 정선옥 외 2018; 허민숙, 2018)들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중인 아동과 종료아동과 시설종사자 대상 FGI조사(송은이 외, 2019)만 실시하거나, 시설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지원 전담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및 FGI(김형모, 2019; 정선옥 외, 2018)를 실시하여, 자립지원 컨트롤타워 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연계, 자립지원전담종사자 전문성과 역량강화 필요(송은이 외, 2019), 보호아동 만 12세부터 자립지원계획 수립 변경 필요와 사례관리 강화, 연락두절방지 방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정선옥 외, 2018), 사회관계망 형성 강화와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김형모, 2019) 등 다양한 자립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
- 한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접근성의 취약성으로 시설보호아동과 시설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중심의 질적 연구(전민경, 2018; 허민숙, 2018)는 보호기간 연령 상향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와 자립지원의 체계 구축, 건강보험 지원 마련, 지원 프로그램 평가(허민숙, 2018) 등의 지원 방안 제시 이외 자립 지원 조례 제정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관리 항목과 기간 기준 재설정, 자립지원정착금 분할 지급의 필요성(전민경, 2018) 등을 제시함. 이외 시설퇴소 연령의 유연화 방안·시설보호와 자립의 중간단계(연장보호 방안) 자립 제도 도입 필요와 자립지원정책과 서비스 다양화(이상정, 2019) 등을 제안함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와 욕구 분석에 따른 실질적 자립 지원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이외 자립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환경 및 보호종료 환경에 맞춘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세부화한 연구 등이 있음

〈표 1-1〉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 송이은 외 2인 (2019) 서울여성가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 대상 아동 자립 요인과 자립지원 현황 • 서울 보호종료 대상 아동자립 관련 요인 및 정책 수요조사 • 보호종료 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검토 : 자립지원내용, 자립 시기의 적절성, 범위와 영역 적절성 논의 • FGI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아동 6명, 시설보호아동 4명 - 시설 종사자 3명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과정별 자립지원, 자립취약아동 집중지원 • 자립지원 컨트롤타워로서 전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기관 종사자 전문성/역량강화 - 시설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모니터링/컨설팅 - 현장 중심형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자립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현황 파악 위한 자료 구축 및 지속 관리 -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지원 개발 및 연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정선옥 외 3인(2018) 보건복지부 덕성여대 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현황 및 국내외 자립지원체계 분석 •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 파악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성공 및 실패 원인 분석 • 현 자립지원사업의 문제 및 개선 방안 파악 • 실질적 /안정적 자립을 위한 요건과 연락두절 보호종료아동 현황파악 및 발굴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현황과 자립지원체계 분석 • 온라인설문조사(자립준비실태), 7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중에 있는 아동 대상(시설 432명, 그룹홈 122명, 가정위탁 173명) • 면접 및 FGI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지원 보호종료아동 개별면접(16명), 자립지원 전담실무자(7명) • 학계 및 현장 실무자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아동 만 12세(중학교 입학)부터 자립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 • (자립이행기 설정) 만18세 보호종료 후 일정기간(24세)까지 의무 자립지원기관으로 모든 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지원사업 제공 • 자립이행기 이후 일정기간까지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자립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달체계 개선 : 자립지원사업 담당 부처간 협업 강화, 전담요원 배치기준 개선 및 자격기준 강화 • 사례관리 강화, 연락두절방지 방안, 자립지원사업 성과 지표 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김형모(2019)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과 제도 분석 • 국외 자립지원 사례 분석 •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인권 실태 • 보호종료아동 자립 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온라인과 우편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 691명, 보호종료아동 251명 • FGI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 19명(양육시설 6명, 공동생활가정 5명, 가정위탁 8명) - 자립지원 전문가 17명(아동양육시설 5명, 공동생활가정 8명, 가정위탁지원 4명) • 워크숍(정책과제 도출, 모델구축과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 자립을 위한 통합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 보호계획과 자립계획 연계 및 체계 재정비, 자립통합 지원센터 운영,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사회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낙인극복운동, 사회적부모 역할 강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참여 기회 제공 • 맞춤형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 •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인력 증원 • 정보제공의 확대 : 통합적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적극적 홍보, 실용적 기술정보 교육 실시 •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주거공간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재정/자산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p>보호대상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전민경(2018)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자립 관련 개념 정의 • 중앙/경기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반 내용 • 타지자체 3곳, 통합자립지원 사례분석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평가서 분석과 기관 종사자 FGI 조사 통해 의견수렴 • 경기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고찰, 자립개념, 자립지원사업, 법령과 조례, 기관 및 아동청소년 현황, 타지자체 사례분석 • 자립기술평가서 결과분석 • 면접조사(의견수렴) - 시설종사자 15명,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아동 50명 • 유관기관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개정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방향성 제고 - 진로·직업 및 거주 체류 활성화 • (중앙정부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 수정, 자립지원기관간 역할 구분 및 자립지원 업무 인력배치 추가 -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자립 전담인력 추가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관리 항목/기간 기준 재설정 - 자립지원장착금 분할지급 필요/시설권한 강화
<p>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하민숙(2018) 국회입법조사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 현황 • 보호종료아동 현황 •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와 지원 현황 •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대한 문제점 • 해외 보호종료아동 사례분석 •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개선 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정부 정책 선초, 해외 사례 분석, 관련 현황 분석 등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 연령 상향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 • 자립지원의 표준화 및 지원체계 구축 • LH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비 지원 • 학업지속 지원의 확충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 건강보험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청소년 참여보장
<p>대구지역 보호아동청소년 자립능력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연구 김민재(2017) 대구여성가족재단</p>	<p>(목적) 대구지역 아동생활시설에서 실시되는 자립 8대영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와 욕구분석을 통해 자립지원 발전 방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아동현황, 현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활아동, 퇴소아동, 종사자 대상(519명) - 설문조사로 자립준비도와 자립 실태 파악 • 생활아동과 퇴소아동 심층면접조사로 필요 정책 분석, 전문가 인터뷰로 자립지원 체계에 한계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대구지역 보호아동 자립 지원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공식통계자료 활용 현황과 정책 검토 • 설문조사 : 15세 이상 아동(265명), 퇴소아동(102명), 시설 종사자(152명) - 자립준비도, 자립현황, 지원프로그램 실태 • 면접조사 : 생활아동(5명), 퇴소아동(4명), 자립의미, 자립준비도와 자립현황, 지원프로그램 경험, 정책요구 등 • 전문가자문 : 조사계획, 관련 내용 자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지원 예산 확대 및 자립정착금 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증액 및 지급방법개선, 주거자원을 위한 계산 증액, 자립기술 8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2) 대구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계획 공모전 실시,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 체류 프로그램 운영, 퇴소아동 관리 플랫폼 구축 (3)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한 사례관리 시스템 체계적 구축 - 외부 전문인력풀구축 및 활용, 공동모금회 등 지역 유관기관의 자원 활용하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제안
<p>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박금식 외 2인(2017) 부산여성 가족개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과 더불어 자립체할관과 자립생활관 운영 기능을 추가적으로 실시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체계화된 운영 모델 확보 필요 •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대상 통합서비스 지원방안, 자립프로그램 운영,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방안 등 센터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대상, 250명) - 현 프로그램 현황과 어려움, 아동자립지원센터의 역할과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실시 - 센터의 프로그램운영과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강화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경제교육 프로그램 강화, 개별 시설과의 역할 분담 · 협력을 통한 자립 관련 프로그램 강화 -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체험관·생활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 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구축 확대의 중심 역할, 시설별 연계 강화, 자립지원계획 수립과정의 역할 강화, 자립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p>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김성경 외 6인 (2020) 사랑의 열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과 더불어 자립체험관과 자립생활관 운영 기능을 추가적으로 실시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체계화된 운영 모델 확보 필요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대상 통합 서비스 지원방안, 자립프로그램 운영,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방안 등 센터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및 사례관리자료 현장 조사 실무자 FGI 지자체 공무원 면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및 운영 관련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강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경제교육 프로그램 강화, 개별 시설과의 역할 분담 · 협력을 통한 자립 관련 프로그램 강화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체험관 생활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 사후 관리체계 구축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구축 확대의 중심 역할, 시설별 연계 강화, 자립지원계획 수립과정의 역할 강화, 자립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p>가정 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정 외 4인(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보호체계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자립 준비 정도, 자립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자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 파악 가정의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체계 분석 및 가정의 보호체계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비교분석 가정 외 보호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 관련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통해 현황분석, 전달체계와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설문조사 : 시설별 보호 아동(957명)의 자립 준비 정도와 지원서비스 수급경험 조사 아동대상 FGI : 시설별 보호종료 전후 아동의 자립과정 문제점과 자립서비스 욕구 탐색 종사자 대상 FGI : 종사자 관점의 시설별 자립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조사, 개선 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자립준비 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고 필요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동통합사례관리 체계의 가정 외 보호아동 전담사례관리가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현재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 혹은 지역의 자립프로그램 관리, 자립 지원 서비스 및 지원을 발굴하여 아동과 사례관리자를 원조하는 것 필요 자립과정의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 - 보호아동, 사례관리자,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 내의 친밀한 인적지원이 함께참여하는 팀 중심 접근 방식 적용 필요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련 의료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확충하고 서비스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p>이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 프로그램 표준화 개발 연구 노홍래 외 3인 (2018)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전달체계 내 문제점 분석 보호환경 특성에 맞춘 자립지원프로그램 세분화 개발을 위해 시설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아동 및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 조사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영역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국의 사례분석(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설문조사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담당 종사자 201명(8대 영역 운영 실태와 현실적 제약점, 만족도, 효과성 평가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8대 영역 보완점 등) FGI : 시설별 자립지원담당자 10명, 퇴소 아동 5명(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움과 개선안, 프로그램 세부내용, 욕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모형 도출 자립기술평가와 척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5-17세용(자립기술평가) - 만18세용(자립준비도 평가)

나. 전북지역 관련 연구 현황

- 이주연 외(2018)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전북연구원
 - **(연구내용)** (1) 요보호아동과 가정위탁보호 관련 현황,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북지역 가정위탁보호 특성과 쟁점·현안 도출, (2) 전북지역 가정위탁 유형별 및 보호아동 연령별 부모 대상 면접조사로 가정위탁 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 파악, (3) 현장종사자와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정책 욕구 등 파악, (4) 전북 가정위탁보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요보호아동 현황자료, 통계청 자료 중 전북자료 재분석 등), 가정위탁유형별 위탁부모 대상 면접조사(27명), 위탁유형별 위탁보호연장 및 종료아동 대상 면접조사(각 2명씩 총 4명),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7명과 시군, 읍면동 업무 담당 공무원 5명 등 총 12명 FGI조사
 - **(연구결과)** 가정위탁보호 관련 사업 홍보 강화, 일반위탁부모 발굴과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가정위탁보호 시 경제적 지원 현실화 필요,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양육 권한 인정 필요, 친가정 지속연계 및 자립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내용 확대 필요, 위탁아동의 자립준비 지원서비스 및 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 필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센터 확충 필요,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적합한 양육과 보호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 필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방안 모색 필요 등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됨.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반영한 2개의 정책방향과 15개의 세부 추진과제 제시됨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및 자립 실태 관련 내용)** 대부분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연락 두절로 가정위탁 보호되고 있었고, 위탁보호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친가정 복귀 없이 대부분 만 18세 연령 도래로 보호가 종료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고, 가정위탁보호 아동이란 것을 주위에 알려려 하지 않았으며, 진로·취업 결정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지도를 필요로 함. 또한 자립 준비 지원과 보호 종료 이후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필요로 함
- 전북대학교의 윤명숙, 박신애(2014). 퇴소를 앞 둔 전북지역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4), 133-155
 - 퇴소를 1~2년 정도 앞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5명 대상 시설로부터의 재분리 준비 경험은 걱정과 설렘을 주었고 미래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드러냄
 - 퇴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퇴소 선배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은 시설과 시설 아동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고 있었음

- 이의 전북 도내에서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관련 내용으로 조사 및 연구와 더불어 진행된 포럼은 거의 부재함. 즉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자립 관련 주요 영향 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및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한편, 전북 도의회 도의원들은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 등에 대한 발언과 언론 보도를 지속되고 있음
 - (2020. 1. 15_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된 아이들’ :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주거지원 강화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필요(전북일보)
 - (2019. 8. 13_김광수 전라북도 도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 발의 : 교육과 홍보 미흡으로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절반에 이룸.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2015. 10.13_이상현 전북도의회 의원) 아동생활시설의 퇴소 자립정착금이 거주시설에 따라 200만원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거주시설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제시(투데이안)

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 욕구 분석

- (보호대상아동 관점에서의 자립 준비 지원정책 수요) 시설퇴소 전 자립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험관에서의 자립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필요성과 퇴소 직후 1-2년 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리 받기를 요구함(전민경, 2018). 또한, 진로 및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을 직접적으로 체험·경험을 위한 시설(공간)의 필요성 제기
- (보호종료아동 관점에서의 자립 지원정책 수요)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수요자 중심의 자립 시 힘든 요인과 필요한 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거주할 집, 주거 문제와 생활비와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남. 정부지원 주택거주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20087년 3.1% → 22016년 33.9%) 주거문제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자립지원 실태조사), 취업(중)의 비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취업준비중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취업관련 어려움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2012, 2016 자립 실태조사). 또한 돈 관리 기술과 지역자원 활용기술이 저조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거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취업중이거나 훈련 중인 경우에 자립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자립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 진로, 취업, 생활 이외 보호종료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이 요구됨(이정애, 정익중, 2018)

- **(현장 종사자 관점에서의 자립 지원정책 수요)**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 실질적인 자립 현황과 실태 및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지원을 꼽았음. 주거지원과 더불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강하게 제시함.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이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 지원,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질 수 있기를 요구함. 특히 보호종료 이후의 지원체계 확대와 정신적·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함. 이와 더불어 보호종료 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립관련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그리고 특성이 다른 시설별 실태조사(자립기술평가서, 계획서 포함) 분석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욕구 파악 후 이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성 제시

제 4 절 본 연구의 제한점

- 최근까지 전북 도내에서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관련 실태 및 욕구 파악 연구는 부재함. 단지 전북도의회 도의원 중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 및 기사 중심의 언론보도 내용이 일부 존재할 뿐임
-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설유형(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을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 대상 설문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유형을 고려한 현장실무자(자립지원전담 업무 관련자) 대상 면접조사와 지역 현장전문가의 면접조사를 통해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생활 특성과 여건 파악 및 시설유형별 자립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여 시설유형별 차별화한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 또한 중앙 및 전북의 자립 지원 정책 분석과 국내·외 지원정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북지역의 보호대상아동 대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그리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자 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도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지원 관련 연구가 처음 시도된다는 점과 전북지역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전반적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 자료 생성에서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까지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전북도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과 사업 발굴 시 기초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전북도 차원에서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 발굴 도모,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전북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도내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을 전수조사 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전북지역 내 보호종료아동 관련 기초 통계가 부재하여 시설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현장 종사자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보 입수 후 성별, 지역별, 시설별 등을 구분하여 설문·면접조사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설문과 면접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은 자립지원전담요원(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과 연락·교류가 되고 있던 보호종료아동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추진되었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을 법률상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등 연락 두절된 사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락을 취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시설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시설장)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잘 연계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실태 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잘 연계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 중 많은 비율은 무업형(니트형)으로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아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지속 연락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보다 자립 실태 환경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면접조사에서 지적됨. 이에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들의 실제 자립 실태와 현실은 본 연구결과 보다 더 열악할 수 있음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연락두절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을 높여 그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 하며, 보호종료아동 관점에서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연락 두절되거나 연락이 끊기지 않기 위한 견인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 모색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구 진행시 비대면 조사(전화와 이메일 통한 설문조사 등)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자료수집의 한계와 연구내용에 코로나19의 상황과 내용이 녹아져 있다는 제한점이 있음

2

장

전북지역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분석

제1절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및 특성

제2절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제3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황

제4절 소결

제 2 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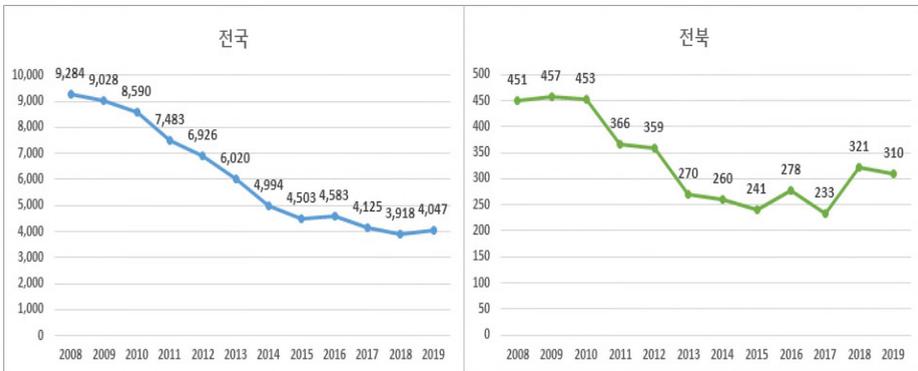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전북지역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아동복지시설 입소 원인과 현황) 및 시설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보호 중심)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등을 살펴봄

제 1 절 (요)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및 특성

- (요)보호대상아동 발생 추이와 발생 원인(입소 사유)현황 및 보호조치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자료, 연도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국 및 전북지역 자료 재분석함

가. (요)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 전국의 경우 2008년 9,284명에서 2019년 4,047명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2018년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음
- 전북의 경우 2008년 451명에서 2017년 23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32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31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2-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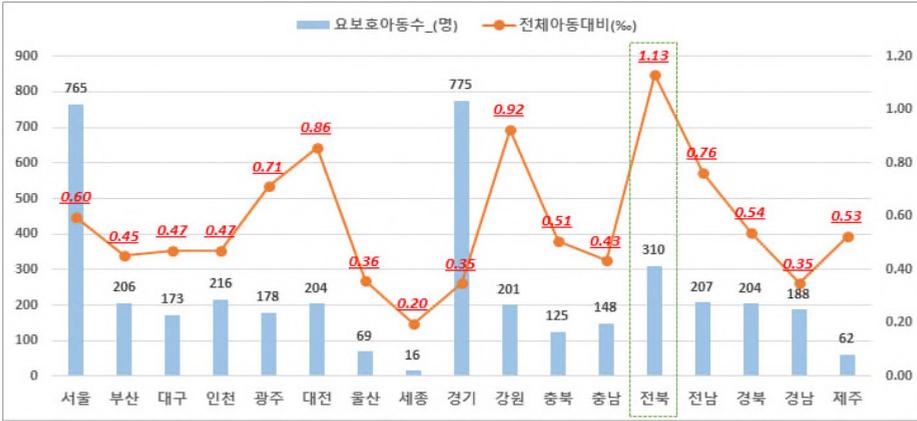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귀가 및 연구자 인도 아동을 제외한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의 수 기준임.

-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전체 아동인구 수 대비 요보호아동의 비율(2011-2019)을 살펴보면, 전국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나, 전북은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음
 - 전국의 경우 아동인구 천 명당 요보호아동 비율은 2008년 0.87%에서 2018년 0.4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0.51%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아동인구 천 명당 요보호아동 비율은 2008년 1.13%에서 2010년 1.20%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0.74%까지 감소하였음.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2019년 1.13%로 나타남
 - 2019년 전체아동 대비 요보호아동 비율은 전국 0.51%, 전북 1.13%로 전북이 전국평균 보다 +0.62%p 더 높았음



(그림 2-2)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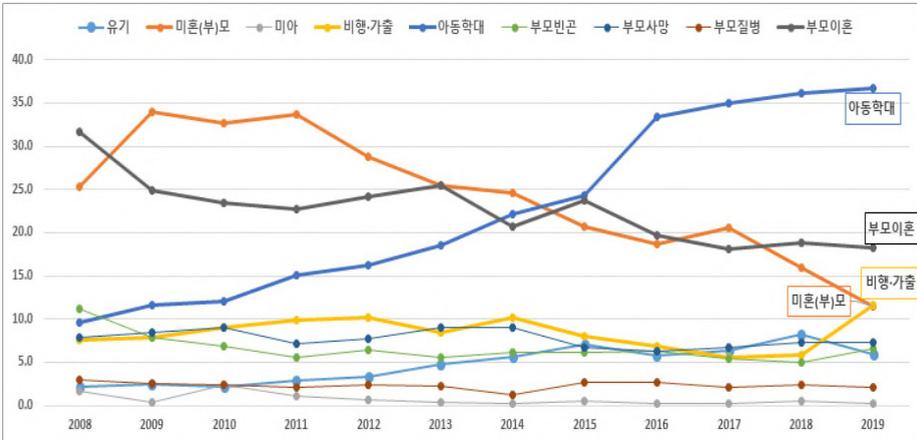
- 2019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전체 아동인구 대비 요보호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9년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수는 전국 4,047명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775명(19.1%), 서울 765명(18.9%), 전북 310명(7.7%), 인천 216명(5.3%)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체 아동인구 천 명당 요보호아동 비율은 전북 1.13%, 강원 0.92%, 대전 0.86%, 전남 0.76%, 광주 0.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수(2019)

나.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

○ 전국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8-2012년도에는 ‘미혼부모’로 인한 사유가 가장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혼’으로 인한 사유는 매년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비행/가출’로 인한 발생은 2019년에 들어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발생 원인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2-4〉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원인(2008~2019)

○ 2019년 기준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를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미혼부/모)과 대전(비행·가출)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아동학대(38.7%), 비행·가출(28.1%), 이혼(12.9%), 빈곤(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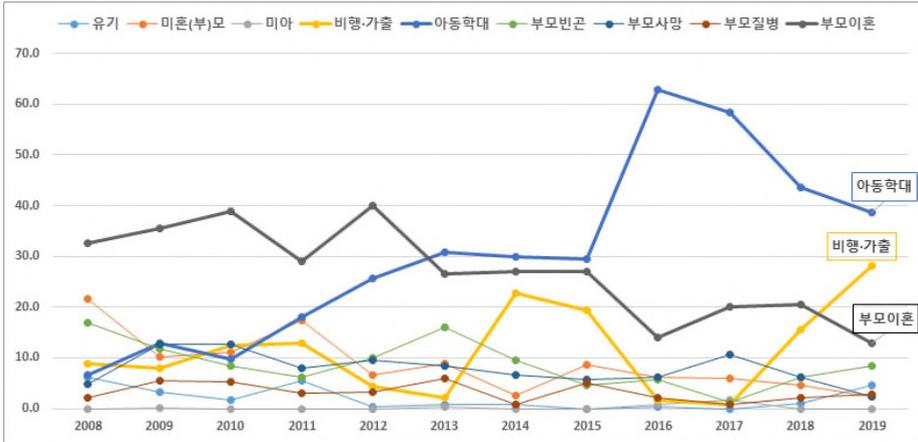
〈표 2-1〉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원인(2019)

구분	유기	미혼(부)모	미아	비행·가출	아동학대	부모빈곤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서울	16.2	33.2	0.0	18.3	11.9	5.5	3.4	1.0	10.5
부산	3.9	6.3	0.5	0.5	48.5	3.9	12.6	2.9	20.9
대구	2.3	6.4	1.2	24.3	32.9	10.4	5.2	1.7	15.6
인천	1.4	4.6	1.4	0.9	57.9	3.7	2.8	0.5	26.9
광주	5.1	21.9	0.6	1.1	40.4	6.2	6.2	3.9	14.6
대전	0.5	2.0	0.0	49.0	28.4	2.9	3.9	1.5	11.8
울산	4.3	4.3	0.0	0.0	53.6	5.8	14.5	1.4	15.9
경기	5.2	4.0	0.0	9.7	43.0	7.9	10.7	2.1	17.5
강원	0.5	6.0	0.0	3.5	34.3	5.0	10.0	1.0	39.8
충북	5.6	11.2	0.0	0.8	48.0	6.4	8.8	1.6	17.6
충남	2.0	5.4	0.0	3.4	54.1	6.1	10.1	2.7	16.2
전북	4.5	2.3	0.0	28.1	38.7	8.4	2.3	2.9	12.9
전남	1.9	17.9	0.0	0.0	40.6	7.2	7.7	1.4	23.2
경북	2.9	1.5	0.0	1.0	44.6	9.8	11.3	5.4	23.5
경남	3.2	4.8	0.5	4.3	43.6	7.4	11.2	2.1	22.9
제주	6.5	11.3	0.0	1.6	33.9	8.1	8.1	4.8	25.8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2019)」.

○ 전북의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 ~ 2012년도까지 '부모 이혼'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높았으나, '아동학대' 사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사유는 증감을 반복하긴 하지만 감소 추세임. 한편, '비행·가출'로 인한 발생은 2018년부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2-5〉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원인(2008~2019)

- 2019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을 전국과 전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들 중 부모학대 요인이 전국(36.7%)과 전북(38.7%) 모두 가장 높았고, 부모 이혼도 전국 18.2%, 전북 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아동의 비행·가출·부랑아 요인 비율도 28.1%로 높게 나타나 향후 요보호아동 대상 자립 지원 시 ‘원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전북의 경우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으로 부모학대·부모이혼·아동의 비행·가출·부랑아 등 원가족 내 가족관계에 대한 고려 이외 부모의 빈곤 요인도 8.4%로 다소 높게 나타나 경제적 빈곤 이유로 자녀양육과 보호가 어려워 원가족과 분리 보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원가족이 자녀의 양육·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2〉 전국과 전북의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비교 (2019)

구분	계	유기	미혼·부 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부모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전국	4,047 (100.0)	237 (5.8)	464 (11.5)	8 (0.2)	473 (11.7)	1,484 (36.7)	265 (6.5)	297 (7.3)	83 (2.1)	736 (18.2)
전북	310 (100.0)	14 (4.5)	7 (2.3)	-	87 (28.1)	120 (38.7)	26 (8.4)	7 (2.3)	9 (2.9)	4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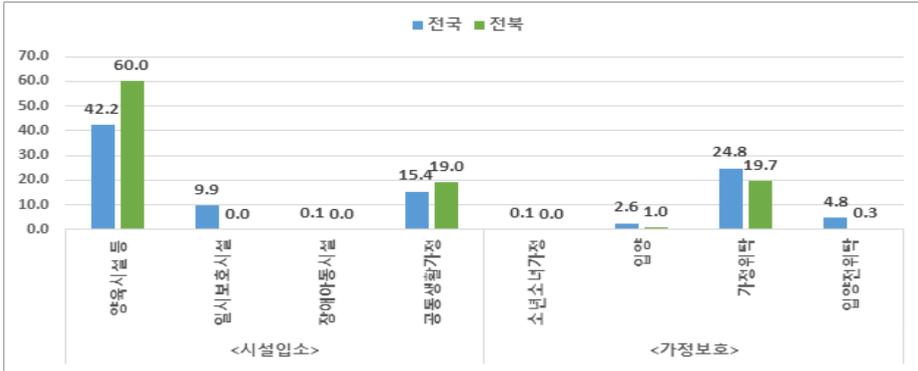
다.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 전국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가정보호 조치는 2009년 47.2%에서 2019년 32.3%로 크게 감소하였고, 시설입소 조치는 2009년 52.9%에서 2019년 67.7%로 크게 증가함
-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가정보호 조치는 2009년 58.2%에서 2019년 21.0%로 크게 감소하여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시설입소 비율은 2009년 41.8%에서 2019년 79.0%로 크게 증가하였음. 전북의 시설입소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1.3%p 더 높았음



〈그림 2-6〉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9~2019)

- 2019년 전국 및 전북의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이 전국보다 시설입소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전북 요보호아동의 ‘양육시설’ 입소율은 60.0%로 전국 평균 42.2%보다 +17.8%p 더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입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3.6%p 더 높았음
- 한편, 가정보호 비율은 전북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가운데, 전북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비율은 19.7%로 전국 평균 24.8%보다 -5.1%p 더 낮게 나타남. ‘입양 전 위탁’ 비율은 0.3%에 불과했으나, 전국 평균은 4.8%로 나타남



〈그림 2-7〉 전국 및 전북의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9)

○ 2019년 기준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입소율’은 대전(83.3%), 대구(81.5%), 전북(79.0%), 전남(7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대로 ‘가정보호율’은 강원(56.2%), 울산(43.5%), 서울 및 경북 40.7% 등의 순으로 높았음. 전북의 가정보호율은 21.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2-8〉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19)

라. 시설유형별 보호아동 현황

- 전북지역 시설유형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중심),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 현황을 살펴봄.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2019.12.31.기준), 통계청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도별 통계자료,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2019. 09) 등의 자료를 재정리 및 재분석 함

1)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 현황

-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281개소(현원 11,665명, 정원충족률 67.33%)가 있음. 이 중 양육시설은 240개소(현원 10,585명), 보호치료시설 12개소(현원 469명), 자립지원시설 13개소(현원 218명), 일시보호시설 13개소(현원 275명), 종합시설 3개소, 아동상담소 10개소, 전용시설 7개소, 기타 개인양육시설 13개소 등이 있음
- 전북 도내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16개소가 있고 현원 총 643명(정원충족률 73.32%)으로 나타남. 이 중 양육시설은 14개소에 현원 587명이 보호받고 있고, 보호치료시설 1개소에 현원 45명, 자립지원시설 1개소 내에 현원 11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전국 및 전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9.12.31.)

(단위: 개소, 명)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아동 상담 소	전용 시설	개인양육 시설	
	시설	현원	정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1	11,665	17,325	240	10,585	12	469	13	218	13	275	3	118	10	7	13	74
서울	49	2341	3695	35	1959	3	140	3	71	5	53	3	118	1			
부산	21	931	1,345	18	882	1	24	1	22	1	3						
대구	23	697	1,135	18	588	2	54	2	40	1	15						
인천	10	532	679	9	487					1	45			5	1		
광주	12	507	686	10	454			1	12	1	41				1		
대전	14	469	761	12	360	1	99	1	10								
울산	1	117	150	1	117												
세종	1	25	48	1	25												
경기	28	1176	1465	25	1049	1	40			2	87			3	1	4	34
강원	11	318	524	8	269			1	18	2	31					2	6
충북	13	518	791	11	477	1	29	1	12						3	1	
충남	14	590	811	13	577			1	13								
전북	16	643	877	14	587	1	45	1	11								
전남	23	1012	1630	21	988	1	15	1	9							2	19
경북	15	708	1,084	15	708											3	13
경남	25	833	1,356	24	810	1	23								1	1	2
제주	5	248	288	5	248									1			

자료 :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총 240개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5,822명이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10,585명이 현재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음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호받고 있는 전체 아동 10,585명 중 남아는 5,948명(56.2%), 여아는 4,637명(43.8%)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12.4%(1,311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취학 유무 및 학교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10,585명) 중 초등학교 학생이 3,193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취학 아동이 2,894명(27.3%), 고등학교 학생 2,075명(19.6%), 중학생 1,806명(17.1%) 순으로 많았음

- 전북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279명이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587명이 현재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음. 전체 아동 587명 중 남아는 314명(53.5%), 여아는 273명(46.5%)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7%(41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학교 취학 유무 및 학교 등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아동(587명) 중 초등학생이 191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136명(23.2%), 미취학 아동 134명(22.8%), 중학생 116명(19.8%) 순으로 많았음

〈표 2-4〉 전국 및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 현황 (2019.12.31.)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입소 인원			취 학 현 황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미만	3~6미만					
전국	240	5,822	10,585	5,948	4,637	10,585	962	1,932	3,139	1,806	2,075	502	169
전북	14	279	587	314	273	587	54	80	191	116	136	10	0

자료 :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 전북 도내에 있는 14개의 아동양육시설은 군산지역에 가장 많은 4개소가 위치해 있고, 다음으로 전주와 익산에 각각 3개소, 고창 2개소, 정읍과 완주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해 있음.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조치된 아동의 약 80%(470명)이 시 지역(전주·군산·익산·정읍)에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개의 시설 당 평균 1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전북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19.12.31.)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고창
시설 수	14	3	4	3	1	1	2
종사자 수	279	63	79	61	25	17	34
현원(정원)	587(777)	130(164)	145(204)	141(158)	54(80)	31(55)	86(116)
충족률	75.5%	79.3%	71.1%	89.2%	67.5%	54.5%	74.1%

자료 :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전국은 2016년 243개소에서 2019년 240개소로 3개소가 감소하였고, 전북의 경우 2016년~2019년까지 14개소로 변동이 없음. 아동양육시설

의 수는 전국과 전북 모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사자수의 경우 전국은 2016년 5,561명에서 2019년 5,822명으로 상당 수 증가한 반면, 전북의 경우 277명에서 279명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함

- 전국 및 전북의 입소아동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입소아동 대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종사자 대 아동 비율은 2016년 2.2:1에서 점차 감소해 2019년 1.8:1까지 낮아진 반면, 전북의 경우 2016년 2.4:1에서 2019년 2.1:1로 나타남

〈표 2-6〉 연도별 전국 및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성별 및 학교 급별 현황 (2016-2019)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입소 인원			취 학 현 황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미만	3~6미만						
전국	'19	240	5,822	10,585	5948	4637	10,585	962	1,932	3,139	1,806	2,075	502	169
	'18	241	5,676	11,100	6,263	4,837	11,100	1,052	1,945	2,962	2,088	2,361	548	144
	'17	242	5,620	11,665	6,605	5,060	11,665	1,065	2,050	2,834	2,220	2,759	583	154
	'16	243	5,561	12,448	7,109	5,339	12,448	1,140	1,770	3,155	2,544	3,106	586	147
전북	'19	14	279	587	314	273	587	54	80	191	116	136	10	0
	'18	14	278	609	324	285	609	55	83	182	142	128	18	1
	'17	14	277	616	340	276	616	34	106	174	133	148	20	1
	'16	14	277	675	386	289	675	47	111	189	146	165	16	1

자료 :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2)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내 보호아동 현황

(1) 전국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 현황

- 전국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의 시설 수는 총 507개소가 있으며, 경기도가 158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69개소, 전북 40개소, 광주 34개소, 전남 33개소 순으로 많았음
- 전국적으로 공동생활가정(총 507개소)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019년 12월 기준 2,645명으로, 공동생활가정 개소수가 많은 경기도가 776명의 아동을 가장 많이 보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317명, 전북 215명, 전남 168명, 광주 164명, 부산 156명 순으로 많았음
- 전국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총원율은 76.14%로 나타났고, 시설 1개소 당 종사자 평균 인원은 2.9명으로 나타났음

- 전국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전체 아동(2,645명) 중 남아가 1,473명(55.7%), 여아가 1,172명(44.3%)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 11.4%(301명)정도 더 많고,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876명(33.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등학생 628명(23.7%), 중학생 607명(22.9%), 미취학아동 333명(12.6%) 순으로 나타남. 이외 대학생도 157명(5.9%) 정도 보호받고 있었음

(2) 전북지역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현황

- 전북의 공동생활가정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시설 수는 총 40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수 120명(시설 1개소 당 평균 종사자 3명), 현원 아동 215명으로 정원 충원율 79.6%를 보임
 - 전북 도내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보면, 전체 아동 215명 중 남아 100명(46.5%), 여아 115명(53.5%)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5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79명(3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 53명(24.6%), 고등학생 45명(20.9%), 미취학생 22명(10.2%) 순으로 나타남. 이외 대학생도 15명(6.9%) 정도 보호 받고 있었음
 - 전북 도내에 있는 40개의 공동생활가정은 전주지역에 가장 많은 19개소가 위치해 있고, 다음으로 군산 8개소, 익산·완주·진안에 각각 3개소, 임실 2개소, 김제와 순창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해 있음
 - 공동생활가정에 보호 조치된 아동의 약 73%(157명)이 시 지역(전주·군산·익산)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북 도내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충족율은 평균 79.8%로 나타났고, 전주지역의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충족율이 75.6%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 현황(2019)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정원	수용인원			아동현황						
				계	남	여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3~6세					
계	507	1,459	3,474	2,645	1,473	1,172	67	266	876	607	628	157	43
서울	65	184	438	317	189	128	10	41	93	70	85	11	7
부산	27	84	185	156	80	76	3	9	51	43	43	5	2
대구	12	36	80	59	40	19	0	3	21	15	15	3	2
인천	17	48	117	99	47	52	5	10	35	19	23	7	0
광주	34	97	237	164	79	85	4	30	68	29	28	5	0
대전	16	45	110	86	49	37	3	6	35	16	20	3	3
울산	8	24	52	45	39	6	0	5	21	15	2	1	1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146	414	997	776	446	330	16	86	255	188	178	38	15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정원	수용인원			아동현황						
				계	남	여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3~6세					
강원	19	55	133	99	47	52	6	7	27	25	23	10	1
충북	24	64	166	122	56	66	7	6	35	32	34	6	2
충남	26	75	182	126	71	55	5	3	39	26	38	13	2
전북	40	120	270	215	100	115	2	20	79	53	45	15	1
전남	33	98	230	168	104	64	1	14	47	31	47	25	3
경북	10	27	69	43	28	15	3	6	12	11	8	3	0
경남	26	76	180	143	84	59	2	15	48	28	35	11	4
제주	4	12	28	27	14	13	0	5	10	6	5	1	0

자료 :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표 2-8〉 전북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보호아동 현황

구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원주	진안	임실	순창
시설수	40	19	8	3	1	3	3	2	1
종사자수	120	57	24	9	3	9	9	6	3
현원(정원)	215(270)	96(127)	45(56)	16(21)	7(7)	18(21)	15(17)	11(14)	7(7)
충족률	79.6%	75.6%	80.3%	76.2%	100%	85.7%	88.2%	78.6%	100%

자료 :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 연도별에 따른 전북의 공동생활가정(일반 그룹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3개소가 2019년 3개가 감소한 40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종사자는 2016년 119명에서 1명이 증가한 120명이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2016년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은 217명이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명 증가한 221명, 2018년에는 전년보다 10명 증가한 231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전년보다 16명이 감소한 215명으로 나타남

〈표 2-9〉 연도별 전북의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 및 취학 현황(2016~2019)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입소인원			취학현황						
			계	남	여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미만	3~6미만					
2019	40	120	215	100	115	2	20	79	53	45	15	1
2018	41	122	231	-	-	-	-	-	-	-	-	-
2017	42	113	221	-	-	-	-	-	-	-	-	-
2016	43	119	217	-	-	-	-	-	-	-	-	-

자료 :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주: 2016~2018년 공동생활가정 현황에는 일반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구분 없이 통합된 통계치만 있음

3)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1) 전국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 연도별(2011-2018) 전국의 가정위탁 전체 아동과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가정위탁아동 수는 15,48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11,111명으로 나타남. 가정위탁 유형별로 위탁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은 2011년 10,205명에서 2018년 7,412명으로 감소하였고, 친인척양육은 2011년 4,260명에서 2018년 2,786명으로, 일반가정양육은 2011년 1,021명에서 2019년 913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가장 높게는 66.9%에서 가장 낮게는 65.9%) 다음으로 친인척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가장 높게는 27.5%에서 가장 낮게는 25.1%) 일반가정양육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가장 높게는 8.2%에서 가장 낮게는 6.5%). 2018년 기준 대리양육 비율 66.7%, 친인척양육 비율 25.1%, 일반가정양육 비율 8.2%로 나타남
- 한편, 일반가정양육 비율이 2011년 6.6%에서 2018년 8.2%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냄

〈표 2-10〉 연도별 전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와 위탁유형별 비율(2011-2018)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8년	11,111	7,412 (66.7)	2,786 (25.1)	913 (8.2)
2017년	11,975	7,942 (66.3)	3,096 (25.9)	937 (7.8)
2016년	12,907	8,594 (66.6)	3,339 (25.9)	974 (7.5)
2015년	13,721	9,141 (66.6)	3,590 (26.2)	990 (7.2)
2014년	14,340	9,587 (66.9)	3,757 (26.2)	996 (6.9)
2013년	14,584	9,829 (67.4)	3,803 (26.1)	952 (6.5)
2012년	14,384	9,770 (67.9)	3,684 (25.6)	930 (6.5)
2011년	15,486	10,205 (65.9)	4,260 (27.5)	1,021 (6.6)

자료 :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2019. 9. 발행)

- 전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 비율은 남아가 50.8%, 여아가 49.2%로 남아가 여아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전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들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평균연령은 16세이며, 17~19세 비율이 3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세 이상이 20%, 14~16세 19.2% 순으로 나타남. 즉 50% 이상이 17세 이상(고등학생 이상) 아동으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 종료 이후 자립한 아동으로 나타남

〈표 2-11〉 전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2018)

구분	합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대리양육	7,412	3,798	3,614	33	338	609	921	1,445	2,596 (35.0)	1,470 (19.8)
친인척	2,786	1,347	1,439	11	66	161	327	516	1,062 (38.1)	643 (23.1)
일반	913	496	417	50	172	100	117	172	191 (20.9)	111 (12.2)
소계	11,111	5,641 (50.8)	5,470 (49.2)	94 (0.9)	576 (5.2)	870 (7.8)	1,365 (12.3)	2,133 (19.2)	3,849 (34.6)	2,224 (20.0)

자료 :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2019. 9. 발행)

(2)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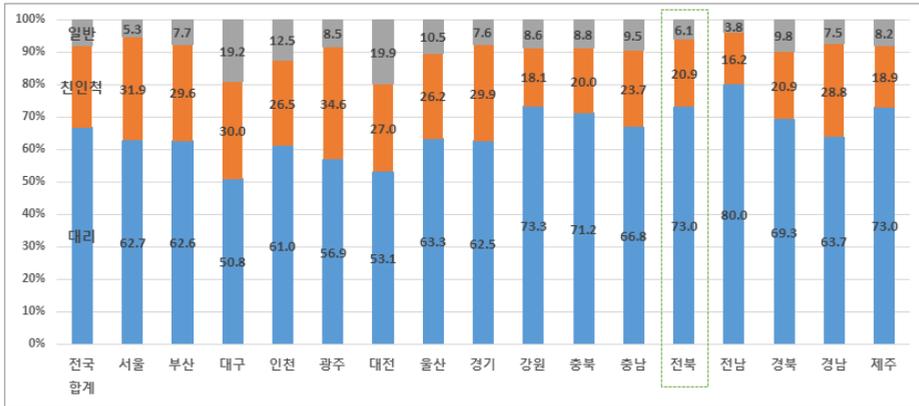
-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가정위탁 아동 11,111명 가운데 대리양육이 66.7%(7,41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인척 25.1%(2,786명), 일반 8.2%(9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 비율은 전남(80.0%), 강원(73.3%), 전북 및 제주 73.0%, 충북(7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친인척’ 비율은 광주(34.6%), 서울(31.9%), 대구(30.0%) 등의 순으로 높았음. ‘일반위탁’ 비율은 대전(19.9%), 대구(19.2%) 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인천(12.5%), 울산(10.5%)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특히 전남은 3.8%에 불과하였고, 서울(5.3%), 전북(6.1%) 등은 일반가정위탁 비율이 저조한 수준이었음

〈표 2-12〉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현황(2018)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전국 합계	11,111	7,412 (66.7)	2,786 (25.1)	913 (8.2)
서울	958	601	306	51
부산	594	372	176	46
대구	260	132	78	50
인천	520	317	138	65
광주	355	202	123	30
대전	211	112	57	42
울산	248	157	65	26
경기	2,031	1,269	607	155
강원	1,018	746	184	88
충북	475	338	95	42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충남	642	429	152	61
전북	752	549	157	46
전남	1,073	858	174	41
경북	889	616	186	87
경남	841	536	242	63
제주	244	178	46	20

자료 :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9. 9. 발행)



〈그림 2-9〉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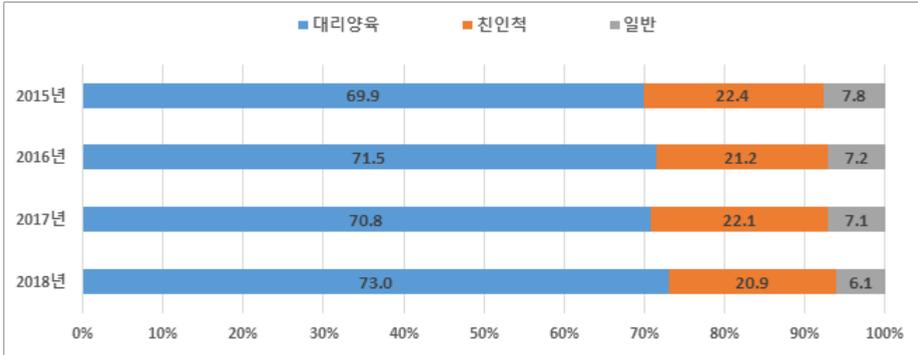
(3) 전북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은 2015년 69.9%에서 2018년 73.0%로 증가하고, 친인척 및 일반 위탁비율은 감소함

〈표 2-13〉 연도별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와 위탁유형별 비율(2015-2018)

구 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018년	752 (100.0)	549 (73.0)	157 (20.9)	46 (6.1)
2017년	791 (100.0)	560 (70.8)	175 (22.1)	56 (7.1)
2016년	843 (100.0)	603 (71.5)	179 (21.2)	61 (7.2)
2015년	916 (100.0)	640 (69.9)	205 (22.4)	71 (7.8)

자료 :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2019. 9.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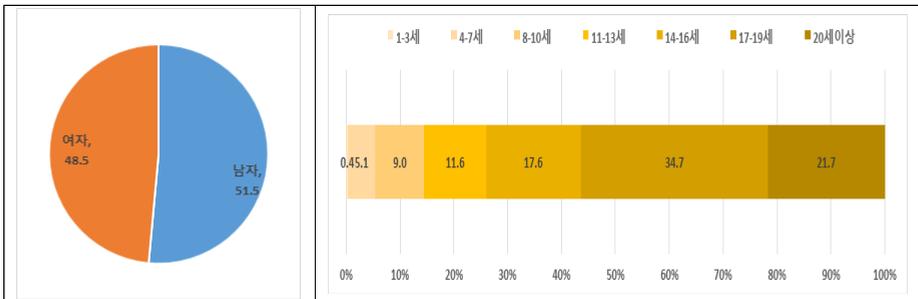
〈그림 2-10〉 연도별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와 위탁유형별 비율(2015-2018)

○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많았고, 아동의 연령은 보호종료 시점에 다가온 아동의 수가 많았음

〈표 2-14〉 전북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 현황(2018)

구분	합계	성별		연령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대리양육	549	279	270	2	30	49	64	88	189	127
친인척	157	83	74	1	3	13	17	28	61	34
일반	46	25	21	-	5	6	6	16	11	2
소계	752	387	365	3	38	68	87	132	261	163

자료 :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2019. 9. 발행)



〈그림 2-11〉 전북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성별과 연령 현황(2018)

4) 전국과 전북의 아동복지시설 내 16세 이상(연장포함) 보호아동 현황

-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내 보호아동은 2019년 기준 전체 10,562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16~18세 아동이 4,988명(양육시설 1,722명, 공동생활가정 539명, 가정위탁보호 2,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상 보호아동은 2,696명(양육시설 1,050명, 공동생활가정 416명, 가정위탁보호 1,230명)이었으며, 연장아동은 2,791명(양육시설 392명, 공동생활가정 82명, 가정위탁보호 2,317명)으로 나타남
- 시설별로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6,361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1,037명(9.8%)으로 가장 적었음. 시설유형과 연령별 구분에 따른 9개 집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면서 16~18세 아동(2,727명)으로 나타남
- 전북의 아동복지시설 내 16세 이상 보호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682명이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16~18세 아동이 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장아동 183명, 19세 이상 아동 159명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시설별로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430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시설 보호 아동 173명(25.4%), 공동생활가정 79명(11.6%)이었음. 시설유형과 연령별 구분에 따른 9개 집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전국과 동일하게 가정위탁보호아동이면서 16~18세 아동(180명)으로 나타남

〈표 2-15〉 전국 및 전북 아동복지시설 내 16세 이상(연장 포함) 보호아동 현황(2019)

구분		아동 현황				소계
		16~18세	19세 이상	연장아동	일시중지아동	
전국	양육시설	1,722(34.5)	1,050(38.9)	392(14.0)	-	3,164(29.9)
	공동생활	539(10.8)	416(15.4)	82(2.9)	-	1,037(9.8)
	가정위탁	2,727(54.7)	1,230(45.6)	2,317(83.0)	87	6,361(60.2)
	합계	4,988(100.0)	2,696(100.0)	2,791(100.0)	87	10,562(100.0)
전북	양육시설	119(35.1)	49(30.8)	5(2.7)	-	173(25.4)
	공동생활	40(11.8)	31(19.5)	8(4.4)	-	79(11.6)
	가정위탁	180(53.1)	79(49.7)	170(92.9)	1	430(63.1)
	합계	339(100.0)	159(100.0)	183(100.0)	1	682(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제 2 절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가.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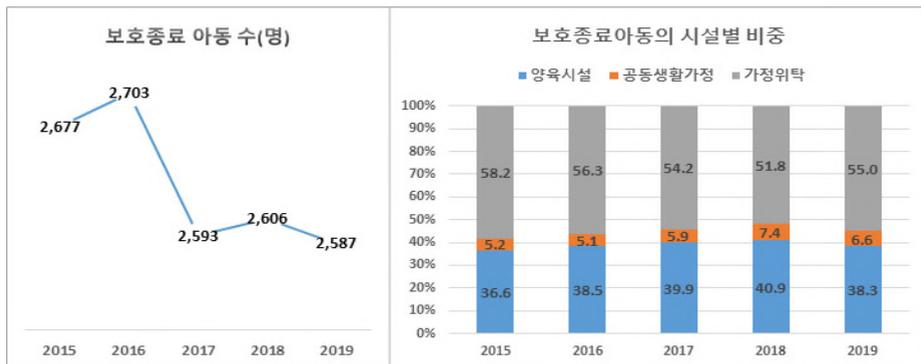
-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2015~2019)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2015년 2,677명, 2016년 2,703명, 2017년 2,593명, 2018년 2,606명, 2019년 2,587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시설별로는 2015년~2018년까지 가정위탁 비중이 감소추세였으나, 2019년 증가로 돌아섬
- 전북의 경우 2017년 134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132명으로 감소함. 시설별 비중은 가정위탁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이고,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비중은 감소추세임

〈표 2-16〉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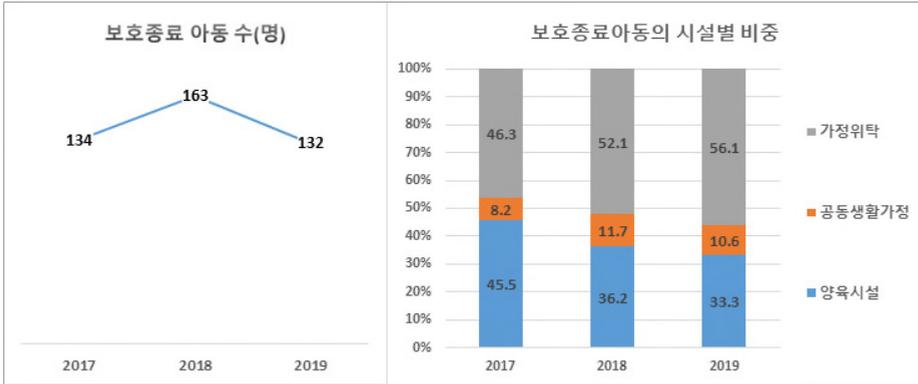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계	만기퇴소	연장종료	소계	만기퇴소	연장종료	소계	만기퇴소	연장종료	
전국	'15년	2,677	980	578	402	140	85	55	1,557	793	764
	'16년	2,703	1,042	673	369	139	74	65	1,522	696	826
	'17년	2,593	1,034	687	348	153	108	45	1,406	652	754
	'18년	2,606	1,065	754	311	192	157	35	1,349	647	702
	'19년	2,587	992	645	347	172	120	52	1,423	547	876
전북	'15년	-	66	52	14	9	4	5	-	-	-
	'16년	-	53	38	15	11	4	7	-	-	-
	'17년	134	61	54	7	11	9	2	62	25	37
	'18년	163	59	43	16	19	17	2	85	39	46
	'19년	132	44	28	16	14	9	5	74	23	51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주 : 2016년 이전에는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의 지역별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그림 2-12〉 전국 연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2015~2019)



(그림 2-13) 전북 연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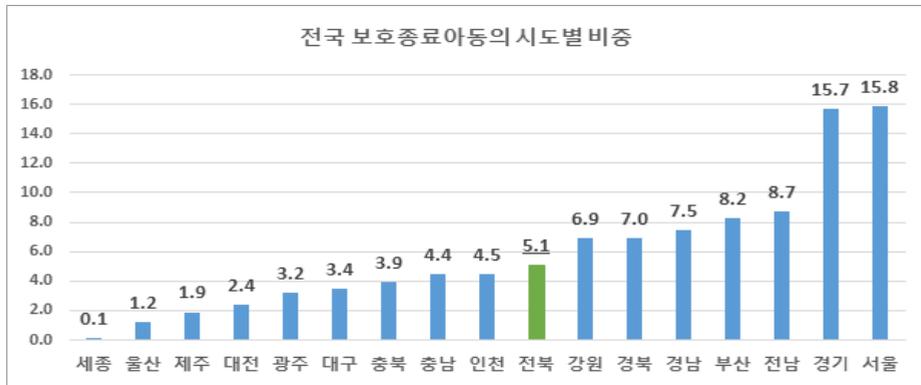
나. 전국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16세 이상 보호아동 10,562명 중 18세 연령에 따른 만기퇴소와 연장종료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 총 아동 수는 2,587명으로 보호아동의 24.5%가 보호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2,587명의 보호 종료 아동 중 서울이 15.8%(41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15.7%(405명), 전남 8.7%(226명), 부산 8.2%(2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19년 기준 16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682명 중 만기퇴소와 연장종료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이 132명으로 보호아동의 19.4%가 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전체 2,587명 중 약 5.1%의 보호종료아동이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132명이며, 이 중 56.1%(74명)가 가정위탁보호, 33.3%(44명)가 양육시설, 10.6%(14명)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나타남
- 전국과 전북지역의 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특이점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종료아동의 60% 이상은 18세 만기퇴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는 18세 연령 도래 만기퇴소 보다는 연장종료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7〉 전국 시·도별*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2019)

구분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계	만기 퇴소	연장 종료	소계	만기 퇴소	연장 종료	소계	만기 퇴소	연장 종료
전국	10,562	2,587 (100.0)		992	645	347	172	120	52	1,423	547	876
서울	1,089	410	15.8	250	232	18	23	18	5	137	53	84
부산	722	213	8.2	110	73	37	14	7	7	89	36	53
대구	374	89	3.4	57	27	30	2	2	0	30	13	17
인천	422	116	4.5	46	42	4	4	4	0	66	29	37
광주	410	83	3.2	45	27	18	9	3	6	29	7	22
대전	289	62	2.4	24	15	9	10	8	2	28	15	13
울산	155	32	1.2	5	3	2	2	1	1	25	17	8
경기	1,762	405	15.7	76	66	10	51	40	11	278	115	163
강원	758	178	6.9	24	7	17	4	3	1	150	43	107
충북	454	101	3.9	32	16	16	17	10	7	52	25	27
충남	551	115	4.4	41	21	20	3	2	1	71	30	41
전북	682	132	5.1	44	28	16	14	9	5	74	23	51
전남	1,023	226	8.7	85	30	55	10	6	4	131	64	67
경북	757	180	7.0	70	29	41	2	2	0	108	43	65
경남	875	193	7.5	66	24	42	2	2	0	125	24	101
제주	226	49	1.9	15	4	11	4	2	2	30	10	20
세종	13	3	0.1	2	1	1	1	1	0	0	0	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그림 2-14〉 전국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비중(2019)

* 보호아동이란 2018년 기준 16~18세 아동과 보호 연장 아동을 포함한 수

제 3 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황

가. 보호종료 앞둔(16~18세) 아동의 자립 준비 현황

1) 보호종료 앞둔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현황

- 2019년 전국 아동복지 시설별 자립지원계획수립 아동을 계획대상, 계획수립, 수립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계획대상 아동 1,709명(16세 428명, 17세 603명, 18세 678명) 중 실질적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된 아동은 1,665명으로 수립률이 97.4%로 나타나 44명의 아동이 자립지원 계획 수립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둘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지원 계획대상 아동 512명 중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된 아동은 417명으로 수립률이 81.4%로 나타나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자립지원 계획대상 아동 2,704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아동이 자립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률이 99.9%로 나타남. 종합해보면, 전국 아동복지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대상 아동 대비 계획수립을 한 아동의 수립률은 평균 97.1%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첫째, 양육시설의 수립률은 119명 계획에 119명 수립으로 100%를 달성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둘째, 공동생활가정은 38명 계획에 25명 수립으로 65.8%로 전국 공동생활가정 수립률(81.4%)보다 무려 -15.6%p 낮았음. 셋째, 가정위탁의 경우 180명 계획에 180명 수립으로 100%로 전국 평균과 유사함. 한편, 전체 시설의 연령별 수립률은 16세를 제외하고, 17~18세에서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수립률이 낮았으며, 전체 수립률은 96.1%로 전국 평균보다 -1.0%p 더 낮았음

〈표 2-18〉 전국 및 전북의 보호종료 앞둔(16~18세)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현황(2019)

구분	계획대상(명)				계획수립(명)				수립률(%)				
	16세	17세	18세	계	16세	17세	18세	계	16세	17세	18세	평균	
전국	양육시설	428	603	678	1,709	426	590	649	1,665	99.5	97.8	95.7	97.4
	공동생활	109	196	207	512	91	160	166	417	83.5	81.6	80.2	81.4
	가정위탁	757	908	1,039	2,704	756	908	1,038	2,702	99.9	100.0	99.9	99.9
	합계	1,294	1,707	1,924	4,925	1,273	1,658	1,853	4,784	98.4	97.1	96.3	97.1
전북	양육시설	29	47	43	119	29	47	43	119	100.0	100.0	100.0	100.0
	공동생활	6	12	20	38	5	6	14	25	83.3	50.0	70.0	65.8
	가정위탁	42	59	79	180	42	59	79	180	100.0	100.0	100.0	100.0
	합계	77	118	142	337	76	112	136	324	98.7	94.9	95.8	96.1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 아동복지 시설유형 중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 전 아동(16-18세) 대상 자립지원 계획수립 비율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보호 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공동생활 가정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봄
- 17개 시도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계획 수립률을 살펴보면, 자립지원계획 아동 대상 자립지원계획이 수립된 수립률 100% 수준을 달성한 지역은 대구, 울산, 경북 지역으로 나타남
- 한편, 자립지원 계획수립 아동대상 자립지원 계획수립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북(65.8%) 및 전남(65.7%)으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 자립지원 수립률 (81.4%)보다 -15.6%p가 낮았음
- 자립지원 계획 수립률 평균 이하(81.4%) 지역 : 전남(65.7%) < 전북(65.8%) < 경기 (73.2%) < 강원(80.0%)

〈표 2-19〉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 아동(16-18세)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현황(2019)

구분	계획대상(명)				계획수립(명)				수립률(%)			
	16세	17세	18세	계	16세	17세	18세	계	16세	17세	18세	평균
전국	109	196	207	512	91	160	166	417	83.5	81.6	80.2	81.4
서울	11	23	24	58	9	19	22	50	81.8	82.6	91.7	86.2
부산	5	15	11	31	5	15	10	30	100.0	100.0	90.9	96.8
대구	5	4	5	14	5	4	5	14	100.0	100.0	100.0	100.0
인천	1	5	6	12	1	4	6	11	100.0	80.0	100.0	91.7
광주	9	11	5	25	9	10	4	23	100.0	90.9	80.0	92.0
대전	7	6	9	22	6	5	7	18	85.7	83.3	77.8	81.8
울산	1	3	1	5	1	3	1	5	100.0	100.0	100.0	100.0
경기	28	62	59	149	22	45	42	109	78.6	72.6	71.2	73.2
강원	7	5	8	20	3	5	8	16	42.9	100.0	100.0	80.0
충북	7	10	17	34	7	10	12	29	100.0	100.0	70.6	85.3
충남	5	9	12	26	5	9	11	25	100.0	100.0	91.7	96.2
전북	6	12	20	38	5	6	14	25	83.3	50.0	70.0	65.8
전남	7	14	14	35	5	9	9	23	71.4	64.3	64.3	65.7
경북	0	6	4	10	0	6	4	10	0.0	100.0	100.0	100.0
경남	6	10	10	26	5	9	9	23	83.3	90.0	90.0	88.5
제주	4	1	2	7	3	1	2	6	75.0	100.0	100.0	85.7
세종	0	0	0	0	0	0	0	0	0.0	0.0	0.0	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동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2) 보호종료 앞둔 아동(16~18세)의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

- 2019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계획수립아동의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인문계(46.2%) 및 실업계(42.7%)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은 실업계 비중이, 여학생은 인문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시설별로 살펴보면, 양육시설(56.0%), 공동생활가정(46.1%), 가정위탁(33.6%) 순으로 실업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정위탁의 경우 인문계 비율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모든 시설유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 비중이 더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문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2-20〉 시설별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 현황(2019)

구분		인문계	과학 및 외국어계	실업계	예술 및 체육계	농업계	직업전문 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기타	총계
양육 시설	남	209 30.8	4 0.6	410 60.4	15 2.2	17 2.5	5 0.7	3 0.4	16 2.4	679 100.0
	여	211 39.3	2 0.4	271 50.5	10 1.9	8 1.5	0 0.0	5 0.9	30 5.6	537 100.0
	계	420 34.5	6 0.5	681 56.0	25 2.1	25 2.1	5 0.4	8 0.7	46 3.8	1216 100.0
공동 생활	남	64 37.2	2 1.2	87 50.6	4 2.3	2 1.2	3 1.7	3 1.7	7 4.1	172 100.0
	여	63 47.0	0 0.0	54 40.3	3 2.2	4 3.0	2 1.5	3 2.2	5 3.7	134 100.0
	계	127 41.5	2 0.7	141 46.1	7 2.3	6 2.0	5 1.6	6 2.0	12 3.9	306 100.0
가정 위탁	남	495 50.0	7 0.7	364 36.8	24 2.4	8 0.8	31 3.1	10 1.0	51 5.2	990 100.0
	여	528 59.6	8 0.9	266 30.0	14 1.6	13 1.5	9 1.0	11 1.2	37 4.2	886 100.0
	계	1023 54.5	15 0.8	630 33.6	38 2.0	21 1.1	40 2.1	21 1.1	88 4.7	1876 100.0
전체	남	768 41.7	13 0.7	861 46.8	43 2.3	27 1.5	39 2.1	16 0.9	74 4.0	1,841 100.0
	여	802 51.5	10 0.6	591 38.0	27 1.7	25 1.6	11 0.7	19 1.2	72 4.6	1,557 100.0
	계	1,570 46.2	23 0.7	1,452 42.7	70 2.1	52 1.5	50 1.5	35 1.0	146 4.3	3,398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3) 보호종료 앞둔 아동의 성별에 따른 희망직종 현황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희망직종 유형을 살펴보면, 전문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직 6.9%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전문직과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남학생은 기능직과 기계조작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의 경우 공동생활가정(34.1%), 양육시설(32.7%), 가정위탁(25.7%) 순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성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시설유형에서 여학생은 전문직과 서비스직, 남학생은 기능직과 기계조작 직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

〈표 2-21〉 시설별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성별에 따른 희망직종 현황(2019)

구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어업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기타	미입력	계	
양육시설	남	12 1.3	272 30.1	22 2.4	56 6.2	7 0.8	7 0.8	98 10.8	59 6.5	13 1.4	62 6.9	296 32.7	904 100.0
	여	10 1.3	273 35.9	62 8.1	89 11.7	7 0.9	3 0.4	24 3.2	6 0.8	10 1.3	47 6.2	230 30.2	761 100.0
	합계	22 1.3	545 32.7	84 5.0	145 8.7	14 0.8	10 0.6	122 7.3	65 3.9	23 1.4	109 6.5	526 31.6	1,665 100.0
공동생활	남	4 1.7	61 26.5	3 1.3	19 8.3	0 0.0	0 0.0	18 7.8	13 5.7	2 0.9	16 7.0	94 40.9	230 100.0
	여	1 0.5	81 43.3	4 2.1	27 14.4	0 0.0	0 0.0	3 1.6	2 1.1	1 0.5	7 3.7	61 32.6	187 100.0
	합계	5 1.2	142 34.1	7 1.7	46 11.0	0 0.0	0 0.0	21 5.0	15 3.6	3 0.7	23 5.5	155 37.2	417 100.0
가정위탁	남	23 1.6	344 23.8	87 6.0	46 3.2	6 0.4	9 0.6	54 3.7	74 5.1	5 0.3	96 6.6	704 48.6	1,448 100.0
	여	16 1.3	351 28.0	100 8.0	95 7.6	7 0.6	2 0.2	15 1.2	6 0.5	4 0.3	45 3.6	613 48.9	1,254 100.0
	합계	39 1.4	695 25.7	187 6.9	141 5.2	13 0.5	11 0.4	69 2.6	80 3.0	9 0.3	141 5.2	1,317 48.7	2,702 100.0
전체	남	39 1.5	677 26.2	112 4.3	121 4.7	13 0.5	16 0.6	170 6.6	146 5.7	20 0.8	174 6.7	1,094 42.4	2,582 100.0
	여	27 1.2	705 32.0	166 7.5	211 9.6	14 0.6	5 0.2	42 1.9	14 0.6	15 0.7	99 4.5	904 41.1	2,202 100.0
	합계	66 1.4	1,382 28.9	278 5.8	332 6.9	27 0.6	21 0.4	212 4.4	160 3.3	35 0.7	273 5.7	1,998 41.8	4,784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4) 보호종료 앞둔 아동의 희망주거 현황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이 희망하는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4,784명의 아동 중 39.1%는 정부지원, 27.8%는 정부지원 외로 나타남. 가장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LH(전세주택, 영구임대 등)를 35.2%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양육시설(51.1%), 공동생활가정(41.5%), 가정위탁(24.4%) 순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정부지원 외의 경우에는 자가를 희망하는 경우가 5.5%로 가장 높았고, 이는 가정위탁 아동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전국 시설별 보호종료 앞둔 아동의 희망주거 형태(2019)

구분	정부지원					정부지원 외											미입력	총계
	LH 지원	자립 지원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자가	친인 척	기숙 사	고시 원	친구 집	귀가	위탁 가정	기타	소계		
양육 시설	851	96	17	16	980	32	27	29	14	42	0	2	82	0	13	241	444	1,665
	51.1	5.8	1.0	1.0	58.9	1.9	1.6	1.7	0.8	2.5	0.0	0.1	4.9	0.0	0.8	14.5	26.7	100.0
공동 생활	173	9	7	3	192	3	0	2	2	4	0	0	10	0	3	24	201	417
	41.5	2.2	1.7	0.7	46.0	0.7	0.0	0.5	0.5	1.0	0.0	0.0	2.4	0.0	0.7	5.8	48.2	100.0
가정 위탁	660	12	11	14	697	97	149	233	36	131	0	7	10	384	17	1,064	941	2,702
	24.4	0.4	0.4	0.5	25.8	3.6	5.5	8.6	1.3	4.8	0.0	0.3	0.4	14.2	0.6	39.4	34.8	100.0
합계	1,684	117	35	33	1,869	132	176	264	52	177	0	9	102	384	33	1,329	1,586	4,784
	35.2	2.4	0.7	0.7	39.1	2.8	3.7	5.5	1.1	3.7	0.0	0.2	2.1	8.0	0.7	27.8	33.2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준평가 관련 현황

- '자립수준평가'란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 후 5년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음,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 진학, 취업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기·취약 보호종료아동을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매년 자립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전국과 전북의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18세~23세) 현황

-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 대상자가 7,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시설 4,853명, 공동생활가정 676명 순으로 나타남. 전체 12,796명의 대상자 중 취업(38.0%)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락두절 26.3%로 높았음. 특히, 가정위탁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38.8%로 높았고,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취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전북의 758명에 대한 현황을 보면 연락두절(38.7%), 취업(20.4%) 등의 순으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보호종료 이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 대비 진학과 취업은 현저히 낮고 연력이 두절된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원은 16~18세의 보호 종료 전 아동 대상 자립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표 2-23〉 전국과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중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2019)

	구분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총계
전국	양육시설	801 (16.5)	2,565 (52.9)	52 (1.1)	1,005 (20.7)	430 (8.9)	4,853 (100.0)
	공동생활	158 (23.4)	271 (40.1)	25 (3.7)	113 (16.7)	109 (16.1)	676 (100.0)
	가정위탁	404 (5.6)	2,024 (27.9)	372 (5.1)	1,644 (22.6)	2,823 (38.8)	7,267 (100.0)
	합계	1,363 (10.7)	4,860 (38.0)	449 (3.5)	2,762 (21.6)	3,362 (26.3)	12,796 (100.0)
전북	양육시설	59 (22.6)	96 (36.8)	6 (2.3)	68 (26.1)	32 (12.3)	261 (100.0)
	공동생활	9 (15.8)	16 (28.1)	1 (1.8)	9 (15.8)	22 (38.6)	57 (100.0)
	가정위탁	2 (0.5)	43 (9.8)	46 (10.5)	110 (25.0)	239 (54.3)	440 (100.0)
	합계	70 (9.2)	155 (20.4)	53 (7.0)	187 (24.7)	293 (38.7)	758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2)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대학유형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363명의 대학유형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제, 3년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설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은 가정위탁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3년제 대학은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70명의 대학유형을 보면, 4년제, 2년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설유형별로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4년제 대학 비율이 가장 높았음. 반면, 가정위탁의 경우 2년제와 3년제 각 1명씩이었음

〈표 2-24〉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대학유형 현황 (2019)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원		총계	
전국	양육시설	290	(36.2)	104	(13.0)	401	(50.1)	6	(0.7)	801	(100.0)
	공동생활	57	(36.1)	29	(18.4)	70	(44.3)	2	(1.3)	158	(100.0)
	가정위탁	84	(20.8)	39	(9.7)	268	(66.3)	13	(3.2)	404	(100.0)
	합계	431	(31.6)	172	(12.6)	739	(54.2)	21	(1.5)	1,363	(100.0)
전북	양육시설	22	(37.3)	11	(18.6)	26	(44.1)	0	(0.0)	59	(100.0)
	공동생활	3	(33.3)	1	(11.1)	5	(55.6)	0	(0.0)	9	(100.0)
	가정위탁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합계	26	(37.1)	13	(18.6)	31	(44.3)	0	(0.0)	70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3)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등록금조달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2,058명의 등록금조달방안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장학금(10.2%), 자부담(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91명의 등록금조달방안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비율이 6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학장학금(7.7%) 및 친인척부담금(7.7%) 등의 순으로 높았음. 전국 평균에 비해 전북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친인척부담금으로 인한 조달방안 비율이 전국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표 2-25〉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등록금조달 방안(2019)

구분	후원금	국가 장학금	대학 장학금	지자체 지원금	학자금 대출	장학제 단 등	친인척 부담금	자립 정착금	디딤 통장	자부담	위탁 가정	기타	총계	
전국	양육시설	65	647	151	29	13	97	21	78	33	103	-	66	1,303
	공동생활	14	108	23	8	5	13	7	26	21	11	-	15	251
	가정위탁	3	290	36	4	24	17	15	8	8	43	10	46	504
	합계	82	1,045	210	41	42	127	43	112	62	157	10	127	2,058
	4.0	50.8	10.2	2.0	2.0	6.2	2.1	5.4	3.0	7.6	0.5	6.2	100.0	
전북	양육시설	5	52	5	1	1	1	4	2	1	2	-	2	76
	공동생활	0	7	1	0	0	0	3	0	0	0	-	1	12
	가정위탁	0	2	1	0	0	0	0	0	0	0	0	0	3
	합계	5	61	7	1	1	1	7	2	1	2	0	3	91
	5.5	67.0	7.7	1.1	1.1	1.1	7.7	2.2	1.1	2.2	0.0	3.3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4)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4,860명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57.6%(2,798명)으로 비정규직보다 많았음. 시설유형별로는 양육시설(60.6%), 공동생활가정(55.7%), 가정위탁(54.0%) 순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55명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70.3%(109명)으로 전국평균보다 정규직 취업 비율이 +12.7%p 더 높았음. 특히 정규직 비율은 가정위탁 유형에서 95.3%로 매우 높았음

〈표 2-26〉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형태 현황(2019)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전국	양육시설	1,554 (60.6)	1,011 (39.4)	2,565 (100.0)
	공동생활	151 (55.7)	120 (44.3)	271 (100.0)
	가정위탁	1,093 (54.0)	931 (46.0)	2,024 (100.0)
	합계	2,798 (57.6)	2,062 (42.4)	4,860 (100.0)
전북	양육시설	59 (61.5)	37 (38.5)	96 (100.0)
	공동생활	9 (56.3)	7 (43.8)	16 (100.0)
	가정위탁	41 (95.3)	2 (4.7)	43 (100.0)
	합계	109 (70.3)	46 (29.7)	155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직이 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직(19.9%), 사무직(10.3%), 기계조작(10.0%) 등의 순으로 높았음. 시설유형별로는 전문직과 사무직은 가정위탁에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직이 2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직(25.2%), 기계조작(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7〉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취업분야 현황(2019)

구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어업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기타	합계	
전국	양육시설	74(2.9)	387(15.1)	184(7.2)	792(30.9)	118(4.6)	3(0.1)	257(10.0)	315(12.3)	291(11.3)	144(5.6)	2,565(100.0)
	공동생활	4(1.5)	42(15.5)	19(7.0)	84(31.0)	19(7.0)	0(0.0)	24(8.9)	28(10.3)	31(11.4)	20(7.4)	271(100.0)
	가정위탁	44(2.2)	490(24.2)	297(14.7)	637(31.5)	72(3.6)	7(0.3)	77(3.8)	141(7.0)	134(6.6)	125(6.2)	2,024(100.0)
	합계	122(2.5)	919(19.9)	500(10.3)	1,513(31.1)	209(4.3)	10(0.2)	358(7.7)	484(10.0)	456(9.4)	289(5.9)	4,860(100.0)
전북	양육시설	4(4.2)	21(21.9)	2(2.1)	26(27.1)	6(6.3)	0(0.0)	9(9.4)	11(11.5)	10(10.4)	7(7.3)	96(100.0)
	공동생활	1(6.3)	3(18.8)	0(0.0)	8(50.0)	1(6.3)	0(0.0)	1(6.3)	0(0.0)	2(12.5)	0(0.0)	16(100.0)
	가정위탁	2(4.7)	15(34.9)	1(2.3)	11(25.6)	1(2.3)	0(0.0)	5(11.6)	8(18.6)	0(0.0)	0(0.0)	43(100.0)
	합계	7(4.5)	39(25.2)	3(1.9)	45(29.0)	8(5.2)	0(0.0)	15(9.7)	19(12.3)	12(7.7)	7(4.5)	155(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5)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151-200만원 구간이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150만원 21.6% 순으로 많았음
-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 역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151-200만원 49.7%, 101-150만원 25.8% 비율로 나타남

〈표 2-28〉 전국과 전북 시설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 현황(2019)

구분	80만원 이하	8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만원 이상	총계	
전국	양육시설	101(3.9)	137(5.3)	455(17.7)	1,200(46.8)	505(19.7)	167(6.5)	2,565(100.0)
	공동생활	8(3.0)	22(8.1)	54(19.9)	135(49.8)	42(15.5)	10(3.7)	271(100.0)
	가정위탁	97(4.8)	103(5.1)	541(26.7)	1,009(49.9)	221(10.9)	53(2.6)	2,024(100.0)
	합계	206(4.2)	262(5.4)	1,050(21.6)	2,344(48.2)	768(15.8)	230(4.7)	4,860(100.0)
전북	양육시설	4(4.2)	3(3.1)	15(15.6)	48(50.0)	16(16.7)	10(10.4)	96(100.0)
	공동생활	0(0.0)	2(12.5)	2(12.5)	11(68.8)	1(6.3)	0(0.0)	16(100.0)
	가정위탁	0(0.0)	0(0.0)	23(53.5)	18(41.9)	2(4.7)	0(0.0)	43(100.0)
	합계	4(2.6)	5(3.2)	40(25.8)	77(49.7)	19(12.3)	10(6.5)	155(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6)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주거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형태가 38.7%였으며, 이 중 LH(전세주택/영구임대)지원이 33.7%를 차지함. 정부지원 외 형태는 61.3%로 그 중 월세 비율이 21.4%로 가장 높았음
-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형태가 42.3%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3.6%p 더 높았고, 정부지원 형태 중 LH지원이 38.2%를 차지함. 정부지원 외 형태는 57.7%이며 그중 월세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음

〈표 2-29〉 전국과 전북 시·도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주거 현황(2019)

구분	정부지원				정부지원 외										총계	
	LH 지원	자립지 원시설	공동생 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위탁 가정	기타		
전국	양육시설	2,223	228	37	96	82	666	18	134	343	14	124	252	0	152	4,369
	공동생활	277	12	5	13	25	110	5	17	28	1	4	21	0	24	542
	가정위탁	531	4	3	45	88	1,148	77	384	244	11	49	77	1,204	206	4,071
	합계	3,031	244	45	154	195	1,924	100	535	615	26	177	350	1,204	382	8,982
		33.7	2.7	0.5	1.7	2.2	21.4	1.1	6.0	6.8	0.3	2.0	3.9	13.4	4.3	100.0
전북	양육시설	135	12	1	2	2	33	0	3	11	3	4	11	0	5	222
	공동생활	13	0	2	0	1	11	1	0	2	0	0	4	0	0	34
	가정위탁	9	0	0	0	0	67	2	2	6	1	2	4	51	11	155
	합계	157	12	3	2	3	111	3	5	19	4	6	19	51	16	411
		38.2	2.9	0.7	0.5	0.7	27.0	0.7	1.2	4.6	1.0	1.5	4.6	12.4	3.7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7)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생존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생존 현황을 살펴보면, 생존해 있다는 응답이 43.4%, 모름 43.2%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응답이 44.7%로 전국 평균보다 +1.3%p 더 높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20.4%p 낮았음

〈표 2-30〉 전국과 전북 시·도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생존 현황(2019)

구분		생존		사망		모름		총계	
전국	양육시설	2,288	(52.3)	373	(8.5)	1,710	(39.1)	4,371	(100.0)
	공동생활	386	(71.2)	56	(10.3)	100	(18.5)	542	(100.0)
	가정위탁	1,225	(30.1)	778	(19.1)	2,069	(50.8)	4,072	(100.0)
	합계	3,899	(43.4)	1,207	(13.4)	3,879	(43.2)	8,985	(100.0)
전북	양육시설	134	(60.1)	20	(9.0)	69	(30.9)	223	(100.0)
	공동생활	25	(73.5)	3	(8.8)	6	(17.6)	34	(100.0)
	가정위탁	25	(16.1)	111	(71.6)	19	(12.3)	155	(100.0)
	합계	184	(44.7)	134	(32.5)	94	(22.8)	412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8)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 연락 현황

-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와의 연락빈도를 보면, '매달' 27.3%, '연락 없음'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개월에 한 번(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마찬가지로 매달 연락한다는 응답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락 없음' 응답은 19.0%로 전국 평균보다 8.2%p 더 낮았음

〈표 2-31〉 전국과 전북 시·도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2019)

구분		동거 중	매달	2-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두번	2-3년에 한 번	연락 없음	총계
전국	양육시설	290 (12.7)	733 (32.0)	453 (19.8)	376 (16.4)	54 (2.4)	382 (16.7)	2,288 (100.0)
	공동생활	39 (10.1)	103 (26.7)	61 (15.8)	76 (19.7)	5 (1.3)	102 (26.4)	386 (100.0)
	가정위탁	154 (12.6)	227 (18.5)	134 (10.9)	111 (9.1)	23 (1.9)	576 (47.0)	1,225 (100.0)
	합계	483 (12.4)	1,063 (27.3)	648 (16.6)	563 (14.4)	82 (2.1)	1,060 (27.2)	3,899 (100.0)
전북	양육시설	13 (9.7)	37 (27.6)	30 (22.4)	26 (19.4)	7 (5.2)	21 (15.7)	134 (100.0)
	공동생활	3 (12.0)	10 (40.0)	2 (8.0)	3 (12.0)	0 (0.0)	7 (28.0)	25 (100.0)
	가정위탁	6 (24.0)	2 (8.0)	1 (4.0)	8 (32.0)	1 (4.0)	7 (28.0)	25 (100.0)
	합계	22 (12.0)	49 (26.6)	33 (17.9)	37 (20.1)	8 (4.3)	35 (19.0)	184 (100.0)

자료 :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제 4 절 소결

- 전북지역은 빠른 아동인구 감소 추세로 최근 5년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와 더불어 보호종료아동의 수도 감소 추세에 있음
- 전북지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은 부모의 학대, 다음이 부모 이혼, 가출/부랑 등으로 나타나 아동의 문제 보다는 부모와 가족의 갈등 등 관계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많은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임. 따라서 보호종료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하고 보호종료 이후 심리·정서·관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도 필요함. 그리고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기에 아동의 자립에 있어 원가족 복귀가 더욱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함
- 시설별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및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과 통합에 따라 실제 보호종료된 아동의 수와 통계 수치도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된 이후 시설과 연락 두절되는 비율이 59% 이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보호종료된 아동들과의 접점을 이어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보호종료 후 연락 두절된 아동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며, 시설 중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전북지역의 시설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특이점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종료아동의 70% 이상은 18세 만기퇴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는 18세 연령 도래 만기퇴소 보다는 연장종료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률은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호 종료 청소년 중 대학진학 경험자는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그리고 취업했다가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학비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이며 생활비는 주로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어,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음
- 취업자 중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동자 비율이 뒤를 이었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퇴소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취업 지원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 주거현황을 보면, 조부모나 친인척이 대부분인 가정위탁은 보호 종료 후 위탁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양육시설은 기숙사, 공동생활가정은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시설별 보호종료아동은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지역 특성과 시설별 보호아동에 따른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

3

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분석

제1절 중앙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현황

제2절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현황

제3절 국내 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사례 분석

제 3 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분석

제 1 절 중앙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 현황

가. 중앙의 관련 법적 근거

-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서비스) 실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법적 근거(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아 동 복 지 법	제15조	(보호조치) 보호대상아동 발견하거나 보호자 의뢰로 아동의 최상이익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적절한 보호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 달성되었을 때 보호조치 종료 및 시설 퇴소
	제38조	(자립지원 내용)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하기 위한 조치 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그 밖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 필요한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9조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 등)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대상 매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교육 실시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자립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종사자 자립지원 교육, 등),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자립지원정책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자립 지원추진협의회 운영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성장발전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시 행 령	제22조	(보호기간 연장) 20세미만인 자로 학원·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자,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자능자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로 연장 요청 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제38조	(자립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자립생활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교육, 주거비 지원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정기적 지급,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취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자립 관련 협의 필요한 사항 논의 결정

나. 전국 시·도별 관련 조례 현황

- 2020년 12월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12개 지역(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제주,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전남)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 관련 사업 추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기본계획·자립지원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음
 -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부산('13.7.10)이었고, 가장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20.7.16)로 나타남
 -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지역인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전북은 아직까지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조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별 조례명을 살펴보면,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광주)', '보호대상아동 자립 (통합)지원(부산, 울산, 대구)', '아동 자립지원 (제주, 경북)'이란 명칭 이외에 대다수가 '시설외소 아동/청소년 등의 지원(경기, 경남, 대전, 충남, 전남, 서울)' 이란 명칭을 가장 많았음
 - 보호대상아동, 외소아동 및 보호종결, 보호종료 등 관련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보호종결과 보호종료 용어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관심을 갖고 쓰이기 시작한 용어이며, 그 이전에는 시설외소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 보호아동, 보호종료(종결)아동, 시설외소 아동 등에 대한 그 개념과 정책대상 범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용어에 대한 통일로 공식적 대표 용어가 일률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자립지원 정책대상으로 보호조치 종료 아동 및 청소년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경북은 보호조치 종료 아동 및 시설외소 5년 이내의 아동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내 18세~24세 이하의 청소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까지를 자립지원 대상으로 별도로 포함하고 있음
- 그리고 관련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지원전담기관(혹은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역은 9개 지역(부산, 제주, 경남, 광주,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서울)이었으며, 충남과 전남은 자립지원 관련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광주·제주·부산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배치 기준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음. 여기에는 자립체험관 운영, 자립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시설 및 기관봉사자 대상 자립지원 교육, 아동대상 교육·심리진단·집단상담·치료, 법률지원, 기관간 연계·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경남, 대구, 울산 지역에서는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고, 경기도는 5년마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뿐 아니라 자립지원시설의 설치·운영까지도 조례 내용에 담겨 있음

〈표 3-2〉 전국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조례 현황(총 12개 지역)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부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자립체험관 운영,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등	'13.7.10. '15.1개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제7조(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제9조(3년 주기 실태조사),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13.7.17. '17.5.1개정
경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보호조치 종료 아동 및 청소년시설 퇴소 청소년, 제5조(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 시행, 기본계획에는 자립지원의 기본방향과 복지향상 관련 내용, 고용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제7조(협의체 설치 등)	'16.6.7. '20.5.19(개정)
경남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보호조치 종료 아동 및 청소년시설 퇴소자,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퇴소청소년 등 자립종합지원계획 3년마다 수립 시행(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재원조달사항 등), 제6조(3년주기 실태조사), 제7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자립정착금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거비 지원, 생활비지원, 문화예술체육행사,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인성교육 사업,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증진사업, 지역 내 후원지원 연계 사업, 후견인 제도 및 후원사업 등 제8조(자립지원센터 설치 등), 제10조(협의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17.2.9 '20.11.5.(개정)
광주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6조(아동자립지원), 제37조(지원대상), 제38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자립사례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종사자 자립지원 교육 등	'17.7.1.
경북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24세이하인자 포함,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제6조(자립지원사업 - 자립정착금지원, 문화예술체육지원, 등), 제7조(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주거제공, 취업 위한 프로그램운영, 생활·교육 지원, 심리진단·집단 및 치료상담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사업, 제14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17.7.13. '20.7.9(개정)
대구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해마다 자립통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제6조(자립통합지원사업), 제9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	'17.9.29 '18.8.10(개정)
대전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조례	
	제4조(실태조사), 제5조(지원사업), 제6조(퇴소아동자립지원센터 설치), 제7조(협력체계 구축)	'19.4.26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충남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제6조(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자립지원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 제7조(협의회)	'19.10.30
울산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자립지원계획 수립·시행, 제8조(아동자립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자립 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	'19.12.26
전남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20.4.2
서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종료 아동,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등)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인성교육 지원,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사업, 제8조(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20.7.16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동향*

- (1993년 7월)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은 7개소의 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하면서 시작
- (1998년)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전국 16개 개소로 확대·운영
- (2000년 중반부터)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중요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중앙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 확대
- (2005년) 시설 퇴소아동 대상 자립정착금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역량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마다 자립지원금이 제각각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 발생. 최근 들어 전국적 지원금액 기준이 통일적으로 권고되고 있음.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500만원 기준을 지급하도록 권고함)
- (2006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사업 안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확대 권고와 시설 퇴소아동에게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 (2007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와 아동 발달지원계좌(CDA, 現 디딤씨앗통장) 도입

* 2021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참고

- **(2008년 이후)** 4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2008년·2012년·2016년까지 세 차례의 조사가 진행됨
- **(2011년 12월)** 16개 시도의 ‘아동자립지원센터’ 해산
- **(2012월 1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아동자립 지원사업단’ 운영 시작
-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보호아동과 보호종결 5년 이내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서 수립 등),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근거로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원, 국가장학금 등 정부주도의 자립지원 확대, 경제·주거·교육·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수행 및 서비스 강화
- **(2014년 1월 28일)**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2016년)** 2008년, 2012년, 이후 세 번째 퇴소아동 자립지원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53번 과제. 시설 퇴소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강화를 위해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 정책 방향으로 전환, 통합 사례관리 시범 운영 등이 제시됨
- **(2019년 4월)**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자립수당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제공,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실시
- **(2019년 5월)**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발표된 내용.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통합 사례관리 체계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전담 사례관리팀 운영 실시
- **(2019년 7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이 통합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 아동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19년 8월)
- **(2020년)** 자립수당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이외 일시보호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의 보호종료아동까지 범위 확대

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 및 사업(서비스) 현황

1)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개요

- **(자립지원 대상)** 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자립지원 내용)**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자립수당 지급 등

〈표 3-3〉 보호아동 자립지원 관련 분야별 사업 현황

구분	종료 전 자립 준비 지원	종료 후 자립 지원
대상	15세 ~ 18세 미만까지	보호종료 및 시설 퇴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지원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 디딤씨앗통장(CDA) : 0 ~ 18세 미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월 5만원까지 적립, 자산형성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립정착금(지자체이양) :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 • 자립수당(매월 30만원)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디딤씨앗통장(CDA) 만기 적립금 사용 가능 • 대학 입학 시 입학지원금 1회 지급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LH에서 기존주택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지원, 만21세 이상은 연1~2% 이자 부담 • 청년 매입임대주택 : LH에서 기존주택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 영구임대주택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무주택세대주,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기본 거주 2년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일정기간 숙소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지원(24세 이하까지)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종료아동 대상 월 임대료 지원과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적 제공('20년 360명)
학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등록금 일부 or 전부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학기성적 70점 이상인자, 교내 근로 후 대가로 장학금 지원 • 대학등록금/장학금 : 일부 시·도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급(부산대 최소성 유지 시 전액장학금 지원) • 각 대학차원에서 자발적 제공하는 장학금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 후 1년 동안 단계별 지원, 참여수당 지원 및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 창업성공패키지 : 창업 사업비 지원 등 • 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 직무능력교육 받고 취업 도움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청년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단계별 종합 취업지원
심리 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개비서포터즈 : 후배들의 자립을 위한 멘토로서 서포터즈 활동 • 심리정서분야 지원 :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가 통한 상담서비스(약 85개소)

2)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현황

- **(배경)** 매입·전세 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시설 등 정부 지원 노력에도 많은 보호종료 아동이 주거 불안을 경험('18년 보호종료아동 중 33.4%만이 정부지원 통한 주거 해결)
-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임대료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주거환경 조성, 주거 부담 완화, 정서적 지지체계 지원,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지역 내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거주 예정자)인 자
 - ※ 지원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0개 시도
- **(지원내용_시행령 38조)** 주거지원(월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
 - (주거지원)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및 일반주택 월세 지원. 매월 15~20만원 상당의 임대료·월세실비 지원(지역별 차등)
 - (주거환경조성) 생활필요 집기 등 물품 구입비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사례관리(상담)를 통해 취업·학업, 진학·직업 훈련·생활·의료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 정보제공, 복지급여 지원 발굴 및 연계. 월 20만원(지방비 포함) 자립경비지원(사례관리 월1회 원칙,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진행, 자립경비는 교육·자격취득비, 긴급수요대응 용도, 2년간 지원·재계약가능)
- 2019년 4월 기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아동이 저조하여 모집률 또한 매우 낮았음. 이에 관련 서비스 홍보 확대가 시급함

〈표 3-4〉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규모 및 참여 지역(2020)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대상	240명	360명 (△120명)
참여 지역	7개 지역	10개 지역 (△3개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 전남, 경남

자료 : 혼자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2020자립정보북(아동권리보장원, 2019.12)

〈표 3-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현황(2019. 4. 30.기준)

지역	선발아동	신청아동	모집률	지역	선발아동	신청아동	모집률
계	240	115	48%	대전	30	11	37%
서울	30	30	100%	충남	30	7	23%
부산	30	13	43%	전북	60	10	17%
광주	30	31	103%	전남	30	13	43%

〈표 3-6〉 전국 시·도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현황(2020. 12. 31기준)

지역	위탁 수행기관	연락처	지역	위탁 수행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02) 702-1442	충북	충북아동복지협회	043) 235-1592
부산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 441-7006	충남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충남아동복지협회)	041) 632-6553
인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협회	032) 882-7753	전북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063) 714-3321
광주	광주아동복지협회	062) 672-1930	전남	전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전남아동복지협회)	061) 742-4908
대전	대전아동복지협회	042) 242-5727	경남	경남아동위원협의회	055) 293-7558

자료 : 혼자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2020자립정보북(아동권리보장원, 2019.12)

전국 시·도별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위탁하여 담당하는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지역별 아동복지협회가 5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충남, 전남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담당하고 있었음. 그 외 전북은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에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전국 시·도별 아동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현황

- 아동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소대상)**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아동과 24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기간)** 보통 24세 이하까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이후 보호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지속 연장 가능함
-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3개의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10개 시·도에 위치해 있음. 서울에 3개소가 위치해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에 2개소,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각각 1개소가 위치해 있음. 한편 시설 정원 대비 보호종료아동의 입소율은 전국평균 55.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0개소 시설 중 입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75.8%였고, 서울 74.7%, 대구 66.6% 순으로 나타남. 한편, 가장 낮은 입소율을 보인 곳은 대전(29.4%)이었으며, 이외 제주(30%), 전북(36.6%), 광주(38.7%) 등으로 지역 내 자립지원시설의 입소율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전국 지역별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성별 및 연령대별 현황(2019.12.31.)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입소 인원				학교급별 현황			
			정원 (총족률)	계	남	여	계	고재	대재	기타
전국	13	48	392 (55.6%)	218	104	114	218	6	87	125
서울	3	14	95 (74.7%)	71	23	48	71	1	29	41
부산	1	4	29 (75.8%)	22	14	8	22		5	17
대구	2	6	60 (66.6%)	40	23	17	40		12	28
광주	1	3	30 (38.7%)	12	10	2	12		8	4
대전	1	3	34 (29.4%)	10	6	4	10		4	6
강원	1	6	30 (60%)	18	11	7	18		4	14
충북	1	4	24 (60%)	12	5	7	12		5	7
충남	1	3	30 (43.3%)	13	4	9	13		11	2
전북	1	3	30 (36.6%)	11	3	8	11		5	6
전남	1	2	30 (30%)	9	5	4	9	5	4	

자료 :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12.31.기준)

〈표 3-8〉 전국 지역별 아동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현황(2020.11)

지역	시설명	연락처	정원	성별
서울 (4)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영등포구 신길 6동 4491 http://www.dbyic.com/bbs/a_main.html	35	남
	상록여자 자립생활관	관악구 남현동 1083-29 http://www.sangrokjarip.com/	30	여
	청운 자립생활관	동작구 상도 3동 290-1 http://www.cwvc.or.kr/selfsupport/	30	여
	씨드센터 자립지원시설	영등포구 양평로 12 가길 8 https://blog.naver.com/seed8-2	10	여
부산	미네르바의 집	북구 구포3동 1255-28 http://www.minerva.or.kr/	29	남·여
대구(2)	삼덕동 SOS 자립생활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가 149-32	30	남·여
	검사동 SOS 자립생활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13-13 http://www.koreasos.or.kr/main/	30	남·여
광주	무등 자립생활관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873	30	남·여
울산	울산 자립생활관	울주군 언양읍 능골길 39 https://cafe.naver.com/ulsanjarip/	30	남
대전	인에 자립생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45-10 http://www.jalip.or.kr/	34	남·여
강원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RAUM)	원주시 백간길 125 http://www.gwjarip.co.kr/	30	남·여
충북	현양 자립생활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 http://hyunyang.org/jarip/	24	남·여
충남	향림 자립생활관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61-7 http://www.hyanglimwon.co.kr/gn/bbs/board.php?bo_table=jarip&wr_id=2	30	남·여
전북	삼성 자립생활관	전주시 완산구 만지길 24 http://samsungwon1004.cafe24.com/	30	남·여
전남	목포 자립생활관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52 http://www.jncsw.org/adongwon/	30	남·여
제주	시온빌 자립생활관	제주시 월랑로 95	32	남·여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0. 11. 6. 검색)

4)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월30만원), 디딤씨앗통장(CDA),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자체별 대학입학금

○ 자립지원금(자립정착금)

- (목적) 지자체 이양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근거 하에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1이당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지원하는 제도
- 2021년 기준 17개 시·도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의 최소 금액은 500만원이었고, 이중 경기도와 인천은 타 지역보다 500만원과 300만원이 더 많은 1,000만원과 800만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부산 또한 일반아동에게는 100만원 장애아동에게는 200만원이 더 많은 600만원과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3-9〉 전국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2021년)

(단위:백만원, 지자체 조사기준)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경기	1,000	1,000	1,000
부산	(일반) 600	(일반) 600	(일반) 600	강원	500	500	500
	(장애) 700	(장애) 700	(장애) 700	충북	500	500	500
대구	500	500	500	충남	500	500	500
인천	800	800	800	전북	500	500	500
광주	500	500	500	전남	500	500	500
대전	500	500	500	경북	500	500	500
울산	500	500	500	경남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자료 : 2021년 아동안내사업(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초구 경우 5년간 2,500만원 지급

○ 자립수당(매월 30만원 지급)

- (목적)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사업.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시행령 제38조 근거 하에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시 향상으로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19년 최초 시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지원 대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대상 매월 30만원을 지급.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과 일시보호·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

〈표 3-10〉 전국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2020년)

(단위:백만원, 지자체 조사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 대상 확대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시설 범위 확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료 : 혼자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2020자립정착금(아동권리보장원, 2019.12)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CDA)

- 아동(보호자, 후원)이 매월 일정 금액(최대 5만원 이내)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월 5만원 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보호 종료 이후의 자립을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이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주거마련, 취업준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한해 사용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목적) 스스로의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항목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있음
- 보호종료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즉 '19년부터 만30세미만 보호종료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연락과 교류가 전혀없는 부모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19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확대. 40만원 공제, 추가 30%공제에서 50만원 공제, 30% 추가 공제 적용

○ 지자체별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활안정자금 1회 지원

- (목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 아동 중 대학 입학자 대상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여 대학 생활 안정을 도와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21년 기준 1회 지급하는 대학입학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충북 500만원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제주와 서울이 300만원, 경기 250만원, 대구·인천·대전(가정위탁 제외)·강원·전북이 200만원, 전남이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산과 세종은 대학입학금을 실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광주, 충남, 경남 3개 지역은 여전히 대학입학금(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전국 시·도별 대학 입학금(대학생활 안정자금)

(단위: 만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300	300	300	경기	250	250	250
부산	실비	실비	실비	강원	200	200	200
대구	200	200	200	충북	500	500	500
인천	200	200	200	충남	-	-	-
광주	-	-	-	전북	200	200	200
대전	200	200	-	전남	150	150	150
울산	실비(최대500)	실비(최대500)	실비(최대500)	경북	200	200	200
세종	실비	실비	실비	경남	-	-	-
				제주	300	300	300

자료 : 혼자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2021자립정보북(아동권리보장원, 2020.12)

5) 기타 전국적 민·관 자립 지원 사업 및 서비스 현황

○ 사업 종류별 수행기관

항목	수행기관	후원기관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내용
자립역량 강화	한국SOS아린이마을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퇴소아동	· 퇴소(예정)아동을 위한 모금사업, 자립 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립관·자립지원금	한국SOS아린이마을	SOS자립생활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대구에 자립관 2개 운영 · 입소지원시 이력서/자소서 제출 및 면접 실행	
장학금생 활비	교보교육재단	교보생명 희망다소장학사업	보육시설/그룹홈에서 성장한 청소년으로 당해연도 대학에 입학예정인 신입생	·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 장학금지원(학기당 200만원) · 도서비 1인당 6만원 지원 · 캠프, 권역별 모임 등 커뮤니티 지원	
	아름다운가게	보육원성장대학생 지원사업	서울지역 7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대학재학생(만18~28세)	· 졸업시까지 월 생활비 30만원	
	KRX국민행복재단	KRX DREAM 대학생 장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보호시설 출신 또는 거주자 우대)	· KRX장학생 선정(2년): 대학진행 퇴소예정 청소년 지원 · 학기당 150만원 장학금(생활비) 지원	
취업취업 준비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및 기업들 한국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 기업의 공고가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협회로 들어오면 사실상 전달	
	SKT 한국아동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탁사업	SKT ICT 교육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을 퇴소(예정) 아동청소년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교육제공 · 찾아가는 교육	
금융 교육	현대차증권과함께 찾아가는 경제교육	현대차증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찾아가는 아동경제(금융)교육 · 찾아가는 아동경제(금융) 코칭	

항목	수행기관	후원기관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내용
					· 시설종사자 특별 맞춤 경제(금융) 교육 · 찾아가는 경제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지원
정보 탐색	멀티미디어 기기지원 (PC 지원 및 교체)		LG Display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복지시설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원기관	· 멀티미디어실 인테리어 시공 및 멀티미디어 기기 지원(신규설치) · 기존 멀티미디어실 PC 교체(기능보강)

○ 여러 종류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

수행기관	후원기관	프로그램명	대상	항목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취업 취업준비	· 채용과정 우대사항 · 타 회사와 연계
				심라 정서지원	· 정서지원 프로그램(명절모임, 자전거 타기 등)
사회연대 은행 청년자립 트레이닝 센터	HSBC 코리아	청소년비전 지원사업 '하이파이브'	서울소재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자립형그룹홈 및 자립지원시설 청소년 중 2020년 1월~3월이내 퇴소예정자	자립관 자립지원금	· 퇴소예정 청소년 20명 자립지원금 및 비 전교육지원 · 매월 30만원 지원금(총 600만원)
				자립역 량강화	· 재무/금융코칭, 실생활지원, 미래비전지도, 설계 등(총 23회 필수)
사회연대 은행 청년자립 트레이닝 센터	한화생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년꿈 지원사업 '청년비상금'	아동양육시설 및공동 생활가정청소년 중 자립의지가 있는자 (2014.01.01.이후 퇴소자, 2020.01.31.이내 퇴소예정자)	자립관 자립지원금	· 10개월간, 1인당 월 35만원
				자립 역량강화	· OT, 재무/금융 전문가 멘토링 4회, 진로 및 비전교육, 소모임 6회(총10회)
소이프 (SOYF)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외	허들링 커뮤니티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 (만18세이상)	심라 정서지원	· 매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멘토링제공
				자립역량강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현대차정몽구재단		나의 꿈을 찾는 숲속 힐링교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연장·퇴소아동 시설근무자, 자원봉사자, 후견인 등	심라 정서지원	· 2박3일 산림치유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립 역량강화	
아동권리 보장원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 창사진 (청년사회진출)	시설퇴소아동 20명씩 3년동안 지원	자립관 자립지원금	· 보증금, 월세지원
				장학금	· 자기계발비: 등록금, 자격증/학원수강, 연구비, 대학원진학, 적성개발 · 어학연수: 우수학생 심사 후 선발
				자립 역량강화	· 자립역량강화교육: 명사특강, 이미지메이 킹, 클래식/스피치 특강 · 경제교육: 생애설계, 생활경제, 보험 · 진로교육: 인생설계, 직업선택 등
				심라 정서지원	· 전문가 멘토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 및 강의 · 자립선배와의 만남: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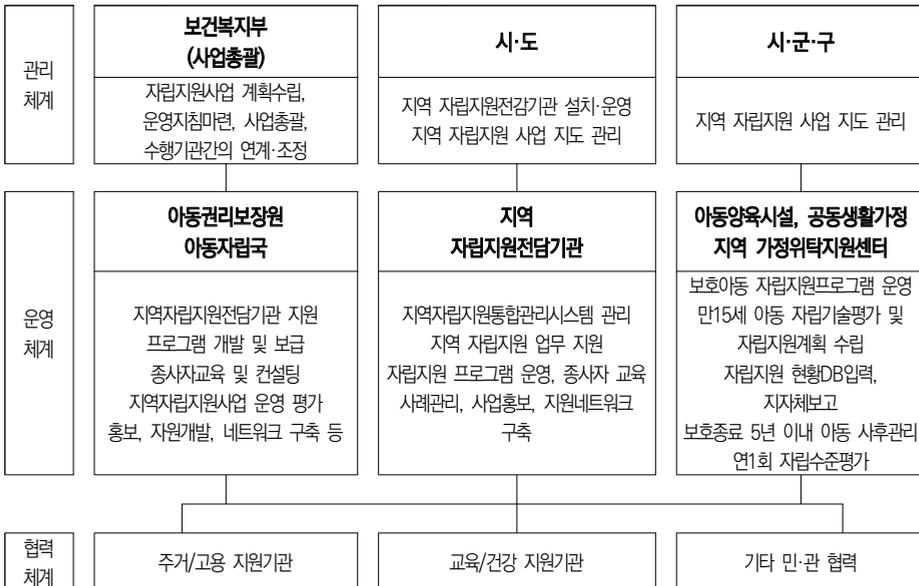
수행기관	후원기관	프로그램명	대상	항목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립지원 체계구축	· 사례관리: 대면, 전화, 이메일 통한관리 · 긴급지원체계: 위기상황 발생시, 심사후 의 료 혹은 생활비 지원 · 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의 지원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발간
아름다운가게		보육원퇴소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서울, 경기지역 보육원 퇴소아동(만18~27세)	자립관 자립지원금	· 자립지원비(교육/훈련, 주거/에너지, 건강/ 의료, 기초생활 중 택1) 최대 500만원(기 초생활은 15만원~120만원)
			퇴소예정 청소년	사례관리	· 사례관리진행비 최대 10만원
지자체 지원센터	삼성그룹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 아동· 청소년 자립통합 사업단 (희망디딤돌 센터)	아동복지체계 퇴소예정 아동청소년(만15~18세)	자립 역량강화	· 자립체합관 운영
			아동복지체계 퇴소아동(만18~25세)	자립관 자립지원금	· 생활관: 3개소 운영(부산·대구·강원도)
			현재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대구 자립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아동자립지원시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희망디딤돌 경북구미센터, 희망디딤돌 경남/경기/충남/전북/전남 센터		
현대중공업 그룹	1%나눔 재단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립지원 및 취업 연계 사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 역량강화	· 기술교육전형지원(기술교육면접 참석 위한 교통비와 식비지원) · 자기개발비지원(교육과정 성실 이행자에 한 해 월 30만원 지원) · 기숙사임대차비용지원(교육기간 무료, 취업 시에도 연장 지원 가능) · 직무기술교육 및 취업연계지원사업(중공업 분야 직무기술 교육 2-3개월간 교육 지원) · 멘토링 연계(전문분야 멘토 연계, 멘토링활 동비 지원) · OT + 취업교육(사업소개 및 기술교육과정 안내 1회)
포스코	1%나눔 재단 두드림	자립지원 및 취업 지원 사업	전국 보호종료아동(청년)	자립 역량강화	· 자립지원금 : 1인당 최대 1000만원지원 - 진로지원금, 생활보조비, 취업성공수당, 면접준비지원 · 사례관리(지역사회복지사와의 사례관리, 월 1회) · 지역모임(거점지역 중심의 오프라인 모임 운영, 4회) · OT(사업소개 및 지원금사용방법 안내, 1회) · MT+취업교육(사업소개 및 인재창조원 취업 아카데미 취업 특강 1회)

자료 :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_사업안내_후원지원사업(<http://www.adongbokji.or.kr/adong/include/main.asp>)

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달체계

-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과 관련한 정책 수행 및 사업(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 보면, 주요 관리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자립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자립원사업 운영 지침 마련, 국고보조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고, 시·도와 시·군·구는 각 지역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이 설치 운영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보호본부(자립지원부)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요한 운영체계를 담당하고 있음. 즉 중앙의 자립기반 및 자립정책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인천은 시직영, 그 외 9개소는 민간위탁 운영)은 관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업무를 지원하고, 보호아동 지원, 사후관리, 종사자 교육, 자립지원 DB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각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지자체 보고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함

〈표 3-1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리 및 운영 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전국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 현황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보호아동(만15세 이상)과 보호종료아동(보호종료 후 5년이내)에 대한 자립지원·사후관리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자립지원전담관은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자립지원사업 집행실태 등의 평가·지도점검 및 자립지원데이터 관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실시 등으로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인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로 나타남. 전국 17개 시·도 중 8개(47.1%)지역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사례관리사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대구, 대전, 울산, 경남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적 근거 관련 조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반면, 인천, 강원, 충남지역은 보호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음

〈표 3-13〉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현황(2020년 12월 기준)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 여부	○	○	○	-	○	-	-	-	○	○	-	○	-	○	○	-	○
설치 관련 조례	○	○	조례 부재	○	○	○	○	조례 부재	-	조례 부재	-	조례 부재	조례 부재	-	○	○	○

자료 :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참고

2)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

- 전국 17개 시·도별 및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과 31월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 총 766개소 내에 전담요원의 수는 294명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 비율이 38.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전국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포함) 총 240개소 내에 전담요원 247명이 배치되었고, 가정위탁은 전국 18개 시설 내에 전담요원이 43명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가정위탁지원센터 내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이상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음

〈표 3-14〉 전국 시·도별 및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2021년)

구분	총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시설 수	전담요원 수
합계	766	294	240	247	18	43	507	4
서울	102	40	35	37	1	3	65	0
부산	46	24	18	20	1	4	27	0
대구	31	21	18	20	1	1	12	0
인천	27	10	9	9	1	1	17	0
광주	45	11	10	10	1	1	34	0
대전	29	12	12	11	1	1	16	0
울산	10	3	1	2	1	1	8	0
세종	1	2	1	1	-	1	-	-
경기	173	35	25	24	2	11	146	0
강원	29	14	8	10	2	4	19	0
충북	36	12	11	10	1	2	24	0
충남	40	13	13	12	1	1	26	0
전북	55	17	14	14	1	3	40	0
전남	55	23	21	21	1	2	33	0
경북	26	18	15	15	1	3	10	0
경남	51	27	24	25	1	2	26	0
제주	10	12	5	6	1	2	4	4

자료 : 시설 수 2020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현황기준, 양육시설 2020.6기준, 가정위탁 2020.6기준
자립지원전담요원 수(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자료 참고)

- 한편, 공동생활가정은 전국 507개소 내에 전담요원의 수는 4명으로 이 4명은 제주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단, 서울과 부산의 아동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2개소 내에 자립지원전담요원 각 1명씩이 배치되어 있음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호 아동 30명 당 전담요원 1인 이상이 배치(1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되어야 하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필요 인원을 배치하되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를 권고하고 있음.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센터별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반드시 1명씩 배치하고,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 시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시행령 개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전북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총 55개이며, 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7명이 배치되어 있었음.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포함) 수는 총 14개이며 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4명이 배치되어 각 시설 내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으며, 40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부재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작년 대비 1인이 추가된 3명이 배치되어 있음

제 2 절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 현황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서비스)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체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가. 관련 조례 현황

- 전북지역 내 전북 도청 이외 14개 시·군 조례를 살펴본 결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산시 한 지역에서만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군산시는 2019년 2월 15일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나 보호조치가 종료(만 18세 이상의 자)된 청소년 대상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군산 시장의 책무 명시(제4조)와 더불어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각종 시책 및 다양한 지원 사업(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인성교육과 직업교육 지원 사업, 치료 및 재활 등 건강 프로그램 지원사업,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훈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등)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자립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자립자활지원의 기본방향 수립에서부터 자립정착금지원금액,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음(제7조)

〈표 3-15〉 전북 도청 및 14개 시·군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	제정(개정)
전북 도청	부재	
군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제7조(자립지원협의회 설치 등)	'19.02.15

나. 관련 지원 정책(서비스) 현황

1) 경제적 지원

- (자립정착금)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1인당 500만원 1회 지급
- (자립수당) 보호종료 3년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
- (디딤씨앗통장)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금 지원
- 이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연계 지원함

2) 주거지원

- (아동자립지원시설/삼성자립생활관) 전주에 위치해 있는 ‘삼성자립생활관’ 1개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30명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2019년 기준 자립생활관의 정원 30명 중 단 1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어 자립생활관의 정원 충족 비율이 36.6%로 저조하였음. 이에 자립생활관의 정원 충족률이 저조한 원인 파악과 더불어 정원 충족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3-16〉 전북 연도별 아동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입소 현황(2016~2019)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입소 인원				학교 급별 현 황		
			정원 (충족률)	계	남	여	계	대재	기타
'19	1	3	30 (36.6%)	11	3	8	11	5	6
'18	1	3	30 (46.6%)	14	4	10	14	5	9
'17	1	3	30 (46.6%)	14	5	9	14	11	3
'16	1	3	30 (46.6%)	14	8	6	14	8	6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 연도별 자료 정리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전북지역에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전북서부아동권리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음
 - LH주택 임대료(월 160천원) 지급, 생활필요집기 구입비 연에 500천원, 사례관리비 매월 200천원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전북도내 주택공급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이면서 본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 LH 청년매입임대주택(원룸형) 전북도내 지역 60호 지원, 사례관리 기간(2년) 동안 보증금과 원세 무료,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만 부담 -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 기본 가전·가구 구비 - 맞춤형 사례관리 : 전문 사례관리사의 주기적 상담 통해 정보제공 및 다양한 자원 연계, 매월 20만원 자립 경비 지원
--

3) 학업 지원

- **(대학입학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전북도 차원의 예산에서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200만원 지원함.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 지원 부담감 경감 및 대학생활 안정 도모

4) 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이외 전북도와 전북 14시군에서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은 부재함

5) 심리정서 지원

-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정서 및 사회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다소 미진함

〈표 3-17〉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분야별 정책(서비스) 현황

구분	지원 사업 및 대상	비고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 시 500만원 1회 지급 • 자립수당 : 보호종료 3년 내 아동 대상 매월 30만원 지급 • 대학 입학 시 입학지원금 200만원 1회 지급 • 디딤씨앗통장(CDA) 만기 적립금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자립지원시설(삼성자립생활관) :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대상 숙소 제공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내주택 임대료 월 16만원 지급, 생활필요집기구입비 연 50만원, 사례관리비 월 20만원 	
학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입학금(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원 1회 지원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 창업성공패키지 • 내일배움카드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심리정서 지원	-	

자료 : 전라북도 내부 자료

6) 기타 민·관 차원의 자립 지원 사업

-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와 업무협약 체계로 지역 내 시설외소 청소년 대상 자립 및 인재 양성 지원
- 아동복지협회 전북지부 등에서 별도 민·관 차원의 자립 지원 사업 정보를 갖고 있음

다. 전달체계 관련 사항

1)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 부재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 준비 아동(만 15세 이상 아동)과 보호종료아동(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대상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 12월 기준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만 설치·운영하고 있음
- ※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10개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전북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관련 조례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부재한 상황임

2) 전북지역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

-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센터)은 총 55개이며 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6명(아동양육시설에 13명, 가정위탁지원센터에 3명)이 배치되어 있어 배치 비율은 29.1%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 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비율인 34.86%보다 5.76%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포함)은 14개이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3명이 배치되어 92.85%의 배치 비율을 나타내나 전국 아동양육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비율(95%) 대비 약 2.15%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전북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

구분	총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시설 수	전담요원 수
전국	766	267	240	228	18	39	507	0
전북	55	16	14	13	1	3	40	-

자료 : 시설 수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현황기준(2019.12.31.). 양육시설 2020.6기준, 가정위탁 2020.6기준

- 2020년 7월 기준 전북지역 아동양육시설 16개 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한 14명으로 나타남

〈표 3-19〉 전북지역 아동양육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현황(2020. 7)

지역	아동양육시설	아동 수	종사자 수		비고
			총인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합계		632	323	14	
전주	삼성휴먼빌	42	20	1	
	전주영아원	36	25	1	
	호성보육원	48	22	1	
	삼성자립생활관	14	3	-	자립시설
군산	구세군군산후생원	34	19	1	
	모세스영아원	28	21	-	
	삼성애육원	32	19	1	
	일맥원	47	24	1	
익산	기독삼애원	44	21	1	
	시온육아원	39	21	1	
	이리보육원	48	24	1	
완주	선덕보육원	35	17	1	
정읍	정읍애육원	52	26	1	
고창	고창행복원	43	17	1	
	요엘원	50	18	1	
	희망샘학교	40	26	1	치료시설

자료 : 전라북도청 내부자료

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한계

1) 중앙차원의 주요 현안 및 한계

- **(보호종료 연령 상향 조정 및 보호연장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 필요)** 현행의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 만 18세 도달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시설보호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퇴소해야 함. 아니면 일정 요건이 만족될 경우에만 보호가 연장될 수 있음
 -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은 장시간의 시설생활로 개인일상생활과 사회적 기술이 취약이며, 자립기술의 습득과 관련 능력이 저조하고, 경제적으로 완전독립할 능력과 여건이 갖춰진 경우가 드물고, 과거에 비해 청년의 취업준비 기간 및 부모 지원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시설 내 보호대상아동이 단지 연령 18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종료가 강제화 되고 있음에 대해 보호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보호종료 연령 기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
 - 연장보호 또한 대학재학 중, 지정된 시설 및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 중이거나 질병 및 장애 등의 요건일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으로 아동 관점 중심의 충분한 자립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을 강요받는 측면이 강함. 즉 본인의 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 필요)**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립지원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20년 기준 10개 시도에서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미설치된 지역은 시설별(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센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분절되어 보호종료아동 대상 사후관리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큼
 -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필요 정보 제공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자립 관련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 및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립지원 전담 업무를 위탁하도록 해야 함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사례관리사 인력 필요)** 자립 이후의 다양하고 많은 자립 관련 정보 제공자, 관련 사업 연계자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상담과 지원에서부터 친밀한 관계, 외로움을 함께 해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적 지지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사례관리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전문적 사례관리 인력이 마련되어야 함

-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기회 확대)** 자립 준비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1-2주가 아닌 한 달 정도 자립체험관에서 스스로 자립생활·돈관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화 해야 함
- **(보호종료아동 관련 통계자료 미흡)**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확한 인원과 자립 지원 실태 및 욕구 파악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용어에 대한 개념 재설정 필요)** ‘시설퇴소’아동, ‘보호종결’아동, ‘보호종료’아동, ‘보호아동’ 등 각기 다른 용어로 그 범주도 각기 상이함. 이에 관련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 있음. 특히나 퇴소란 장소 이동(시설에서 나간다)란 의미만을 담고 있고, 보호종료 용어 사용 시 만기 종료와 연장 종료로 등으로 구분되기에 각각도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거 지원)** 미취업 상태 등 보다 열악한 상황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한데 이를 간과할 우려 큼
- **(보호종료 아동 특성 반영한 다양한 취업 지원)** 보호종료아동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보다 저소득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화 및 확대)** 경제적 및 주거지원 등 주로 물질적 지원 중심이며 심리정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원가족과 주변인들을 자립 지지체계로 활용 필요)** 심리정서적 지원 만큼 관계적 지지체계 형성도 중요함. 이에 자립계획 과정에서 친구, 원가족, 대리보호자 등 퇴소 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인들을 참여시켜 아동의 자립을 돕는 긍정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2) 전북 차원의 주요 현안 및 한계

- **(중앙정부의 관련 지원정책과 관리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전북지역 내에서의 실행은 다소 미흡)**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부재)** 전북도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지원 관련 조례가 부재하여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전북지역 자립지원담당기관 부재)**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지원 담당기관의 부재로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저조한 상황

- **(공동생활가정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부재)** 전북 도내에 40여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215명가량 되며 이 중 보호 준비 아동은 약 50명가량이며 매년 20명 정도가 시설을 퇴소하고 \
- 있음. 한편 공동생활가정 내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부재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많은 업무 중 하나로 자립 준비와 퇴소한 아동의 자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보호 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대상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관련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연락두절 비율 높음)** 타 지역과 비교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연락두절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19년 기준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총 12,796명 중 연락두절 인원은 3,362명으로 연락두절 비율은 26.3%로 나타남. 한편 전북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758명 중 연락두절은 293명(이 중 가정위탁의 연락두절 239명, 38.6%, 공동생활가정 연락두절 22명, 38.6% 임)으로 그 비율이 38.7%로 전국 평균 연락두절 비율보다 12.4%p 높게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즉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의 연락두절 비율은 서울 21.3%(360명), 부산 16.0%(180명), 경북17.1%(146명), 전남 12.6%(150명), 제주 10.7%(26명) 등으로 나타남. 한편,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으면서도 강원외의 연락두절 비율은 47.4%(384명), 충남 32.8%(178명), 경기 29.7%(59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 또한 가정위탁에서의 연락두절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심리·정서적 지원사업과 관계적 지원 사업 미흡)** 중앙 및 타 지자체 자립 지원 사업들과 비교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및 관계적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재하거나 미흡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관련 연구 부재)** 이로 인해 시설별 보호종료아동 관련 자립 실태 및 현장의 어려움 및 욕구 파악이 안 된 상황. 이에 시설별 보호종료아동 대상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큼
- **(아동자립지원시설인 삼성자립생활관의 정원 충족률 저조)** 전주에 위치해 있는 '삼성자립생활관' 은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30명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자립생활관의 정원 30명 중 단 11명이 입소하여 정원 충족 비율이 36.6%로 저조함. 이에 자립생활관의 정원 충족률이 저조한 원인 파악과 더불어 정원 충족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제 3 절 국내·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사례 분석

- 본 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성공적 자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어떠한 규제와 사업·제도·정책이 실행되고 관련 시설·기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국내외의 정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적용 가능 한지에 대해 검토함

가. 국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사례

1)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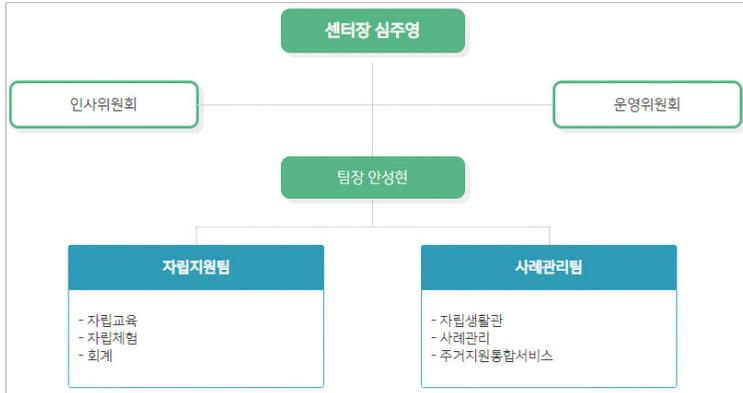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가 부산아동복지협회에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통합 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 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할 수 있음
- 미션과 비전을 살펴보면, ‘우리는 보호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라는 미션 아래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역할과 자립통합지원체계 표준화모델 구축이란 2개의 비전을 갖고 있음. 핵심전략은 크게 5개로 전문성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홍보강화, 자원개발, 열린 조직문화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jarip.or.kr/jarip_pro01/sub3.php)

〈그림 3-1〉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비전과 핵심전략

- 부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센터장(1명), 팀장(1명), 자립지원팀과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립지원팀은 대리 1명(자립교육과 디딤씨앗통장), 사회복지사 3명(자립체험, 자립교육), 회계 1명인 5인으로 구성되었음. 사례관리팀은 대리 1명(자립생활관과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1명(자립생활관, 사례관리), 사례관리사 1명(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3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jarip.or.kr/jarip_pro01/sub3.php)

〈그림 3-2〉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조직도

- 시설현황을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건물로 지하1층은 자립훈련실습실 및 교육실, 2층은 바리스타교육실과 북카페, 3층은 사무실과 상담실, 4·5층은 자립체험과, 6·7층은 자립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jarip.or.kr/jarip_pro01/sub3.php)

〈그림 3-3〉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층별 안내

▶ 자립생활관



▶ 자립체험관



▶ 바리스타교육실 / 복카페



▶ 세미나실(2F) / 자립훈련실습실(B1)



자료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jarip.or.kr/jarip_pro01/sub3.php)

〈그림 3-4〉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시설 현황

- 사업내용은 자립지원 관련 사업과 사례관리 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자립지원 관련 사업들을 보면, (1)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중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아동 대상 건강한 자립을 위해 자립기술 8대 영역을 토대로 교육부터 자립능력 강화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음. (2) 온라인 교육으로 주거교육, 직장생활기술교육, 금융경제교육, 주거교육, 자립준비 토크쇼(자립선배들과의 퇴소이야기, 자립 금금증 해결), (3) 종사자 대상 다양한 지원교육(자립 중요성과 필요성, 자립준비아동위한 종사자 역할 등)을 실시함. 종사자 지원교육(소양

교육, 양육기술강화교육, 자립지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고 있음. (4) 독립적인 1인 공간에서 퇴소 후 자립 환경과 일상생활을 미리 경험하여 자립 생활기술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립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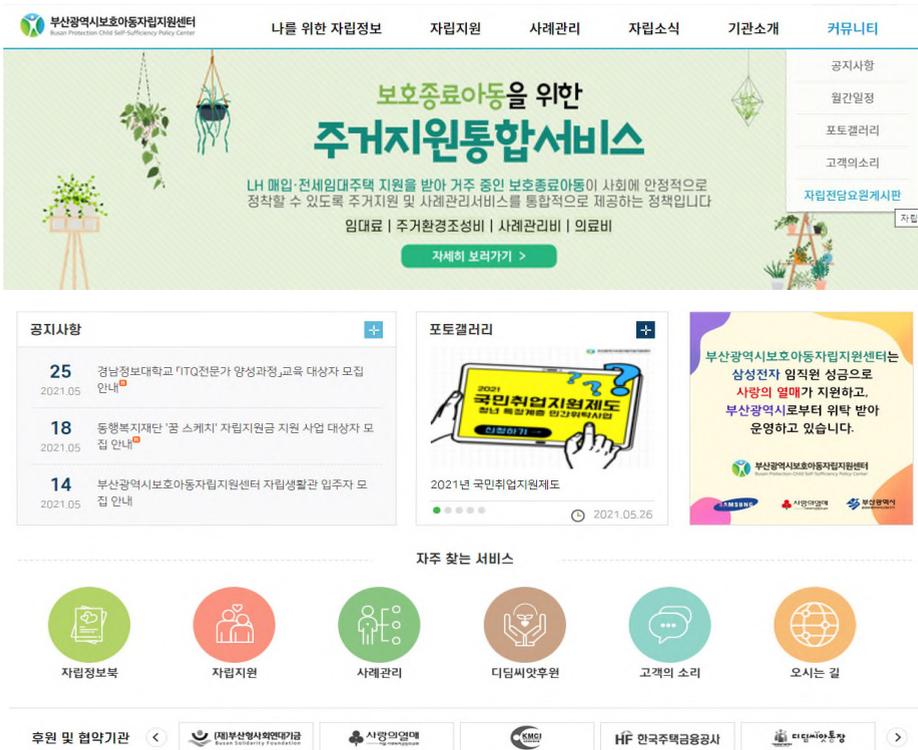
〈표 3-20〉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자립 지원	8대 자립기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보호종인가동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아동 대상 교육 지원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교육 신청 어려운 자 교육 기회 확대 주거교육, 금융경제교육 직장생활기술교육 : 직장학개론(예정 및 매너), 대화의 힘(갈등대처법) 자립준비토코소 : 자립선배들의 퇴소이야기, 자립에 대한 궁금증 해결 종사자 지원교육 : 자립의 중요성과 필요성, 자립준비아동을 위한 종사자 역할
	종사자 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위해 종사자 대상 교육제공, 전문성 강화 및 소진 예방 - 소양교육 :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소진예방 교육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 양육기술 강화교육 : 양육 필요 훈육 기술 및 부모역할 교육 - 자립지원 역량강화 교육 : 자립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지원의 다양성 도모
	자립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체험기초공략반(3박4일) :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1단계) 실제준비 - (2단계) 자립생활 준비인식 - (3단계) 1인독립주거 경험 자립체험 집중공략반(5박6일) : 퇴소예정아동 퇴소준비 1:1맞춤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기술훈련, 주거체험, 경제활동, 손님초대하기, 지역사회자원활용, 하우스클리닝 시설 내부 자립체험(3박4일) : 각 시설 내부 체험관에서 자립체험 진행
사례 관리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 종료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아동(부산거주 원칙, 그 외 경우도 상담/신청가능) - 사례관리 기간 : 최대 3년(1년 주기 목표설정, 평가 진행 후 지속여부 논의) - 서비스 내용 : 주거생활, 월빙생활, 인간관계, 여가활동, 재정관리, 미래설계 퇴소 아동의 성공적 자립생활을 위해 욕구 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
	생활관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대상 : 퇴소 5년 이내 아동 입주기간 : 최소 1년 ~최대 2년(1년 후 연장 심사 후) 입주조건 : 보증금 납부 가능자, 관리비 3만원, 공과금 별도, 월세 무료, 입주와 동시에 사리 관리에 적극 참여자 지원서비스 : 종합심리검사, 상담치료, 주거교육, 일상생활교육(요리, 하우스클리닝),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기관 지원, 금융교육, 안전교육, 긴급지원 등
	주거지원통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부담 완화 + 안정적·체계적 자립 지원 연계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사업 대상자 : LH매입임대/LH전세 임대주택 및 일반월세주택 거주자(재계약기간 1년이상 남아 있는자)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지원 주거환경조성(50만원 지원) 사례관리(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매월 20만원 지원) 제공 기간 : 최소 2년, 재계약시 2년 연장

자료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여 재구성함

(http://www.busanjarip.or.kr/jarip_pro01/sub3.php)

- 다음으로 사례관리 관련 사업들을 보면, (1) 부산지역 거주 및 그 외의 지역 거주 보호종료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아동 대상 욕구 기반 자립생활 맞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최대 3년 사례관리 진행 후 사후관리를 하며 지원 서비스는 주거생활, 신체·정신·심리건강을 위한 웰빙 생활, 긍정적·지지적인 인관관계, 재능과 흥미 반영한 여가활동, 소득 및 재정관리, 그리고 목표달성에 도움 되는 적절한 교육·훈련·취업 등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음. (2) 생활관 입주 지원사업으로 시설 퇴소 5년 이내 청소년 대상 최소 1년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종합심리검사, 상담치료, 일상생활교육,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기관 지원, 음용 및 안전교육, 그리고 긴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체계적인 자립 지원 연계를 위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 운영으로 사업내용 홍보·활성화, 최신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공유(기관 협약 및 업무회의 등), 보호종료아동 구인·구직신청, 후원안내, 유관기관 및 자립지원 전담요원간의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 홈페이지(http://www.busanjarip.or.kr/jarip_pro01/sub3.php)

〈그림 3-5〉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2) 자립역량강화사업 '온드림 청사진(청년사회진출)*'

-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시하는 '온드림 청사진' 사업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 자기계발, 교육, 의료지원, 사례관리, 자립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동아리활동 등 통합적인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주는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기간은 1년(1월~12월)이며,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 주거 및 자기계발비를 1인당 연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택청약금 1인당 연 24만원 지원, 8주간 단기 어학연수(수속비용과 체류비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자립역량강화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연 1회)을 통해 온드림 청사진 사업소개와 자립관련 정보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그리고 친모 도모 활동 등을 실시함. 역량 강화교육(연 1회)은 재무관리, 대인관계 및 리더십, 진로탐색, 자립관련 명사 특강 등 강연과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년워크숍(연1회)에서는 개인 활동경과 공유, 어학연수 및 동아리 결과보고, 연간 사업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음
- (3) 지지체계 형성 사업은 우선 모임의 주제에 따라 3인 이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1인당 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동아리 활동과 다음으로 대상별 개별 사례관리 및 주거 관련 모리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4) 긴급지원 사업은 의료실손보험료 지원, 의료비와 생활비 등 위기상황방생 시 위기 개입 등 긴급 지원, 연계된 병원진료 시 일반검진비를 제외한 치료비 지원, 그리고 취업과 면접대상자 맞춤 정장 제작 지원(최대 10명)을 추진하고 있음

3) 바람개비 서포터즈

-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실시되는 아동자립국의 대표 사업임
- 2011년부터 시작된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시설 퇴소 이후 보호자 없이 홀로 자립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데 있어 준비가 미흡한 시설 보호아동 대상 시설 퇴소 선배인 보호종료아동들이 시설 보호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모인 서포터즈로 보호아동에게 자립 멘토단으로 다양한 자립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즉,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들이 시설 후배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멘토로서 서포터즈 활동 기회, 자립 강의 봉사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시설 출신 선배들의 멘토 모임이라 볼 수 있음. 바람개비와 같이 시설 보호 후배도 회전할 수

*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adongbokji.or.kr/adong/m/include/main.asp#gotop>)

있도록 시설 출신 선배들의 경험 상담, 강의 등을 통해 동력을 제공하고 희망을 불어 넣는 활동 모임이라 볼 수 있음

- 한편, 바람개비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들은 서포터즈 활동을 기획하고, 자립 강의에 참여하거나 보호아동 대상 정기적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받음
- 2011년부터 2020년 10기까지 총 321명이 위촉됐으며 사례발표, 봉사활동,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음

〈표 3-21〉 바람개비 서포터즈 기수별 현황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인원수 (명)	58	47	41	43	45	23	12	12	21	19

자료 : 2021 혼자서서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자립정보북 (아동권리보장원, 2020. 12)

〈표 3-22〉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단별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활동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 홍보 ◦ 서포터즈 활동집 기획 및 제작
자립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양성교육 참석 및 자립 강의 커리큘럼 구성, 강의안 개발 ◦ 보호아동 대상 자립교육 시 강사단 행동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개비 서포터즈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 ◦ 멘토링 활동, 학습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참여
자립멘토(강사)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자료 : 2021 혼자서서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자립정보북 (아동권리보장원, 2020. 12)

4) 서울의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 자립형 그룹홈은 서울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퇴소 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 지원 뿐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즉 자립기반이 미약한 시설 퇴소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됨
- **(추진방향)** 자립 지원 연계 강화로 조기 자립 도모 및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과 고용지원센터-자립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요원간 협력망 구축을 통한 취업교육 병행으로 자립 기반 마련, 그리고 민간기업체, 장학재단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업지원 연계로 취업기회 확대 제공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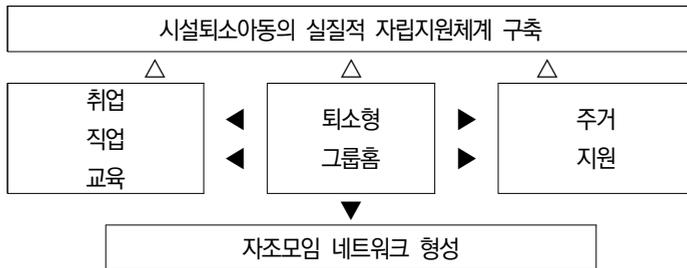
- **(추진체계)** 서울시는 복권기금지원계획 수립·시행과 복권기금 교부, 사업추진결과 분석·평가를 하며, 각 가치구에서는 복권기금 교유 신청 및 집행, 현장확인, 전세계약 체결, 지원사업 입주관련 세부사항 진행, 전세권설정 및 관리, 지원시설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함.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자립형 그룹홈을 운영 및 시설사용관리와 퇴소아동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함



자료 :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계획(안)(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자료, 2013. 8)

〈그림 3-6〉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추진 체계

- **(사업개요)** 자립형 그룹홈이란 시설 퇴소 아동에게 주거와 자립지원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며 살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설임. 이를 위해 배려가 필요한 사회 약자계층(보호필요아동) 주거지원, 취업과 직업교육강화로 자립지원 및 자조모임 구성으로 가족을 지향하는 공동체 역할을 함



자료 :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계획(안)(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자료, 2013. 8)

〈그림 3-7〉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구성 요인

- **(지원 대상)** 6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 등을 포함하며 만 2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으로 대입, 취업 등으로 주거가 필요하며 자립 의지가 확고한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음
- **(지원 기간)**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 가능함
- **(설치 개소 수)** 2020년 12월 기준 총 13개소(권역별 퇴소 아동 수 고려 설치)



자료 :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http://www.s-adong.com/business/business02_3.php)

〈그림 3-8〉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 시설

5)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을 응원하는 살림기부 캠페인

- 라이나생명 연계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시설퇴소 직후 초기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기류, 조리도구들, 생필품, 주방용품, 소형 주방가전 등을 후원 받아 보호종료아동에게 전달하는 사업
- 주방 가전 및 용품 뿐 아니라 유통기간이 긴 통조림이나 반조리식품도 지원 하고 있음



자료 :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http://www.s-adong.com/business/business03.php>)

〈그림 3-9〉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20 살림기부캠페인(라이나생명 연계사업)

나. 국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사례

- 국외에서는 일찍부터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었음. 여러 국가들 중 선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과 영국 제도를 토대로 미국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례 및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봄

1) 영국의 개인 사례담당자 지정 제도(Personal advisor, PA)*

- 영국의 경우 법률 상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대상아동에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를 지정해주도록 되어 있음
 - 이 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고, 법적근거에 따라 특정 및 집중 보호종료아동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아동 및 사회복지법 제3조(Section 3 of the Children & Social Work Act) 개정에 의해 25세 보호종료아동까지 지원토록 함
 - 만 16세가 되면 시설 내 사회복지사와 개인상담사는 퇴소 전에 아동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자립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아동의 자립 및 진로계획에는 시설 퇴소 이후 자립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재정적 후원, 퇴소 후 생활하게 될 거주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보호종료 되는 만 18세부터는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가 지정되어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도움을 받으며 수립된 자립계획이 아동이 25세가 될 때까지 재검토 및 수정 보완이 이루어짐. 최소 6개월에 한 번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도움을 받아 아동이 직접 참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만18세가 되어 보호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면, 지자체에서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를 지정하고,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는 보호종료아동이 성공적인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필요한 내용을 지원함. 정서적 지원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계획 수립, 검토, 모니터링을 지속적이고 실시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개인 사례담당자 지정 제도의 지원 기간은 만25세까지이며, 개인 사례 담당자가 보호종료아동을 1:1로 밀착 관리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음. 최소 8주마다 보호종료아동을 면담하고 이사 시에는 최소 7일 이내 방문하여 거주지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야 함

* 김성경 외(2020). 보호 아동청소년자립통합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민숙(2021). 자립지원의 공백 :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입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주요 역할은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이행 및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행함. 보호종료아동 관점에서 자립 관련 어려움과 고민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 연락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됨. 그리고 중요 임무 중 하나는 보호종료아동과 연락 상태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며, 연락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의 현재 상황 파악과 더불어 실질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이 있음. 즉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생활을 돕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서비스와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정보, 주거 관련 내용, 금융적인 교육과 관련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적 기본 상식,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등 전문가적인 전반적 지식이 요구됨.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이 주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등에 관한 법적 이해가 있어야 함.
- 영국의 경우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 1명당 25명의 보호종료아동 사례를 담당함. 보호종료아동의 연락 등 관계 참여 부족 및 관계 형성 어려움 시 또 다른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와의 연계 추진 됨

〈표 3-23〉 영국의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주요 역할 내용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의 수립된 자립계획 검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수립된 자립계획 성공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결 ◦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제공 ◦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와 조정 ◦ 재정관리 관련 정보 제공 ◦ 교육, 취업 또는 직업훈련 서비스 정보 제공 등 ◦ 향후 주거에 관한 선택지 제공

자료 : 김성경외(2020) 보고서 참고

〈표 3-24〉 영국의 개인 사례 담당자(Personal Advisor, PA)의 6개의 사례관리 영역

구분	주요 내용
신체 및 정신건강	◦ 신체-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여가 및 문화활동 장려
주거지원	◦ 공공 및 일반 주택, 민간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넓은 선택의 폭 지원
재정 능력	◦ 적금, 계좌 개설 및 관리, 부채와 소득관리 등 일반 재정관리 교육
교육 및 훈련	◦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참여 권장, 고등교육 접근성 제공 및 취업관련 훈련
회복 탄력성 및 자존감 구축	◦ 사례개입 종료 후 장기적 진로계에 대한 점토, 지지체계 구축 위한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지원
관련 법적 내용	◦ 범죄예방 등을 위한 위법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자료 : 김성경외(2020) 보고서 참고

2) 미국의 첼시 포이어(The Chelsea Foyer)의 엄격한 참여요건*

- 미국은 가정위탁제도 보호 아래 있던 청소년들이 위탁보호 이후 노숙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거 취약계층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에서 성공적인 Chelsea Foyer 모델을 도입함. 즉 영국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 Common Ground Community와 Good Shepherd Services가 함께 첼시 포이어(Chelsea Foyer)를 뉴욕에 설립하여 시작함
- 주거 불안정 상황에 처해 있는 노숙 경험이 있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만 18~25세 보호종료아동 40명 대상 최대 2년간의 전환 주거 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을 제공하고 있음. 전환 주택을 확보하여 2년간의 주거 지원 기반 실질적 자립 돕도록 설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첼시 포이어에서는 독립주거시설(independent residence) 40개소 준비와 영구 지원 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ing) 207개소를 확보한 상태임
- 미국의 첼시 포이어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과 의무사항은 상대적으로 엄격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음. (1)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학교 교육을 받거나 혹은 직업훈련을 받는 등 소득 활동에 참여 해야 함. (2) 한 달에 두 번 사례관리자를 만나야 하고, (3) 재정관리 등과 같은 지역사회 생활기술 개발 워크샵에 참여해야함. (4) 수입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프로그램 비용으로 매달 지불해야 함.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까다로운 요건과 의무사항은 첼시 포이어 프로그램 종료 이후 사회 진출 시 보호종료아동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적 소득을 채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질

* GOOD SHEPHERD SERVICES 홈페이지(<https://goodshepherds.org/program/chelsea-foyer/>)

수 있도록 하며, 전환 주택 퇴소 이후 공적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의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해줌

- 모든 거주자는 생활하며 18~24개월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 향후 반독립적인 생활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받아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 획득
- 임대료 대신 소득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해야함. 이 비용(수수료)은 저축 계좌에 예치되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면 반환됨
- (지원신청) 만18~25세 보호종료아동이거나 노숙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접고정을 거쳐 추천서, 이력서 및 자립의지서 등의 문서 제시 필요

○ **(프로그램 내용)** 첼시 포이어 프로그램의 주요 강점은 인력개발임. 기본적인 직업기술은 주민들에게 컴퓨터 기술교육, 개인지도, 인턴쉽 및 Good Shepherd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공됨. 첼시 포이어는 Columbia University Workplace Center와 협력하여 경력을 보상해주는 청년 취업 기회 확대 고용 프로그램이 개발됨

- Foyer 프로그램의 핵심은 실행계획 수립이며, 실행계획 수립은 개인의 교육, 직업, 주택, 건강, 복지, 기타 개인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단계를 기술한 것임. 즉,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사례관리자와 함께 초기 30일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주 직업을 탐색하고 찾고, 직업 및 진로를 결정하며, 주택 찾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워크샵 등에 참여함. 30일 이후에는 약 18개월간에 걸쳐 영구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자와 지속적으로 수정·관리·모니터링 함

○ 첼시 포이어 프로그램 목표는 보호종료아동이 독립적인 영구주택과 고용 및 직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첼시 포이어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공적지원을 거의 100%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노숙위기에 처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강력한 행동 실천적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 보호종료아동의 정규직 고용(lifetime employment)을 준비하는 관점에 성공적인 직장을 개발(workplac development)하여 실행했다는 점. 자립 위기를 극복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호종료아동들과의 동료 멘토링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 그리고 저축 습관과 월세 지불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했다는 점을 꼽고 있음

3) 일본*의 자립원조홈(自立援助ホーム)과 자립지원코디네이터(自立支援コーディネーター)

- **(자립원조 홈 정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이 일하면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안전지대로, 자립 원조 홈의 정식 명칭은 아동자립생활 지원 사업임. 의무교육 종료 후 양육 시설 등에서 18세 기준 퇴소 한 보호종료아동 대상 사회로의 자립 시 자립을 위한 생활 지원과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임. 일본에서는 ‘자립 원조 홈’을 아동 보호(복지)의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음
 - 2017년 4월 1일부터 20세에서 22세까지 지원을 확대 함.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자립 원조 홈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취학자립생활지원사업과 사회적 보호 자립 지원 사업 2개로 구분 실시됨
- **(자립원조 홈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의 3과 제33조의 6항을 기반으로 한 아동 자립 생활 지원 사업. 아동복지법에서 정해진 입소 시설에서 의무 교육 종료 후, 가정에 있을 수 없고 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지만, 보호받을 곳이 없고 사회적 자립이 되지 않은 만 15~20세 미만(대학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공동생활 하면서 직장 찾고 일상생활의 상담 등을 지원 받아 사회적 자립 도모하는 시설
 - 시설 퇴소 한 보호종료아동이나 기타 아동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소.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189개소가 있음
- 주로 부모의 방임·학대 등 가정문제의 여러 사정에 의해 부모 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보호아동들이 대부분이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음
- **(자립원조 홈의 지원내용)** 생활·취업·학업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생활지도·지원 등이 실시되며 그 범위는 다양함. 식사제공, 학교나 직장에 대한 고민 상담, 취업지원, 금전관리, 관공서나 병원에 함께 동행 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아동상담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 보호종료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마련하는 중요한 일을 함
 - 입주 초기는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자신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간 신뢰관계 구축 중요. 일반적으로 아침식사 7:00, 저녁식사 18:00이며 통금시간도 빠르면 21시, 늦어도 23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자립원조홈협의회 홈페이지(<http://zenjienkyou.jp>),
https://jammin.co.jp/charity_list/hikaritokazetoyume/

- 자립 원조 홈 입주 규칙은 공통적으로 3개로 구성됨. (1) '일해야 하는 것'으로 자립하여 혼자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혹은 '학교 다니는 것'으로 대학생이여도 아르바이트 하는 것 요구함. (2) 자립 원조 홈의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세대주"인 상태로 의료비는 30% 본인 부담이며, 주민세도 전년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자립 원조 홈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최소 2만엔, 최대 4만5천엔, 보통은 연 평균은 3만엔 정도임 (3) '생활에 대한 규칙'이 있음. 즉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외박은 자립 원조 홈 직원과 상담하기, 방에 총기 반입하지 않기, 이용자끼리 물건의 빌려 쓰지 않기, 친구를 집에 들이지 않기 등으로 나타남

〈표 3-25〉 일본의 아동양육시설과 자립 원조 홈의 차이

구분	아동양육시설	자립원조 홈
목적	양육	자립지원
운영 모체	사회복지법인	NPO, 임의단체 등
입소 가능 연령	2세부터 18세까지	15세부터 20세까지
입소 비용	사회보험부담	본인부담
주거 생활	학교에 다니기	일하기
주민세	부담 없음	전년소득에 의하여 책정
의료비	전액공조부담	30% 자기부담(국민건강보험)



자료 https://jammin.co.jp/charity_list/hikaritokazetoyume/

〈그림 3-10〉 자립 원조 홈 (모두의 집 외관)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일본의 경우 2012년 도쿄도에서는 자립 지원 강화 사업의 실시에 따라 '자립 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되기 시작함. 자립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시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은 기존 신뢰하고 있던 이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 직원이 신뢰할 만한 어른이 되며, 신뢰 가능한 어른들의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함

- 1년간 한 달에 한 번, 남녀 구성의 2명의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 형성하여 퇴소 후에도 법적인 고민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음. 그 외 자립지원 프로그램 통해 시설 퇴소 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지식, 기술습득의 좋은 의미로 시설 인근의 맨션을 제공 받아 일주일간 혼자 살아보는 체험 실시
- 성인식프로젝트 통해 성인식 참가 도움을 주고, 시설 퇴소 해 자립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연 4회 생활에 필요한 물품, 식자재, 직원 편지 등을 보내주는 생활비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퇴소한 후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고독감 등의 정서적인 지원까지 실시하고 있음
- 곤란할 때 상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과 사회자원을 최대한 연계할 수 있는 개척의 시점을 가지고 변화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아동 중심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음.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직원은 부모역할, 상담자 역할, 안내자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첫 어른으로 어른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감. 더 나아가 아동이 자립하여 생활하게 될 지역사회와 아동을 연결해주는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에서도 중요한 존재
-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가 의무화 되었음, 반면 아동 중 약 60% 이상이 학대로 인한 입소로 학대에 대한 영향과 빈곤 등 복잡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입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퇴소를 하기 보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혹은 시설 입소 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를 안고 퇴소 후 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이 많음. 따라서 기존 자립은 신체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사회적 자립이 중요시 되어 경제적 관념을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자립의 개념과 아동 스스로 모든 신변 처리를 강요하고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자립이었지만 아동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족 및 가족관계의 결여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심리적인 치료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의사표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신뢰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강화 확대하고 있음

다. 정책적 시사점

- 이상의 자립 지원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같이 전북지역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전북 보호시설 유형별 보호아동 자립과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5년 이내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20년 기준 전북지역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양육시설에 14명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매우 역부족임. 이에 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

하고 다양한 정보와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시급함.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홍보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종료아동의 위기·취약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 지원 등이 필요함

- 전북지역 자립 관련 사업들 중 취약한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 마련 필요.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동일한 어려움이 심리적 지지자 부재 및 심리·정신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라 지적함. 이에 시설 퇴소 이후 보호자 없이 홀로 자립 생활을 꾸려가야 할 보호아동 대상 시설 퇴소 선배 출신의 멘토 연계·자립강의 등이 필요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는 심리·치료 상담, 정신과적 치료 등의 긴급지원과 심리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동아리 구성, 사례 관리, 멘토 연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시설 퇴소 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비 지원, 재무관리, 대인관계 및 리더십 교육,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를 위한 면접 정장 맞춤 지원 등 보호종료아동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전북지역에서 대학진학 및 취업 등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주거지 마련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 및 자립 지원 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과 함께 자립전담지원요원 등의 배치로 생활지도, 직업탐색 및 취업 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개인 사례담당자 지정 제도와 일본의 자립지원코디네이터와 같이 '개인 사례담당자'의 일대일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의 1인당 돌봐야 할 아동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사례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음. 적어도 자립수당을 지급 받는 최소 3년간은 개인 사례담당자를 지정하여 밀접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리 및 다양한 지원을 연계 및 제공해야 할 필요 있음
- 미국의 첼시 포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참여 요건과 의무사항이 있음. 즉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하거나, 학교교육을 받거나 혹은 직업훈련을 받는 등 소득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한 달에 두 번 사례관리자를 만나야 하며, 재정관리 등 지역사회 생활 기술 개발 워크샵 참여와 더불어 수입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프로그램 비용으로 매달 지불해야 함. 일본의 자립 원조 홈의 입주

규칙도 1일 6시간 이상 5일 일해야 하며, 의료비는 30% 본인 부담이며, 주민세도 전년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자립 원조 홈 시설 이용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의무사항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립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및 자립 원조 홈 퇴소 후 사회에 나가 안정적인 주거 마련, 일상생활 가능 및 경제적 소득을 채울 수 있도록 직업을 갖게 하여 실질적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지원 등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의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우리나라 보호종료아동들은 최근 시설 퇴소와 함께 자립정착금, 입학지원금, 후원금과 매월 자립수당 및 기초생활수급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자립 관련 의지와 동기가 매우 취약하고 현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머물러고만 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다양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요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규제 마련으로 실질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립이란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주거적 자립 등을 중요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스스로가 자립 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본인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 있음. 반면, 시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따른 피해아동으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취약하고 친밀관계 결여 및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심리·정서적인 전문 치료를 기반으로 한 자존감 회복과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 있음.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한 신뢰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적 및 정서적 전문상담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있음

4

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제1절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제2절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와 욕구 분석

제3절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제4절 소결

제4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정책적 욕구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 이를 위해 첫째, 시설유형별(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요 영역별(신체·심리 건강상태, 진학 및 취업현황, 주거현황, 경제적 현황 등) 생활 전반의 실태와 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참여정도·만족도·향후 필요 정도 등의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또한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 및 자립 이후에 나타나는 각기 복잡하고 다층위적인 문제와 욕구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둘째, 전북지역에서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준비와 보호종료 이후 자립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시설유형별 현장실무자(시설별 자립전담요원, 자립업무 담당자)와 관련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자 관점에서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실과 영역별 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자립 현장 경험에 기반 한 현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욕구와 더불어 도내 민관서비스 현황과 민관서비스 발굴 및 연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전북도 차원에서의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다각도 측면의 지원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했음

제1절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본 절에서는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주요 영역별(신체·심리 건강상태, 진학과 취업현황, 주거상황, 경제적 상황 등) 파악과 기존의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정도·만족도·문제점·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고, 실질적 자립을 위한 필요한 정책적 욕구를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음

가.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보호)에서 보호를 받은 후 만 18세 퇴소 및 연장보호 이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임.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은 표본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조사대상자 확보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 도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12개소), 공동생활가정(40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1개소) 이외 보호종료아동에게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삼성자립생활관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실행 기관 등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관련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시설장 포함)들의 연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섭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즉, 각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공지하고 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연락처를 소개 받아 확보한 후 개인별 대면 설문조사와 온라인(e-mail로 설문지 발송·회수) 조사를 병행함.
-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설문조사 참여율 독려 및 제고를 위해서 선호 답례품(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고 설문조사 참여 독려 전화와 문세 등을 병행 진행함. 설문조사 응답 시간은 평균 15분정도 소요되며, 조사기간은 2021년 3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2) 분석방법 및 조사 내용

-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Win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다중 응답분석, 교차분석, t-test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함
- 설문 영역과 문항은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선행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항을 우선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재구성된 설문 영역과 문항은 보호종료아동 관련 직접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현장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여러 차례의 검수를 통해 설문 내용과 세부 질문 문항들을 수정·보완한 최종안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6개의 주요 영역별로 구성됨. 먼저는 보호종료아동의 신체·심리건강상태를 살펴보는 영역, 진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취업 관련 내용, 경제적 측면을 파악하는 영역, 주거상황과 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용 및 필요성과 및 정책적 지원욕구 등의 관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사 응답자의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4-1〉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내용

구분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신체· 심리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상태(우울, 외로움, 불안 등) • 주관적 삶의 수준 • 시설 보호 받던 상황과 보호종료 이후의 전반적인 삶 비교 	진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 유무, 대학 등록금/생활비 마련 방법 •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업종 학업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 어려움 정도, 대학생활만족 도
취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상태(취업준비 중, 취업 중) • 취업하기 위한 어떤 노력하나, 어떤 직업 준비 • 취업한 경우 직업, 고용형태, 월 급여, 직장 구직 통로 • 취업한 직업만족도와 만족하지 못한 이유 • 첫 취업 이후 이직·실직 경험 횟수와 이직·실 직한 이유 • 현재 이직·직업 변화 계획 유무와 이직·직업 전환 이유 •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경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 후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 • CDA 수령액, 후원액, 월평균 소득액 • 월 평균 생활지 항목별 지출액 • 현 부채 및 부채 발생 이유
주거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와 희망하는 주거형 태, 주거 마련 방법 • 지출되는 주거비용의 부담정도 • 현 주거에서 누구와 몇 명이 거주하나? • 현 주택 상태와 주거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 • 보호종료 후 노숙·일시보호쉼터·친구집 일시적 머문 경험 유무와 평균 머문 기간 • 보호종료 후 현재까지 주거지 이동 경험과 횟 수 및 옮기 이유 • 향후 이사 계획 유무 및 이사 계획 이유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 및 이용하지 않은 이유, 향후 이용 의향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정책적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시 받은 '자립준비프로그래' 교육 받은 정도와 보 호종료 후 자립에 도움된 정도 •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 • 현재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거리 • 보호 시, 진로·진학·취업 고민에 대한 조언과 도움 준 사람 명수와 누구, 보호 시, 진학·진로·취업 고민에 대 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적합 한 사람은 누구 • 보호종료 후, 인생의 중요한 문제/생활상 많은 어려움 과 고민/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요청 가능한 사람 명 수와 누구, 그리고 보호종료 후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 • 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지원여부/필요도 • 현 지원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 우선순위를 2개 • 만 18세 보호종료 시점의 적절성과 가장 적절한 연령 은? • 보호종료지원기간 5년의 적절성과 가장 적절한 기간은? • 보호종료직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생활비(보 증금, 주거비용, 생활비 등) •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시설/센터 선생 님과의 연락유무와 연락정도 및 연락 이유 • 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담당자의 적당한 연 락 정도 • 자립장차금/CDA/후원금 지출 항목과 지출 시 누구와 결정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출생년도, 보호기간 동안 살던 지역, 현 재 살고 있는 지역 • 보호종료 연도, 보호받은 기간, 보호종료 이 유, 자립생활 기간 • 다녔던 고등학교 유형, 보호받던 시설유형, • 보호종료당시 나의 상태, 현재 나의 상태 • 친부모님 유무, 연락정도, 연락하지 않는 이유 •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형제자매, 조부모, 친척 등) 유무, 교류정도, 가족관계만족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북 보호종료아동 121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남자 44.2%, 여자 55.8%
- 연령 : 평균연령 21.6세. 만 21세 이하 51.3%, 22세 이상 48.7%
- 보호기간 : 평균 11.9년, 중위수 12년, 최빈값 13년
- 보호종료 사유 : 18세 만기퇴소 70.9%, 연장종료 29.1%
- 자립생활 기간 : 평균 2.5년, 중위수 2년, 최빈값 1년
- 고등학교 유형 : 인문계 46.2%, 실업계 43.7%, 농업계 5.9%, 기타 4.2%
- 교육수준 : 고등학교 34.5%, 전문대 41.2%, 4년제 24.4%
- 현재 상태 : 대학 진학준비 3.4%, 대학재학중 41.9%, 취업준비중 32.5%, 취업중 22.2%
- 혈연여부 : 가족 있음 66.9%, 없음 33.1%, 관계만족도 2.88점(4점기준)
 - ↳ 가족과의 교류: 1개월에 1번 51.9%, 2-3개월에 1번 16.5%, 1년에 1-2번 11.4%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53	44.2	연령	21세 이하	60	51.3
	여자	68	55.8		22세 이상	57	48.7
	계	121	100.0		계	117	100.0
보호종료 사유	18세만기퇴소	83	70.9	혈연 존재여부	있음	79	66.9
	연장종료	34	29.1		없음	39	33.1
	계	117	100.0		계	118	100.0
보호기간	5년미만	11	11.6	자립생활 기간	1년이하	37	39.8
	5-9	22	23.2		2-3년	31	33.3
	10~14	32	33.7		4-5년	25	26.9
	15-19	20	21.1		계	93	100.0
	20년이상	10	10.5	교육수준	고등학교	41	34.5
	계	95	100.0		전문대	49	41.2
	평균	11.9년			4년제	29	24.4
현재 상태	대학진학준비	4	3.4	계	119	100.0	
	대학재학중	49	41.9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55	46.2
	취업준비중	38	32.5		실업계	52	43.7
	취업중	26	22.2		그 외	12	10.1
	계	117	100.0		계	119	100.0

2) 시설유형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양육시설)** 양육시설 유형 조사 참여자 90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남자 44명, 여자 46명 - 연령 : 21세 이하 52명, 22세 이상 35명
 - 종료사유 : 만기퇴소 70명, 연장종료 17명
 - 보호기간 : 평균 12년. 10년미만 21명, 10년이상 46명
-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유형 조사 참여자 13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남자 2명, 여자 11명 - 연령 : 21세 이하 5명, 22세 이상 7명
 - 종료사유 : 만기퇴소 7명, 연장종료 5명
 - 보호기간 : 평균 9년. 10년미만 6명, 10년이상 4명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유형 조사 참여자 18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 : 남자 7명, 여자 11명 - 연령 : 21세 이하 3명, 22세 이상 15명
 - 종료사유 : 만기퇴소 6명, 연장종료 12명
 - 보호기간 : 평균 12년. 10년미만 6명, 10년이상 12명

〈표 4-3〉 시설유형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구분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성별	남자	44	2	7	연령	21세 이하	52	5	3
	여자	46	11	11		22세 이상	35	7	15
	계	90	13	18		계	87	12	18
보호종료 사유	만기퇴소	70	7	6	혈연 존재여부	있음	53	9	17
	연장종료	17	5	12		없음	36	3	0
	계	87	12	18		계	89	12	17
보호기간	10년미만	21	6	6	자립생활 기간	1년이하	26	4	7
	10년이상	46	4	12		2-3년	23	4	4
	계	67	10	18		4-5년	16	3	1
	평균	12.3년	9.0년	12.0년		계	65	11	12
현재 상태	대학전학준비	4	0	0	교육수준	고등학교	35	3	3
	대학재학중	43	5	1		전문대	42	5	2
	취업준비중	23	4	11		4년제	12	4	13
	취업중	19	2	5		계	89	12	18
	계	89	11	17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37	3	15
				실업계/기타		52	9	3	
				계		89	12	18	

3) 전북 보호종료아동 영역별 자립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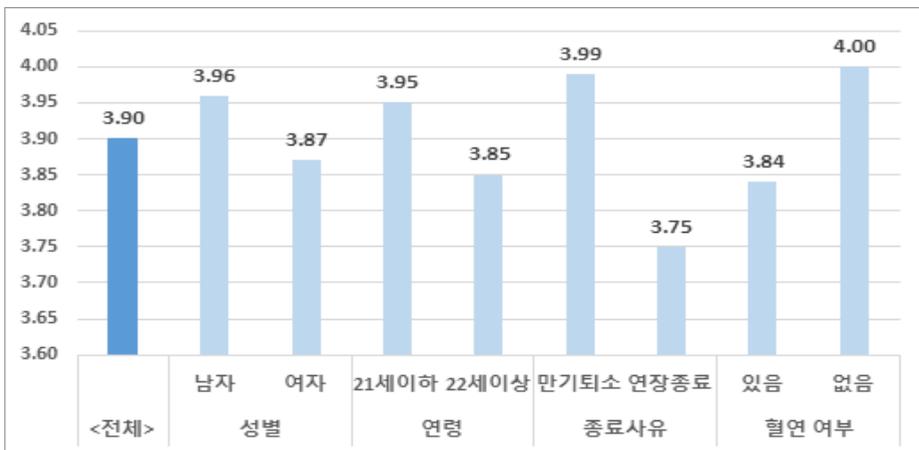
(1) 신체·심리적 건강상태

- **(전반적 건강상태)**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 응답자의 37.0%가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5점을 기준으로 3.90점으로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혈연이 없다는 그룹에서 4.00점으로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남자는 3.96점, 여자는 3.87점이었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 3.95점, 22세이상 3.85점으로 나타남
 -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아동은 3.99점, 연장종료 아동은 3.75점이었고,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 3.84점, 가족이 없는 경우 4.00점으로 평가하였음

〈표 4-4〉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점/5점기준)

구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평균	
전체	0.0	2.5	32.8	37.0	27.7	3.90	
성별	남자	0.0	0.0	35.3	33.3	31.4	3.96
	여자	0.0	4.5	29.9	40.3	25.4	3.87
연령	21세이하	0.0	1.7	33.3	33.3	31.7	3.95
	22세이상	0.0	3.6	30.9	41.8	23.6	3.85
종료사유	만기퇴소	0.0	2.4	28.9	36.1	32.5	3.99
	연장종료	0.0	3.1	37.5	40.6	18.8	3.75
혈연 여부	있음	0.0	2.6	35.1	37.7	24.7	3.84
	없음	0.0	2.6	28.2	35.9	33.3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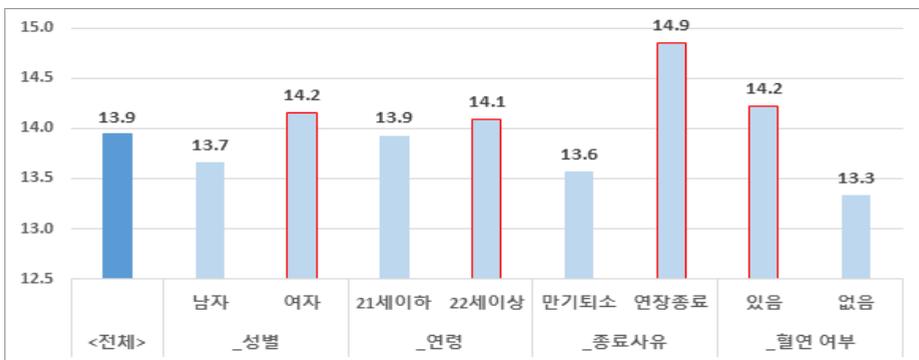
〈그림 4-1〉 주관적 건강수준 평가

- **(심리상태)** 최근 한 달 동안 보호종료아동이 경험한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우울감 측정문항 중 “일이 뜻대로 안될 것 같음” 응답이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 응답이 3.17점으로 높았고, 외롭다 1.96점 순이었음. 우울감 총점은 13.94점으로 이는 우울감 ‘경도’ 수준 정도에 해당함. 응답자 특성별로는 최저 13.33점(혈연 없음 그룹) 최대 14.85점(연장종료 그룹) 범위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13.7점 여자 14.2점, 연령별로는 21세이하 13.9점 22세이상 14.1점,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13.6점 연장종료 14.9점, 혈연 있음 14.2점 혈연 없음 13.3점
 - 성별은 여자, 연령은 22세이상, 종료사유는 연장종료, 혈연 존재 여부는 있음 그룹이 우울감 정상수준을 넘어선 ‘경도’에 해당함

〈표 4-5〉 현재 심리상태*

(단위: 점/4점기준)

구분	심리상태 측정 항목							우울감 (총점)	우울감 (평균)	t
	외로움	기분이 울적함	예민, 마음이 불안정	이유 없이 불안함	일이 뜻대로 안 될 것 같음	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	우울감 (총점)			
〈전체〉	1.96	1.81	1.85	1.78	3.37	3.17	13.94	2.32	-	
성별	남자	1.94	1.74	1.79	1.70	3.34	3.15	13.66	2.28	-0.80
	여자	1.97	1.87	1.88	1.84	3.42	3.19	14.16	2.36	
연령	21세이하	2.02	1.78	1.87	1.77	3.38	3.12	13.93	2.32	-2.24
	22세이상	1.93	1.86	1.84	1.81	3.39	3.26	14.09	2.35	
종료사유	만기퇴소	1.96	1.72	1.76	1.69	3.34	3.10	13.57	2.26	-1.86
	연장종료	1.94	2.00	2.06	2.00	3.47	3.38	14.85	2.48	
혈연 여부	있음	2.01	1.89	1.85	1.85	3.38	3.24	14.22	2.37	1.31
	없음	1.82	1.67	1.82	1.64	3.36	3.03	13.33	2.22	



〈그림 4-2〉 보호종료아동의 우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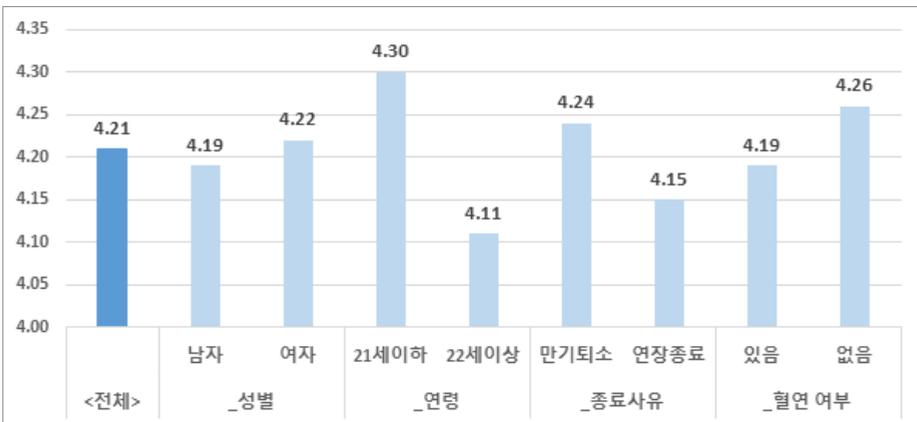
* ‘우울감’ 척도는 Kessler(2002)의 간편형 우울 척도로 리커트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4점)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총점(24점)을 기준으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 19~24점은 중도 수준을 의미함.

○ **(삶의 수준)** 현재 본인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낮은 수준' 1점부터 '높은 수준' 7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4.2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자 4.19점, 여자 4.22점으로 남자아동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 4.30점, 22세이상 4.11점으로 22세 이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평균보다 낮았음.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4.24점, 연장종료 4.15점으로 연장종료 아동의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혈연 존재 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 4.19점, 없는 경우 4.26점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우울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개인이 느끼는 삶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4-6〉 삶의 수준

(단위: %, 점/7점기준)

구분	삶의 수준 (1~7점 기준)							평균	
	1	2	3	4	5	6	7		
전체	0.0	4.1	15.7	46.3	24.0	9.1	0.8	4.21	
성별	남자	0.0	1.9	13.2	58.5	18.9	5.7	1.9	4.19
	여자	0.0	6.0	17.9	35.8	28.4	11.9	0.0	4.22
연령	21세이하	0.0	3.3	8.3	53.3	26.7	6.7	1.7	4.30
	22세이상	0.0	5.3	24.6	36.8	21.1	12.3	0.0	4.11
종료사유	만기퇴소	0.0	3.6	14.5	47.0	25.3	8.4	1.2	4.24
	연장종료	0.0	5.9	20.6	38.2	23.5	11.8	0.0	4.15
혈연 여부	있음	0.0	3.8	17.7	45.6	21.5	11.4	0.0	4.19
	없음	0.0	5.1	10.3	48.7	28.2	5.1	2.6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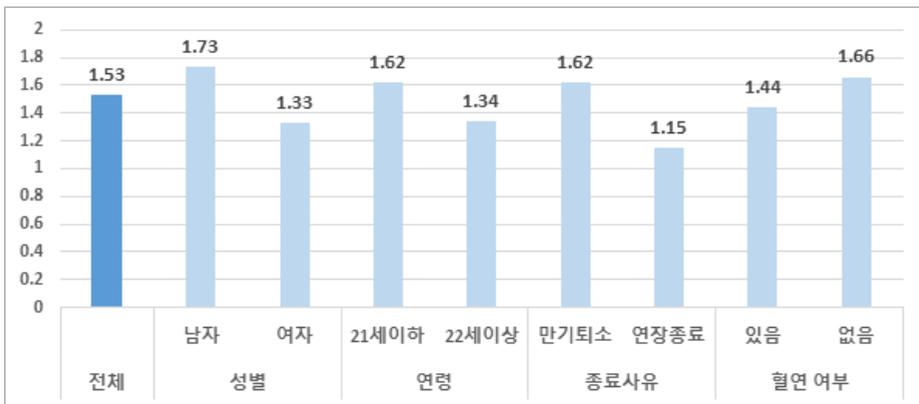
〈그림 4-3〉 삶의 수준

○ **(전반적 삶의 평가)** 과거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및 가정위탁보호 상황과 비교해볼 때, 보호종료 이후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 ‘과거보다 나빠짐’ -5점부터 ‘과거보다 좋아짐’ 5점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1.53점으로 대체적으로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진 수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있었음. 한편, 전체 평점 1.53점보다 낮게 나타난 응답자 특성은 성별로는 여자(1.33점), 연령별로는 22세이상(1.34점),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1.15점),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1.44점) 그룹에서 전체응답 평균보다 낮았음. 가장 높은 그룹은 남자아동, 가장 낮은 그룹은 연장종료 유형 응답으로 나타남

〈표 4-7〉 과거 대비 현재의 삶의 평가

(단위: %, 점/5점기준)

구분		과거와 비슷										평균	
		과거보다 나빠짐								과거보다 좋아짐			
		-5	-4	-3	-2	-1	0	1	2	3	4	5	
전체		0.0	0.0	0.8	5.8	2.5	23.3	15.8	20.0	17.5	9.2	5.0	1.53
성별	남자	0.0	0.0	0.0	7.7	0.0	17.3	21.2	15.4	23.1	9.6	5.8	1.73
	여자	0.0	0.0	1.5	4.5	4.5	28.4	11.9	23.9	13.4	9.0	3.0	1.33
연령	21세이하	0.0	0.0	1.7	3.3	0.0	25.0	18.3	20.0	16.7	10.0	5.0	1.62
	22세이상	0.0	0.0	0.0	8.9	5.4	23.2	12.5	21.4	16.1	8.9	3.6	1.34
종료사유	만기퇴소	0.0	0.0	1.2	7.3	0.0	22.0	14.6	20.7	18.3	9.8	6.1	1.62
	연장종료	0.0	0.0	0.0	2.9	8.8	29.4	17.6	17.6	17.6	5.9	0.0	1.15
혈연 여부	있음	0.0	0.0	0.0	5.1	3.8	26.6	16.5	19.0	15.2	11.4	2.5	1.44
	없음	0.0	0.0	2.6	7.9	0.0	15.8	15.8	21.1	23.7	5.3	7.9	1.66



〈그림 4-4〉 과거 대비 현재의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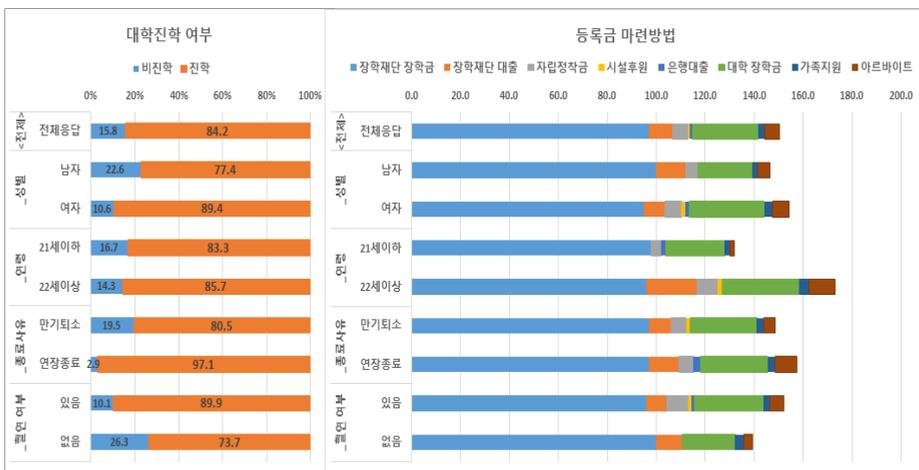
(2) 진학현황

- **(대학진학 여부)** 대학교에 진학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진학률은 84.2%로 나타남.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의 장학금' 순으로 많았음. 응답자특성별 대학진학률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 77.4% 여자 89.4%, 연령별로는 21세이하 83.3% 22세이상 85.7%,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80.5% 연장종료 97.1%,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 있는 경우 89.9% 없는 경우 73.7%였음. 혈연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그룹의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8〉 대학진학 여부 및 등록금 마련 방법

(단위: %, 케이스%)

구분	진학여부		등록금 마련 방법 (중복응답)								
	비진학	진학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재단 대출	자립정착금	시설후원	은행대출	대학 장학금	가족 지원	아르바이트	
전체	15.8	84.2	97.0	9.9	5.9	1.0	1.0	26.7	3.0	5.9	
성별	남자	22.6	77.4	100.0	12.2	4.9	0.0	0.0	22.0	2.4	4.9
	여자	10.6	89.4	94.9	8.5	6.8	1.7	1.7	30.5	3.4	6.8
연령	21세이하	16.7	83.3	98.0	0.0	4.0	0.0	2.0	24.0	2.0	2.0
	22세이상	14.3	85.7	95.8	20.8	8.3	2.1	0.0	31.3	4.2	10.4
종료사유	만기퇴소	19.5	80.5	97.0	9.1	6.1	1.5	0.0	27.3	3.0	4.5
	연장종료	2.9	97.1	97.0	12.1	6.1	0.0	3.0	27.3	3.0	9.1
혈연 여부	있음	10.1	89.9	95.8	8.5	8.5	1.4	1.4	28.2	2.8	5.6
	없음	26.3	73.7	100.0	10.7	0.0	0.0	0.0	21.4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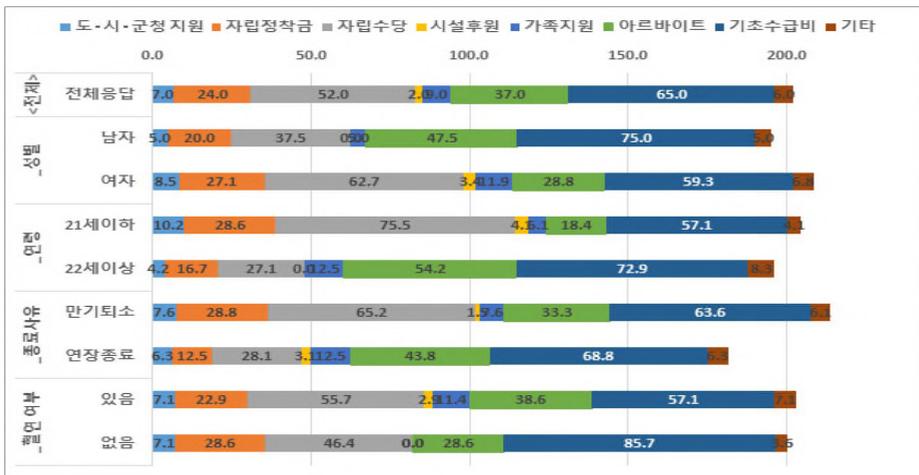
〈그림 4-5〉 대학진학 여부 및 등록금 마련 방법

○ **(대학 재학중 생활비 마련 방법)** 대학 생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기초수급비(65.0%), 자립수당(52.0%), 아르바이트(37.0%), 자립정착금(24.0%)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초수급이 일부 유예가 가능하기에 기초수급비와 매월 지급되는 30만원의 자립수당 활용률이 높았음. 응답자특성별로 보면, 남자는 기초생활수급비, 여자는 자립수당, 연령별로는 21세 이하는 보호종료 후 일정기간 지급되는 자립수당 활용이 높았고, 22세이상은 기초생활수급비,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는 자립수당, 연장종료는 기초생활수급비,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 응답이 있는 반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활용률이 매우 높았음

〈표 4-9〉 대학 생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방법 (중복응답)

(단위: 케이스%)

구분	도·시·군청 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시설후원	가족지원	아르바이트	기초수급비	기타	
전체	7.0	24.0	52.0	2.0	9.0	37.0	65.0	6.0	
성별	남자	5.0	20.0	37.5	0.0	5.0	47.5	75.0	5.0
	여자	8.5	27.1	62.7	3.4	11.9	28.8	59.3	6.8
연령	21세이하	10.2	28.6	75.5	4.1	6.1	18.4	57.1	4.1
	22세이상	4.2	16.7	27.1	0.0	12.5	54.2	72.9	8.3
종료사유	만기퇴소	7.6	28.8	65.2	1.5	7.6	33.3	63.6	6.1
	연장종료	6.3	12.5	28.1	3.1	12.5	43.8	68.8	6.3
혈연 여부	있음	7.1	22.9	55.7	2.9	11.4	38.6	57.1	7.1
	없음	7.1	28.6	46.4	0.0	0.0	28.6	85.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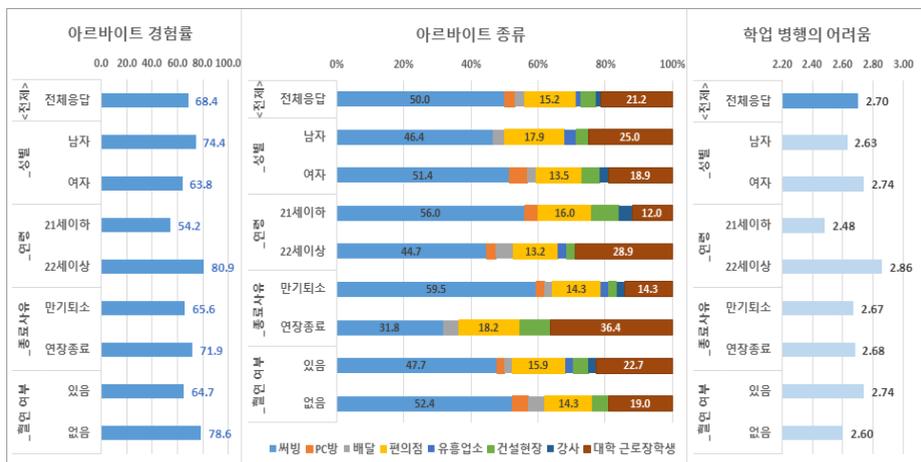
〈그림 4-6〉 대학 생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방법 (중복응답)

○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8.4%였으며, 카페나 술집 등의 '씨빙' 종류가 5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학에서의 근로장학생 응답이 21.2%였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4점을 기준으로 2.70점으로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특성별로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22세이상,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았음.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21세이하는 현재 다양한 지원제도의 수혜가 가능해 54.2%에 그쳤던 반면, 22세이상에서는 80.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음.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 역시 22세이상 그룹에서 2.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2세이상의 경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 역시 가장 높았음

〈표 4-10〉 아르바이트 경험률, 종류, 학업병행의 어려움

(단위: %, 점/4점기준)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률	아르바이트 종류								대학 근로장학생	학업 병행 어려움
		씨빙	PC방	배달	편의점	유흥업소	건설현장	강사	대학 근로장학생		
전체	68.4	50.0	3.0	3.0	15.2	1.5	4.5	1.5	21.2	2.70	
성별	남자	74.4	46.4	0.0	3.6	17.9	3.6	3.6	0.0	25.0	2.63
	여자	63.8	51.4	5.4	2.7	13.5	0.0	5.4	2.7	18.9	2.74
연령	21세이하	54.2	56.0	4.0	0.0	16.0	0.0	8.0	4.0	12.0	2.48
	22세이상	80.9	44.7	2.6	5.3	13.2	2.6	2.6	0.0	28.9	2.86
종료사유	만기퇴소	65.6	59.5	2.4	2.4	14.3	2.4	2.4	2.4	14.3	2.67
	연장종료	71.9	31.8	0.0	4.5	18.2	0.0	9.1	0.0	36.4	2.68
혈연 여부	있음	64.7	47.7	2.3	2.3	15.9	2.3	4.5	2.3	22.7	2.74
	없음	78.6	52.4	4.8	4.8	14.3	0.0	4.8	0.0	19.0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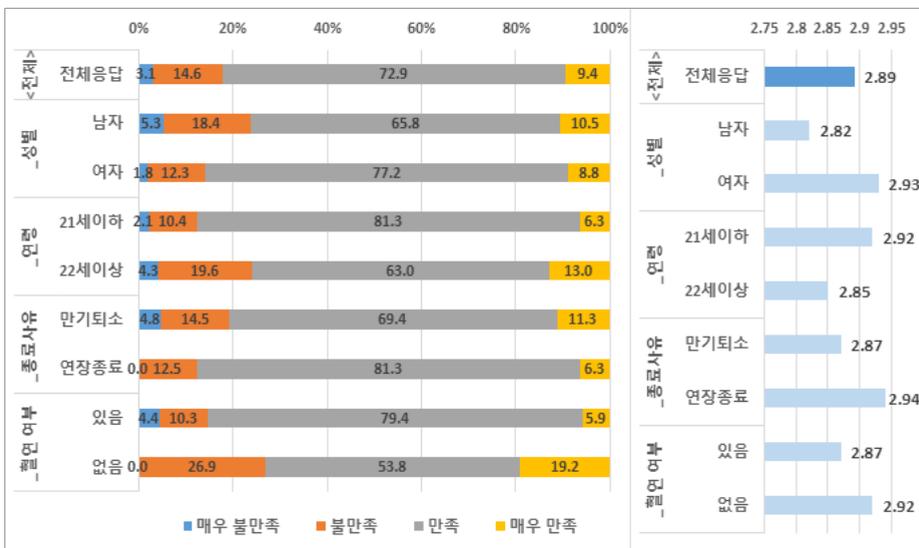
〈그림 4-7〉 아르바이트 경험률, 종류, 학업병행의 어려움

○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2.9%가 '만족'한다고 응답(평균 2.89점/4점기준)하여 대체적으로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특성별로는 성별은 여자, 연령은 21세이하,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형,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경우로 분류할 때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한편, 22세이상 그룹에서는 대학등록금 마련과 대학생활 기간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며, 이에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짐

〈표 4-11〉 대학생활 만족도

(단위: %, 점/4점기준)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1	14.6	72.9	9.4	2.89
성별	남자	5.3	18.4	65.8	10.5	2.82
	여자	1.8	12.3	77.2	8.8	2.93
연령	21세이하	2.1	10.4	81.3	6.3	2.92
	22세이상	4.3	19.6	63.0	13.0	2.85
종료사유	만기퇴소	4.8	14.5	69.4	11.3	2.87
	연장종료	0.0	12.5	81.3	6.3	2.94
혈연 여부	있음	4.4	10.3	79.4	5.9	2.87
	없음	0.0	26.9	53.8	19.2	2.92



〈그림 4-8〉 대학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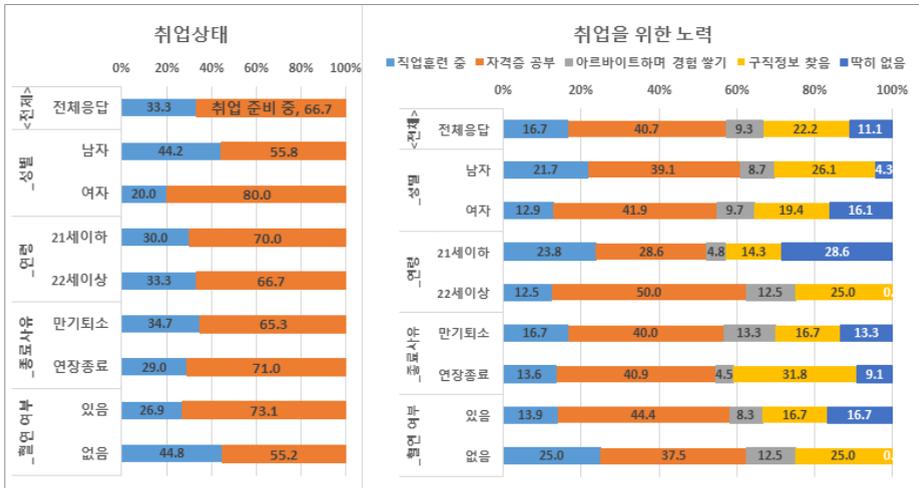
(3) 취업현황

- **(현 취업상태)** 현재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아동(84명) 중 현재 취업 중인 경우는 33.3%, 취업 준비 중인 아동은 66.7%로 나타남. 현재 취업 준비중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자격증 공부'가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직정보 찾음 22.2%, 직업훈련 16.7% 등의 순이었음. 한편, 취준생이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딱히 준비를 하는게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1%였음
- 취업상태의 경우 성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chi^2=5.53$, $p<.01$). '취업중'이라고 응답한 남자 아동은 44.2%인 반면, 여자 아동은 20%에 불과하였음

〈표 4-12〉 현재 취업상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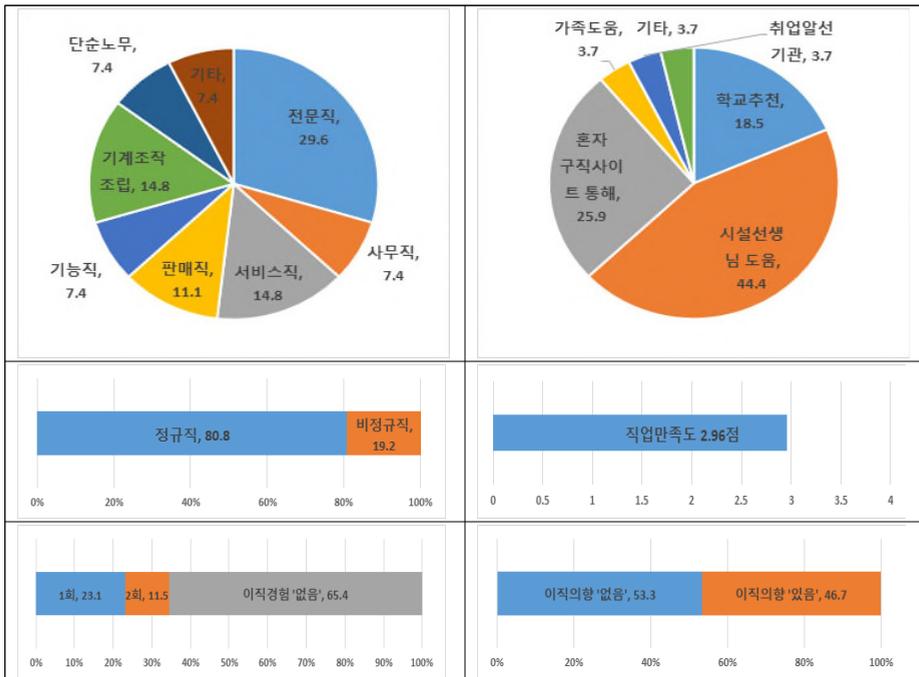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취업상태		취업을 위한 노력					
	취업중	취업 준비중	직업훈련 중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하며 경험 쌓기	구직정보 찾음	딱히 없음	
전체	33.3	66.7	16.7	40.7	9.3	22.2	11.1	
성별	남자	44.2	55.8	21.7	39.1	8.7	26.1	4.3
	여자	20.0	80.0	12.9	41.9	9.7	19.4	16.1
연령	21세이하	30.0	70.0	23.8	28.6	4.8	14.3	28.6
	22세이상	33.3	66.7	12.5	50.0	12.5	25.0	0.0
종료사유	만기퇴소	34.7	65.3	16.7	40.0	13.3	16.7	13.3
	연장종료	29.0	71.0	13.6	40.9	4.5	31.8	9.1
혈연 여부	있음	26.9	73.1	13.9	44.4	8.3	16.7	16.7
	없음	44.8	55.2	25.0	37.5	12.5	25.0	0.0



〈그림 4-9〉 현재 취업상태 및 현황

- **(직업분류)** 현재 취업중인 경우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전문직(29.6%), 서비스직(14.8%), 기계조작조립(14.8%), 판매직(11.1%)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고용형태)** 현재 취업중인 곳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80.8%, 비정규직 19.2%로 나타남
- **(급여수준)** 세금을 제외한 세후급여액은 평균 약 197만원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범위에 분포 하였음
- **(취업경로)** 현재 직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입사했는지에 대해 시설선생님의 도움으로 취업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구직사이트를 통해 25.9%, 학교추천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 직업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자의 57.7%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 23.1%, 매우 만족 19.2% 순으로 4점기준 평균 2.96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 **(이직/실직 경험)** 지금까지 이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취업자의 65.4%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회 23.1%, 2회 11.5% 였음
- **(이직 의향)** 향후 이직의향에 대해서는 '없다' 53.3%, '있다' 46.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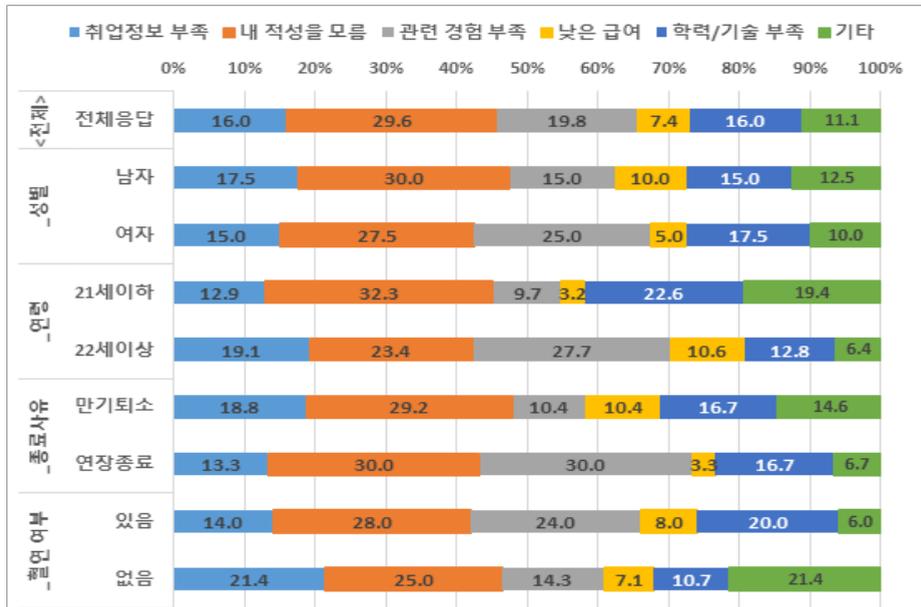
〈그림 4-10〉 현 취업자의 취업 관련 사항

-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나의 적성을 모름’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9.8%, 취업정보 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여자 아동은 관련 경험 부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는 자신의 적성을 모름, 22세이상은 관련 경험 부족 때문에, 종로사유별로는 연장종로 아동이 관련 경험 부족해서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표 4-13〉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단위: %)

구분	취업정보 부족	내 적성을 모름	관련 경험 부족	낮은 급여	학력/기술 부족	기타	
전체	16.0	29.6	19.8	7.4	16.0	11.1	
성별	남자	17.5	30.0	15.0	10.0	15.0	12.5
	여자	15.0	27.5	25.0	5.0	17.5	10.0
연령	21세이하	12.9	32.3	9.7	3.2	22.6	19.4
	22세이상	19.1	23.4	27.7	10.6	12.8	6.4
종로사유	만기퇴소	18.8	29.2	10.4	10.4	16.7	14.6
	연장종로	13.3	30.0	30.0	3.3	16.7	6.7
혈연 여부	있음	14.0	28.0	24.0	8.0	20.0	6.0
	없음	21.4	25.0	14.3	7.1	10.7	21.4



〈그림 4-11〉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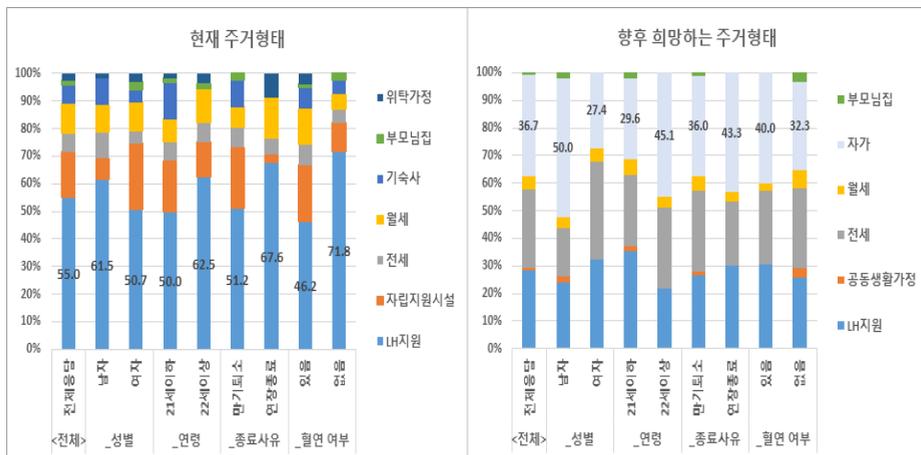
(4) 주거상황

- **(주거형태)**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5.0%가 LH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자립지원시설 16.7%, 월세 10.8% 등의 순이었음.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로는 자가(36.7%), LH주거지원과 전세가 각 28.4%로 높게 나타남. 보호종료아동에게 LH주거지원 사업은 현재나 향후 주거형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응답자특성별로 향후 희망 주거형태를 보면, 남자는 '자가', 여자는 LH지원과 전세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두드러졌음. 연령별로는 21세이하는 LH지원, 22세이상은 자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음

〈표 4-14〉 현재 및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단위: %)

구분	현재 주거형태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LH 지원	자립 지원 시설	전세	월세	기숙사	부모 남집	위탁 가정 거주	LH 지원	공동 생활 가정	전세	월세	자가	부모 남집	
전체	55.0	16.7	6.7	10.8	6.7	1.7	2.5	28.4	0.9	28.4	4.6	36.7	0.9	
성별	남자	61.5	7.7	9.6	9.6	9.6	0.0	1.9	23.9	2.2	17.4	4.3	50.0	2.2
	여자	50.7	23.9	4.5	10.4	4.5	3.0	3.0	32.3	0.0	35.5	4.8	27.4	0.0
연령	21세이하	50.0	18.3	6.7	8.3	13.3	1.7	1.7	35.2	1.9	25.9	5.6	29.6	1.9
	22세이상	62.5	12.5	7.1	12.5	0.0	1.8	3.6	21.6	0.0	29.4	3.9	45.1	0.0
종료 사유	만기토소	51.2	22.0	7.3	7.3	9.8	2.4	0.0	26.7	1.3	29.3	5.3	36.0	1.3
	연장종료	67.6	2.9	5.9	14.7	0.0	0.0	8.8	30.0	0.0	23.3	3.3	43.3	0.0
혈연 여부	있음	46.2	20.5	7.7	12.8	7.7	1.3	3.8	30.7	0.0	26.7	2.7	40.0	0.0
	없음	71.8	10.3	5.1	5.1	5.1	2.6	0.0	25.8	3.2	29.0	6.5	32.3	3.2



〈그림 4-12〉 현재 및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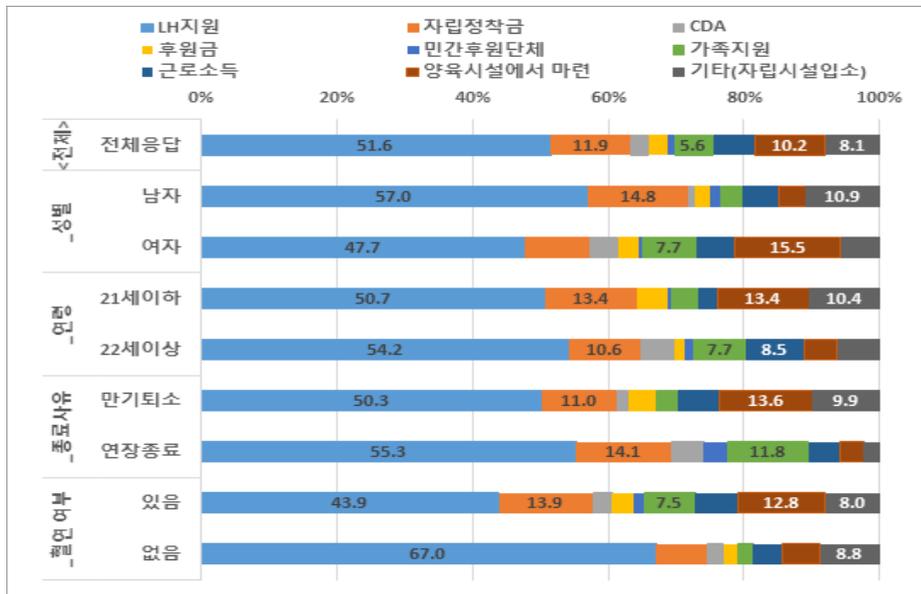
○ **(주거비용 마련방법)**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 마련 비용 방법은 LH지원(5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립정착금(11.9%) 활용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LH임대 등의 정부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립정착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100명 중 약 12명임. 응답자특성별로는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인 경우, 혈연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자립정착금 활용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4-15〉 주거비용 마련방법(1-2순위)

구분		LH 지원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	민간후원단체	가족지원	근로소득	양육시설에서 마련	기타(자립시설입소)
전체		51.6	11.9	2.5	2.8	1.1	5.6	6.3	10.2	8.1
성별	남자	57.0	14.8	0.8	2.3	1.6	3.1	5.5	3.9	10.9
	여자	47.7	9.7	3.9	3.2	0.6	7.7	5.8	15.5	5.8
연령	21세이하	50.7	13.4	0.0	4.5	0.7	3.7	3.0	13.4	10.4
	22세이상	54.2	10.6	4.9	1.4	1.4	7.7	8.5	4.9	6.3
종료사유	만기퇴소	50.3	11.0	1.6	4.2	0.0	3.1	6.3	13.6	9.9
	연장종료	55.3	14.1	4.7	0.0	3.5	11.8	4.7	3.5	2.4
혈연 여부	있음	43.9	13.9	2.7	3.2	1.6	7.5	6.4	12.8	8.0
	없음	67.0	7.7	2.2	2.2	0.0	2.2	4.4	5.5	8.8

(단위: %)

주) 종합=[(1순위빈도)*2+(2순위빈도)]/2



〈그림 4-13〉 주거비용 마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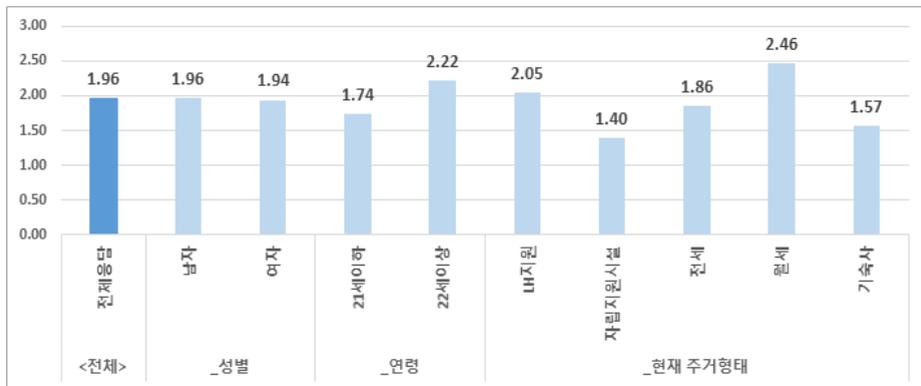
○ **(주거비용 부담감)** 현재 지출되고 있는 주거비용(임대료, 이자 등)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혀 부담안된다는 응답이 29.1% 순으로 높았음. 4점을 기준으로 1.96점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남. 현재 주거형태별로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2.46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하였음

- 주거비용 부담 수준은 연령별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t=-3.52$, $p<.001$). 21세이하 보다 22세이상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8세에 퇴소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제도에서 제외됨

〈표 4-16〉 주거비용 부담 수준

(단위: %, 점/4점기준)

구분	전혀 부담안됨	부담안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전체	29.1	47.9	21.4	1.7	1.96	
성별	남자	26.0	54.0	18.0	2.0	1.96
	여자	31.8	43.9	22.7	1.5	1.94
연령	21세이하	34.5	56.9	8.6	0.0	1.74
	22세이상	20.0	41.8	34.5	3.6	2.22
현재 주거 형태	내지원	16.9	61.5	21.5	0.0	2.05
	자립지원시설	65.0	30.0	5.0	0.0	1.40
	전세	42.9	28.6	28.6	0.0	1.86
	월세	15.4	30.8	46.2	7.7	2.46
기숙사	57.1	28.6	14.3	0.0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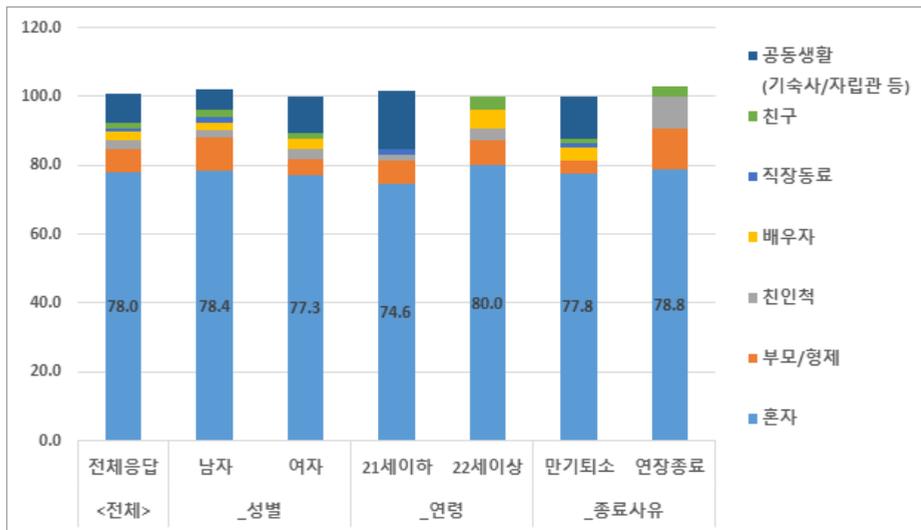
〈그림 4-14〉 주거비용 부담 수준

○ **(동거인 현황)**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혼자'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음. 응답자특성별로는 여자는 자립생활관 등 공동생활 응답이 좀 더 높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는 공동생활, 22세이상은 혼자라는 응답이 더 높았음.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는 부모/형제 또는 친인척 비율이 더 높았고, 만기퇴소는 공동생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4-17〉 현재 함께 사는 사람 (중복응답)

(단위: 케이스%)

구분	혼자	부모/형제	친인척	배우자	직장동료	친구	공동생활(기숙사/자립관 등)
전체	78.0	6.8	2.5	2.5	0.8	1.7	8.5
성별	남자	78.4	9.8	2.0	2.0	2.0	5.9
	여자	77.3	4.5	3.0	3.0	0.0	10.6
연령	21세이하	74.6	6.8	1.7	0.0	1.7	16.9
	22세이상	80.0	7.3	3.6	5.5	0.0	0.0
종료사유	만기퇴소	77.8	3.7	0.0	3.7	1.2	12.3
	연장종료	78.8	12.1	9.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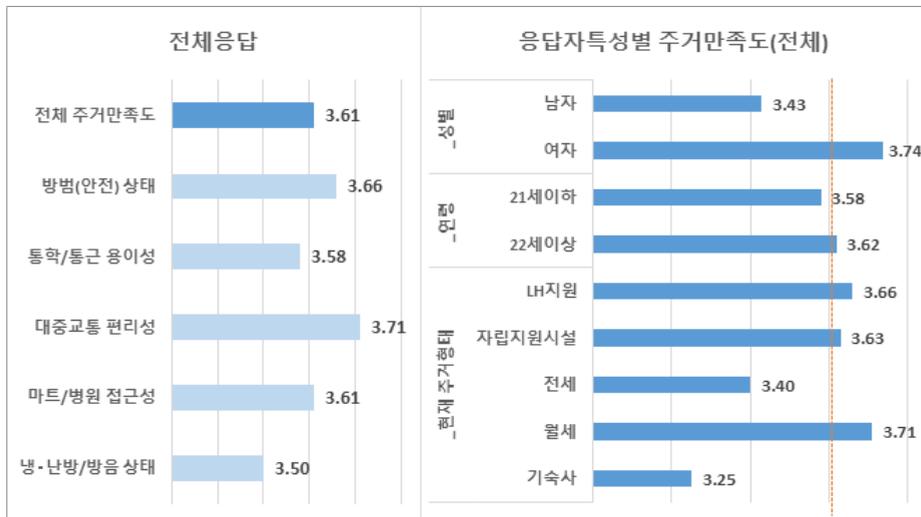
〈그림 4-15〉 현재 함께 사는 사람 (중복응답)

- **(거주환경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집) 상태와 주거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편리성 만족도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상태(냉·난방/방음 등) 만족도가 3.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체 주거만족도 평균은 3.61점으로 대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음
- 성별로는 주거상태($t=-2.76, p<.01$), 주거환경($t=-1.96, p<.05$), 전체만족도($t=-2.2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여자의 거주환경 만족도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8〉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5점만점)

구분	주거상태(냉·난방/방음 등)	주거환경(마트/병원)	대중교통 편리성	통학/통근 용이성	방법(안전) 상태	전체 주거만족도
전체	3.50	3.61	3.71	3.58	3.66	3.61
성별	남자	3.42	3.58	3.40	3.53	3.43
	여자	3.75	3.79	3.70	3.75	3.74
연령	21세이하	3.62	3.67	3.62	3.62	3.58
	22세이상	3.58	3.74	3.51	3.70	3.62
현재 주거 형태	나지원	3.67	3.82	3.65	3.67	3.66
	자립지원시설	3.45	3.70	3.55	3.70	3.63
	전세	3.50	3.38	3.13	3.88	3.40
	월세	3.77	4.00	3.85	3.38	3.71
기숙사	3.13	3.13	3.13	3.50	3.50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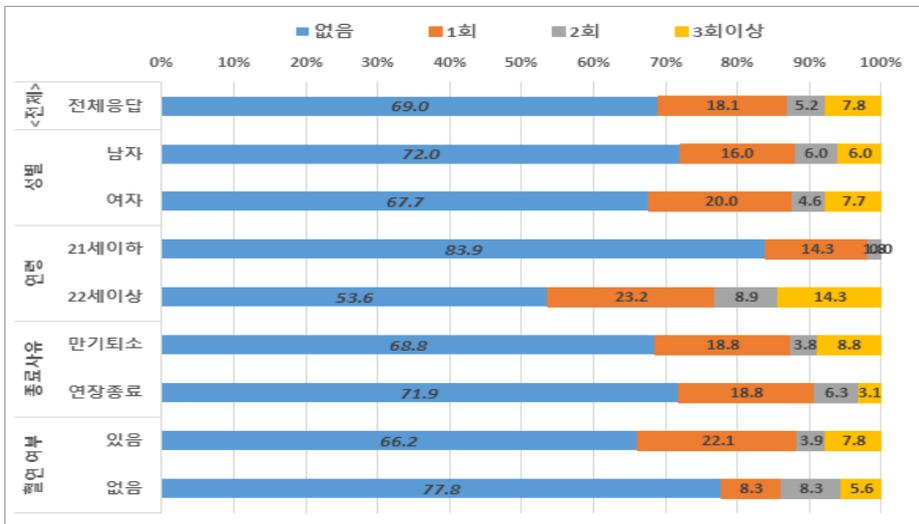
〈그림 4-16〉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 이전 경험)** 보호종료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경험은 응답자의 31.0%(36명)가 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횟수로는 1회 18.1%, 3회이상 7.8%, 2회 5.2%로 나타남. 한편, 이들의 이동 사유로는 ‘계약만료’ 사유가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이직)을 위해 29.4%, 학업위해 11.8% 등의 순으로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아동이 이사 경험률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22세이상,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혈연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사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4-19〉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경험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1회	2회	3회이상	
전체		69.0	31.0	18.1	5.2	7.8
성별	남자	72.0	28.0	16.0	6.0	6.0
	여자	67.7	32.3	20.0	4.6	7.7
연령	21세이하	83.9	16.1	14.3	1.8	0.0
	22세이상	53.6	46.4	23.2	8.9	14.3
종료사유	만기퇴소	68.8	31.2	18.8	3.8	8.8
	연장종료	71.9	28.1	18.8	6.3	3.1
혈연 여부	있음	66.2	33.8	22.1	3.9	7.8
	없음	77.8	22.2	8.3	8.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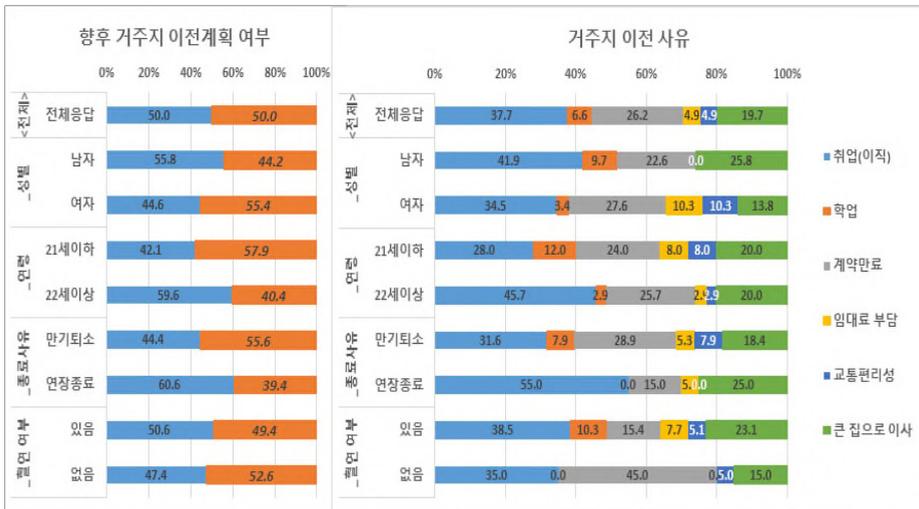
〈그림 4-17〉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경험

- (향후 거주지 이전 계획) 앞으로 이사계획이 있는지 살펴보면, 응답자의 50%가 거주지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전 사유로는 취업(이직) 사유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만료(26.2%), 더 큰 집으로 이사(19.7%) 등의 순이었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은 앞서 여자 아동이 이사경험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사계획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유로는 임대료 부담과 교통편리성을 위해 이사를 계획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남자 아동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21세이하 아동이 이사계획이 더 높았고, 이 사사유로는 학업을 위한 사유가 더 많았고, 22세이상은 취업을 위한 목적이 더 많았음

〈표 4-20〉 향후 거주지 이전계획 및 사유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 거주지 이전 사유					
				취업(이직)	학업	계약만료	임대료 부담	교통 편리성	큰 집으로 이사
전체		50.0	50.0	37.7	6.6	26.2	4.9	4.9	19.7
성별	남자	55.8	44.2	41.9	9.7	22.6	0.0	0.0	25.8
	여자	44.6	55.4	34.5	3.4	27.6	10.3	10.3	13.8
연령	21세이하	42.1	57.9	28.0	12.0	24.0	8.0	8.0	20.0
	22세이상	59.6	40.4	45.7	2.9	25.7	2.9	2.9	20.0
종료사유	만기퇴소	44.4	55.6	31.6	7.9	28.9	5.3	7.9	18.4
	연장종료	60.6	39.4	55.0	0.0	15.0	5.0	0.0	25.0
혈연 여부	있음	50.6	49.4	38.5	10.3	15.4	7.7	5.1	23.1
	없음	47.4	52.6	35.0	0.0	45.0	0.0	5.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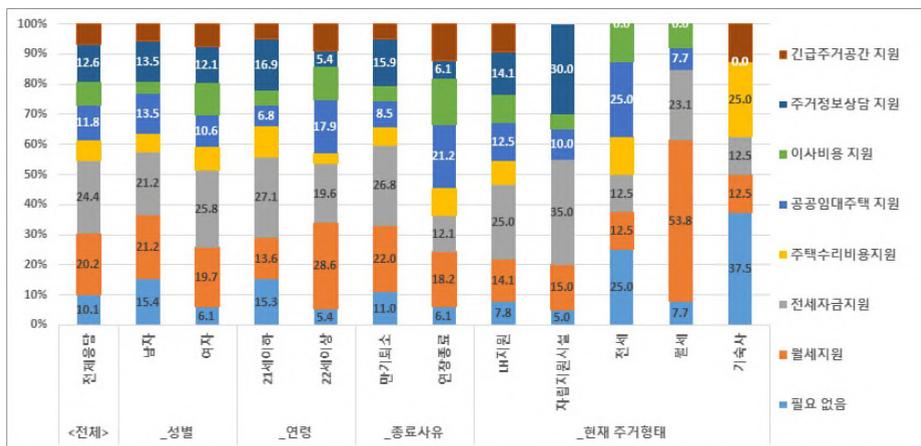
〈그림 4-18〉 향후 거주지 이전계획 및 사유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24.4%가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월세지원(20.2%), 주거정보상담(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아동은 전세자금 지원과 이사비용 지원, 남자 아동은 필요없음과 월세지원 필요가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21세이하는 전세자금 지원, 22세이상은 월세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가 더 높았음. 종로사유별로는 만기퇴소는 전세자금지원과 월세지원, 연장종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이사비용 지원 필요도가 더 높았음. 현재주거형태별로는 전세 및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필요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는데, 월세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월세지원 필요를 가장 희망하였음

〈표 4-21〉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월세지원	전세자금 지원	주택수리 비용지원	공공임대 주택 지원	이사비용 지원	주거정보 상담 지원	긴급주거 공간 지원	
전체	10.1	20.2	24.4	6.7	11.8	7.6	12.6	6.7	
성별	남자	15.4	21.2	21.2	5.8	13.5	3.8	13.5	5.8
	여자	6.1	19.7	25.8	7.6	10.6	10.6	12.1	7.6
연령	21세이하	15.3	13.6	27.1	10.2	6.8	5.1	16.9	5.1
	22세이상	5.4	28.6	19.6	3.6	17.9	10.7	5.4	8.9
종로 사유	만기퇴소	11.0	22.0	26.8	6.1	8.5	4.9	15.9	4.9
	연장종로	6.1	18.2	12.1	9.1	21.2	15.2	6.1	12.1
현재 주거 형태	나지원	7.8	14.1	25.0	7.8	12.5	9.4	14.1	9.4
	자립지원시설	5.0	15.0	35.0	0.0	10.0	5.0	30.0	0.0
	전세	25.0	12.5	12.5	12.5	25.0	12.5	0.0	0.0
	월세	7.7	53.8	23.1	0.0	7.7	7.7	0.0	0.0
기숙사	37.5	12.5	12.5	25.0	0.0	0.0	0.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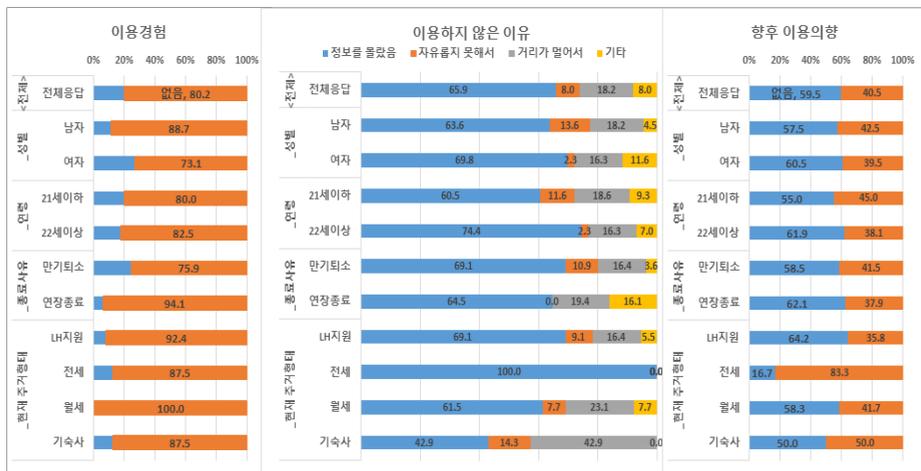
〈그림 4-19〉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아동자립지원시설* 이용경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동자립지원시설(삼성자립생활관)을 이용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80%가 이용경험이 없었으며, 주된 이유로는 ‘정보를 몰랐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았음. 향후 이용의사에 있어서는 약 40%가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로는 여자 아동의 이용경험률이 더 높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남자는 ‘자유롭지 못함’ 응답이 높고, 여자는 ‘정보를 몰랐다’ 응답이 더 높았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남자 아동이 더 높았음. 현재 주거 형태별로는 전세 거주 아동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LH지원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22〉 아동자립지원시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이용경험		⇒ 이용하지 않은 이유				⇒ 향후 이용의향		
	있음	없음	정보를 몰랐음	자유롭지 못해서	거리가 멀어서	기타	없음	있음	
전체	19.8	80.2	65.9	8.0	18.2	8.0	59.5	40.5	
성별	남자	11.3	88.7	63.6	13.6	18.2	4.5	57.5	42.5
	여자	26.9	73.1	69.8	2.3	16.3	11.6	60.5	39.5
연령	21세이하	20.0	80.0	60.5	11.6	18.6	9.3	55.0	45.0
	22세이상	17.5	82.5	74.4	2.3	16.3	7.0	61.9	38.1
종료 사유	만기퇴소	24.1	75.9	69.1	10.9	16.4	3.6	58.5	41.5
	연장종료	5.9	94.1	64.5	0.0	19.4	16.1	62.1	37.9
현재 주거 형태	LH지원	7.6	92.4	69.1	9.1	16.4	5.5	64.2	35.8
	전세	12.5	87.5	100.0	0.0	0.0	0.0	16.7	83.3
	월세	0.0	100.0	61.5	7.7	23.1	7.7	58.3	41.7
	기숙사	12.5	87.5	42.9	14.3	42.9	0.0	50.0	50.0



〈그림 4-20〉 아동자립지원시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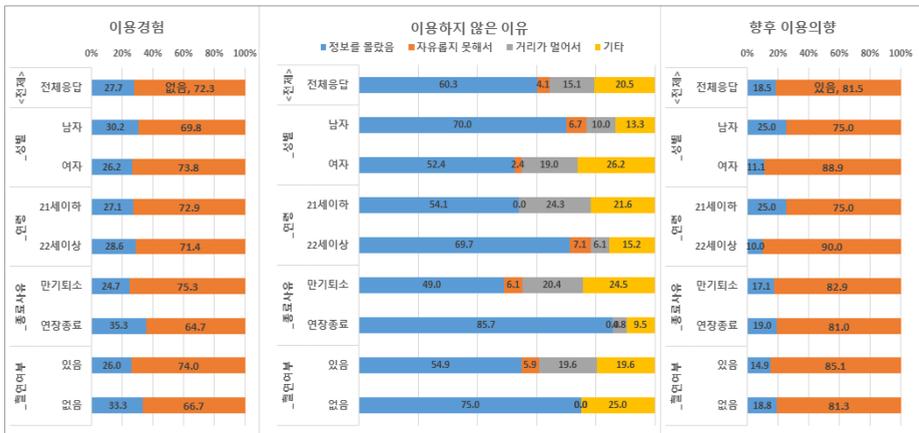
* 아동자립지원시설: 만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 제공 등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경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2.3%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전체 아동의 27.7%만이 서비스를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를 몰라서'가 60.3%로 가장 많았음.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용의향으로 81.5%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 아동의 이용경험이 더 높았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여자 아동의 의향이 더 높았음.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 유형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았고,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이용경험이 높았음. 향후 이용의향에서는 성별이 여자 아동일 경우, 연령이 22세이상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3〉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이용경험		⇒ 이용하지 않은 이유				⇒ 향후 이용의향		
	있음	없음	정보를 몰랐음	자유롭지 못해서	거리가 멀어서	기타	없음	있음	
전체	27.7	72.3	60.3	4.1	15.1	20.5	18.5	81.5	
성별	남자	30.2	69.8	70.0	6.7	10.0	13.3	25.0	75.0
	여자	26.2	73.8	52.4	2.4	19.0	26.2	11.1	88.9
연령	21세이하	27.1	72.9	54.1	0.0	24.3	21.6	25.0	75.0
	22세이상	28.6	71.4	69.7	7.1	6.1	15.2	10.0	90.0
종료 사유	만기퇴소	24.7	75.3	49.0	6.1	20.4	24.5	17.1	82.9
	연장종료	35.3	64.7	85.7	0.0	4.8	9.5	19.0	81.0
혈연 여부	있음	26.0	74.0	54.9	5.9	19.6	19.6	14.9	85.1
	없음	33.3	66.7	75.0	0.0	0.0	25.0	18.8	81.3



〈그림 4-21〉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경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대상 LH임대 및 전세주택 임대료(16만원), 생활집기 구입비 연 50만원, 사례관리비 매월 2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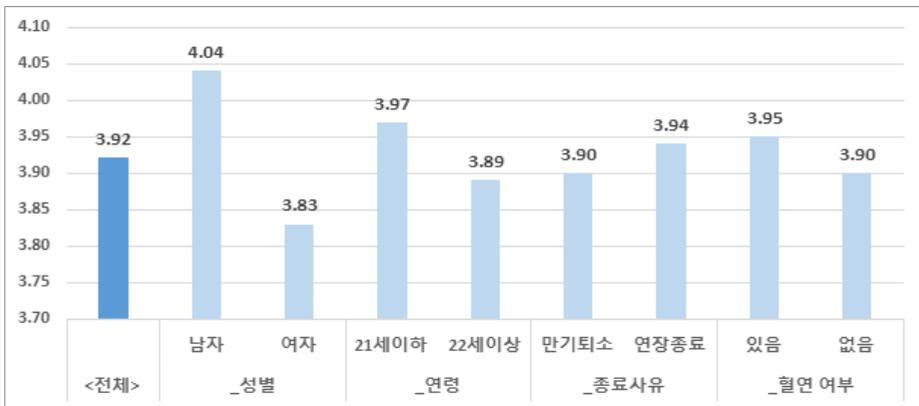
(5) 경제상황

- **(경제적 상황)** 현재 체감하고 있는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 '매우 어려움(1점)'에서 '매우 여유로움(7점)'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55.5%가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7점만점을 기준으로 3.92점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평균 3.92점보다 낮게 나타난 응답자 특성은 성별로는 여자(3.83점), 연령별로는 22세이상(3.89점),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3.90점),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경우(3.90점) 그룹에서 전체평균보다 낮았음. 가장 높은 그룹은 남자로 분류될 경우이며, 가장 낮은 그룹은 여자로 분류될 경우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주관적 경제수준

(단위: %, 점/7점기준)

구분	매우 어려움 ←----- 보통 -----> 매우 여유로움							평균	
	1	2	3	4	5	6	7		
전체	0.8	8.4	16.0	55.5	11.8	6.7	0.8	3.92	
성별	남자	1.9	7.7	11.5	55.8	11.5	9.6	1.9	4.04
	여자	0.0	9.1	19.7	54.5	12.1	4.5	0.0	3.83
연령	21세이하	1.7	5.0	11.7	65.0	10.0	6.7	0.0	3.97
	22세이상	0.0	12.5	19.6	44.6	14.3	7.1	1.8	3.89
종료사유	만기퇴소	1.2	9.8	12.2	58.5	12.2	4.9	1.2	3.90
	연장종료	0.0	6.1	24.2	48.5	12.1	9.1	0.0	3.94
혈연 여부	있음	0.0	11.7	13.0	51.9	15.6	7.8	0.0	3.95
	없음	2.6	2.6	20.5	61.5	5.1	5.1	2.6	3.90



〈그림 4-22〉 주관적 경제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 여부) 보호종료 후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수혜율은 91.7%로 가장 높았고, 의료급여는 64.3%, 주거급여는 42.9%, 교육급여는 8.3%였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로는 여자 아동, 연령별로는 21세이하,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수급권 수혜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성별($X^2=4.80$, $p<.05$) 및 연령별($X^2=9.97$, $p<.01$)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취업비율이 더 높았던 남자 아동보다는 여자 아동, 22세이상 보다 대학진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급권이 연장되는 21세이하 아동의 수급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음

〈표 4-25〉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

(단위: %, 케이스%)

구분	비수급	수급	⇒ 현재 받고 있는 수급권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체	30.0	70.0	91.7	64.3	42.9	8.3	
성별	남자	39.6	60.4	87.5	59.4	34.4	9.4
	여자	21.2	78.8	94.2	67.3	48.1	7.7
연령	21세이하	16.9	83.1	93.9	55.1	36.7	10.2
	22세이상	43.9	56.1	87.5	75.0	53.1	3.1
종료사유	만기퇴소	26.8	73.2	95.0	56.7	31.7	5.0
	연장종료	35.3	64.7	86.4	81.8	77.3	18.2
혈연 여부	있음	30.8	69.2	88.9	63.0	44.4	7.4
	없음	28.2	71.8	100.0	64.3	35.7	10.7



〈그림 4-23〉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 현황

- **(자립금 수령 현황)** 보호종료 당시 디딤씨앗통장(CDA) 및 후원금 수령액, 그리고 현재 월 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CDA는 평균 499만원, 후원금은 460만원, 월평균 소득은 95만원이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호종료 시 약 1,000만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퇴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특성별로는 CDA 금액은 혈연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아동에서 가장 높았고, 22세 이상으로 분류될 때 가장 낮았음. 후원금은 가족이 없다고 분류될 경우 가장 높고, 22세이상으로 분류될 때 가장 낮았음. 월평균 소득은 남자 아동에서 가장 높았고, 여자 아동으로 분류될 때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월 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117만원 여자 72만원으로 여자 아동보다 남자 아동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21세이하 아동보다 22세이상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음.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아동의 CDA, 후원금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음

〈표 4-26〉 자립금 수령 현황

(단위: 만원)

구분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			월 평균 소득		
	평균	중위값	최빈값	평균	중위값	최빈값	평균	중위값	최빈값
전체	499.4	352.5	300	460.1	300	200	95.0	80.0	80
성별	남자	542.6	t=.90	370.2	t=-1.73	117.7	t=3.03**	72.5	t=-2.01*
	여자	469.5		536.4		78.7			
연령	21세이하	549.3	t=1.23	559.1	t=2.18*	109.6	t=-2.01*	87.7	t=-1.32
	22세이상	455.1		347.8		90.4			
종료사유	만기퇴소	470.4	t=-1.73	482.3	t=.36	95.5	t=.31	80.4	t=-1.32
	연장종료	632.2		435.9		90.4			
혈연 여부	있음	381.8	t=-3.84***	361.0	t=-2.39*	87.3	t=-1.32	72.5	t=-2.01*
	없음	698.3		606.4		109.5			

*p<.05, **p<.01, ***p<.001



〈그림 4-24〉 경제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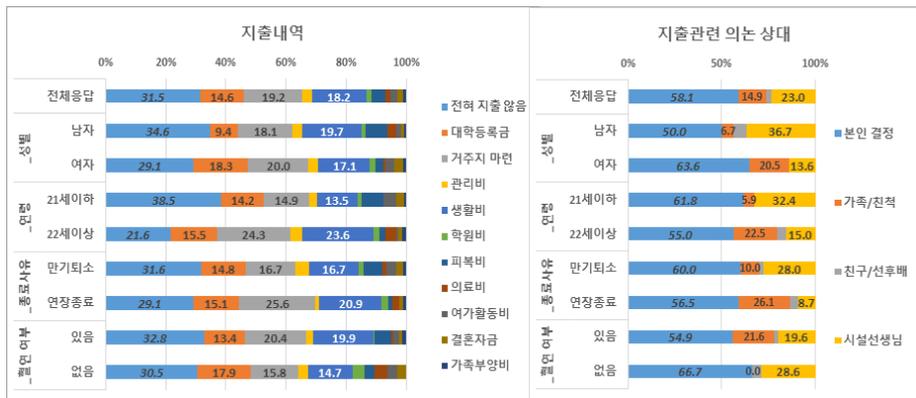
○ **(자립금 지출사항)** 자립 당시 수령한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 등의 지출내역을 살펴 보면, 거주지 마련으로 사용한 경우가 1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료품, 교통/통신비 등의 생활비(18.2%), 대학등록금/교재비(14.6%) 등이 대부분이었음. 지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고, 시설선생님과 상의했다는 응답이 23.0%, 가족/친척과 상의 14.9% 등의 순이었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 아동은 대학등록금, 남자아동은 생활비와 피복비 항목이 더 높았고, 지출 관련해서는 혼자서 결정하는 비율이 여자 아동이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22세이상은 거주지와 생활비, 21세이하는 지출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으며, 21세이하는 시설선생님과 상의해 지출한 비중이 더 높았음. 연장종료는 거주지 마련과 생활비, 만기퇴소는 피복비와 여가비 비중이 더 높았으며, 본인이 지출결정은 만기퇴소에서 더 높았음

〈표 4-27〉 자립금(자립정착금/CDA/후원금 등) 지출사항(1-2순위)

(단위: %)

구분	지출항목											지출관련 의논 상대			
	전혀 지출 않음	대학 등록 금	거주지 마련	관리 비	생활 비	학원 비	피복 비	의료 비	여가 활동 비	결혼 자금	가족 부양 비	본인 결정	가족/ 친척	친구/ 선후 배	시설 선생 님
전체	31.5	14.6	19.2	3.3	18.2	1.7	4.6	1.7	2.3	2.0	1.0	58.1	14.9	2.7	23.0
성별	남자	34.6	9.4	18.1	3.1	19.7	1.6	7.1	3.1	1.6	0.8	50.0	6.7	6.7	36.7
	여자	29.1	18.3	20.0	3.4	17.1	1.7	2.9	0.6	2.9	1.1	63.6	20.5	0.0	13.6
연령	21세이하	38.5	14.2	14.9	2.7	13.5	1.4	7.4	0.0	4.1	2.7	61.8	5.9	0.0	32.4
	22세이상	21.6	15.5	24.3	4.1	23.6	2.0	2.0	3.4	0.7	1.4	55.0	22.5	5.0	15.0
종료 사유	만기퇴소	31.6	14.8	16.7	4.3	16.7	1.4	6.2	1.4	3.3	2.4	60.0	10.0	2.0	28.0
	연장종료	29.1	15.1	25.6	1.2	20.9	2.3	1.2	2.3	0.0	1.2	56.5	26.1	4.3	8.7
혈연 여부	있음	32.8	13.4	20.4	2.5	19.9	0.5	5.5	0.5	2.0	1.0	54.9	21.6	2.0	19.6
	없음	30.5	17.9	15.8	3.2	14.7	4.2	3.2	4.2	3.2	0.0	66.7	0.0	4.8	28.6

주) 종합=(1순위빈도)*2+(2순위빈도)/2



〈그림 4-25〉 자립금(자립정착금/CDA/후원금 등) 지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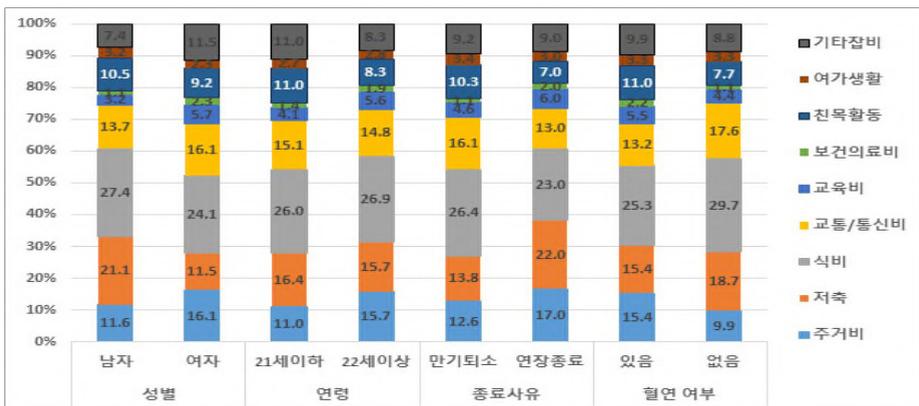
○ **(생활비 지출)** 현재 월평균 생활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약 91만원을 지출하는 가운데, 식비가 2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저축(16.1%), 교통/통신비(14.9%), 주거비(14.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성별로는 남자는 저축 및 식비, 여자는 주거비 및 기타잡비(의류/신발 등) 항목의 지출비용이 좀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는 기타잡비 및 친목활동, 22세이상은 주거비 항목에서 지출액의 비중이 더 높았음. 종로사유별로는 만기퇴소는 식비와 교통/통신비, 친목활동비 비중이 더 높고, 연장종로는 주거비와 저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비와 친목활동비, 없는 경우는 저축과 식비, 교통/통신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한편, 응답자 14%(17명)의 아동이 부채(빚)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금액은 평균 732만원이었으며, 사유는 학자금(9명), 생활비(5명), 주거지(3명) 마련 등이었음

〈표 4-28〉 생활비 지출 항목

(단위: 만원, %)

구분	1)주거비	2)저축	3)식비	4)교통/통신비	5)교육비	6)보건의료비	7)친목활동비	8)여가생활	9)기타잡비	총지출	
전체	13	15	24	13	4	2	9	3	9	91	
	14.3	16.1	26.1	14.9	4.9	1.7	9.6	3.0	9.4	100.0	
성별	남자	11	20	26	13	3	1	10	3	7	95
	여자	14	10	21	14	5	2	8	2	10	87
연령	21세이하	8	12	19	11	3	1	8	2	8	73
	22세이상	17	17	29	16	6	2	9	3	9	108
종로사유	만기퇴소	11	12	23	14	4	1	9	3	8	87
	연장종로	17	22	23	13	6	2	7	3	9	100
혈연여부	있음	14	14	23	12	5	2	10	3	9	91
	없음	9	17	27	16	4	1	7	3	8	91



〈그림 4-26〉 생활비 지출 항목

(6) 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및 정책적 지원 욕구

- **(자립준비교육 수료)** 보호 당시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 수료 정도를 살펴보면, 4점을 기준으로 일상생활기술(요리, 집 관리 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기술과 직장생활 기술 교육 수료 정도가 가장 낮았음. 대체적으로 자립준비 교육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자 아동, 연령별로는 21세이하에서 높았으며,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아동에서 교육받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29〉 자립준비교육 수료 정도

(단위: 점/4점만점)

구분	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 기술	지역사회활 용기술	경제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취업 기술	직장생활 기술	자립 실천 기술	
전체	3.03	2.96	2.99	2.96	2.93	2.97	2.94	2.99	
성별	남자	3.06	3.06	3.06	3.02	3.04	3.02	3.29	3.10
	여자	3.00	2.88	2.94	2.91	2.85	2.92	2.67	2.91
연령	21세이하	3.20	3.13	3.15	3.14	3.07	3.10	2.93	3.13
	22세이상	2.83	2.78	2.85	2.76	2.81	2.81	2.96	2.83
종료 사유	만기퇴소	3.10	3.04	3.06	2.99	2.99	3.04	3.09	3.00
	연장종료	2.85	2.76	2.82	2.85	2.74	2.79	2.56	2.91

주) 전혀 받지 않음(1점) ~ 매우 많이 받음(4점)

- **(자립준비교육 도움정도)** 자립준비교육이 보호종료 후 자립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면, 직장생활기술(2.90점)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 아동은 교육받은 정도가 남자 아동보다 낮았으나 도움도는 더 높게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21세이하,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아동들이 교육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고, 도움되었다는 응답도 더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자립준비교육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0〉 자립준비교육이 도움 된 정도

(단위: 점/4점만점)

구분	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 기술	지역사회활 용기술	경제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취업 기술	직장생활 기술	자립 실천 기술	
전체	3.17	3.01	3.13	3.03	3.03	3.01	2.90	3.06	
성별	남자	3.10	2.92	3.04	3.00	3.02	2.98	2.92	3.12
	여자	3.23	3.08	3.20	3.05	3.03	3.03	2.88	3.02
연령	21세이하	3.22	3.08	3.22	3.17	3.08	3.10	2.97	3.15
	22세이상	3.13	2.94	3.08	2.87	2.96	2.90	2.83	2.96
종료 사유	만기퇴소	3.21	3.03	3.16	3.04	3.04	3.05	2.94	3.05
	연장종료	3.09	3.00	3.06	3.00	2.97	2.91	2.78	3.06

주) 전혀 도움 안 됨(1점) ~ 매우 많이 도움 됨(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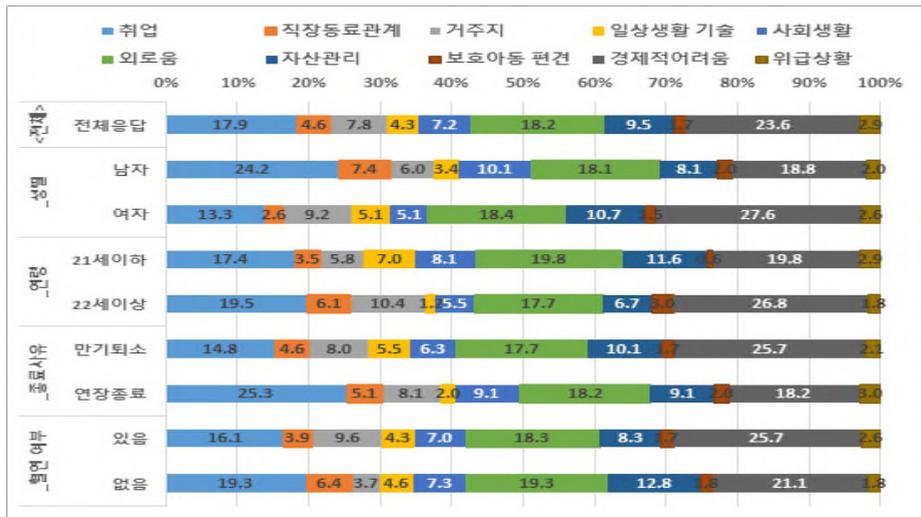
- (보호종료 후 어려웠던 점) 보호종료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응답자의 23.6%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외로움(18.2%), 취업(17.9%), 자산관리(9.5%) 등의 순이었음. 보호종료 후 겪는 어려움의 강도와 순위는 응답자 특성별로 다소 상이한 형태를 보였음

〈표 4-31〉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1-2순위)

(단위: %)

구분	취업	동료 관계	거주지	생활 기술	사회 생활	외로움	자산 관리	보호 편견	경제 문제	위급 상황	기타	
전체	17.9	4.6	7.8	4.3	7.2	18.2	9.5	1.7	23.6	2.9	2.3	
성별	남자	24.2	7.4	6.0	3.4	10.1	18.1	8.1	2.0	18.8	2.0	0.0
	여자	13.3	2.6	9.2	5.1	5.1	18.4	10.7	1.5	27.6	2.6	4.1
연령	21세이하	17.4	3.5	5.8	7.0	8.1	19.8	11.6	0.6	19.8	2.9	3.5
	22세이상	19.5	6.1	10.4	1.2	5.5	17.7	6.7	3.0	26.8	1.8	1.2
종료사유	만기퇴소	14.8	4.6	8.0	5.5	6.3	17.7	10.1	1.7	25.7	2.1	3.4
	연장종료	25.3	5.1	8.1	2.0	9.1	18.2	9.1	2.0	18.2	3.0	0.0
혈연 여부	있음	16.1	3.9	9.6	4.3	7.0	18.3	8.3	1.7	25.7	2.6	2.6
	없음	19.3	6.4	3.7	4.6	7.3	19.3	12.8	1.8	21.1	1.8	1.8

주) 종합=[(1순위빈도)*2+(2순위빈도)]/2



〈그림 4-27〉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종료사유		혈연 여부	
		남자	여자	21세이하	22세이상	만기	연장	있음	없음
1위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외로움	경제문제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경제문제
2위	외로움	경제문제	외로움	경제문제	취업	외로움	경제문제	외로움	취업
3위	취업	외로움	취업	취업	외로움	취업	외로움	취업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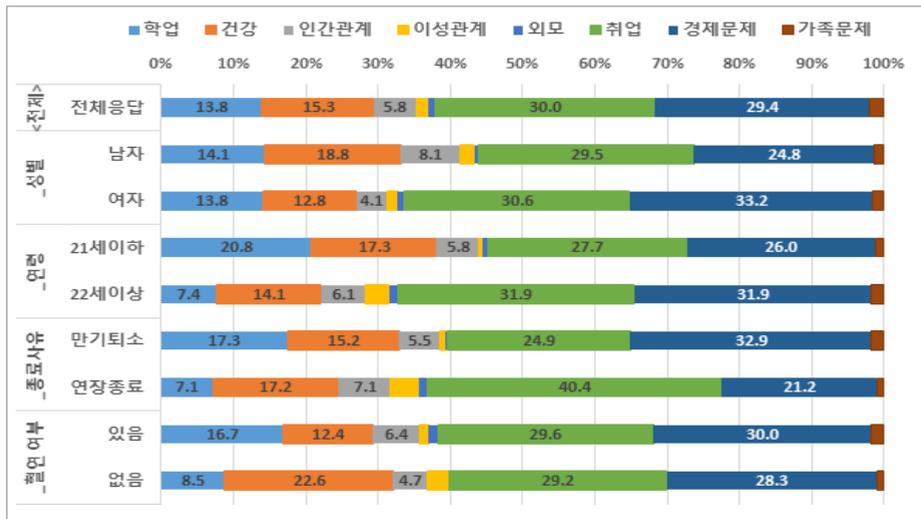
○ **(고민-걱정)** 현재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걱정/고민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30.0%가 '취업'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29.4), 신체/정서 등의 건강문제(15.3%), 학업(1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59.4%로 100명 중 약 60명은 이에 해당함

〈표 4-32〉 현재 가장 큰 고민-걱정(1-2순위)

(단위: %)

구분	학업	건강	인간관계	이성관계	외모	취업	경제문제	가족문제	기타	
전체	13.8	15.3	5.8	1.7	0.9	30.0	29.4	2.0	1.2	
성별	남자	14.1	18.8	8.1	2.0	0.7	29.5	24.8	1.3	0.7
	여자	13.8	12.8	4.1	1.5	1.0	30.6	33.2	1.5	1.5
연령	21세이하	20.8	17.3	5.8	0.6	0.6	27.7	26.0	1.2	0.0
	22세이상	7.4	14.1	6.1	3.1	1.2	31.9	31.9	1.8	2.5
종료사유	만기퇴소	17.3	15.2	5.5	0.8	0.4	24.9	32.9	1.7	1.3
	연장종료	7.1	17.2	7.1	4.0	1.0	40.4	21.2	1.0	1.0
혈연 여부	있음	16.7	12.4	6.4	1.3	1.3	29.6	30.0	1.7	0.4
	없음	8.5	22.6	4.7	2.8	0.0	29.2	28.3	0.9	2.8

주) 종합=(1순위빈도)*2+(2순위빈도)/2



〈그림 4-28〉 현재 가장 큰 고민-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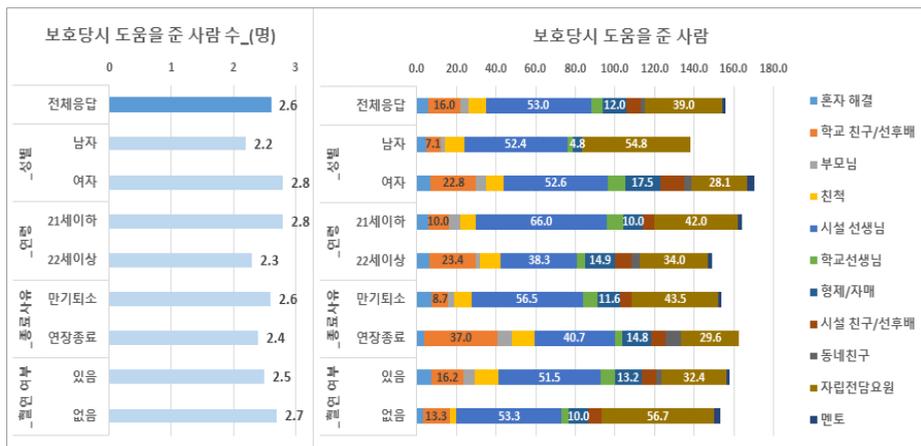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종료사유		혈연 여부	
		남자	여자	21세이하	22세이상	만기	연장	있음	없음
1위	취업	취업	경제문제	취업	취업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취업
2위	경제문제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3위	건강	건강	학업	학업	건강	학업	건강	학업	건강

○ **(보호당시 조연/도움을 주었던 사람)** 시설·그룹홈 및 가정위탁 보호 당시, 진로/진학/취업 등 고민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평균 2.6명이었으며,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는 시설(그룹홈)의 생활지도사 선생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학교 친구/선·후배,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한편, 도움을 준 사람의 수는 성별이 여자 아동일 경우, 21세이하일 경우에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이 남자일 경우 2.2명으로 가장 낮았음. 그 대상으로는 남자 아동은 자립전담요원선생님, 여자 아동은 학교 및 시설의 친구/선·후배, 형제자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1세이하는 시설선생님, 22세이상은 학교 친구/선·후배, 만기퇴소는 자립전담요원선생님, 연장종료는 학교 친구/선·후배, 혈연이 있는 경우는 친척, 없는 경우는 자립전담요원선생님 이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33〉 보호당시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중복응답)

(단위: 명, 케이스%)

구분	사람 수	혼자 해결	학교 친구/선·후배	부모님	친척	시설 선생님	학교 선생님	형제/자매	시설 친구/선·후배	동네 친구	자립전담요원	멘토	
전체	2.6	6.0	16.0	4.0	9.0	53.0	6.0	12.0	7.0	2.0	39.0	2.0	
성별	남자	2.2	4.8	7.1	2.4	9.5	52.4	2.4	4.8	0.0	54.8	0.0	
	여자	2.8	7.0	22.8	5.3	8.8	52.6	8.8	17.5	12.3	3.5	28.1	3.5
연령	21세이하	2.8	6.0	10.0	6.0	8.0	66.0	8.0	10.0	6.0	0.0	42.0	2.0
	22세이상	2.3	6.4	23.4	2.1	10.6	38.3	4.3	14.9	8.5	4.3	34.0	2.1
종료 사유	만기퇴소	2.6	7.2	8.7	2.9	8.7	56.5	7.2	11.6	5.8	0.0	43.5	1.4
	연장종료	2.4	3.7	37.0	7.4	11.1	40.7	3.7	14.8	7.4	7.4	29.6	0.0
혈연 여부	있음	2.5	7.4	16.2	5.9	11.8	51.5	7.4	13.2	7.4	2.9	32.4	1.5
	없음	2.7	3.3	13.3	0.0	3.3	53.3	3.3	10.0	6.7	0.0	56.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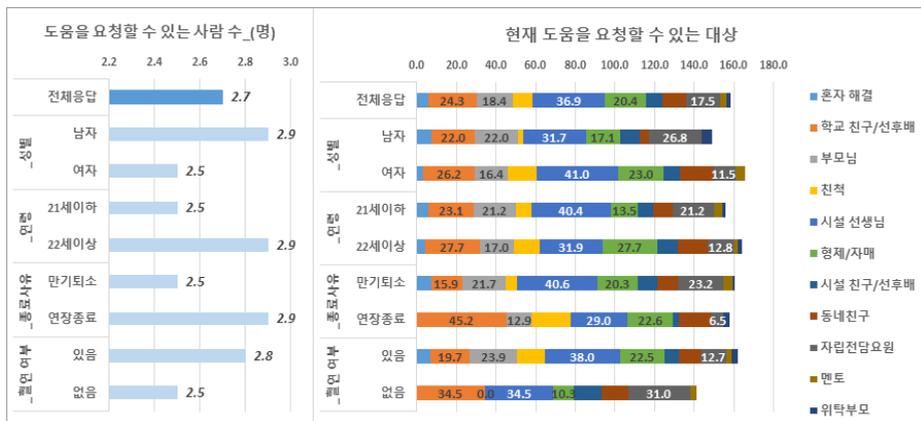
〈그림 4-29〉 보호당시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중복응답)

○ (보호종료 후 조연/도움을 주는 사람) 시설·그룹홈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7명으로 보호당시 도움을 줬던 사람 수와 유사하여, 사회정서적 지지체계 정도가 보호 전이나 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 대상으로는 시설(그룹홈)의 생활지도사 선생님이 가장 많았고, 학교의 친구/선후배, 형제/자매, 자립전담요원선생님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음. 한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성별이 남자 아동일 경우, 22세이상일 경우, 연장종료일 경우에 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대상으로는 남자는 자립전담요원, 여자는 친척과 형제/자매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21세이하는 자립전담요원, 22세이상은 동네킨구와 형제/자매, 만기퇴소는 시설 선생님과 자립전담요원, 연장종료는 학교 친구/선후배와 친척, 가족 있는 경우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가족이 없는 경우 학교 친구/선후배와 자립전담요원 선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4〉 보호종료 후 조연/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단위: 명, 케이스%)

구분	사람 수	혼자 해결	학교 친구/선후배	부모님	친척	시설 선생님	형제/자매	시설 친구/선후배	동네킨구	자립전담요원	멘토	위탁부모	
전체	2.7	5.8	24.3	18.4	9.7	36.9	20.4	8.7	11.7	17.5	2.9	1.9	
성별	남자	2.9	7.3	22.0	22.0	2.4	31.7	17.1	9.8	4.9	26.8	0.0	4.9
	여자	2.5	3.3	26.2	16.4	14.8	41.0	23.0	8.2	16.4	11.5	4.9	0.0
연령	21세이하	2.5	5.8	23.1	21.2	7.7	40.4	13.5	7.7	9.6	21.2	3.8	1.9
	22세이상	2.9	4.3	27.7	17.0	12.8	31.9	27.7	10.6	14.9	12.8	2.1	2.1
종료 사유	만기퇴소	2.5	7.2	15.9	21.7	5.8	40.6	20.3	10.1	10.1	23.2	4.3	1.4
	연장종료	2.9	0.0	45.2	12.9	19.4	29.0	22.6	3.2	16.1	6.5	0.0	3.2
혈연 여부	있음	2.8	7.0	19.7	23.9	14.1	38.0	22.5	7.0	11.3	12.7	2.8	2.8
	없음	2.5	0.0	34.5	0.0	0.0	34.5	10.3	13.8	13.8	31.0	3.4	0.0



〈그림 4-30〉 보호종료 후 조연/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 (보호종료 연령 기준)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종료 연령(만18세)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9.6%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보호종료 연령 기준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이 팽팽하였음. 한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몇 세가 적당한지 질문한 결과 최소 19세 ~ 최대 26세로 응답하여 평균 21세로 나타남. 한편, 18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세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21세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 때는 빨리 종료가 되고 싶어하고, 자립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적절한 연령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성별특성에 나타났으며,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보호종료 연령 기준을 더 길게 생각하였음($t=-1.98, p<.05$)

〈표 4-35〉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절성

(단위: %, 세)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연령		
			평균	중위값	최빈값
전체	49.6	50.4	21.17	20	20
성별	남자	47.2	52.8	20.62	t=-1.98*
	여자	51.5	48.5	21.63	
연령	21세이하	57.6	42.4	20.96	t=-1.03
	22세이상	43.9	56.1	21.52	
종료사유	만기퇴소	53.7	46.3	21.11	t=.17
	연장종료	44.1	55.9	21.21	
할연 여부	있음	50.0	50.0	21.15	t=-.34
	없음	51.3	48.7	2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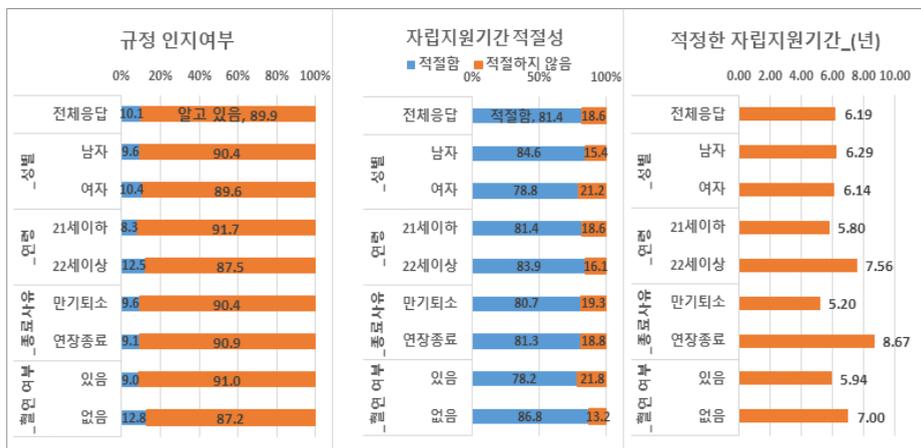
〈그림 4-31〉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절성

-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89.9%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5년의 자립지원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81.4%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18.6%의 아동은 자립지원기간으로 최소 1년 ~ 최대 10년으로 응답하여 평균 6년 정도가 자립지원기간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혈연이 있는 경우, 여자 아동인 경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오히려 혈연이 없는 경우에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적정한 자립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만기퇴소 아동일 경우에 가장 짧았고, 연장종료 아동일 경우 가장 길었음

〈표 4-36〉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단위: %, 세)

구분	규정 인지여부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기간			
	몰랐음	알고 있음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평균	중위값	최빈값	
전체	10.1	89.9	81.4	18.6	6.19	7	10	
성별	남자	9.6	90.4	84.6	15.4	6.29	9	10
	여자	10.4	89.6	78.8	21.2	6.14	7	7
연령	21세이하	8.3	91.7	81.4	18.6	5.80	6	6
	22세이상	12.5	87.5	83.9	16.1	7.56	8	7
종료사유	만기퇴소	9.6	90.4	80.7	19.3	5.20	6	2
	연장종료	9.1	90.9	81.3	18.8	8.67	9	10
혈연 여부	있음	9.0	91.0	78.2	21.8	5.94	7	7
	없음	12.8	87.2	86.8	13.2	7.00	7	10



〈그림 4-32〉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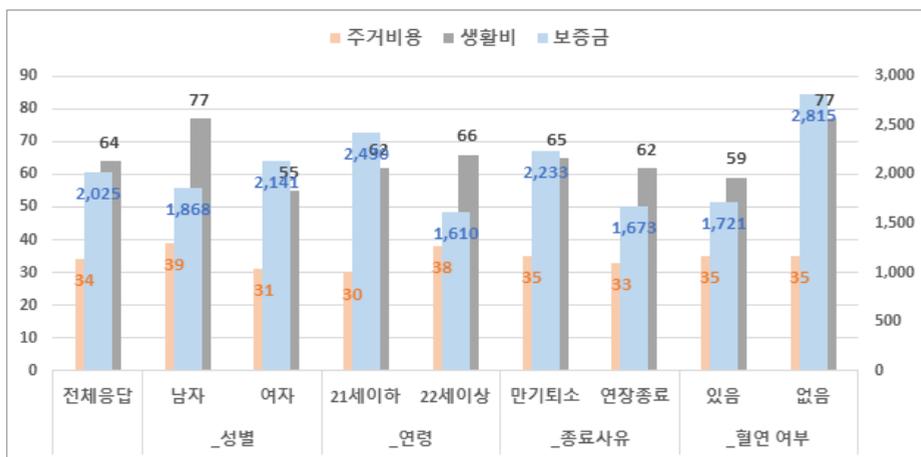
○ (보호종료 후 생활비 규모) 보호가 종료된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용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보증금으로 평균 2,025만원, 월세 및 관리비 등 주거비용 월 평균 34만원, 식비 및 교통비 등 생활비용 월 평균 64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성별로는 남자 아동은 보증금은 다소 낮고 월세는 다소 높은 형태, 여자 아동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형태를 보였으며, 생활비는 남자 아동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연령별로는 21세이하는 22세이상 아동 보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형태를 보이며, 생활비는 22세이상 아동에서 다소 높았음. 종료사유별로는 만기퇴소 아동은 연장종료 아동보다 보증금, 주거비, 생활비가 다소 높았음.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을 경우 보증금과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7〉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 규모

(단위: 만원)

구분	전월세 보증금			주거비용(관리비 등)			생활비(식비/교통비 등)		
	평균	중위값	최빈값	평균	중위값	최빈값	평균	중위값	최빈값
전체	2,025	500	500	34	30	50	64	50	50
성별	남자	1,868	t=-.57	39	t=1.84	77	t=2.43**	55	
	여자	2,141		31		66			
연령	21세이하	2,430	1.71	30	-1.76	62	-.49	66	
	22세이상	1,610		38		66			
종료사유	만기퇴소	2,233	1.14	35	.36	65	.33	62	
	연장종료	1,673		33		62			
혈연 여부	있음	1,721	-2.11*	35	-.13	59	-2.03*	77	
	없음	2,815		35		77			

*p<.05, **p<.01, ***p<.001



〈그림 4-33〉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 규모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 보호종료 후 시설/그룹홈 또는 가정위탁지원 센터 자립전담원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8.2%가 연락/만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락 빈도는 '월 1회'가 58.6%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1회'가 26.7% 순이었음. 100명 중 약 60여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립지원전담원과의 교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류내용은 '일상적 안부확인'이 57.8%로 가장 많았고, '지원혜택 관련 안내'를 위한 목적이 21.6%였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 아동일 경우 연락빈도가 남자 아동보다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아동은 안부 확인, 여자 아동은 지원혜택을 안내받기 위해 교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22세이상 아동의 연락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원혜택 안내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비율이 더 높고, 21세이하는 일상적 안부확인 사유가 더 높았음

〈표 4-38〉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 현황

(단위: %)

구분	교류 여부		연락빈도					연락 사유				
	교류 없음	교류함	1회/주	1회/월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년	일상적 안부	자립 생활이 힘들때	자립 지원받기 위해	지원 혜택 안내	
전체	11.8	88.2	16.2	28.6	26.7	17.1	11.4	57.8	2.9	17.6	21.6	
성별	남자	11.5	88.5	21.7	23.9	34.8	13.0	6.5	63.0	4.3	17.4	15.2
	여자	11.9	88.1	11.9	32.2	20.3	20.3	15.3	53.6	1.8	17.9	26.8
연령	21세이하	13.3	86.7	21.2	38.5	23.1	9.6	7.7	65.3	0.0	20.4	14.3
	22세이상	10.7	89.3	12.0	20.0	32.0	24.0	12.0	52.0	6.0	16.0	26.0
종료 사유	만기퇴소	12.0	88.0	16.4	31.5	21.9	17.8	12.3	58.3	4.2	16.7	20.8
	연장종료	12.1	87.9	17.2	20.7	37.9	17.2	6.9	59.3	0.0	22.2	18.5
혈연 여부	있음	10.3	89.7	12.9	24.3	27.1	20.0	15.7	57.4	2.9	16.2	23.5
	없음	15.4	84.6	24.2	36.4	24.2	12.1	3.0	62.5	3.1	15.6	18.8



〈그림 4-34〉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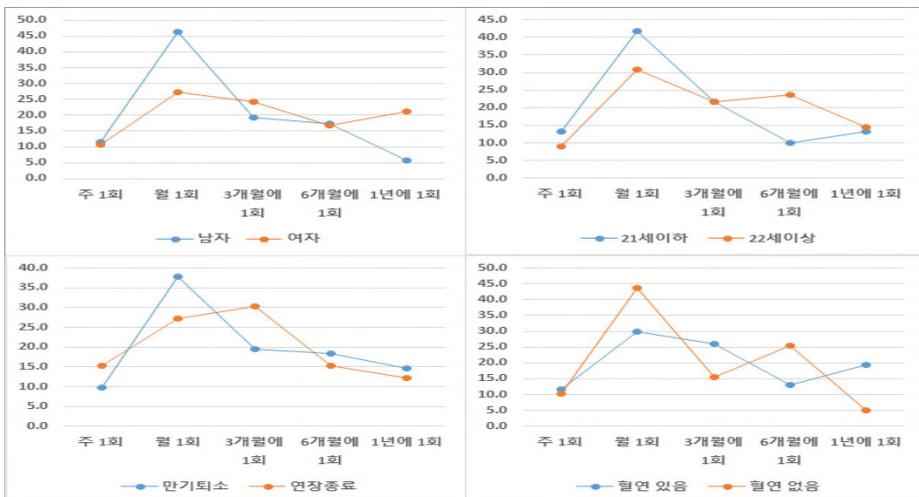
○ (자립지원전담요원과과의 적정한 교류빈도)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과의 적정한 교류빈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월 1회’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3개월(22.0%), 6개월(16.9%), 1년(14.4%) 당 1회 등의 순으로 높았음. 한편, 선택 문항을 등간격(주1회 1점 ~ 1년에 1회 5점)이라 가정하여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아동, 연령별로는 21세이하, 혈연 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연락/만남 간격이 현재 수준보다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음

- 현재 교류하고 있는 수준은 2.79점이며, 아동이 희망하는 교류수준은 2.88점으로 현재 교류 정도보다는 연락/만남 간격이 더 길어지길 희망하였음

〈표 4-39〉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과의 적정한 교류빈도

(단위: %, 점)

구분	주 1회	월 1회	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에 1회	현재 교류정도	희망하는 교류정도	
전체	11.0	35.6	22.0	16.9	14.4	2.79	2.88	
성별	남자	11.5	46.2	19.2	17.3	5.8	2.59	2.60
	여자	10.6	27.3	24.2	16.7	21.2	2.95	3.11
연령	21세이하	13.3	41.7	21.7	10.0	13.3	2.44	2.68
	22세이상	9.1	30.9	21.8	23.6	14.5	3.04	3.04
종료사유	만기퇴소	9.8	37.8	19.5	18.3	14.6	2.78	2.90
	연장종료	15.2	27.3	30.3	15.2	12.1	2.76	2.82
혈연 여부	있음	11.7	29.9	26.0	13.0	19.5	3.01	2.99
	없음	10.3	43.6	15.4	25.6	5.1	2.3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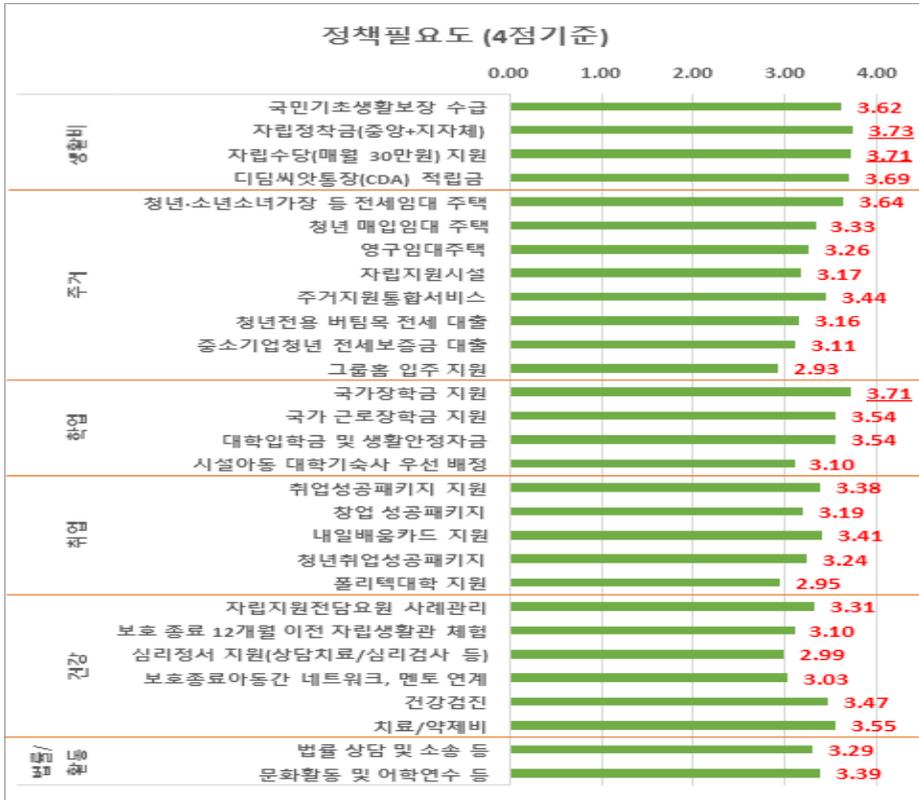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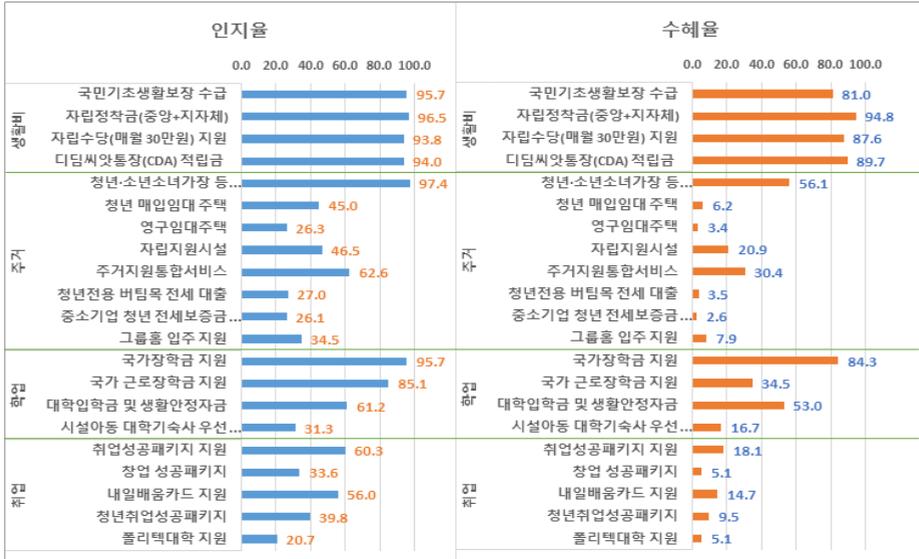
〈그림 4-35〉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과의 적정한 교류빈도

-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수혜여부 및 필요성) 보호종료 이후 지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인지율의 경우 LH전세임대주택(97.4%), 자립정착금(96.5%), 국가장학금(95.7%), 국민기초생활보장(95.7%), CDA(9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수혜율은 자립정착금(94.8%), CDA(89.7%), 자립수당(87.6%), 국가장학금(84.3%) 등의 순으로 높았음. 한편, 필요도(4점기준)의 경우, 자립정착금(3.73점), 자립수당(3.71점), 국가장학금(3.71점), CDA(3.69점) 등의 순이었음. 인지율과 수혜율 그리고 필요요구 모두 현금성(경제적) 지원 영역에 집중되었음

〈표 4-40〉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수혜여부 및 필요성

(단위: %, 점)

지원영역	지원 서비스 종류	인식 여부		지원 여부		필요 정도 (4점기준)
		모름	알고있음	받지않음	받음	
생활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4.3	95.7	19.0	81.0	3.62
	2) 자립정착금(중앙+지자체) 500만원 지급	3.5	96.5	5.2	94.8	3.73
	3) 자립수당(매월 30만원) 지원	6.3	93.8	12.4	87.6	3.71
	4) 디딤씨앗통장(CDA) 적립금	6.0	94.0	10.3	89.7	3.69
주거	5) 청년·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주택	2.6	97.4	43.9	56.1	3.64
	6) 청년 매입임대 주택	55.0	45.0	93.8	6.2	3.33
	7) 영구임대주택	73.7	26.3	96.6	3.4	3.26
	8) 자립지원시설(삼성자립생활관)	53.5	46.5	79.1	20.9	3.17
	9) 주거지원통합서비스(굿네이버스전북본부)	37.4	62.6	69.6	30.4	3.44
	10)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73.0	27.0	96.5	3.5	3.16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73.9	26.1	97.4	2.6	3.11
	1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 지원	65.5	34.5	92.1	7.9	2.93
학업	13) 국가장학금 지원	4.3	95.7	15.7	84.3	3.71
	14) 국가 근로장학금 지원	14.9	85.1	65.5	34.5	3.54
	15) 대학입학 시 대학입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38.8	61.2	47.0	53.0	3.54
	16) 대학 진학 사설아동 기숙사 우선 배정	68.7	31.3	83.3	16.7	3.10
취업	1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9.7	60.3	81.9	18.1	3.38
	18) 창업 성공패키지 지원	66.4	33.6	94.9	5.1	3.19
	19) 내일배움카드 지원	44.0	56.0	85.3	14.7	3.41
	20) 청년취업성공패키지	60.2	39.8	90.5	9.5	3.24
	21) 폴리텍대학 다양한 지원 혜택	79.3	20.7	94.9	5.1	2.95
건강	22)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자립정보/상담 등)	36.8	63.2	45.7	54.3	3.31
	23) 보호 종료 12개월 이전 자립생활관 체험					3.10
	24) 심리정서 지원(상담치료/심리검사 등)					2.99
	25) 보호종료아동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모임, 자립 지원 멘토 연계					3.03
	26) 건강검진					3.47
	27) 치료/수술비(관련 약품구입 포함)					3.55
법률/ 활동	28) 법률 상담 및 소송 등					3.29
	29) 문화·여가활동 및 여학연수 등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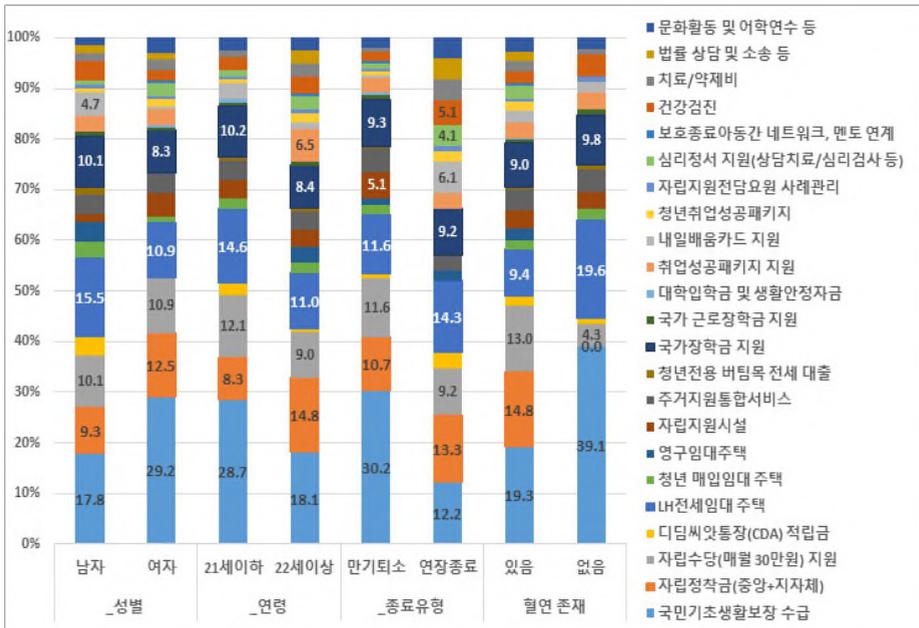
〈그림 4-36〉 보호종료아동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수혜율 및 필요도

○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 '5년의 자립지원 기간' 동안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순으로 현금성 지원과 주거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함. 응답자특성별로는 연장종료 특성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이 1위로 집계되었음. 순위만 차이가 있을 뿐 서비스 항목들은 유사한 가운데, 혈연이 없는 경우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4번째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표 4-41〉 자립기간(5년)동안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1-2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성별	남자	국민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자립정착금
	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LH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연령	21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자립정착금
	22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LH전세임대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종료 사유	만기퇴소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립수당	LH전세임대	자립정착금	국가장학금
	연장종료	LH전세임대	자립정착금	국민기초생활수급	국가장학금	자립수당
혈연 여부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LH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립수당

주) 종합=[(1순위빈도)*2+(2순위빈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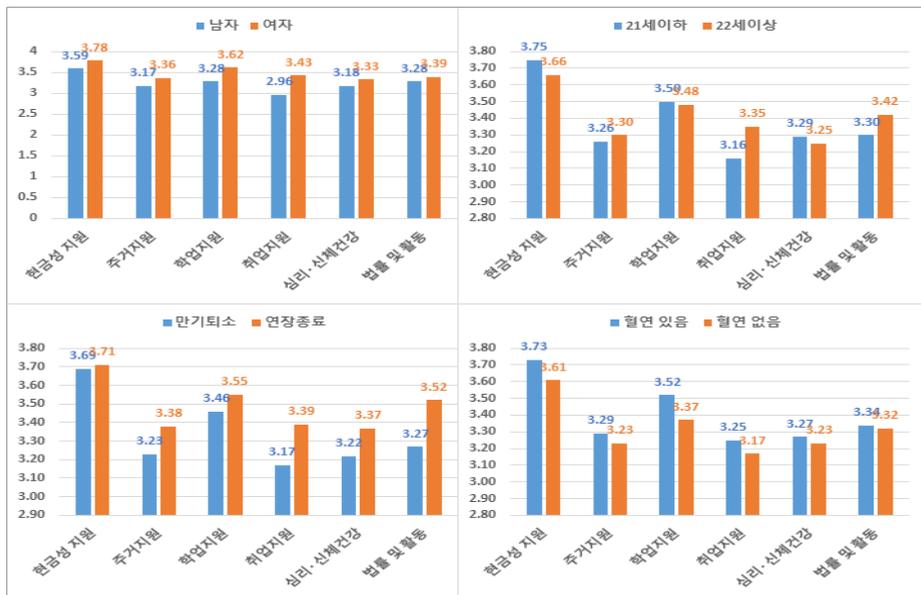
〈그림 4-37〉 자립기간(5년)동안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

- (정책영역별 필요도) 지원정책 영역별로 필요도(욕구)를 살펴보면, ‘현금성 지원’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지원(3.48점), 법률 및 문화활동(3.3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금성 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영역은 여자아동일 경우, 주거지원, 심리·신체건강, 법률/문화활동 영역은 연장종료 아동일 경우에 욕구가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현금성 지원($t=-2.35$, $p<.05$), 학업지원($t=-3.22$, $p<.01$), 취업지원($t=-3.34$, $p<.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현금성 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영역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42〉 정책영역별 필요도

(단위: 점)

구분	현금성 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심리·신체건강	법률 및 활동	
전체	3.68	3.27	3.48	3.23	3.27	3.34	
성별	남자	3.59	3.17	3.28	2.96	3.18	3.28
	여자	3.78	3.36	3.62	3.43	3.33	3.39
연령	21세이하	3.75	3.26	3.50	3.16	3.29	3.30
	22세이상	3.66	3.30	3.48	3.35	3.25	3.42
종료 사유	만기퇴소	3.69	3.23	3.46	3.17	3.22	3.27
	연장종료	3.71	3.38	3.55	3.39	3.37	3.52
혈연 여부	있음	3.73	3.29	3.52	3.25	3.27	3.34
	없음	3.61	3.23	3.37	3.17	3.23	3.32



〈그림 4-38〉 응답자특성에 따른 정책영역별 필요도

다. 면접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보호종료아동 대상 면접조사의 목적은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 및 자립 이후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과 각기 다양하고 상이한 경험 및 복잡하고 다층위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욕구 등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실시됨
- 무엇보다 자립 지원 사업 및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보호종료아동의 관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파악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욕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2) 면접 참여자

- 보호종료아동 면접 참여자 섭외는 설문조사 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전달하고 면접조사의 필요성을 공지한 후 면접조사에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섭외함.
- 그리고 본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전북지역 시설유형별(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시설장과 자립전담요원 및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활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기관의 현장실무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면접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조리 있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 섭외 요청을 별도로 부탁드린 후 면접조사에 동의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을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또한, 면접 참여대상자 선정 시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성별과 보호종료 시 만 18세 퇴소인지 연장보호에 따른 종료인지를 고려하였고, 자립한 기간과 시설유형 등을 구분하여 보호종료아동을 선정함.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 및 자립 이후의 생활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필요 지원 정책적 욕구 등에 대한 각기 다양하고 상이한 경험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존 지원사업의 인지·수혜 정도·만족도·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도 각기 처한 여건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음

3) 면접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면접조사는 1:1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개별면접보다는 비대면 개별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함
- 비대면 개별 전화조사는 설문조사 시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 및 희망한 보호종료아동과 시설장 및 기관 실무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섭외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면접 참여 동의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낸 후 대면이 아닌 전화를 통한 비대면 면접조사 실시에 대한 안내 사항을 공지함.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하여 늦은 밤 시간(오후 9시까지)과 주말을 포함하여 약 1시간 정도의 전화 통화가 가능한 면접 일정을 접수 받아 그 일자와 시간에 맞춰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전화 면접조사는 설문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부터 약 1주일 정도 소요됨

4) 자료 분석 방법 및 조사 내용

- 면접 내용에 대한 분석 방법은 보호종료아동의 동의하에 녹음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전사한 녹취록과 노트 필기 자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주요 내용을 찾아 세부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그 범주들을 위계화 하는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함
- 면접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 형식으로 설문조사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답을 수 있도록 재구성함. 면접내용은 3개 영역으로 구분됨. 첫째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자립 시 겪는 어려움 파악, 둘째, 현재 실시하는 지원 사업(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셋째, 보호종료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 마지막으로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연령, 성별, 현재 거주지역, 자립기간 등)을 살펴봄

〈표 4-43〉 보호종료아동 대상 면접조사 주요 내용

항 목	조 사 내 용
자립실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당시 상황 기억할 때,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점은? •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 현재 홀로서기 생활 시 가장 큰 걱정과 고민거리 및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업 문제점과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 보호종료 시점으로 적절한 연령과 상황은? • 보호종료지원기간 5년의 적절성과 가장 적절한 기간
정책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원서비스 중 실질적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 실질적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과 지원이 있다면? • 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주어진다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시설유형, 현재거주, 보호종료 연도와 종료사유, 자립생활 기간, 현재 상태

라.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총 17명으로 양육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 10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4명,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3명이 참여하였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을 성별로 보면 여자 10명, 남자 7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8세부터 27세로 분포되어 있었음. 현 거주지역은 전주, 익산, 정읍 등 전북지역 이외 서울, 경주 등이 있었음. 현 상태로는 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 및 취업준비생과 취업을 이제 막한 직장인,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으로 나타남
- 양육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3명을 제외한 7명은 만 18세 퇴소를 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7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5명은 연장보호 이후 보호가 종료되었음

〈표 4-44〉 면접조사에 참여한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현 주거지	현 상태	종료사유	종료년도	지원사업	
양 육 시 설	(A-1)	여	23세	정읍	대학생(4학년)	만 18세 퇴소	2020년 / 1년	
	(A-2)	남	22세	전주	취준생	연장보호 종료	2019년 / 2년	
	(A-3)	남	24세	전주	직장인(요식업)	연장보호 종료	2018년 / 4년	
	(A-4)	남	22세	전주	대학자퇴, 편입준비	만 18세 퇴소	2018년 / 4년	
	(A-5)	여	22세	익산	대학생(3학년)	만 18세 퇴소	2019년 / 3년	
	(A-6)	남	25세	전주	대학생(4학년)	만 18세 퇴소	2016년 / 4년	대전 물리치료
	(A-7)	여	19세	익산	대학생(1학년)	만 18세 퇴소	2021년 / 3개월	자립수당 기초수급
	(A-8)	남	24세	익산	직장인(사원)	만 18세 퇴소	2017년 / 4년	
	(A-9)	여	19세	익산	대학생(1학년)	만 18세 퇴소	2021년 / 3개월	자립수당 기초수급
	(A-10)	남	23세	전주	대학생(4학년)	연장보호 종료	2019년 / 2년	법공부학생
공 동 생 활 가 정	(B-1)	여	23세	정읍	취업 후 입사 준비	연장보호 종료	2021년 / 1년	
	(B-2)	여	25세	서울	회사 직장인	만 18세 퇴소	2018년 / 3년	
	(B-3)	남	26세	서울	취업준비생	연장보호 종료	2020년 / 2년	
	(B-4)	여	28세	전주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연장보호 종료	2018년 / 3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가 정 위 탁 자 원 센 터	(C-1)	여	29세	전주	사회복지사 직장인	연장보호 종료	2015년 / 6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C-2)	여	27세	전주	물리치료사 (퇴사후 이직준비)	연장보호 종료	2019년 / 2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립수당
	(C-3)	여	23세	경주	대학생	만 18세 퇴소	2019 / 3년	자립수당

2) 보호종료아동 대상의 면접 내용 분석결과

- 전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정책적 욕구 파악을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내용 결과 분석은 크게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어려움,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등으로 구분 및 정리하여 제시함. 그 주요 결과는 아래와 <표 4-45>와 같음
-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관련 실태 및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사항과 정책적 욕구 관련 내용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함

<표 4-45> 보호종료아동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구분/범주	주요 내용		
자립 실태 및 어려움	퇴소 시점에서 홀로서기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		
	밥·반찬 등 요리, 집안청소, 방 정리 정돈, 빨래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대학 및 사회생활 시 대인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 크게 느낌		
	심리적 및 정신적 지지자의 부재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큼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취약한 취업난		
	수도권지역, 주거관련 어려움 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생계형 아르바이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형식적·반복적인 자립준비교육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의미 없는 인위적 연락		
	자립수당 종료 시기는 취업준비 시기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정책적 욕구	자립 준비 시기	홀로서기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 필요	
		전문적인 진로·적성의 검사·체험을 통한 진로설계 지원 필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필요	
	보호 종료 후	심리적·정신적 의지가 되는 지지체계 기반 조성 필요	
		공연·전시 등의 문화와 여가·여행 등의 체험 기회 확대 필요	
		건강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연계 필요	
		취업 준비 과정 적극 지원 필요	
보호종료아동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우선 채용기회 확대			

(1)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어려움

□ 퇴소 시점에서 홀로서기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

- 퇴소 시점인 퇴소 직전과 직후에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은 주위 어느 누구의 도움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함과 막연함, 책임감 및 부담감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지니고 있었음
-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등 실질적 홀로서기를 눈앞에 두고 마음 공허감, 심란하여 잠도 못자며, 우울증도 찾아오고, 심리적 소외감, 고립감 등의 자립에 대한 어려움을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남

퇴소 직후 마음이 공허했고, 한 동안은 우울해서 집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주위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정말 컸죠.. (A-1)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등 이제부터 나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A-5)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심리적 소외감, 고립감 그래서 더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서 자립정착금을 그냥 친구들만나서 즐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마 시골벽적으로 지내야 공허함이나 고립감 같은 것이 덜 느껴져서 그랬나봐요. (B-1)

□ 밥·반찬 등 요리, 집안청소, 방 정리정도, 빨래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 시설 퇴소 및 위탁 가정에서 자립 후 혼자서 밥 해먹기, 요리하기, 집안 청소하기, 빨래하기, 방 정리 정돈하기, 세탁기 및 보일러 사용하기 등 홀로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집안의 일상생활 꾸러가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종료아동들이 토로함
- 항상 시설에서는 누군가가 해주었고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던 일상적인 집안일을 혼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했고, 퇴소 전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은 후 퇴소해야 함을 강조함

퇴소 직후에는 밥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배달음식이나 밖에서 사 먹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죠.. 돈 아낀다며 한끼씩 굶기도 하고요 (C-1)

시설에서는 요리 같은 것을 전혀 안하다가 혼자 생활하면서 세끼를 챙겨야 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빨래하는 것, 방 청소하는 것도 잘 안되구요.. 그래서 반찬을 누가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밥 하고 요리 하는게 싫어서 굶기도 많이 했죠. 이전 좀 익숙해 지긴 했지만요 (C-3)

청소, 빨래, 집안일 혼자 해내는 것이 퇴소한 직후에는 힘들었어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몸도 안좋아지고.. 돈도 많이 들고.. (A-4)

□ 대학 및 사회생활 시 대인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 크게 느낌

-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은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과 일반가정 친구들간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양과 질 차이가 큼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았음. 일반가정 친구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다양한 공연·전시 및 여가·운동 등의 경험과 체험에 대한 기회가 많았던 반면, 보호종료아동은 그에 대한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음을 토로함
- 또한, 일반가정 친구들은 국내 여행은 물론 국외 여행 및 어학연수 등의 경험과 그 기회가 많았고 또 어려움 없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여행에 대한 기회조차가 드물었고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음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컸음을 토로함.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대학 및 사회생활 시 일반가정 아동간의 문화적 차이와 경험과 사고의 차이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결핍될 우려가 높음이 나타남

제가 대학을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보니 친구들과의 문화적 격차가 큼을 절실히 느꼈어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 보니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말로만 들어 봤지 쉽게 접할 수 없었거든요. 기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한데.. 이 친구들은 경험도 많고 해서 서로 대화의 차이가 생기고 말이 안통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서 만나 이야기 하기가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B-2)

대학 생활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부모가 있는 애들과는 아무튼 저희는 다르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여행은 필수고 해외 여행도 한 번쯤은 다 다녀오구요.. 이런 면에서도 저 자신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고 비교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A-1)

취업을 하려고 하니.. 지원서에 빈칸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도 없고.. 자소서에도 이런저런 경험 등이 많지 않고 해서.. 그래서 더 걱정되요.. 취업할 때 안 좋게 보일까봐서요 (B-1)

□ 심리적 및 정신적 지지자의 부재

- 퇴소 시점에서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생각과 고민 등에 대해 털어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심리적 및 정신적 지지자가 부재함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 정신적 힘들어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시설 퇴소로 인해 혼자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 및 책임감 등에 의해 주위 누군가에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까지 질문하고 상담하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생애 전주기를 함께 옆에서 심리적 및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함
-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이나 그룹홈의 시설장님 혹은 위탁가정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의 보호자역할 이외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주며 고민의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제시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지지자를 필요로 했음.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경험담을 들을 수 있으며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음

저희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편히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직장 갖을 때나 직장 생활할 때 결혼할 때 아이 출산할 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만을 위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C-3)

수시로 전화해서 잡담한일, 사소한일,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A-4)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거리적으로도 멀고, 또 뭘 잘 모르시는데 자주 물어보기도 그렇고.. 경험이 많은 마음 편하게 물어 볼 수 있고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선배나 나 보다 앞서서 많은 경험들을 해서 나를 안내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취업 준비하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 절실한 것 같아요 (C-1)

□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큼

- 홀로서기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임대료, 관리비, 전기 및 수도세, 휴대폰, 인터넷비, 식비와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립비용은 거의 소진되며, 그 외 대학 생활을 위한 교재비, 실습비, 동아리활동비, 친구들과과의 식사비, 모임비 등에 쓰이는 비용 등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당해야만 하

는 상황임.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별도로 하고 싶은 여가·문화 생활, 사고 싶은 물건(옷, 신발 등) 등은 자제해야하는 상황임

-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인 대학교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혹은 졸업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해주는 자립수당 등이 종료되는 동시에 반대로 취업준비 과정에 필요한 자격증취득비, 학원비, 교재비, 면접비, 정장구입을 위한 비용, 교통비와 시험응시비 등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말이라도 아르바이트 1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임. 가장 중요한 취업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 생활비와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우울하고 심리적 부담과 육체적 소진 및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까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이 나타남
- 그 외 무계획적인 소비, 과소비적인 습관 등으로 지급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흥청망청 쓰고 또 카드 및 대출 등으로 끌어다 쓰는 종료아동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 급급한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음. 지속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생활로 심리적 부담, 육체적 소진, 우울과 지침, 시간의 낭비 등으로 미래 설계보다는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

솔찍히 자립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한데.. 대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월세,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비, 핸드폰비, 식비와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빠듯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학 동안에는 반드시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A-5)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이외에 교재비, 실습비, 학교 친구들과 식사도 같이해야 하고, 동아리활동하면서 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이런 돈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는 어느 정도 해야 하지.. 그렇지 못하면.. 아껴가면서 쓴다 해도 항상 빈곤하고 가난이 있는 것 같아요 (B-1)

월 80만원정도의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 종료되거든요.. 한데.. 대학교 4학년이면 정말 취업준비를 위해 중요한시기이고, 취업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돈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오히려 지급받던 돈이 끊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취업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데 주말에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전혀 안되니.. 이게 힘들어요.. 자립수당이 조금 더 지급되면 좋겠어요... (A-1)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퇴소 초기에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사고 싶은 것 사고, 외로우니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사고, 또 여기저기 끌어다 쓰다보니까.. 지금은 그 대출금과 이자 갚기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와 또 대출금과 이자를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몸도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우울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경제적 관념이 없었다 보니.. 지금 .. (B-4)

□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취약한 취업난

- 최근 코로나19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취업난이 심해져 취업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보호종료아동에게 있어서 취업이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자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취업에 대해 절실히 하며, 어느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렵고 힘들음을 토로함
- 특히 일반가정의 친구들과는 별개로 보호종료아동은 의식주인 최소한의 먹고살기위해서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교재비, 자격증취득비, 면접관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과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소진이 많음을 나타냄
- 무엇보다도 졸업 앞둔 경우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인 보호종료아동은 취업 관련 모든 선택과 결정 등의 취업준비와 경제적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함이 어떠한 어려움보다 컸으며 관련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최근에 코로나19로 안 좋았던 취업난이 더 심각해져서 취업하기 어려워요. 아니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예 막혔어요.. 사람을 뽑지 않으니.. 제가 가고 싶은 기업도 사람을 안 뽑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할 수 가 없는거죠.. 정말 자립 하기위해서는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A-4)

취업은 먹고살기 위한 방법으로 절실히나 취업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게다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취업준비 시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책도해야죠 자격증취득을 위해 학원도 다녀야죠. 면접 준비도 해야죠..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시간이 아깝고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힘들어요 (B-4)

졸업 이후 미래 취업이 고민이에요. 간호학과는 2학기부터 취업 준비하고 면접하러 다니거든요. 책도 사야하고 문제집도 많이 봐야하고 정장도 구입해야 하고 전 이런데 돈 쓰기 위해 다른데서 정말 아까요. 알바도 주말에 해야 하는 상황이고. 취업준비에만 시간을 쓸아 부어도 모자르는데 알바까지. 해야해서.. (C-3)

□ 수도권 지역, 주거관련 어려움 큼

- 수도권(서울, 경기도 등) 지역에서의 LH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함. 우선은 주거 마련 시 전세자금에 지방보다 월등히 높고, 매월 지급해야할 임대료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주거지 자체를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음. 이에 이사가 잦아서 이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고 있었음.
- 수도권만 벗어나면 주거마련과 전세자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나 반면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지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제가 받은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인데.. 서울에 와서 LH 주거나 전세를 받으려 하니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전세 대출만 1억 5천이 넘으니.. 전주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LH주택 구하기도 힘들고, 월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다고 해서 학교와의 거리나 주택 내부 시설이나 환경 등도 내가 바라는대로 구할 수 없는 거구요.. 주거 마련이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사도 많이 했어요 (B-2)

특히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준다 해도.. 저의 상황과 내 맘에 드는 집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고.. 돈도 많이 부족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잦은 이사 때문에 이사비용도 많이 들었구요.. 그러다 보니 대학공부도 중요하고 장학금도 중요하고 알바도 중요하고.. 주거 관련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것만 좀 마련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B-3)

□ 생계형 아르바이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면접조사 시 간호학과·물리치료 등 진로가 결정된 보호종료아동은 본인 자신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도 만 18세로 취업 한 종료아동과 진로 미결정된 퇴소아동 중심의 실태 파악과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함. 대부분이 만 18세 퇴소와 함께 취업을 했어도 계약직·단순노무직·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많으며, 전문대학 입학 후 공부도 안하고 진로 고민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놀기만 하는 친구들이 많음을 언급함
- 어떻게 해서든 정규직에 혹은 전문직에 취업하여 보다 풍족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및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퇴소 이후 무계획적으로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생활하는 친구들 많고 그 친구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컸음

한데. 저는 간호학과라서 시험보고 면접봐서 병원에서 언젠가는 근무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중 많은 애들이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전문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서 공부를 안해도 3.0은 그냥 주고는 대학이라서 그저 시간 낭비만 하고 있어요.. 졸업도 안하고 놀고.. 놀고 생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더 걱정되요.. (C-2)

저처럼 막 사는 애들이 있어요..그래도 저는 대학 1, 2학년때까지는 막 살았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꽤 되거든요..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이자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루에 2탕식 뛰고.. 뭐하나 이뤄놓은 것 없이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돈 값다 시간 다 가는 거죠.. 그런 애들이 더 어렵고 도움을 더 받아야 하는데... (A-5)

(2)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형식적·반복적인 자립준비교육

- 자립준비를 위해 시설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이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이고 매년 동일한 내용의 반복 교육이기에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아동이 귀를 열고 적극 태도를 취할 수 없음을 토로함
- 반면, 자립하여 생활하는 시설 선배의 홀로서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경험담과 극복과정 및 자립관련 다양한 정보, 그리고 향후 진로 설계 관련 강연, 잘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적인 강연, 정신면역력 키울 수 있는 강연 등을 실시하여 시설을 퇴소할 경우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및 강연 등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제시함

시설에서 받았던 자립교육은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었고요, 어떨때는 사진만 찍고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구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다가와서 한귀로 흘려 듣기도 했는데요... 자립교육 자체가 같은 시설 선생님이 같은 내용을 똑같이 매번 했던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식으로요... 도움 전혀 안되었어요.. 선생님 속도 보이구요.. (B-4)

경제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재미없었구요.. 시간 낭비였구요.. 정말 쓸데없는 것 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교육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진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강연 등이 많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B-1)

제가 나와보니 사회 적응이 정말 어려워요.. 욕도 먹어야하죠.. 제대로 하는게 없냐며 혼돈나야하죠..그러니 정신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설에서 독립한 선배들의 경험담과 어려운 경험,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세상이 치열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시설에서 받은 자립교육이 가장 쓸모없었던 것 같아요 (A-4)

□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의미 없는 인위적 연락

- 시설과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법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 주도 하에 5년 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후관리가 보호종료아동 입장에서는 실질적 자립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연락과 사후관리는 퇴소 직후 시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다가 점차 뜸해졌음. 퇴소 직후에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전화 통화를 통해 근황을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졌음
-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입장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근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맞춤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기 보다는 시설에 들어온 정보를 단지 전달한다는 형식적 사후관리임이 느껴져 서운함과 동시에 사후관리의 의미가 없음을 나타냄
-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보호종료아동의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상황이며 그 상황에 맞는 맞춤 정보와 지원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과 보다 부모역할을 겸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냄

시설 자립 전담 선생님은 제가 어떠한 전공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취업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닌 그저 시설 내 들어온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에서 서운함도 많이 느끼고.. 솔직히 시설 선생님은 부모님과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냥 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A-8)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상황이나 여건도 물어보시고.. 한때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정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안부를 잠깐 물어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실제로 저와 관련된 저의 상황과 연계된 최신 정보 등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단지 안부 차원의 전화만 (B-4)

□ 자립수당 종료 시기는 취업 준비시기, 증가된 경제적 어려움

- 시설 보호종료아동의 많은 비율은 만 18세 퇴소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고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안정적인 대학 및 사회 정착 등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최대 36개월(3년) 한도 내에서 실행되는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이 대학생 4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자립수당(월30만원) 지급이 종료하게 됨. 보호종료아동은 대학교 4학년이 됨과 동시에 취업 준비에 보다 몰두해야할 시기인데 이와 반대로 매월 30만원씩 도움 받던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되기에 경제적 어려움 발생과 더불어 오히려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 어학 시험비, 면접관련 부대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보다 더 필요한 상황으로 현 대학교 4학년과 3학년은 이에 대한 걱정과 고민 및 어려움을 토로함.

-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 사업은 실상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는 대학교 4년과 졸업 이후의 취업준비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자립 관련 지원 사업도 부재한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음

대학교 4학년생인데요.. 기초생활수급과 국가장학금도 받지만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알바를 주말에는 해요. 4학년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취업공부만을 안정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고 취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알바가 필수이고.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4학년까지 혹은 졸업 후 취업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지급하면 좋겠어요 (A-1)

대학 3년인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자립수당이 3년까지만 지급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간호사 시험이나 면접 준비해야 하는데 자립수당이 빠져버리면.. 받았던 자립수당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기에.. 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취업준비 기간인데.. 돈이 더 줄어 들기 때문에... 한데.. 취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인데.. 실상..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자립수당이 없어지니.. 힘들어질 것 같아요..그래서 어떠한 제한을 뒤흔어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자립수당 지급이 되면 좋겠어요... 미리 취업한 친구들은 또 그리 필요할 것 같지 않구요 (A-5)

□ 정부와 민간 자립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발생, 지원에서 소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 지원 사업 등에서 규정된 성적이나 아르바이트 수입 그리고 부모 부양의 의무 등의 표준화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그 기준 미달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 즉 정부와 민간 지원 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각지대 안으로 누락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저는 부모님이 있기는 하지만 연락이 오랫동안 두절 되었고, 연락 없고 또 연락도 안하고,, 해서 저는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부모님의 수입이 컴퓨터상으로 잡히나 봐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을 못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컴퓨터상으로 잡힌다는 이유로..자립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속하는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보다 정확한 현실을 고려해 지급기준이 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A-6)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학점을 받아야 장학금이 나와요.. 한데.. 실업계 다니다 대학 물리치료학과에 들어오니 영어나 수학 등의 실력이 떨어져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수업이 안 빠지고 열심히는 했는데 기초학습능력이 모자라서 기준 학점을 못 받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대학 입학했으니 졸업할 수 있도록요... (A-2)

(3)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욕구

□ (자립준비) 홀로서기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 필요

-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내에서 퇴소 이후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리교육, 청소와 빨래하기, 집안일, 경제교육, 자격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요리교육(밥하기, 반찬 만들기 등)에 대한 부재와 경제교육의 대부분은 원론적인 면이 강해서 퇴소 후 자립 생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은 거의 없었음을 토로함
- 시설 내에서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나 교육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이 형식적이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었고, 진행된 교육과 자립지원서비스도 홀로서기에 대한 현실적 측면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여서 퇴소 이후 자립 생활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는 스스로 다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많았음

청소, 요리, 반찬, 빨래 등 집안일을 혼자 해내야 하고, 이전까지는 시설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알수도 없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지만, 퇴소 이후에는 나 혼자 해야 할 하기에 이에 대한 실전 교육을 퇴소 전에 많이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어요...(A-8)

돈도 없는데 돈관리 경제교육도 거의 이론적 강의를 중심으로 여 러번 받았는데.. 가장 쓸모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의지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켜주거나 나와보미까 자격증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알려주거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립 전에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의나 다양한 체험 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형식이라면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의 시간이 아깝죠 (A-6)

□ (자립준비) 전문적인 진로·적성의 검사·체험 통한 진로설계 지원 필요

- 시설에서 자립 준비하는 15세 중학생부터는 시설 교사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흥미·성격·적성 탐색 및 직업 정보·체험 등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결정과 진로설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진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가정의 친구들과 여건과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로결정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취업과 연계되는 고등학교 선택과 대학교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시설 보호아동 대상 자립준비교육 중 진로결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채로운 검사와 교육 및 체험 등이 필요함
- 한편, 시설에서 진행되는 직업체험은 중 동일한 직업체험을 반복하고, 시간 때우기식의 형식적인 측면이 큼. 이에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롭고 다양한 직업군의 체험을 본인들이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기간이 아닌 몇 개월씩의 장기간을 체험하며 그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체험 기회가 되어야 함
- 무엇보다 시설 아동의 특성 상 본인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 심리적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측면이 강함. 이에 실질적 자립 실현과 자립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주며, 자격증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게 할 수 있는 강연이나 체험담, 자발적이면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함을 요구함
- 또한 시설 아동 중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등)에 재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은 재능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을 요구함

시설에 있었던 우리는 일반 부모가 있던 아이들과 다르게 진로 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들어와서도 전공과 맞지 않아 놀다만 나가는 친구가 있거나 편입한다고 학교 자퇴한 친구도 있고 대학 전공을 잘 골라야 시간적 낭비든 어려움 등이 덜 한데... 이것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시설에서 있다보면 그저 시간때우기식으로 진로 체험이라든가 고민도 조금 하고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 선생님이 아닌 외부 전문가... 진로 관련 다양한 검사도 하고.. 진로체험도 폭이 넓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진로 체험이 되면 좋겠고... 몇 시간 잠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이 일이 나와 맞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나와 맞는 정말 중요한 진로 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중·고등학생 때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잘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어요 (A-3)

자립준비교육도 좋긴한데.. 우리 같은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삶이라는 인식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연이나 경험담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립도 중요하지만 자립 이후의 삶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등도 필요한 것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생각도 넓어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커지고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도 해소 시킬 수 있도록요.. (A-10)

무엇보다 예체능, 체육이나 음악, 미술 등에 소질이 있을 경우 맛보기만 보이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좋겠어요.. 저도 축구가 꿈이었고 풋살선수까지 대부했었는데.. 포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대학가기 위해서.. 예체능에 재능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고.. 애매한 지원이 아니라 끝까지 확실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B-4)

□ (자립준비)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필요

- 보호종료아동 입장에서 홀로서기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주거마련 포함) 어려움이었고, 다음으로는 심리적 어려움을 꼽았음. 모든 것을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결정하고 해결 해야 한다는 것, 누구와도 의논하고 고민하고 상담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 보듬어 줄 수 있는 활동이나 전문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 등을 연계·지원해 준다면 마음 속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터 놓고 전문가의 상담과 심리적 지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토로함
- 최근에는 전문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아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혼자 우울해 하며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신과 치료 연계 지원도 필요함을 나타냄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활동이나 전문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한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때가 있었는데.. 심리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마음 속 깊은 것을 꺼내어 터놓는 것이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도, 그룹홈 이모한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신과 병원에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저 스스로 길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정신과 병원 다니는 것에 대해 그리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요 (A-2)

자립 한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기대할 때가 없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상담이 좋은 것 같아요.. 상담은 비밀도 보장되구요..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A-10)

□ (자립 후) 심리적·정신적 의지가 되는 지지체계 기반 조성 필요

- 보호종료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심리적 및 정신적 의지가 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음을 꼽음. 즉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부모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심리적 및 정서적 지지자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보다 많은 경험을 지닌 시설 선배와의 멘토연계를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든 1:1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든 언제든지 보호종료아동을 지지·지원해주고, 조언과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했음. 특히 취업 준비 시 동일 직업군의 관련 멘토 연계로 취업 관련 정보 공유와 취업의 노하우 및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과 상담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지체계 기반 조성도 필요로 했음

퇴소하고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편히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취업준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결혼할 때, 아이 출산할 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만을 위한 부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B-4)

사소한 일인 잡단한일, 수다, 내 힘든일,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A-2)

경험이 많은 마음 편하게 물어 볼 수 있고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선배나 나 보다 앞서서 많은 경험들을 해서 나를 안내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취업 준비하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 절실한 것 같아요

□ (자립 전과 후) 공연·전시 등의 문화와 여가·여행 등의 체험 기회 확대 필요

- 대학생활과 직장 생활기 보호종료아동은 일반가정 친구들과의 문화적 격차가 크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이에 시설 내 자립 준비 보호아동과 퇴소 이후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공연, 전시 등의 문화적 체험의 기회 마련과 함께 여가 및 (국내 및 국외)여행 등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러한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반가정의 아동과의 문화적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필요 있음

수도권으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올라와서 보니까.. 과 친구들과 저와의 문화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요즘에는 여행은 필수고, 해외여행도 거의 대부분이 다녀왔고, 어학연수도 그렇고, 거기에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도 많이 해봐서..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문화적 충격과 갭이 커서 박탈감이 많이 컸죠...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여행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시나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갈 수 있는 기회도요 (B-2)

대학교 들어와서 보니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우리들은 확실히 다르고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너무 컸죠..부모 있는 아이들하고 저하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러니.. 취업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이러한 박탈감이 쌓이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높아지고. 외롭고 우울해지고.. (A-1)

□ (자립 후)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연계 필요

- 보호종료아동에게 있어 아르바이트는 하고 안하고의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대학에 진학한 경우보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보다 많은 경제적 비용의 소요로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보다 안전하며 건전하면서도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되고 자립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즉 보호종료아동은 대학생생활 유지를 위해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주말만 이든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때 직종별 다양한 아르바이트 구인 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거나, 지역별로 보호종료아동이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연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아르바이트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가지고는 대학생활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카페에서.. 동료같고.. 사장님도 잘 보살펴보시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알바 경험도 하면서 돈도 벌었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고.. 시급 좋고 환경좋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얻기도 힘드니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좀 모아서 알려주고 연계해 주면 좋겠어요 (A-7)

대학교 근로장학생처럼 보호종료아동 대상 우선적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연계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CJ영화관이나 카페 등 시급과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등이 좋은 일자리를 저희 같은 아이들이 먼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A-3)

□ (자립 후) 취업 준비 과정 적극 지원 필요

- 보호종료아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요구함. 예로 바라는 직장 및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면접을 위한 정장 구입비, 면접 잘 보는 방법, 자기소개서에 대한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 취업을 위한 교재비, 인터넷 강의비, 개별 맞춤형 취업관련 최신 정보, 그리고 동일 직종의 관련 종사자와의 간담회 혹은 초빙연계 등을 요구함
-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취업 준비 과정으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매달 받던 자립수당이 종료되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본인이 갖고 있는 취약한 자원과 여건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 소요와 신체적 소진 등의 어려움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립 지원을 해 주기를 요구함

내년에 4학년이 되요.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자립수당이 곧 종료된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위해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자립수당이 종료되어 이전까지 쓸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기에.. 고민입니다. (A-5)

실질적으로 자립 지원은 취업 준비 과정에 더 필요해요. 한데.. 반대로 자립수당 등은 이 시기에 종료되는데.. 조금 더 지원해주거나,, 코로나 영향을 받아 취업의 길이 막혀있으니 임시적으로나마 자립수당을 연장해 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취업 준비 과정에 더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접보기 위한 정장도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왜 커요.. 저한테는요.. 책값, 인강비 등... (B-4)

취업이야 말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지원받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 취업할 때 필요한 지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면접 잘보는 방법이라든가 자소서도 전문가가 한 번 봐주면 좋겠고.. 저와 같이 간호사가 된 선배들이 오셔서 면접 방법이나 노하우 등도 알려 주면 좋겠구요.. 아니면 취업하고자 하는 관련 직종의 종사자와 연계하여 간담회나 초빙으로 불러서 이야기 할 수 있게 하거나 하면 취업 준비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관련 종사자와 멘토로 맺어 주는 것도 정말 좋구요 (C-2)

□ (자립 후) 보호종료아동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우선 채용기회 확대

- 보호종료아동은 취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취업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받기를 필요로 했음
- 다음으로 기업들과의 MOU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계약직 및 인턴십(급여 지급과 함께 3~6개월 경험) 기회 마련과 확대로 보호종료아동이 일을 경험할 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분야별로 넓혀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구함
- 마지막으로 취업 시 보호종료아동 특별 채용 및 우선권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함

계약직이라도 기업과 MOU 같은 것을 통해 시설 퇴소 아동을 우선적으로 채용기회를 주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단 3개월에서 6개월간이라도 월급 받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잘 하면 정식 채용해 주는 그런 우선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C-2)

코로나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예 취업문이 막혀 있다고 해야하나... 저는 애견 전공을 해서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 구직에 대한 정보 등을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취업 관련된 정보들..요.. (A-2)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 취업연계사업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통계학과 졸업하고 혼자 나와 살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며 취업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취업을 하는게 가장 큰 목표인데.. 구인구직 연계 및 취업 연계 사업도 주거지원통합서비스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B-3)

제 2 절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와 욕구 분석

가.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보호시설 유형별 현장 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립 담당 실무자 및 현자전문가 관점에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전반의 생활 실태와 어려움, 기존 지원사업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개선사항, 그리고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했음
- 또한,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입장에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주요 현안,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과 내용, 타 지자체 사례들 중 전북에 도입해야 할 사례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민·관 서비스 현황과 민·관서비스 발굴 및 연계 방안 모색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정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음

2) 참여 대상자 및 조사방법

- 면접 참여대상자는 현장 실무자 즉, 현장에서 시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관련 다양한 지원을 직접 추진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양육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담당자(시설장 등)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업무 담당자와 더불어 삼성자립생활관 관계자 및 주거통합서비스지원 사업 담당자 등 보호종료아동만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사업을 실시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 참여 대상자 섭외는 보호시설 유형별 자립지원 담당자 및 시설장 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먼저 전달하고 면접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한 뒤 동의한 참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이외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에게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한 경험담과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인을 추가적으로 추천받아 면접조사를 진행함
- 면접 방법은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토대로 1:1 개별 대면면접을 기본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시설장과 자립전담요원이 함께 자리하여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 면접 장소는 면접참여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원과 양육시설·그룹홈 및 기관의 상담실과 회의실·사무실 등에서 사회적 거리와 생활방역을 준수한 공간에서 실시함
- 면접조사 진행 과정은 면접 시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면접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지하고,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언급함. 그리고 면접조사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실시하였고, 면접 조사 시간은 평균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조사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2021년 3월 초부터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됨. 그리고 면접조사 이후 관련된 추가 요청 답변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검토 및 보완함

3) 분석 방법 및 주요 면접내용

- 현장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내용에 대한 분석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한 인터뷰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전사하였고, 전사된 녹취록과 면접 현장에서 노트 필기한 핵심적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 읽으면서 의미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함
- 현장 실무자 및 현자 전문가 대상 실시한 면접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설문 영역과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보여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전반적인 실태와 어려움, 기존 자립 관련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관련 필요한 정책적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반구조화 질문 형식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면접의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첫째, 현장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구체적인 경험 실태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함. 둘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자립 관련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업의 문제점, 개선사항, 주요 현안 등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셋째, 전북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욕구와 자립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현장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 연령, 소속기관, 직급, 근무경력, 지역 등을 살펴보았음

〈표 4-46〉 시설유형별 현장 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항 목	조 사 내 용
자립 실태 및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보여지는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자립 실태(신체/심리적 특성, 주거/경제적 상황, 진로/진학/취업 특성 등)와 어려워하는 부분 및 이에 따른 필요 지원 사항 •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의 의미와 자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 자립지원 업무 현황(종료아동 사례수, 사례관리기간과 적정수), 전체업무 중 자립업무 비중 및 관련 어려움, 필요 전문적인 내용과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지원 내용
기존 사업 문제점 및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 사업의 이용 현황,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추가적 필요 지원 정책 요구도 • 사회적지지(원가족, 친부모, 혈연가족 등)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 필요 지원 정책 요구도 • 자립(준비 등)지원 프로그램 및 자립이후프로그램(사후관리) 현황, 교육정도, 실효성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
정책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과 설치의 필요성(어느 기관, 어떤 기능, 역할, 방법 등) • 중앙-전북도-시군 등의 전달체계 현안과 개선사항, 전북만의 현안, 필요 기반/인프라 등 • 민/관 지원서비스 현황과 연계 방안 등 • 전북도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원 정책, 타 지자체 비교 전북도가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총 근무경력 및 자립지원업무담당 경력, 소속기관(보호시설 유형, 직위), 지역 등

나.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의 면접내용 분석 결과

1)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 및 관련 현장 전문가는 총 21명임. 양육시설 현장 실무자는 자립지원전담요원 7명과 자립지원전담요원 부재로 겸직으로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이 참여함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4명,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자립지원전담팀 총 4명 중 2명(팀장과 대리)이 참여함
- 그 외 전북지역에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내 자립지원 관련 사업 담당 팀장,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삼성자립생활관 상담지도원 1명, 민간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보호종료아동 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양육시설의 시설장 등이 현장 전문가로 참여함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양육시설의 경우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3명의 보호종료아동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고,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9명의 종료아동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전담팀(4명)에서는 7~80명가량의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고 있었음

〈표 4-47〉 면접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 및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지역	근무 경력		직위 (기타업무)	종료아동 관리 사례 수	
				총 경력	자립지원업무			
양육시설	D-1	여	49세	전주	10년	4년	간호업무	33명
	D-2	남	40세	익산	5년	5년	사회복지사	23명
	D-3	여	53세	익산	15년	약 5개월	사무국장 경계선 업무	15명
	D-4	남	42세	군산	10년	자립지원 겸임	과장	18명
	D-5	여	34세	군산	30년	11년	생활지도	15명
	D-6	여	49세	정읍	13년	자립전담자부재 사무국장겸임	사무국장 시설 총괄	10명
	D-7	여	36세	완주	8년	7년	팀장 생활지도	14명
	D-8	남	43세	고창	15년	9년	팀장 생활지도	30-40명
	D-9	남	39세	익산	12년	3년	팀장 생활지도	38명
공동생활가정	E-1	여	47세	전주	17년	자립업무 겸임	시설장	9명
	E-2	여	49세	전주/ 진안	6년	자립업무 겸임	대표자 사회복지사	2명
	E-3	남	65세	김제	20년	자립업무 겸임	시설장	2명
	E-4	여	63세	전주	5년	자립업무 겸임	시설장	1명
가정위탁 지원센터	F-1	여	35세	전주	3년	3년	팀장	500명 이상
	F-2	남	33세		5년	5년	대리	
관련 현장 전문가	G-1	여	42세	전주	1년		센터장	희망디딤동 통합지원센터
	G-2	여	34세	전주	1년		팀장	
	G-3	여	53세	전주	15년		센터장	가정위탁지원센터
	G-4	여	36세	전주	7년	3년	팀장 (2명 사례관리)	주거지원통합서비스
	G-5	여	33세	전주	6년		생활관 상담지도	18명(남 8, 여 11)
	G-6	여	62세	고창	18년		시설장	양육시설

2) 주요 분석결과

- 현장 실무자 및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 내용의 분석결과는 크게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관점에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와 어려움, 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주요 면접내용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표 4-48>과 같음

<표 4-48> 현장실무자 및 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분석결과

구분/범주	주요 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어려움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부족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와 동기 미흡
	일상생활과 자기관리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상처에 기반 한 심리·정신건강 문제 호소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 고민
	취업 준비 및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이 가장 큼
	보호종료 후 원가족 복귀 시 발생하는 잦은 불미스러운 일
자립지원 사업의 개선사항 및 자립의 주요 현안	시설 내 경계선 자능 보호아동과 종료아동 증가, 사후관리의 어려움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전문성 부재
	자립관련 지원금(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최초 지급시기 개선 필요
	현 자립 지원 사업의 병폐(자립지원사업 확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사례관리비(월 20만원) 용도 확대
자립 관련 정책적 욕구	자립정착금 활용 제고를 위한 지급방식 다양화 필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기본 조건 및 역할·업무의 정도 상이함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필요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 필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일관된 사례관리지침 위기수준별·맞춤별 차별화 필요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필요
	보호종료아동의 심리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지체계 기반 모색
	경계선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화 자립 지원 필요
퇴소 후 원가족 복귀를 위한 부모교육·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지원 필요	
취업 준비 과정 시 필요한 다양한 지원(자격증·인터넷강의비·정장구입비 등) 확대	

(1)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관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어려움

□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부족

-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이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부족으로 자립 및 정책을 위해 지원되는 현금 등이 흥청망청 쓰이는 경우가 많음. 즉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보호 받을 시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다 자립 시 주어지는 5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한 돈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념이 매우 저조하여 한 순간에 자립된 목돈을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쓰거나 사기당하거나 지인에게 빼앗기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소진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음
- 이에 현장 실무자들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금 등 목돈을 지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경제교육의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홀로 사회에 나가 자립 생활 시 돈을 어떻게 관리고, 돈을 어떻게·무엇을 위해 써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재정관리 및 경제교육을 시켜야 함을 강조함. 그 외 적금과 보험, 청약저축 등 재테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돈 같은 경우 관리를 좀 해주어야 할 부분, 본인들이 원하면 아이들이 가져와서 불안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씩 도와주는데 돈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돈이 아이들 수준에서 제로가 되는 건 엄청 쉬워요. 수준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 관리, 이 부분이 병행이 되구요(D-8)

경제교육이 언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사회에 갔어요. 가면 보험회사라던지 사회체계가 넓어지면서 유혹하는게 많아지거든요. 아이들이 들어보면 좋잖아요. 무방비상태에서 아이들이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얼마안가서 다 해약해서 손실을 보는 아이들도 많고.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아이들이 갑자기 100, 200만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옆에서 제가 케어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교육을 좀.. 몇시간.. 몇회기를 실시해주고 사례관리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의무사항으로. 자립비를 받는 조건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하겠죠? (E-1)

남자친구에게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구요. 같은 시설 선배 언니에게 사기 당하거나 다 빼앗기는 경우도 있구요. 명품 신발산다거나 최신 유행인 비싼 핸드폰 사버리거나.. 자립 정착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는 거죠 (E-2)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와 동기 미흡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인내도 부족하고, 뭘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경향이 많음. 즉 보호종료아동의 인내성, 자발성, 책임성, 자립 관련 의지 및 동기, 능동성, 주체성, 주인의식 등에

대한 의식 등이 매우 저조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시설 내 보호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와 동기 부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및 훈련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자립 의지와 삶에 대한 목표의식 형성 및 자발성과 능동성 등을 토대로 성공적인 자립으로 발 디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진취성이랄지 독립적인거는 없어요. 의지하고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지.. 바뀌어서 20년이지 그 전에는 6년이었거든요. 그래도 20년 이야기는 안하고.. 계속 여기에만 의존하다보면 아이들이 나아지지 않고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D-1)

아이들이 내가 뭘 해야할지 그런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아는 친구들도 어디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G-1)

□ 일상생활과 자기관리의 어려움

- 퇴소 전 보호시설 내에서는 식사 챙기기, 청소, 빨래, 방 정리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호시설 교사와 복지사 등을 통해 항상 수동적으로 받아 오기만 했던 습관 때문에 보호종료 이후 홀로 자립 생활 시 청소, 식사 챙겨 먹기, 시간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되는 종료아동들이 많음. 식사는 거의 배달음식이나 컵라면, 햄반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하거나 청소와 빨래 및 방 정리 등이 잘 안되어 자립생활관에서 퇴소 당하는 사례도 있었음
- 이에 보호 중인 시설 내 아동 대상 자신의 일상생활과 자기 관리를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 등 생활관리, 자기관리, 일상생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누군가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에 여기에 입소하고 청소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보통 자기가 사는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치울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되더라구요.
양육시설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양육시설에서 인권이 강화되고 이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킬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거든요. 같이 선생님이랑 청소 좀 해줄래? 할 수 없어요. (G-5)

밤에 잠을 잘 때 방 불은 안 끄더라구요.. 왜 그러나 봤더니 양육시설에서는 전원 소등을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습관이 들어서 방 불은 끄는 것을 인지 자체를 못하더라구요 (D-3)

□ 심리·정서적 상처에 기반한 심리·정신건강 문제 호소

- 현장 실무자들은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이후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유독 여자아동을 중심으로 심리·정서적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었음 토로함
-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 가장 큰 이유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보호 조치된 아동 대부분이 아동학대와 방임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들어온 경우임. 이에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는 보호 조치된 아동들의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상담·치료를 위한 예산도 투입하지만 완전한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시설을 퇴소하고 퇴소 이후 다시 관련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음을 현장 실무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음
-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은 한두 가지 이상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이면에는 부모들로 인한 어려움과 심적으로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음. 이런 아픈 아동들을 관심 갖고 신경 쓰며 상담·치료까지 하는 것도 힘들지만,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미해결된 부분이 자립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져서 성공적인 자립,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보호종료 아동 대상 심리정서 관련 상담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보호시설 내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토로함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나 퇴소 1년 전후라고 봐야할까요? 그 정도 되면 상담을 받고자 원하고 정신과 진료를 물어봐요. 저희 시설에는 학대가 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심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잘 있었고 잘 갔는데. 자기일도 하고 있는데.. 또 찾아와서.. 최근에 어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수면제를 털고 있었대요. 남자친구가 발견하고 제지를 했대요.

네가 죽음을 계속 생각한다면 엄마는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가라..그렇게 하는 친구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있었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살다보니까 과거에 학대 받았던거.. 의식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서 살 때는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막 달려갔으니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애. 안정이 되니까 내가 왜 맞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억울함이 있고 이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요. (D-7)

시설 내 보호아동 대부분과 시설을 퇴소한 종료아동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치료가 정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시설 내에서도 예산 문제로 심리정서 전문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어려워 가장 취약하고 증상이 심한 아동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치료 받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은 별도의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심리정서적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 지원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서 아쉬워요... 저는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0순위라고 봐요.. (D-2)

□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 고민

- 보호종료아동들이 퇴소 이후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보호시설 내에서는 동생, 친구, 언니, 오빠 등 여러 명이 함께 집단생활을 하고 짜여진 규율 등의 구조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였기에 학교 등에서 친구를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할 이유가 많지 않았음. 이에 보호종료아동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학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무엇보다 심리·정서적 면에서 자립성보다는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부족, 시설아동이라는 선입견과 열등감 및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와 신뢰 상실 등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퇴소 이후 대학생활과 사회 직장생활에서는 친구 혹은 회사 동료와 선임 등과의 대인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및 대인관계 시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태도, 사회성 등의 부족으로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대인관계 부적응으로 퇴사하거나 대학생활 시 친구 사귀는 법을 몰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따라서 시설 보호기간 동안 및 시설 퇴소 이후에도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자아존중감회복·자신감 회복 기회·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 각자가 생각하는 고민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대인관계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시설에 있을 때는 내가 굳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집에 오면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없어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하는지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보호종료가 되는거죠. 대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고 대인관계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워하고 직장에서도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퇴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구요.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 어려움들 대인관계 어려움들 심리정서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요. (G-4)

현실적으로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요. (G-3)

애들 기술평가를 해보면 대인관계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G-6)

□ 취업 준비 및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이 가장 큼

- 현장 실무자와 관련 현장 전문가들은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과 중요한 과제로 취업 준비와 취업을 꼽았음. 대학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이든, 현재 취업해 있는 보호종료아동이든 취업의 중요성과 취업 문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음
- 대학에 진학 한 보호종료아동은 졸업과 동시에 전공에 맞는 직장이든 혹은 그 외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직장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직장 선정 등을 통한 취업에 대한 고민해야 하고, 취업을 한 종료아동은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지속 직장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연계·지원 등이 힘들고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임을 토로함

아이들이 보호종료되고 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은 취업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고 진학한 애들도 진학하고 나면 개네도 취업을 문제구요. 진학하면 대학이라는 테두리에 있지만 졸업하면 취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취업은 어떻게 해줄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걸 하긴 하는데 취업에서 어려워요. 막상 취업했어도 적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힘들거나 직장 사람들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죠. 튕겨 나가가지고 또다시 취업하면 단기 취업 그런 것밖에 못하죠.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지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D-4)

저희 센터 아동들은 제 큰 고민과 어려움으로 주거랑 취업을 꼽고.. 취업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 주거지가 달라지고 주거지가 있다 한들 자기 능력이 안되서 취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D-9)

퇴소 아이들은 물론 자립 전담하고 있는 저희도 취업관련 고민이 크고 또 취업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종료아동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취업을 시키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이들 욕구도 다양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근무여건이 아니고 아직 연계된 건 없는데 매년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와서 같이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D-7)

□ 보호종료 후 원가족 복귀 시 발생하는 잦은 불미스러운 일

- 시설 퇴소 직후 부모가 있는 종료아동의 경우 심리·정서적 및 경제적 지지 등의 도움과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종료아동이 원가족 복귀 후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료아동에게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처음에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큰 목돈이 있어서 종료아동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희망적이나, 많은 경우 종료아동의 목돈이 없어지고 종료아동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와 다시 분리가 되어 나오거나, 오히려 종료아동에게 돈을 별도로 강요 하는 경우 등 종료아동이 두 번 버림 받는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주는 사례가 많음

절대로 부모에게 보내서 성공적인 것은 못봤으니까요.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퇴소하고 보호자에게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부모지만 그 정도로 기본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았을까 생각이 먼저 들구요. (E-2)

여기에서 긴 시간을 살다보면 그 쪽 부모와 괴리감이 있고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니까 반은 이용하고 반은 무관심도 있고. 거기에는 한 두명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보내기 보다는 여기에 있을 때처럼 필요할 때면 만나면서 독립적으로 정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은 부모하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쉽게 어서 와라 희망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데 돈이 없고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면 또 다시 분리가 돼서 아이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G-6)

저희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어서 그런지 보호하고 있던 아동을 원가족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교육과 다짐 및 원가족 복귀 후의 관계 등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테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진행하면서 원가족에 복귀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보면 2번 버림받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이로 인해 아이의 심리적 상처는 정말 더 악화되고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퇴소 이후 보호종료아동이 원가족 복귀 시에는 원가족 복귀 이전에 보호종료 예정 아동과 원가족 부모와의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을 꼭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프로그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G-4)

□ 시설 내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과 종료아동 증가, 사후관리의 어려움

- 보호아동 및 종료아동 중에서 유독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일일이 안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대부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동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시설 보호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및 종료아동은 일반 보호아동과 종료아동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일이 복잡하고 더디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봉착하는 힘든 사례임을 토로함. 이에 보호종료 시점이 지났음에도 연장보호를 해가며 자격증을 취득시켜 직장을 알아보고 취업에 성공했어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끊임 없는 관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남. 따라서 자립담당요원의 자립업무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사례 수만큼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어 그 외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향후 시설 내 경계선에 있는 지능 아동의 지속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경계선 지능 아동 특화 다양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호종료된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의 맞춤형 자립 지원 관련 추진체계와 인프라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자립 지원 홈 등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음

경계선.. 보호종료아동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해요. 제가 경계선 담당하고 있거든요.. (D-4)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능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도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지속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E-1)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동네에서 보면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수급자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방임상태도 많고, 신고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봐야 할 처지에 있는 아이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 NGO단체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오지는 않고 거기에서 할머니와 같이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경계선 이라는거죠. 후천적으로 학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경계선 확률이 언어적, 정서적인 부분만 결여되도 경계선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학습에도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업에 뒤떨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겠어요? 못가잖아요. 경계선의 아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성장을 하면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가는거죠. 경계선 아이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이. 거의 들어오는 아이들이 다 방임이나 학대나 이런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 아이도 경계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임상 심리사선생님 이야기들해보면 이 아이는 후천적인 학습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되게 높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과 지적장애아들인 것 같아요.. (D-3)

(2)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관점의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전문성 부재

- 시설 보호아동 중 만 15세부터 자립준비교육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시설 직원 위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교육을 의무적·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어서 보호아동들도 시간 때우기식 교육 분위기가 강함. 그나마 고등학교 3학년 아동은 자립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관심 있게 듣기는 하나 배부해주는 책자 위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고, 교사도 한정적이고 교육 자료로 한정적이어서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 및 전문성에 대한 한계가 큼
- 이에 보호아동 대상 자립준비교육은 자립 후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습과 현장 위주로 그룹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하고 시설 내 교사 중심의 프로그램 이외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한 다채롭고 실천과 주요 경험담 위주로 실시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보통 만 15세부터 자립교육 대상이 되요. 애들에게 교육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흘리기도 하고 그 교육이란 게 여기 있는 시설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자립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설 저를 포함해서 생활교육하시는 교사 위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그냥 듣고 흘리죠. 실제적인 자립교육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3 때라고 생각해요. 고3이 내년에는 나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나마 관심있게 듣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 아직은 먼 이야기에요. 크게 자립교육하면 한 해 참석하고 교육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든 같은 교사가 같은 내용으로 하는거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은 교육을 들어와서 식상해요. 쉽게 말하면 교육하시는 교사도 한정적이고 교육자료도 한정적이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책으로 배우는 것하고 현실과는 다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D-5)

어차피 여기있는 친구들은 자립교육을 해도 실제적으로 나랑은 먼 이야기 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대부분 한귀로 듣고 흘리고.. 그래서 저희는 고3이 되면 개인지도하면 3월 달부터 시작해요. 자립지원부에서 책자를 주거든요 그것 가지고 매주 만나서 설명해줘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해야한다 라고 지도하고 있구요. (D-3)

그리고 막상 필요한 시기는 퇴소 직전과 직후 때.. 또 퇴소했을 때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나도 몰라요. 세탁기 고장나면 어디로 알아봐야하는지 전입신고하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그렇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 솔직히 더 손이 필요해요. 그때 애들이 더 많이 요청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가서 도움이 더 필요하고 또 실제적인 건 나가서 관리가 필요하구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립전담기관이 전라북도에서 없죠.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D-6)

□ 지원금(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최초 지급시기 개선 및 물가상승률 반영 필요

- 퇴소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와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마련하고 대학 입학·등록금과 생활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전북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대학입학 시 주거마련은 퇴소 전부터 알아보고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퇴소 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쓸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함
- 또한, 퇴소 시점에 신청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및 기초생활수급 등이 신청한 날짜와 지급 날짜가 틀어지면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자립정착금과 기초생활수급 및 자립 수당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3월과 4월에 지급받지 못하여 퇴소 직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생활비 및 생계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립정착금의 경우 퇴소 이전에 주거 관련하여 필요한 상황 발생 시 퇴소 전에 지급해 주는 방안과 절차 모색 및 기초생활수급과 자립수당은 퇴소한 다음 달부터 생활비와 생계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그리고 자립수당 30만원과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급에 있어서는 매년 동일한 금액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함

저는 제 돈으로 미리 넣어주고 자립비 자체가 바로 안 나오고 퇴소를 해야 나와요. 우리아이들은 퇴소하기 전에 써야하는데 퇴소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돈을 넣어주고 퇴소하고 나오면 받고, 이사하면 가구를 사야하는데 그 비용이 후에 나오니까 제가 카드도 다 긁어주고 다음에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와 제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다른 시설도 해줄 수 있는가 우려가 되요. 먼저 돈을 1000만원 500만원 넣어주기가 어려워요. 자립비를 줄거라면 퇴소 전에 줬으면 좋겠다. 1달 전에.. 결정되면 줬으면 좋겠다. (E-1)

수급권 측정이 되고 절차가 있어서 4월로 밀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자립생활관 입소보고를 하면 구청이랑 시청이랑 소통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청하는 날짜랑 지급날짜랑 틀어지면 밀리기도 하고 해서 당월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500, 200금액이 추후 입금이 되요 보통. 퇴소하고 4, 5월에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돈을 정작 필요한 시기에 못 써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장들이 가벼운 마음에 가장 필요한 간단한 비용만 줘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가기 전까지 생활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생활비 있니? 물어보니 7만원 있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돈이 많이 들죠. 생각보다. 저희가 나열하는게 책값, 밥값, 버스비 이런거지만 사실 옷도 사고싶고, 아이들과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알바를 필수로 할 수밖에 없죠. (G-5)

자립수당 30만원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자립 관리 기관인 5년에 맞춰 연장되면 좋겠어요

□ 현 자립 지원사업의 병폐, 자립지원사업 확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특성 상 의존도가 높고 의지가 약해 시설 교사가 뭔가의 결과물을 내줄 거라는 생각,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음. 이에 종료아동 대상 과한 자립 혜택과 지원은 오히려 자립심을 꺾고 의존심을 부추겨서 실질적 자립 의지를 꺾는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 자립 지원사업만으로도 자립 관련 혜택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 한편, 보호종료아동들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인식한다면 퇴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현금성 일시적 지원보다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속 관심을 갖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함을 강조함
- 종료아동은 군대도 안 가고 퇴소하면 국가에서 집도 준다, 자립하라고 돈도 준다, 대학 가면 200만원 또 준다는 것을 알기에 관련 현금을 소중하고 아깝고 고맙게 자립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취업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꾀하기 보다는 이것 쓰고 나면 또 뭐 줄까? 나라에서 뭘 더 줄까? 기초생활수급 어떻게 하면 더 지속 받을 수 있을까? 등 취업을 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나태하게 노력하지 않고 살아보려 하는 경우가 오히려 증가하여 병폐가 될 수 있음. 이에 현 자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립심, 의지, 책임성, 자신감, 자립 동기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자립정착금 500만원도 현금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타당하고 필요한 사유가 있는 아동 대상 현금을 주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퇴소적립금(적금 등)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음

아이러니 한 문제인데요 이 친구들은 특별하게 직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잖아요. 생계비가 50만원 나와요 요즘에는 자립수당이 있어요. 보통 자립수당으로 30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80이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취업할 동기나 취업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부 친구들은요.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되요. 굳이 취업을 안 해도 크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더구나 나이가 젊은 친구니까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부 친구들에 의해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D-9)

저희 선생님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립수당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이걸 모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일 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안 그래요. 자립수당을 받으면 이 생활에만 맞게끔. 돈은 안 벌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잖아요. 자립수당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하기까지 지원하는 금액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립 선생님들이 이걸 굳이 쥐여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저는 계획적으로.... 자립수당을 주더라도 너네 자립수당을 얼마 지원할 테니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다라는 증빙서류를 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노력해서 받는다는 느낌이... 틀리잖아요. 우리아이들이 노력 없이 그냥 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쉽게 쉽게만 생각해요.... 주더라도 이걸 얻기 위해 무엇을 성취했다는 근거자료를 내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준다고 하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성취감을 느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 동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D-1)

저는 지금 그냥 LH가 딱 좋구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니까 제가 양육시설아이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딱 퇴소때든 자기에게 상황이 닥쳐 때 선생님들이 뭔가를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최소한의 안전장치? LH정도만 있으면...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생활자립관) 뭐랄까 다양한 자립 지원 혜택이 오히려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G-5)

이 아이들은 군대도 안가요. 나가면 국가에서 집 준다고 해. 애들이 그것을 주워들어서 나가면 자립하라고 돈 준대. 대학가면 200만원 또 준대. 살림하라고 100만원 더 준대. 이것들을 소중하고 아깝고 고맙게 생각하고 쓸려고 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놈 쓰고 나면 또 뭐 줄까? 나라에서 뭘 줄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벗어나려고 안하잖아요. 취직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많은 지원들이 오히려 병폐가 될 수 있어요. (D-8)

시설아이들을 누가 지지해줄 수 없고 누가 데려다 취직시켜주지도 않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반 이상은 앉아서 편하게 살려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립에서 꼭 이것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방 관리도 해보고. 돈은 나오지만 지네들 방세, 전기세 내는 것도 지네들이 내보고 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굳이 국가에서 타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벌어서 취직하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앉아가지고. 우리도 그전에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D-8)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게 해야지. 그거는 내게 하고 살아야지. 월세까지 내주면 집 관리.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너무 애들을 여기서 키우면 한없이 겪는 거예요. 물건에 있어서도 물건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사서 똑같이 주잖아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용돈을 모으거나 부모님이 몰래 사줘서 가지고 숨겨온 건 예들들어 이어폰을 샀다던가 하면 엄청 애지중지해요. 사려고 노력해요. 애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젊은 사람들은 가난한 애들도 있잖아요. 개네들은 열심히 벌어서 월세 내고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택 줘. LH에서. 애네들 부모가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가 뒤에 있어요. 자기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아이 하나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안한단 말예요. 집까지 줬어. 집을 줬는데 유지관리 하계끔 해야지 그래야 아르바이트를 하든 취직을 하든 해서 돈을 벌면 내 집을 소중하게 아끼고 써야지. 국가에서 그 비싼 집을. 원룸을 주던지 투룸을 줬는데 월세까지 줘요? LH주택을 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지 않으면 안 돼.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본인이 내게 해야지. 자립생활원도 전기세는 자기가 내잖아요. 그 정도는 내게 해줘야지. 그것도 못내는 아이들은 기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요 무능한 아이들 놀고 오락만 하고 집총이. 노는 아이들 있죠. 게임이나 하고. 월세 못 내죠. 당연히 쫓겨나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지원에 익숙하다 보면 반대로 자립에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G-6)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사례관리비(월20만원) 용도 확대 필요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주거환경 조성 및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경제·사회적 자립 적응과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월 주택 임대료 지원, 주거 유지관리 및 물품 지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 중 통합사례관리비가 매월 1인당 20만원 지급되며 지급된 사례관리비는 주로 교육·훈련비와 자격증 취득비로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중 교육·훈련비와 자격증 취득비를 중심으로 사용해야 할 사례관리비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기본적인 생활비와 생계비 등이 갖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사례관리비를 교육과 훈련 및 자격증 취득비용으로 사용하는데 큰
- 무리가 없으나, 일반 기본적인 생활조차가 힘든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사례관리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사례관리비의 사용 영역을 교육과 훈련 분야 뿐 아니라 교통비, 생필품, 식료품 및 취미와 여가 등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함

사례관리가 월20만원 연24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는데 이부분이 아이들의 욕구를 다 반영 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마다 욕구가 다르긴 한데 대부분 교육, 훈련비로 소진 해요. 학원에 간다던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던가 교재를 산다던지 이렇게 소진을 많이 하긴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생계가 조금 더 급한 친구가 있어요. 예를들면 당장 먹을 식료품이 없거나, 당장 왔다갔다 하는 대중교통비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G-4)

사례관리비에 대한 지침이 사용항목이 조금 제한적이다보니까 아이들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죠. (D-7)

일괄 사례관리비 20만원. 일괄 이런 항목으로만 써야돼. 하는 지침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사례관리비를 조금 현금성으로 식료품이라던지 대중교통비용 이라던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도 해야하고 (G-2)

□ '자립정착금' 활용 제고를 위한 지급방식 다양화 필요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음. 자립정착금의 용도는 종료아동의 주거 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 정착 초기에 필요한 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음. 이에 자립정착금을 아동의 자립 계획에 맞춰 사용하도록 시설 자립 담당자들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자립 초기 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잘못된 운용되어 지급방식에 대한 다양화의 필요성을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제시함
- 현 기준으로 퇴소 시 자립정착금은 일괄적으로 전 금액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모나 주위 지인(시설 선배 등)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보험이나 물건 구매 등으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며, 무계획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등 흥청망청 쓰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으로 초기 자립정착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일시 지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함. 우선적으로 자립정착금 관리에 대한 시설 자립지원 전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립정착금을 일부분씩 분할 지급하는 방법이나 CDA와 유사하게 적립시켜 놓고 향후 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제안됨

그거를 적립할 수 있게 해줘라. 500만원도 현금으로 주지 말고. 사유가 있는 아이들은 현금으로 주지만 사유가 없는 아이들은 퇴소적립금을 줘라. 적금을 주듯이 줘라.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E-1)

이런 용도 한에서는 18세부터 20살까지는 조건부로 찾을 수 있고 24세부터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립정착금도 그 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E-1)

자립정착금은 케이스바이 케이스거든요. 당장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런데 후원금이 없어요. 등록금을 내야잖아요. 물론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그걸로 다 커버가 안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필요해요. 그런데 후원금이 넉넉하게 있는 애들은 자립정착금은 남는 돈이에요. 그럼 막쓰는 돈이에요. 이것도 예산.. 실제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자립정착금을 CDA로 용돈통장으로 주거든요. 용돈 통장으로 받아서 이것을 그냥 CDA로 넣어가지고 시에서 불편하더라도 CDA와 동일한 절차를 밟고 찾아가는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D-7)

CDA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통 필요한 아동은 필요하니까 그 절차를 가지고 가는거구요. 최근에 자립정착금이 필요하면 퇴소 한 달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에 한해서 그러긴 한 대요. 필요하긴 해요. 아동들마다 필요하긴 해요. 적어도 CDA 통장에 넣으면 퇴소 6개월 전에 아니면 만18세 생일이 지났거나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으로 하거든요. 만 18세 이상이면 자립정착금 받을 조건이 되거든요. 그때되면 CDA로 넣어주면 필요한 아동들은 CDA 신청해서 가져갈 것이고 아니면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정책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D-4)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기본 조건 및 역할·업무의 정도 상이함

-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퇴소 이후 종료아동과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연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립전담 인력을 신규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보호아동 입소부터 퇴소까지 오랫동안 함께 보아 오고 생활한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을 제안함. 이는 시설 보호 중 아동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어느 정도 맺어온 교사가 자립지원전담 업무를 담당해야 퇴소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관련 연락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임
-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5년 동안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소아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와 역할의 구체적인 안내와 기준 및 매뉴얼의 미흡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의 업무와 역할 정도의 차이가 양극화되어 나타남. 즉 어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전화 통화 위주로 퇴소아동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황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혹은 대부분 전화오면 거기에 대한 안내 해주거나 관련 기관 있으면 연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연락을 끊거나 연락 두절 된 보호종료아동도 상당히 있어 종료아

동의 안부와 근황 파악조차도 힘든 경우도 있었음. 한편, 어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전화 통화를 통한 근황 파악에서부터 정기적인 대면만남(반찬나눔, 운동회, 모임회 등)을 갖고 고민과 상담 및 취업 연계 등까지 법적 5년간의 보호·관리 시간을 넘어 종료아동의 삶 전반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렇듯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과 업무의 표준화된 구체적인 안내가 미흡하다보니 법상 시설 퇴소 이후 5년간의 관리 업무가 의무적·형식적인 경우에서부터 진심을 담아 관리·지원하는 것까지 그 정도가 매우 상이하였음

시설에서의 자립전담요원 자리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치하는 것보다는. 솔찍히 자립전담요원을 하나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시설 내 인력이 채워지고 그러면 자립전담인력이 오히려 자립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겠냐.. 인력이 둘, 셋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신규로 자립전담인력으로 애들에게 전화할 때 당신이 원래 제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소부터 퇴소까지 봐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좋은데...

어떤 시설들은 자립을 아주 쉽게 배치해요. 자립 자리는 신입을 앉히면 안되요. 아이들 마음을 읽어줘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찾으면 시설 출신이 왔어요. 내가 키우지 않은 애가 왔어요. 애가 내가 컸던 선생님이 있나 돌려보고 없죠? 그러면 원장님 저 갈게요 하고 가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읽어주고 편하게 언제든 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립은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바꿔야하는 경우는 바꾸지만 그런 시설은 자립이 잘 안되죠.

도의 자립전담기관에서 자립을 한다고 우리처럼 하면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연계성이 없어서요. 맥락과 똑같은데 저희는 같이 컸잖아요. 우리가 입사동기예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도, 사고를 치고 와도. 한번 보달라고 할 때도 편한 거지. 우리가 있으니까. 없으면 못 오죠.

일단은 거의 전화위주죠. 전화위주로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파악하구요. 개중에 한두 명은 연락을 끊은 친구도 있어요. 시설과 단절시키고, 00에 사는 애들은 번개 한번씩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월간에는 솔직히 만나기 힘들구요. 퇴소한 친구들 해서 금전적 지원이 있어요. 그런거 있으면 퇴소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의향있으면 연계해줘서 장학금이든 일상생활정착금을 지원받게 지원하구요. 통상 사례관리라는건 어떤..아이들이 생활하는거 모르는거 있잖아요. 그런것들 전화하면 거기에 대해 안내해주거나 전문기관 있으면 연계하거나 그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D-4)

이제 그렇게 취업까지 시킨거예요. 다 면접보게하고 이력서 쓰게하고 아이육구를 반영해서 필요한 데이터나 직업, 방향으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키고 인프라 여기저기 다 알아봐서 연결연결 고리해서 회사에 집어넣고. (D-2)

(3)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관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정책적 욕구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필요

- **(설치·운영의 필요성)** 시·도 또는 시·군·구는 법 제38조에 의거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라북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장 실무자와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아동 자립에 대해 보다 전문성 및 종합적·체계적·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무엇보다 17개 시도의 9개 시도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미설치 시·도에서도 '20년 내 전담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보편적 자립지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함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역할 요구)** 먼저 시설 퇴소 후 실질적인 자립 전까지 즉, 보통 퇴소 후 최소 2년간은 자립생활 적응을 위해 도움과 지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 단계적 지원시스템 마련을 요구하였고 그 방식은 자립전담기관에서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 보다 집중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함.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 전 자립준비가 매우 중요하기에 퇴소 전 시설 내 아동간의 자조모임 형성과 진로캠프·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협도를 요구함
- 둘째로 전북 도내의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 관련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수행되어지길 요구함. 주 대상은 보호종료아동이어야 할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 교육과 정보 및 서비스, 그리고 연계 사업 등을 본 기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되어지길 희망함. 무엇보다 시설 교사들의 관심이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맞춤형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시간과 예산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임. 셋째로는 자립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체험관의 설립으로 보호종료 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아동 혼자 살아볼 수 있는 원룸 형식의 자립체험 공간 마련과 과 자립체험관의 지역 거점별 설치 운영으로 그리고 자립체험관 내 상주 인력 배치로 아동의 안전 보호와 실제적인 자립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협조,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을 위한 간담회, 워크숍, 교육 등의 네트워크 확대 및 사례관리 공유,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 관련 통계 데이터 관리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총괄적 지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만의 체계적인 자립체계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자립전담기관이 시도별로 각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올 해 안에.
근데 전북은 없거든요. 현재 9개 시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도 전담기관이 들어와야한다고 요구했었는데... 전담기관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요. 전담기관이 없다보니까 자립. 보호종료아동들의 통계관리 전담요원들에 대한 관리, 시설
별로 자립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들. 그룹홈 같은 것들은 그런게 더 약하다고... 그룹홈
에 대한 지원도 해야겠고. (G-3)

전라북도에 자립지원 전반에 대한 총괄하는 기관이 없다보니까 통계관리, 보호아동 관리적
인 부분들 어떤 친구가 타지에 가있고 어떤 친구들이 전북 안에 있는데 전북 안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고 몇 명의 친구들이 학업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통계적인 것들이 관리가 안되
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기관리에 대한 부분들.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
는거예요. 보호종료해서 혼자지내는 아동 중에 정말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긴급으로 지원해
야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개입을 주민센터에서 하기도 어려워요. 청년이고 성인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지만 집중 사례관리.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
다고 이 친구들이 퇴소한 친구들이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어서 전담요원들이 사례관리를 하
는 친구들도 아니다 보니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견도 어렵고 이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전무하고 이 친구들에 대한 관리라던지 의뢰가 들어왔을 때 누가 개입해야하느
냐 했을 때는 전담기관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하는게 맞거든요. (G-3)

최근에는 위기사례가 들어와서 전담기관을 어떻게..주거지원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위기사례아동을 저희쪽 서비스로 인입을 하게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G-4)

자립전담기관이 전북권에 생긴다면 그거(주거지원통합서비스) 위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
이 들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퇴소하고 최소 2년은 애들이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
요하고 모른 게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애들 관리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런 것도 전담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G-4)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센터가 없잖아요 관리센터가. 솔직히 이거는 도에서 관리대상아동을
시설과 연계해서. 시설 안 아이들은 NGO단체나 이런데서 협조해서 하듯이 퇴소아동도
NGO단체나 기관 단체들이 재단이나 이런 데가 이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형
성이 돼서 기관과 시설간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안
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개 후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없으니
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죠 (D-9)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자립전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야하고 있다면 주 대상은 종료아동 이어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시설에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 되면 애네들 실제적으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
니까 교사들도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하면 된단 말예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퇴소한

친구들은요 본인들도 시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걸끄러워 지구요. 어떻게 보면 퇴소한 친구들은 더 자립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관심이. 그런데 시설에 있는 전담요원이 100% 커버할 수 있냐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많아봤자 저는 ?32:44부분. 말그대로 티오 이야기했는데 임상?병리사 있고 생활복지사 있어요. 시설에. 결국엔 자립전담요원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립하는 아동들 위주로 업무활동을 했지만 엄밀히 업무는 사무실에서 나눠지는..?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생활복지사도 못하고 한데요 시설퇴소하고 나간 아동들을 전담기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D-5)

자립전담기구는 취업이든 정보든 볼 수 있는. 애들에게 필요한건 정보거든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할 것 같구요. 정보는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 취업게시판 같은거? 정보의 집합체가 됐으면 좋겠구요. 왜냐면 지금 자립관련된 지원체계도 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후죽순이예요. 여기저기. 통합되서 딱 내려오는 느낌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취합하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교육할 수 있는 책자 있죠. 그런 것들이 각 시설마다 전담요원 특성에 따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일괄적으로 제작되서.. 일년 단위로 제작하기 어려우면 삼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면 교육 컨텐츠는 비슷하긴 한데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주고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보호 종료 아이들이 동일한 정보를 받고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퇴소하고 나서는 본인이 물어볼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은 여기에 전화해봐라. 하면.. 고객센터?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D-7)

애들이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혼자 살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원룸처럼. 전라북도 권에만 있잖아요. 전주에만. 그러니까 시설로 따지면 16개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 가능하면 시 단위로. 시단위로. 아동시설마다 있긴 한데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면 어설피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혼자서 원룸처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시 단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D-2)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 필요

- 아동복지법 및 하위법령 상 시설 퇴소 후 보호종료아동을 5년 동안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업무만 강요하고 있을 뿐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장 종사자들은 퇴소 이후 5년간의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과 종료아동의 연계 유지 및 연락두절 방지와 사후관리로의 견인을 위해 재정적 투입이 필요함을 나타냄
- 시설 퇴소 후 5년간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 지원이 기반 되어야 하며, 개별 종료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현금, 현물, 필요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할 필요 있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아이들 만남이나 모임도 다 사적인 사비로 해요.. 있더라도 후원금으로 측정하는 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시설 차를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개인차를 운영을 해서 낮에는 괜찮지만 야간에 긴급상황일때는 다 개인차로 움직이잖아요. 모임활동이나 심리적 지원 및 자격증 지원 게다가 위기 및 긴급상황시 지원 등... 어느 일정 정도의 예산지 지원되면 좋겠어요. 5년 동안 관리하려고 법상으로는 해놓고서 관리만 하다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뭔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순이에요. 다 (D-9)

퇴소한 아이들을 위해 반찬도 해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불법이거든요..시설 내 아동들의 예산을 가지고 함께 끼워 넣어 회식도 하곤 하는데.. 아예 종료아동 대상 이러한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면 보다 정당하게 그리고 이 예산을 써야한다는 목적 하에 퇴소한 아이를 더 자주 불러 들어 이야기도 듣고 함께 나눠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4)

제 사비가 솔솔하게 쓰이죠. 아이들 만나는데 그냥 만나기도 뭐하고 차라도 함께 해야 하고 또 성인이나 술이라도 한잔 하다보면 제 사비며 교통비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리데 쓰라고 예산이 주워지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도 만나고 좋을 것 같은데... 관리만 하라 하지 정착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아쉽죠 (D-8)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일관된 사례관리 지침을 위기수준별 맞춤형 차별화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는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며 교육 및 훈련 분야 중심으로 복지급여 연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 생활하는 종료아동과 취업과정에 있는 종료아동 및 취업한 종료아동의 사례관리의 방향성이나 지원해야 할 서비스도 서로 달라져야 하는데 일관된 지침으로 사례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에 아쉬움을 토로함. 또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학원비 보다는 당장의 생계(교통비, 식비 등)가 급한 아동이 있는 반면, 취업으로 시간이 없는데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재를 사거나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동 등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하기에는 예산 측면에 있어서도 그 효과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긴급 및 고위험 사례부터 중위험 사례, 저위험 사례 등 위기와 어려움 수준을 고려한 사례관리의 방향성과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도 차별화 및 맞춤화 시킬 필요성을 제시함

취업한 친구들은 분명히 사례관리의 방향성이나 질이 달라져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일괄된 지침으로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한데 자꾸 학원에 다니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금 당장 식료품은 못 사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 저는 취업해서 시간이 없는데..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일반적인 교육, 훈련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고. 대상자들이 너무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례관리 비용 기준이라던지 사례관리 지침은 일괄적용이 된다는 부분이 사업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D-8)

어떤 친구들은 사례관리가 굳이 20만원까지 필요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서비스 대상에 경제력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취업 한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일을 하는 친구들 돈이 있는 친구들 가족하고 연락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경제력이나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 기준에서 고려되진 않아서 일을 하는 친구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월20만원까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되게 불안해요. 고용자체도 그래서. 처음에 취업했다고 해서 이 친구 잘지내는구나 했는데 몇 달 뒤에 보면 퇴사해 있고. 그렇게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이 친구들은 기초생활수급을 다시 적용받기는 어렵거든요. 한번 탈락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정말 열악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고 누군가의 원조도 받을 수 없이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하는데 그렇다면 이런부분은 누가 관리할것이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이 서비스 자체가 조금 대상자들을 좀 이렇게 뭐..사례관리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E-3)

좀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사례관리를 조금 현금성으로 식료품이라던지 대중교통비용이라던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도 해야하고 어떤 친구들은 사례관리를 20만원을 굳이 매달, 한 달에 필요한 5만원,10만원 정도만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있어야는데 사례관리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수준에 따라서 사례관리를 하고있지 않아가지고 아이들 욕구에 조금 그런 부분이 어긋나 있긴 해요. (E-2)

법인이 굿네이버스다 보니까 긴급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한정적이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작년에도 저희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주거지원 사업비 말고 외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확보해서 지원한 후원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도에서 대처하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거죠. 예산도 없기도 하고.

실제로 전년도에 저희 대상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친구의 장례비용을 마련해야하는데 시도에서도 그 예산은 없는거예요. 시도도 없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도..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마련해서 그때도 장례비용을 지원했었던.. (G-4)

그런 위기상황은 계속 발생하는데 시도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없는 거예요. 그니까 자립지원전담기관 역할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들이 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 자립전담기관이 빨리 설치되어서 이런 위기사례들도 지원하고 조금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G-4)

□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30인 이상 양육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 이상이 배치되도록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지원 업무는 또 다른 별개의 업무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의 자립 지원 관련 업무는 형식적인 형태에 머무를 수 있음.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 사례 수를 적정 수준까지 낮추면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현 자립전담 업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자립전담기관 설치·운영을 필요로 했음. 특히 보호아동의 경우 고등학교 선택 시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과 진로·진학 결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퇴소 아동의 경우 대학과 전공 선택, 전공에 맞는 취업 선택,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최신 정보 수집과 취업 결정 시 관련 정보 수집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기업체 연계 등 진로와 취업관련 전문화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이 자립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어 자립준비 교육의 질과 양은 시설장 마인드에 의해 결정되며, 퇴소 시점에서 초기 자립 준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이 이뤄지면 이후 아동의 연락이 먼저 오기 전에는 사후관리가 적극 실행되지 않고 있었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는 자립지원전담팀이 꾸려져 있으나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다 종료아동의 수가 많은 만큼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많았고, 연락 연계된 아동 사례 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적극 관리하고 개별 욕구를 고려한 자립 지원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 및 공동생활가정을 지역적 단위로 묶어 보호아동 및 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보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원래 자립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만들면 없어요. 누가 보면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지 그러는데 만들어야거든요. 만들어서 하다보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 독단적으로 안 되거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밤낮이 없어요 진짜. 11시 12시까지 퇴소한 아이들하고 그렇게 얹히고 설키고 하거든요. 자립담당자 이야기인데요. 퇴소한 아이들, 안에 있는 아이들.. 저는 자립전담업무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경계선까지..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저도 못해요. 자립 업무가 너무 많아서. 8대 영역. 영역에 들어간 것부터 해서 퇴소아동 관리부터 해서 주거지원서비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인력은 100%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거를 좀 커버를 하려면 정확하게 퇴소한 아이들 정말 방치돼 있는 아이들. 다시 방임된 상태예요. (D-9)

서류만 봐도 진짜 가끔 조사 나오면 서류쪽에서만도 과부화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구요. 시설에서 자립전담업무만 딱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업무도 어차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 준비 그런 것까지는 차근차근 저희가 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기는 하지만 중점관리 아동의 진로 지도나 그런 부분은 좀 관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보강되면 좋겠어요 (D-1)

제가 가장 고민되는 시기가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택시 인문계를 가야 하나 실업계를 가야하나.. 아이들의 요구를 맞춰 보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대학교 전공도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나의 주관적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진로관련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잘 결정해야 하는데 잘 못되면 시간도 낭비되고 아이도 힘들어지고 선택이 반복되면 저도 힘들고... (E-3)

대학교 입학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물리치료과를 선택하면 취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보냈는데.. 적성이 안 맞아 나오거나 다른 분야가 더 해보고 싶다고 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도가 잘 안되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여기 전문가가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진로 선택 시에... 그래서 결국은 취업까지 했다가 다른 것.. 필라테스 강사가 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집에 있어요 (E-3)

취업 시켜주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 다니죠.. 업체도 만나고 회사도 찾아가고 아이특성을 반영한 직업을 찾고 있는데.. 관련된 정보도 직접 뛰면서 취득하고.. 힘들어요.. 다른 업무도 해야 해서.. 자격증 시험부터.. 취업 될 때까지.. 관련 정보가 모여 있는 곳들이 있으면 좋겠고.. 저와 기업간의 협업체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자립전담기관이 만들어져 전담기관과 기관간의 MOU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연계가 시키면 되니까..한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없어서 제가 발로 뛰어 다닐 수 밖에 없어요.. (D-8)

게다가 저희는 14개 시군 아이들을 센터에서 4명의 인력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자립계획 및 퇴소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가장 아쉬운 점은 밀접하게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고 자립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인력 문제가 아닐까.. (G-3)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90% 이상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분리 조치된 경우임. 이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심리적 상처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시설 퇴소 후 1년을 전후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심리·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며 전문가 개입을 통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아동들의 부정적 심리와 정신건강 문제 이면에는 부모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보호조치 이후 양육·보호에서부터 자립 이후까지 지속적·전문적이며 다각적인 심리 및 정신건강 치료가 지원될 필요 있음. 특히 심리·정서·사회적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인생기술 교육 등의 지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최대 만 29세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제시함. 그리고 퇴소 이후 대학생활과 직장생활 시 신체 건강에 대한 건강검진과 신체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법률적 자문 서비스 연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매뉴얼 상 시설별로 임상심리사가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될 수 있으면 시설별 임상심리사 배치를 추진하나 전문임상심리사 부재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14개 시·군 등 지역별로 임상심리사 배치를 통해 심리·정서적 치료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어쨌든 시설 안에 있을 때는 의식주부터 시작해 정서적인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 시설에 있는 애들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주거든요. 그 애들에게 신경쓰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가지 이상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이면에 부모들로 인한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신경쓰는 것도 힘든데 자립까지 하다보니까 일이 많아져서.. (D-8)

의료지원. 필요한 게 퇴소했을 때 의료보험이 아이들이 수급자가 파기가 되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직장생활해도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아야해요. 2년 정도는 자립수당 나오잖아요. 그동안은 조건부 수급자처럼 해서 의료지원만은 꼭 됐으면 좋겠어..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상담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가고 정신과도 저희에게 전화와요. 가는게 좋겠어? 안가는게 좋겠어? 전화 많이 오는데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10년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자립을 했어요. 제가 데리고 있을때는 조울증이 있었는데 나아졌었거든요. 자립하고 나서 어느기간이

되면 우울이 찾아오더라고요. 퇴소 후 1년 6개월. 전후 해서 아이들 대부분 정신과, 상담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퇴소한 아이들 적절한 상담과 정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바로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느정도 1,2년 정도 있다가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E-3)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성인, 39세가 되도 안 돼요. 25세 이상이 돼도 안 돼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없어요. (D-2)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는 이제 아이들 심리정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진로, 진학 이 부분이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지금 만 18세에 나가는 데 있어서 심리정서가 아이들이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없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두리뭉실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퇴소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상태인지 그냥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시급한 점이 시설마다 아니면 시마다 임상심리전담반이 있어요. 각 시설마다의 자립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그 해 퇴소할 아이들 선별을 해서 집중적인 1년 동안 아이들의 심리나 정서를 모니터링해서 그 아이중에 이제 선별을 해야죠 이제. 이 아이는 내년엔 뭐 준비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인 인상 심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시화시켜서 접목시켜서 아이가 연장 할 것인지 퇴소할 것인지 그 부분 좀 논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생계형으로 취업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욕구가 있어서 기술자격증에 욕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싶어 하지는 아니면 대학 진학에 대한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 세가지 부분을 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맞는 멘토링을 한번 관련된 멘토링. 지역사회에서 매칭을 해주어 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D-3)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하기 때문에 퇴소하고 나서 자립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잘 지내지 못해요...그런 악순환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불안심리가 강한데서 오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방관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보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그 불안증세에 대한 대처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자살, 또는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담요원이 너무 힘들어요. (D-6)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지체계기반(멘토-멘티연계) 모색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교류가 전혀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고민을 나누고 조언해줄 수 있는 어른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즉, 일상생활 전반과 중요한 선택 기로에서 지지와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군의 필요성을 꼽고 있음

- 일반아동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담하고 싶은 경우 부모가 옆에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그러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부재함. 이에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적 지지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누군가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지원자를 항시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있음. 따라서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3년 동안이라도 의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기반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함. 예를 들어 외로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중요한 결정 사항들도 많은 이제 막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대상 일정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1:1 멘토-멘토 연계 등을 시도하여 종료아동의 마음의 병부터 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심리적 지지체계 기반 형성 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자립체험관의 지역 거점별 설치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자립체험관 내 상주 인력 배치로요.. 10년정도 넘게 학대아동만 보고 있고요.. 이에 아이들에 대한 상담 부분이 정말 필요해요.. (D-6)

확률로 따지면 10명 중에 한 두 명이예요. 말씀하시는 아이 대상이 10명 중에 1, 2명은 자기 스스로가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한 두 명이고. 대부분은 취업이 됐더라도 또 떨어져요. 안정 궤도에 올라왔다고 봤어도 떨어져요. 왜그러냐면 문제해결 능력이 없어요 지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층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계속 없다. 계속 위기거든요 아이들은 지지기반층이 없다보니까 마음의 문제해결능력 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대항 졸업하고나서 취업까지 연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응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D-3)

저희 센터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호자가 고연령층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 자립할 때 실질적 조언을 해준다면 미래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정은 많이 없고 오히려 실질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D-5)

정서적인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지지체계가 없다보니까 이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역 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멘토 역할을 해주는데 있으면 아이들 진로계획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립한 선배 경험담 듣고 도움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D-1)

□ 경계선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화 자립 지원 필요

- 전북 도내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보호 조치되는 보호아동의 대부분이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학대피해 아동이며 이 아동들의 많은 비율이 장애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거나 추정되는 사례들임. 경계선지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 아동으로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

가 나타나고 퇴소 이후의 관리를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업 방향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함.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점은 경계선아동의 보호조치 비율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임

- 이에 일반 보호종료아동과 별도로 보호 중인 경계선아동과 보호종료된 경계선아동 대상 또 다른 별도의 자립 지원 강화 및 관리 방안 모색이 다차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더 들어가면 경계선 아이들. 장애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는 지능이 떨어진다말예요. 그게 사각지대예요.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관리. 보호중인 아이들의 종합심사 다 들어가야해요. 아이큐랑 다 들어가잖아요. 풀배터리 해가지고. 아이 지능검사를 통해서 아이육구에 맞는 진학이나 진로를 책정해줘야한다고 봐요. 퇴소하고 나서 경계선 아이들은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D-3)

경계선 아이들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알아서 찾아서 해요 자기가 살라고. 경계선 아이들은 대부분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나 극복을 못해요.

경계선 아이들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이용만 당하지 이 두 가지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아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취업까지 연계가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D-2)

□ 퇴소 후 복귀를 위한 부모교육·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지원 필요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부모와의 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특히 보호종료아동들이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원가족 복귀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부모 역할이 안 되는 원가족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이 두 번의 버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친부의 요청으로 원가족 복귀를 했지만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모두 빼앗기고 빈손으로 다시 쫓겨난 경우, 원가족으로 복귀 준비하였으나 원가족으로부터 거부 받은 경우, 시설 보호 중에 왕래는 하였으나 시설 퇴소하고 집으로 못 돌아가고 연락은 하고 지내나 오히려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는 친구 등 부모 역할과 가족의 역기능이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원가족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원가족 복귀 결정시 부모역할과 순기능의 가족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즉 시설 퇴소 후 원가족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상담과 아동상담 등을 통한 관계 개선과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증진 및 가족이 원만하

계 기능할 수 있도록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진행 이후 원가족 복귀가 필요함. 반면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의 퇴소 후 원가족 복귀 시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없는 상황임

완전 단절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연락은 하나 왕래가 잦고 일반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느낌은 없는거죠. 연락은 하지만, 최근 들어온 친구들도 아보전 사례관리 하던 친구가 이 서비스로 인입이 됐는데 그 친구도 퇴소하고 집으로 못돌아갔고.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오히려 한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더라구요. 집으로. 알바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부모역할이 안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퇴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빠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자립정착금 이라던지 통장 다 해지해서 가져가고 너 독립해. 하고 빈 손으로 내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G-4)

사회비용이 덜 들어가도 자립할 수 있는데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아이들은 부모와의 연계를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원가족 상담이라던가 (G-4)

그러니까 보호종료된 후에 가족들과 불미스러운 일들도 되게 발생하고 거기서 한번 더 상처받고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G-4)

최근에 문의가 들어왔던게 원가족으로 복귀한 친구들에 대해서 학대피해아동은 원가족으로 복귀할 때 프로그램을 해요. 집으로 돌아가기전에 부모상담하고 아동상담하고 관계 개선하는 프로그램 한 다음에 복귀하거든요. 그런데 보호종료아동들의 퇴소하고 원가족으로 들어갈 때 그런 프로그램은 누가 해야하나? 아보전에서 할 근거가 없어요 만 18세가 넘어가서. 원가족 프로그램은 그러면 전담기관에서 해줘야하는데 없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립전담기관에서 할 수 있게 빠르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보장에원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는 부분이에요. (G-4)

저희도 분노하는 일이에요. 작년에 고3 이입한 친구도 고3 퇴소하면서 원가족으로 복귀를 준비했었던 친구였는데 원가족에서 거부한거예요. 나 못받겠다. 하고. 이미 퇴소절차는 받았고. 원가족은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이친구는 이미 퇴소했기 때문에 재입소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고3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야 하나. 해서 다행히 그때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례관리하면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고3때 혼자 지내면서 사례관리를 진행했었던거거든요, 그런 위기상황들이.. 친구들 70명 사연을 하나하나 읊어드리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G-4)

□ 취업과정 시 필요한 다양한 지원(자격증·인강 등) 확대

- 보호종료아동의 정기적인 경제적 활동은 곧 자립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 있음. 즉 취업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 학원비 지원, 인터넷 강의로 지원, 그리고 취업 면접을 위해 면접 시 필요한 정장(양복, 구두)지원, 자기소개서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함. 무엇보다 시설 퇴소 아동이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설 자체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차원에서는 지원이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취업은 정보 싸움인데 관련 정보를 문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및 시스템도 부재함에 안타까움을 토로함

한편, 자격증 취득 과정 시 학원비 지급 지원의 경우,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조건 없이 종료아동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적성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학원비 지급 지원을 통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 목표물을 제시해야 할 경우 아동들은 시도하고자하는 출발점에서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 하는게 있으면 좋겠어요, 양육시설에 있을 때는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느끼다가 자립 이후 취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게 자격증 취득 이거든요. (D-5)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토익이라던지 이거에..학원은 어려워요..동영상이라던지 뭔가 인강이라던지.. 아니면 책이라도 주시면. 교재.. 어쨌든 취업과 관련된 거네요.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거고 용돈을 모아 사기엔 버겁고... 아무래도 전문성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학과도 그런 쪽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과 관련된 부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G-5)

예산은 조건없이 애들이 학원다닐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왜냐면 요즘 지원사업은 그러긴 한데요 예전 지원사업은 자격취득조건을 해서 목표물, 결과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보면 그 사업을 따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이 나와야하니까. 그런 결과물 없이 왜냐면 탐색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하는데 제약을 두고 가버리면 충분히 탐색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솔직히 말하면 네일 하고 싶어서 네일 했어요. 그런데 한 두달 다니고 나면 나랑 안맞는 것 같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D-4)

퇴소는 했는데 자격증 관리 자격증 따고 싶은데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싸요. 굴삭기는 10시간 60만원이에요. 10시간 6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퇴소한 아이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따고싶어 하거나 관심있어 하는거요. 이게 지원이 힘들고 이게 정보싸움이에요. 청년재단이라고 해서 문의를 해가지고 알아보거든요. 전라북도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광주까지 이 아이하고 같이 픽업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다오고 그랬어요 내년에 생길지 아니겠지. 그게 청년재단이라고 청년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지원 사업이.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자격증이나 학원이나 이런 쪽. (D-2)

제 3 절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욕구

- 보호종료아동 대상의 면접조사와 현장실무자·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내용을 시설유형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로 구분하여 살펴봄

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어려움

1) 시설(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어려움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부모 학대와 방임 등을 통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10년 전부터는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학 진학과 실업계 졸업 후 취업 비율 유사)**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의 만 18세 만기퇴소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진학률과 취업비율은 50대 50으로 거의 유사하며, 대학진학이나 취업도 하지 못한 무업형의 비율도 상당 수 있음.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는 연장보호 보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요구나 혹은 시설의 요청에 의해 만18세 퇴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 퇴소보다 연장보호가 많고, 7명 이내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양육시설에 비해 반찬지원, 화식자리나 영화보기에 동석하기 등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가 아닌 평생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지속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장도 있었음
-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부재)**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공동생활로 자기 돈에 대한 개념과 관리 경험이 부족함. 이에 퇴소 시점에서 자립을 위해 지원 받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및 기타 후원금을 자유 만끽할 수 있는 행동들 즉, 사고 싶었던 물건건기,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었던 것 하기 등을 통해 2-3개월 내에 흥청망청 소비는 경우가 많았음. 그 후에는 홀로서기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 부재로 친구 집을 떠돌거나, 독서실을 전전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아르바이트 등에 전념하는 등의 그에 대한 책임을 처절하게 치르게 됨
- **(심리·정신적 어려움과 심리·정신적 지지자 부재)**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등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이 대부분인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이후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이에 퇴소 이후 스스로 전문 심리상담소 및 정신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심리·정신적 지지체계 없이 시설 퇴소 후 모든 것을 혼자서 고민하고 결

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부담감, 책임감 등을 토로함. 즉 주위 누군가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까지 묻고 상담하고 조언 받고 의지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부모역할을 지속해 줄 수 있는 심리·정신적지지가 향후 생애주기 내내 함께 해주기를 호소함

- **(경계선지능 아동 증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내로 보호조치 되는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중 지적장애와 경계선지능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립준비와 퇴소시점과 퇴소 이후 자립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큼
- **(실업계 졸업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 필요 강조)**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보호시 대학 진학 시 경제적 어려움이 클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에 대해 안타까워했음. 본인이 대학을 진학 해보니 국가장학금, 자립정착금, 대학입학지원금, 자립수당, LH주택 지원 등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대학생활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설 보호아동들에게 실업계 졸업 이후 취약한 기업에 취업하기 보다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전공을 살려 보다 전문직으로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희망함
- 최근에는 퇴소 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지원금, 자립수당, LH 주거지원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 지원 사업이 많아 자립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하나 자립 지원 사업 특히 자립수당이 종료될 시점에서 지원금 중단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제적 및 심리적 고민과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음. 한편, 매달 자립수당과 기초수급비가 지원되고 있기에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 등 취업을 통한 자립 의지가 낮아지고 오히려 자립지원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 상황임. 즉 실질적인 자립보다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액 안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만 있으려는 상황이 큼
-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취업의 문이 보다 작아져 취업의 어려움은 더 커짐. 적성이 대학 전공과 맞지 않아 대학 졸업 시점에서 아르바이트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취업의 고민과 어려움 많음

2)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어려움

-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 가족 해체로 조부모 및 친인척에 맡겨진 경우가 대부분 임. 간혹 이혼 한 한쪽 부모님의 사망이나 양쪽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정위탁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음. 일반가정위탁의 경우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이 많으나 그 비율은 낮음

-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진학률이 시설(양육시설 및 그룹홈) 보호종료아동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만 18세 만기 보호종료 보다 는 대학진학과 동시에 연장 보호로 이어지고 있음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100명 기준 약 13명(13%)만이 실업계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대학교에 미진학 하고, 나머지 87명은 대학에 진학함. 그리고 과거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진학을 또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위탁 보호 아래에서 대학진학으로 보호가 연장되기 때문에 대학졸업 연령인 24~26세에 대부분이 보호 종료됨. 이에 자립장착금 및 자립수당은 24~26세에 지원받기 시작하고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는 보통 20대 후반 혹은 30세까지 지원되고 있음
- 한편,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진학하는 대학은 전북지역에 소재한 대학보다는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무주는 충남과 대전으로 고창과 순창 및 정읍은 광주지역으로 그리고 수도권(서울과 경기 등)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광역시의 일자리와 취업 상황 여건이 전북지역 보다 좋아 전북지역에 머물러 있는 종료아동은 상대적으로 적고, 타 지역에 나가 (대학 및 취업)생활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많음
-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보니 주거 관련(주거마련, 주거관련 경제적 비용 등) 어려움과 취업 관련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지방 혹은 전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 자금과 매월 내는 월세 비용이 많고, 주거 마련도 힘들며, LH주택 지원 보다는 민간 월세주택 마련이 많았음
- 본인이 가정위탁보호아동이라는 사실을 연장보호가 끝나는 시점에서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할머니·할아버지, 고모, 큰아빠 등의 심리적·정신적 지지체계가 되어 진로에 대한 상담, 고민, 조언 등을 얻을 수 있기는 하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 상담 받고, 조언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조부모나 친인척 보다는 관련 전공과 선배나 종사자 혹은 보호종료아동 선배 등의 멘토 연계를 필요로 함

나. 지원정책의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1) 양육시설 관점

- **(자립수당 대학졸업까지 연장)**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비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퇴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자립수당 3년 지급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대학 4년까지 확대 지원을 요청함. 대학 4학년부터 본격적인 취업준비과정으로 취업준비로 써야할 비용은 증가한 반면 오히려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감소하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함
- **(주거지원통합사례서비스 사업 확대)** 주거지원통합사례서비스를 지원 받고 싶지만 사업의 혜택 인원수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임. 사업에 대한 홍보·정보제공 및 예산 확대로 홀로서기 시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받기를 요구함
- **(자립지원 업무의 양극화)** 양육시설 보호종료 사후관리 시 시설 퇴소 아동의 50% 이상이 연락 두절 및 기타 이유로 근황조차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양육시설이 있는 반면, 시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을 정기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 만남과 식사자리를 갖기까지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양육시설도 있었음
 - 전북지역 총 12개의 양육시설 중 3~4개의 양육시설 이외 대부분의 양육시설의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의 사후관리는 문자로 자립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전화통화를 통한 1년에 한 번 근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형식적 형태에 머물러 있었음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공통_자립정착금의 지급 방식과 지급시기 개선)** 실질적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자립정착금을 현금 일시불로 지급하기 보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여건 파악 후 필요할 경우에는 현금 일시불로 주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적금으로 묶어서 주는 방식·CDA 형식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고민할 필요 있음.
- 그리고 자립정착금의 대부분은 주거 마련 비용(전세 보증금 등)에 활용되고 있고, 이럴 경우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진학 시 대학 합격 시점인 12월 말부터 1월, 2월에 주거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 마련해야 함에도 조기지급 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지급 가능하기에 한계점이 많음. 따라서 자립정착금이 주거마련으로 활용될 경우 조기지급 시기가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지급 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2) 공동생활가정 관점에서의 지원정책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전담지원요원은 부재하고, 자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여건 등도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함. 보호아동 보호·관리하기에도 업무의 양이 많음을 호소함. 일부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자립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체계성과 전문성이 낮고,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입장에서 자립 준비와 퇴소아동 자립 지원이라 생각하는 지원들을 일부 실시하고 있었음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보호아동의 진로·진학 시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함. 보호아동의 적성과 성격을 반영한 인문계고 혹은 실업계고 진학인지에 대한 결정과 대학 전공학과 선택 시에도 보호아동과 시설장의 일반적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한 아동의 진로 결정과 설계를 필요로 함

3) 가정위탁보호 관점에서의 지원정책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교육·프로그램과 전북지역과 타 지역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5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는 지리적 접근성과 정보의 접근성 한계 및 한정된 인력(자립지원전담요원 4명)으로는 직접적이면서 면밀한 관리·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
 -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아동 대상 자립준비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큼. 예를 들어 무주에서 전주까지의 편도 시간이 약 3시간 소요되며 왕복 6시간 소요로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있음
 -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는 자립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의 개념보다는 1년에 1회 기본적인 근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단순 관리 차원의 개념이 강함. 이에 보호종료아동은 센터 연락을 좋아하지 않고 연락자체가 잘 안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연락이 끊기거나 두절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호종료아동에게 센터 차원에서 자립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함.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종료아동들이 받아들인 후 신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혜택 보호종료아동은 4명임. 이는 전북지역에 머물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수가 타 시설(시설, 그룹홈)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희망 아동과 신청 자체가 적으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TO가

한정되어 있음

- 대학 진학과 동시에 전북지역을 빠져나간다는 점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팀의 주요 현안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은 수도권과 타 광역시로 빠져나가 대학생활과 일자리 등 취업까지 하여 전북지역 내로는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전북지역의 일거리·먹거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수도권과 타 시·도로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북에서 키운 보호종료아동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방안 모색도 절실한 상황임

다.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정책적 욕구

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적 욕구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 기본생활 등을 위해 매월 30만원씩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아동에게 3년간 지급하고 있음. 반면, 자립수당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나타나는 병폐들이 있었음.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매월 주어지는 약 80만원 수준의 생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이에 자립해야 겠다, 취업해야 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지급되는 자립수당에 의존하여 실질적 자립이 늦어지거나 시간낭비 및 의존성이 커지고 있었음. 이에 매월 자립수당 지급과 동시에 일상생활관리 및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자립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심리·상담 지원이 병행될 필요 있음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은 학대피해아동이 대부분이고 학대가 심한 아동들이기에 심리·정서 상담과 정신과 병원 치료가 보호종료 이후에도 적극 필요하고 지속적인 연계도 필요함
- 타 시도에는 있지만 전라북도에 없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시급성과 자립체험관의 지역 거점별 운영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에 있어서 일반 사후관리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담당하고, 위기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후관리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체계 필요로 함
- 취업문의 막혀 취업난이 심각한 현대에 일반가정의 청년들도 취업이 어렵고 힘든 만큼 보호종료아동에게 취업 준비 과정 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구함. 예를 들어 취업준비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자격증취득비 지원, 학원비 지원, 면접을 위한 정장구입비 지원, 자기소개서 전문가 컨설팅, 면접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 등 취업과 면접 과정 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2)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적 욕구

-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부재에 따른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 공동생활가정에 보호 조치된 보호아동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학대와 방임 등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으로 심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 및 정신적 치료 지원 필요. 심리 및 정신적 치료는 퇴소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성 제기
- 법률 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시 예산 투입 필요 요청.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호종료아동까지 케어 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정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면 보호종료아동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하였을 시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컸음. 주거의 안전성과 직장까지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주거 선택의 어려움에서부터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의 어려움까지. 이에 보호종료아동이 수도권에서 쉽고 안전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함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 보호시설 유형별 격차가 최근까지도 발생하였음.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아동지원수당 등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지원되던 사업이 공동생활가정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행정담당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했음

3)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적 욕구

- 전북지역 및 수도권 중심의 타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와 전북 14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500명 이상의 보호아동 자립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함. 즉, 현재는 전북 14개 시·군의 보호아동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보호종료아동을 한 곳의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한계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동부·서부 혹은 북부·남부 등 2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2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리해야 하는 아동의 숫자는 줄이면서 인력은 충원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관련 지원 사업들이 기업·사회공헌사업 등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 입장에서 여기 저기 퍼져 있는 관련 사업들을 한데로 모아서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안내해

줘야 하는데 창구가 여러 곳으로 혼선이 많고, 보호(종료)아동 입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기에 복잡하고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음. 이에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여기 저기 퍼져 있는 자립 관련 사업에 대한 집합과 관련 사업을 관리해 준다면 혼선 없이 일관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임.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전라북도의 보호종료아동 관련 사업 등의 체계 마련과 컨트롤타워 기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전북도만의 자립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자립관련 인력 지원 및 예산 등의 수반으로 통합적·체계적·전문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해질 것임

- 전북지역에 보호아동의 실질적 자립 준비와 자립 체험을 위한 자립체험생활관 설치 및 운영 필요

〈표 4-49〉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내용 요약·정리

구분	아동양육실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자립실태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부모 학대와 방임을 통한 학대 피해아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제선 지능아동 지속 증가 추세 ◦ 대학진학률과 실업률증가 후 취업률 유사 ◦ 만18세 만기퇴소 비율이 더 높음 ◦ 금전적 관리/경제관념 부재로 자립정착금 등의 활용에 문제발생 ◦ 학대피해에 따른 심리·정신적 어려움과 심리·정서적 지지자·의지할 수 있는 사람 부재에 따른 외로움, 부담감 등이 큼 ◦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과 기초수급비 등으로 그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 많아짐 ◦ 퇴소 이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보호종료아동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준비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최근 5년 전부터 부모 학대와 방임을 통한 학대피해아동이 100%이며 지속 증가추세 ◦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1~2년 연장보호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요청으로 퇴소하는 경우 많음 ◦ 학대피해정도사 심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우울증, 불안증, 트라우마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 보호종료이후 재발 경우 높음 ◦ 심리·정서적 지지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부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 ◦ 소규모의 가족 분위기에서 보호종료아동 개별 특성에 맞춤 지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 가족 해체, 혹은 한쪽 및 양쪽 부모 사망으로 조부모와 친인척 등에 의해 보호 ◦ 90%이상 대학진학,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 및 광역시인 경우 높음 ◦ 100% 연장보호 이후 24~25세 보호종료 ◦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 대학과 직장생활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많기에 주거 관련 경제적 어려움 호소 높음
지원사업 개선사항 및 주요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대학졸업때 까지 연장 요구 ◦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업 확대 ◦ 자립지원 업무의 양극화 ◦ 보호종료 50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 ◦ 자립정착금 지급방법 개선 필요 ◦ 경제선 지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의 어려움 큼 ◦ 시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학대 피해아동으로 심리·정서적 문제 큼. 전문 상담·치료 연계 및 지속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전담지원요원 부재로 체계적·전문적 자립 지원 취약 ◦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시 진로·진학에 따른 전문적인 컨설팅 등의 개입 필요 ◦ 보호종료 50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 ◦ 자립정착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개선 필요 ◦ 학대피해아동이 대부분으로 심리정서 전문치료 지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14개 시·군 관할을 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맡고 있어 관련 지원에 대한 한계 큼 ◦ 사후관리의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근황 파악에 머물고 있음 ◦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높아 정보의 접근성 및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많음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정책적 육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자립수당 지급기간 동안 심리·정서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례관리 가능 병행 요구 ◦ 보호아동 심리정서지속상담을 위한 시설별 임상 심리사 배치 및 퇴소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상담과 정산과 병원 치료 등 관련 지원 사업 필요 ◦ 취업준비과정(자격증취득비, 학원비, 장장구입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심리 및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멘토-멘티 사업 필요 ◦ 자립체험생활관 지역 거점별 운영 및 생활관 관리 업무담당자도 필요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간담회 등 네트워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실질적 현실적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제고 교육 필요 ◦ 퇴소 후에도 심리 및 정서적 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필요 ◦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 ◦ 보호시설 유형별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 행정담당자들의 관심과 주의 요청 ◦ 자립체험생활관 운영 필요 ◦ 많은 업무로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 사후관리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별도로 관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충원 시급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거점별 설치 필요 ◦ 자립체험생활관 운영 필요 ◦ 전라북도 자립관련 콘텐츠를 다뤄 기능 시급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적 교육 필요 ◦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보호종료아동 전북지역 내로 유인하고 머물 수 있는 전북민의 지원체계 방안 모색 필요

제 4 절 소결

가. 보호종료아동 관점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1)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신체심리적 건강상태)** 보호종료아동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본 결과, 5점 기준 3.90점으로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한편,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심리상태를 보면, 우울감 측정문항 중 4점 기준 “일이 뜻대로 안될 것 같음” 응답이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우울감 총점은 13.9점으로 우울감 척도 일반수준을 벗어난 ‘경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더욱이 우울감 심리상태는 개인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과 관련 지원이 필요함. 현재의 삶에 대해 보호종료 전과 후가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특히, 성별이 여자인 경우, 그리고 종료사유가 연장종료일 경우 우울감 수준이 높고, 삶의 질에 대한 평가수준도 낮게 나타남
- **(대학진학 영역)**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진학률은 84.2%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그리고 혈연(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특성이 보호종료 전 아동의 진학상담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대학 진학 후 등록금 마련 방법을 보면, 주로 장학재단의 장학금 활용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었음.. 하지만 대학 재학 중에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보호종료아동 100명 중 약 3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자립정착금을 활용하는 비율도 나타남.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으로 아르바이트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상황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워(4점기준 2.70점) 학점 취득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면 자립정착금 등의 활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반면, 도시·군청 지원은 소수에 불과하였음.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의 병행 어려움은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대학 중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취업 관련 영역)** 현재 상태에 대해 취업중인 경우는 약 33%에 불과하였고, 취업준비중인 경우는 67%로 나타남.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한편, 취준생이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딱히 준비를 하는 것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0명 중 약 11명꼴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특히 21세이하일 경우, 그리고 여자일 경우, 18세만기퇴소일 경우에 높았는데 이들을 위한 세부적인 진로/취업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컨설팅 될 필요 있음. 특히, 성별로 여자일 경우 남자에 비해 취업률도 낮아 보호종료 되기 전부터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탐색과 직장체험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등 보호종료와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의 적성을 모름'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9.8%, 취업정보 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여자는 관련 경험 부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연령별로는 21세 이하의 자신의 적성을 모름, 22세 이상은 관련 경험 부족 때문에, 종료사유별로는 연장종료 아동이 관련 경험 부족해서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 **(주거 관련 영역)**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5.0%)이 LH주거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역시 LH주거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음. 보호종료아동에게 LH주거지원 사업은 현재나 향후 주거형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한계가 있어 만18세에 퇴소하여 지원 수혜를 받더라도 20대 초반에 주거지를 새로 구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요보호아동은 아주 작은 리스크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한편 LH임대 등의 정부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우도 있어 자립의 기본적인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LH 지원이 종료가 된 연령이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월세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는 주거비용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욱이 오랜 시설 생활로 본인만의 생활공간을 원하는 특성으로 응답자의 80%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비용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임.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지원'이었음.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서는 전세지원 강화나 전세에 준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향후 이사계획을 보면, 응답자의 50%가 거주지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전 사유로는 취업(이직) 사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만료, 더 큰 집으로 이사 등의 순이었음.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은 여자가 향후에 이사계획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유로는 임대료 부담과 교통편리성을 위해 이사를 계획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남자의 경우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21세이하가 이사계획이 더 높았고, 이사사유로는 학업을 위한 사유가 더 많았고, 22세이상은 취업을 위

한 목적이 더 많았음. 응답자 특성 고려 거주지원 방안 마련 제시가 요청됨

- 한편, 아동자립지원시설 이용의향은 60%가 없다고 나타냄.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시설 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특히 여자에게는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거주의사는 낮은 실정임. 기피하는 사유를 개선하여 입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반면, 현재 전북지부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은 매우 높게 나타남.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에는 현금성(사례관리비 20만원)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접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 단순히 거주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넘어 다른 유인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경제상황 영역)** 현재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고 있는 주관적 경제수준은 7점 기준 3.9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전체 평점 보다 낮게 나타난 응답자 특성은 성별로는 여자(3.83점), 연령별로는 22세이상(3.89점), 종료사유별로는 만기 퇴소(3.90점), 혈연 존재여부별로는 가족이 없는 경우(3.90점) 그룹에서 전체평균보다 낮았음. 자립금 수령 현황을 보면, 보호종료 당시 CDA는 평균 499만원, 후원금은 460만원, 월평균 소득은 95만원이었으며, 평균적으로 보호종료 시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퇴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는 CDA 금액은 혈연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아동에서 가장 높았고, 22세 이상으로 분류될 때 가장 낮았음. 후원금은 가족이 없다고 분류될 경우 가장 높고, 22세이상으로 분류될 때 가장 낮았음. 월평균 소득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았게 나타남. 자립금 사용처는 거주지 마련, 생활비, 대학등록금 등이 대부분이었고, 자립금사용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교사와 상의하는 경우는 100명 중 약 20명에 불과하였음. 아직 경제관념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갑자기 많은 금액을 수령하여 퇴소하는 경우 한꺼번에 모두 사용될 우려가 높고, 사회적 위험에 처할 경우가 높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립 전부터 경제관련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 욕구)** 보호 당시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 수료 정도를 보면, 일상생활기술(요리, 집 관리 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기술과 직장생활 기술 교육 수료 정도가 가장 낮았음. 이는 향후 보호아동이 자립하여 취업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역별 자립준비교육을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할 필요 있음. 보호 당시 받았던 자립준비교육 중 직장생활기술에 대한 도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자립의 가장 필수적 요소인 취업과 관련 직장생활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됨

- 보호종료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 > 외로움 > 취업 > 자산관리” 등의 순이었고, 현재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걱정/고민은 “취업 > 경제적 어려움 > 정서문제 > 학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은 자립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 중요하지만, 한편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보호종료아동의 ‘외로움/정서문제’라 할 수 있음. 보호종료아동의 입소 사유는 80% 이상이 학대로 인한 분리조치임.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업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는 한 완전한 자립이라 될 수 없음. 더욱이 혈연이 존재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심리·정서 건강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이를 위해 보호종료 전에 심리·정서 측면의 강화를 위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설 보호 당시를 비롯해 종료 후 지금까지 조언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시설 생활지도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가장 많이 나타남. 한편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경우 시설마다 1명이 배치되어 기존 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도 배정되지 않는 보호종료된 아동까지 5년간 자립지원을 하기에는 업무과중에 시달리거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관련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보충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처우환경개선이나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예산 확충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 있음
 - 한편,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교류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교류를 희망하지 않았고, 지원혜택 받을 때만 연락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기술한 심리적 어려움의 성별 차이와 연결하여 볼 때, 성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질 나타냄
- 보호종료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역시 팽팽하게 나타난 가운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적절한 연령은 평균 21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중요한 것은 자립지원기간의 적절성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의 81.4%는 보호종료 자립지원기간 5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이에 대한 고민이 추후 논의 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호종료 이후 지원서비스에 대해 펴보면, 서비스 ‘인지울’의 경우 LH전세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국가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 CDA 등의 순으로 높았고, ‘수혜울’은 자립정착금, CDA,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등의 순으로 높았음. 한편, ‘필요도’의 경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CDA 등의 순이었음. 인지울과 수혜울 그리고 필요요구 모두 현금성(경제적) 지원 영역에 집중되었음. 이런 결과는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난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의 현금성 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에 관한 욕

구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앞서 남자보다 낮은 여자의 취업률과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됨. 이는 단순히 여자의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2) 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면접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크게 자립실태 및 어려움,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그리고 정책적 욕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먼저 보호종료아동 입장에서의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실태와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퇴소시점에서 홀로서기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밥하고 반찬 만들어 먹는 요리하기의 어려움과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세 번째로는 대학 및 직장생활에서 일반가정의 동료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문화적(공연/전시/여행 등)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꼈고, 네 번째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어려움·책임감 등에 대해 버거워했고 힘들어 했으며, 곁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사항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 가장 힘들음을 토로했음
- 다섯 번째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약한 취업난과 자립수당 3년 지원의 종료 시점이 대부분 대학생 4학년으로 취업준비로 보다 많은 금전적 소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립수당의 종료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 된다는 점에서 고민과 염려가 많았음. 여섯 번째로는 수도권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 생활 시 지방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무계획적으로 일탈을 꾀하고 가지고 있는 정학지원금을 쓰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곳에 흥청망청 쓴 이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이에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 전 요리방법·집안일 하는 방법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진행, 고민과 상담 및 지지 등 부모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심리적 지지체계기반 조성, 자립수당 종료 시점이 대학교 4학년인 취업준비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 준비 지원 방안, 취업난 해결을 위한 취업 관계 정보 제공과 기업 연계 보호종료아동 우선 채용 기회 확대 등의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자립준비교육 대부분이 형식적·반복적·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자립에 도움되지 않음. 둘째, 법률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가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립수당 3년 지원을 대학교 졸업때까지 연장해주기를 요구했으며 넷째로는 정부지원과 민간 후원 사업의 규정 기준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보호종료아동 발생 등으로 나타남
- 이에 자립준비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도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체계적·실질적 후속관리를 위해 교육을 통한 전담요원의 전문성 제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통한 정보와 보호종료아동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 입장에서 실질적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욕구들을 살펴보면, 자립 준비시기에 홀로서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 필요, 전문적인 진로·적성의 검사와 체험 등을 통한 진로설계의 중요성,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을 필요로 함. 보호종료 이후에는 심리적·정서적 의지가 될 수 있는 지지체계(멘토 연계 등) 기반 조성, 문화와 여가·여흥의 체험 기회 마련 및 확대,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연계,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적극 필요하다고 요구함.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취업 관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요구함
- 이상의 보호종료아동 입장에서의 정책적 욕구는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차원 보다는 도 차원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전라북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나. 현장실무자·현장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1)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현장실무자 및 기관의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는 현장실무자·전문가 관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및 어려움,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주요 현안, 그리고 자립 관련 정책적 욕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먼저 현장실무자 및 기관의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보호종료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봄. 첫째 보호종료아동은 대부분

이 금전적 관리를 해 본 경험이 거의 부재하여 퇴소 시 주어지는 자립정착금과 후원금 등 큰돈에 대한 금전적 관리 미흡과 경제적 관념 부족으로 자립을 위해 활용해야 할 금액을 짧은 시간 내로 흥청망청 소비하는 경향이 높음. 둘째, 보호아동 뿐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와 동기가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 수동적, 비자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 셋째, 시설 내에서는 식사,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은 경험이 없기에 퇴소 이후 일상생활과 자기관리에 어려워하고 있고, 넷째, 시설의 거의 90% 이상이 학대 피해아동으로 심리·정서적 상처에 기반 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섯째, 취업 준비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가족 복귀 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2번의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리고 최근 시설 내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음으로 현 자립지원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자립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보호아동 대상 자립준비교육의 실효성과 전문성의 문제, 자립관련 지원금의 최초 지급 시기의 개선과 현 금전적 자립 지원에 대한 병폐,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사례관리비 용도의 확대 및 자립정착금 실용적 활용 제고를 위한 지급 방식의 다양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기본적 조건 및 역할·업무의 각기 상이함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를 필요로 함
- 마지막으로 현장실무자와 기관의 현장전문가 관점에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욕구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 둘째,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 투입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일관된 사례관리지침을 보호종료아동 위기수준별 및 맞춤형 차별화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함. 셋째,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와 학대피해아동이 90% 이상인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 및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함. 여섯 번째로는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인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지체계 기반 마련 모색, 일곱째 최근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경계선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화 자립 지원, 여덟 번째 퇴소 후 원가족 복귀 시 부모교육과 원가족복귀프로그램 기본적·필수적 지원,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의 기본인 취업을 위해 취업 준비 과정 시 필요한 다양한 지원(자격증취득비, 인터넷강의비, 정장구입비 등) 확대를 요구함

〈표 4-50〉 면접조사 결과 주요내용 요약·정리

구분	보호종료아동	현장 실무자 및 관련 기관 전문가
<p>실태 및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시점에서 홀로서기에 대한 높은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 ◦ 밥·반찬 등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의 어려움 ◦ 대학 및 사회생활 시 대인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 크게 느낌 ◦ 심리적 및 정신적 지지자의 부재 ◦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큼 ◦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취약한 취업난 ◦ 수도권지역 주거관련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큼 ◦ 생계형 아르바이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 부족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와 동기 미흡 ◦ 일상생활과 자기관리의 어려움 ◦ 심리·정서적 상처에 기반 한 심리·정신건강 문제 호소 ◦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 고민 ◦ 취업 준비 및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이 가장 큼 ◦ 보호종료 후 원가족 복귀 시 발생되는 잦은 불미스러운 일 ◦ 시설 내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과 종료아동 증가, 사후 관리의 어려움
<p>지원사업 개선사항 및 주요현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반복적인 자립준비교육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의미 없는 인위적 연락 ◦ 자립수당 종료시기는 취업준비 시기, 증가된 경제적 어려움 ◦ 정부와 민간 자립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발생, 지원에서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전문성 부재 ◦ 자립관련 지원금(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최초 지급시기 개선 필요 ◦ 현 자립지원 사업의 병폐(지원사업 확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 ◦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사례관리비(월20만원) 용도 확대 ◦ 자립정착금 활용 제고를 위한 지급방식 다양화 필요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기본조건 및 역할·업무의 정도 상이함
<p>정책 요구</p>	<p>〈자립준비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서기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 필요 ◦ 전문적인 진로·적성의 검사·체험을 통한 진로설계 지원 필요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필요 <p>〈보호종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정신적 의지가 되는 지지체계 기반 조성 필요 ◦ 공연·전시 등의 문화와 여가·여행 등의 체험 기회 확대 필요 ◦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연계 필요 ◦ 취업 준비 과정 적극 지원 필요 ◦ 보호종료아동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우선 채용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필요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 필요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일관된 사례관리지침 위기수준별·맞춤별 차별화 필요 ◦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지체계 기반 모색 ◦ 경계선 보호종료아동 대상 특화 자립 지원 필요 ◦ 퇴소 후 원가족 복귀를 위한 부모교육·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지원 필요 ◦ 취업준비과정 시 필요한 다양한 지원 확대

〈표 4-51〉 설문조사 주요 결과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 주요 결과 내용	정책적 시사점
<p>〈신체·심리적 건강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도의 우울수준, '일이 뜻대로 안될 것 같음'(4점기준 3.37점), 연령 높을수록 우울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부재로 인한 심리적 위축 포함 심리정서지원 확대 필요
<p>〈취업관련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준생이지만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무업형 100명 중 약 11명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18세 만기퇴소일 경우 높게 나타남 취업준비과정 시 어려움 : 적성 모름(29.6%), 직종 관련 경험 부족(19.8%), 취업정보 부족(16%), 학력·기술 부족(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취업 관련 전문적 지원 필요 진로/취업 관련 개별적 컨설팅 될 필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마련 필요 취업관련 분야별 최신의 정보 제공
<p>〈경제적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약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 갖고 퇴소 자립정착금 사용처·금액 본인 결정 비율높음(10명/2명만 사설교사와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과 경제관념 형성 및 효율적 금융관리 교육과 상담 지원 필요
<p>〈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어려운 점 : 경제적 어려움 > 외로움 > 취업 > 자산관리 순 가장 큰 걱정과 고민 : 취업 > 경제적 어려움 > 심리·정서문제 >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로움,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 보호종료아동 수요에 입각한 다양한 취업지원 강화 필요

〈표 4-52〉 면접조사 주요 결과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면접조사 주요 결과 내용	정책적 시사점
<p>〈자립실태 및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준비(요리)/청소/빨래/시간·자기관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리·정신건강문제 어려움과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부재 아르바이트 구직 및 취업 준비와 취업의 어려움 원가족 복귀 시 불미스러운 일 발생 사례 상영수 있음 경계선지능 보호아동과 종료아동 증가와 사후관리의 어려움 큼 자립 동기과 의지 부족, 의존성·수동성 강함 금전적 관리 및 경제적 관념부족 / 자립정착금 효율적 활용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기술 훈련을 포함한 체형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비 지원 심리적 지지체계 조성 자격취득 등 취업관련 교육비 지원, 취업관련 정보제공 취업준비과정 시 필요한 지원 강화(정장구입, 직종별 현장종사자와의 만남과 멘토 연계 등)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진행 자립의지 강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p>〈사업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실효성 없는 자립준비교육 자립준비교육의 전문성 부재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부족과 예산 부재로 사후관리 어려움 긴급 및 위기수준별 맞춤 사례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체험관 설치 운영 현실화된 자립준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준비 지원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역자원 연계 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추가 배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관련 예산 마련
<p>〈정책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필요 보호종료아동 관련분야 취업 정보제공과 우선 채용 기회 확대 초기 안정적 자립을 위한 면밀한 사례관리 지원 및 (준)자립지원 사설(사례관리·상담 등 지원)을 의무적으로 머물다 자립역량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보호대상 자립지원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취업 관련 다 영역의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전북지역 다양한 기업·사업체와 채용 관련 MOU 체결 확대 전북차원의 예산투입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수 확대

5

장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제2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제5장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 본 연구는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 전북지역 보호아동의 발생현황과 특성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황 분석, 둘째,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관련 법률·제도·지원정책 분석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셋째, 보호종료아동·현장실무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로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와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
-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주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 1 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가.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법적 근거기반 마련 필요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분석과 면접조사 결과,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와 자립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체계적·일괄적으로 담당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전라북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는 무엇보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중앙기관과의 전달체계에 있어 전북도 단위의 전담기관 부재로 시군구 행정기관과 시설로의 자립지원 사업 전달에 혼선과 사각지대 및 공백이 발생하여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유형별(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 지원서비스의 질과 양이 증구난방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관련 내용 부재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이에 전북도 차원의 관련 담당 인력 확보와 예산이 투입된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전북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종합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및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전문화된 자립지원 업무 전담과 시설유형별 자립지원업무 지원, 지역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거점별 자립체협관 운영,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 교육,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위기 사례 집중관리, 자립지원데이터 통합관리, 보호종료아동 긴급위기지원사업, 자립지원 사업 홍보, 지역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과 기능을 총괄·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구함. 그 외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으로 자립영역별 관련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 시설별 제공, 다양한 사업 추진 창구의 일원화, 시설유형별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발굴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운영 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점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실태 및 어려움에 대해 정확하게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탁기관 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21년도 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 중인 9개 시·도 중 7개 기관은 아동복지협의회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어 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관련 내용이 치우쳐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료)아동의 특성과 상이한 여건 및 상황 등은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에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위탁 운영 시에는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이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과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립 지원 해 줄 수 있는 양육시설과 함께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함께 대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 '21년 4월 기준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미설치 시·도에서도 '21년 내 전담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한편,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체계화 및 예산 수반 등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아동복지법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자립지원,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 등)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정책과 사업 실행이 추진되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과 자립 지원 사업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라북도 차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시설(중장기 청소년쉼터)을 퇴소한 청소년도 포함하여 금전적·제도적·프로그램 차원의 지원 내용도 포괄하여 체계간 차별 및 격차 없이 시설 보호아동 및 시설외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이 필요함

나. 자립지원 교육의 현실화·내실화 필요

- 설문과 면접을 통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분석결과, 시설에서 실시되는 자립 지원 교육이 퇴소 이후 자립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중심의 현실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 만 15세부터 시설 보호아동은 자립준비교육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시설 교사 위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교육을 의무적·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시간때우기식 분위기가 강함. 자립직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아동은 자립에 대한 현실로 보다 관심 갖고 주위를 기울이나 책자위주의 설명식 교육이 대부분임. 시설 자립지원전담교사도 자립 관련 교육 자료가 한정적이어서 자립지원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한계가 큼을 지적함
- 이에 보호아동 대상 자립 지원 교육은 자립 후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체험실습과 현장 위주로 소그룹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교사 중심의 책자 설명식 방식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다채롭고 실천과 주요 경험담 위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립 실태 분석결과, 자립 생활 시 실제 생활에 가장 필요했던 교육은 홀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청소·집 관리, 요리(반찬)하기, 세탁하기, 시간 및 자기 관리하기, 돈 관리하기, 적금과 보험, 경제관념 형성과 더불어 청약저축 등 재테크 관련 교육 등을 필요로 했음

다.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 밀착 사후관리 위한 단계세분화·위기수준별 차별화 지원 필요

- 보호종료아동은 공동생활만 하다 퇴소 후 홀로서기인 자립 생활로의 전환 시 다각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자립이란 생애주기의 중요과업으로 일반가정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일생동안 연속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립하게 되는 반면, 보호종료아동은 본인의 자립 준비와 능력에 상관없이 만18세라는 법적 기준 연령의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일찍 보호체계에서 자립하도록 되어 있어 홀로서기에 있어 더욱 취약하고 불리함
- 이에 법률로 정해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있지만, 시설에서의 자립 준비 단계 보다 단순화 되어 있고 사후관리 관련 예산도 부재하여 사후관리 개념 보다는 1년에 1회 근황을 파악하는데 치중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면밀하고 실제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투입과 더불어 보호종료 직후부터 보다 세분화된 단계별

로 체계적·종합적·개인 맞춤형 및 보호종료아동의 위기수준별로 차별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 생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예산 투입 필요)** 아동복지법 상 시설 퇴소 후 보호종료아동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업무만 강요했을 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부재함. 반면,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호종료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현금, 현물, 및 다양한 필요서비스 등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줄 수 있고, 보호종료아동과의 지속적인 연계 유지와 연락두절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며,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의 1년에 1번 근황 파악에서 욕구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기에 실질적 자립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봄
- **(세분화된 단계별 사후관리 지원 필요)**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의 5년이내의 사후관리는 보다 세분화된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면 보다 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짐.
- 첫째, 시설 퇴소 직후 필요한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 대학생생활안전자금, 자립수당, 후원금, CDA등) 이외 시설에서는 보통 자기 것 없이 다 물려 입고, 신고, 물려주기 때문에 퇴소 시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만 가지고 나오기에 옷가지도 거의 없음. 이에 기숙사 및 LH주택 마련으로 필요한 자립 초기 기본 물품(침구류, 생활용품, 식기세트, 주방용품, 치약칫솔, 가구 및 일반식품 등) 등이 당장 생활에 필요하나 구입해야 할 물건들이 꽤 많고 이에 소비되는 비용도 꽤 높아 부담되고 있음. 따라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기본적인 자립 초기 지원 물품 패키지 등을 후원 받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둘째,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직후부터 온전한 성인의 역할을 요구 받으나 심리·정서 및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혼란과 부담 및 압박감이 크며, 작은 일부터 중요한 결정 사항까지 홀로 선택과 결정하기에는 정신적으로도 경험상으로도 연령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음.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경제적 지원(자립수당지급 기간 3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시설 퇴소 직후부터 약 3년간의 자립수당지급 기간 동안 사례관리를 함께 한다면 보호·관리·감독의 기능 등이 보강되어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연계와 취약한 상황의 보호종료아동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고 심리·정서 및 경제·사회적 측면의 자생력 제고로 자살 등으로 누락되는 보호종료아동 없이 모든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5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시설 퇴소 후 3년 이상 부터는 본격적인 취업준비과정 단계로 진입하게 되지만 자립수당지급은 오히려 종료됨.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은 곧 자립과 연계되기 때문에 취업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시기에 경제적 및 시간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즉 자격증취득비용, 학원비, 인터넷강의비용, 그리고 취업 면접을 위한 정장(양복, 구두)구입비 등 소비는 더 커지지만 지원되던 자립수당은 종료되기에 주말 및 주중의 아르바이트로 취업준비에 대한 시간상 부족으로 힘들어함. 따라서 취업준비과정에 있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취업 준비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취업특강, 취업에 도움 되는 경험과 자격증소개, 증명사진촬영 및 사진제공, 호감가는 첫인상과 이미지메이킹 방법, 직무인턴기회, 창업안내, 취업관련 최신정보 공유 등)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 있음, 그 외 취업 면접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면접합격 특강, 인턴십을 통한 직장체험, 희망 직장인과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등 취업 과정시 필요로 했음
- **(보호종료아동 긴급 및 위기수준별 사후관리 차별화)** 대학 생활하는 보호종료아동, 취업준비과정의 보호종료아동, 취업한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의 방향과 관련 지원 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일관된 광범위한 안내 지침으로 사례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 및 고위기 사례부터 중위기 사례, 저위기 사례 등 긴급성과 위기 및 어려움 수준을 고려한 사례관리의 방향성과 지원서비스의 질과 양도 차별화 및 맞춤화 시킬 필요 있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후관리 매뉴얼과 지침 및 관련 예산 정도가 책정되어져야 할 것임

〈표 5-1〉 중앙의 자립지원 단계 및 김성경 외(2020)의 자립단계별 자립지원 사업 현황 비교

자립단계	내용	단계별 자립	주요 사업	
5단계	사례관리 회의	자립준비 단계 (중학생 이하)	주거+사례관리	
	프로그램		보호아동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Ready 단계 자립통합지원센터(모금화-삼성) 현 10개 지역 실시	
6단계	15세부터 자립지원계획 수립운영		현금	디딤씨앗통장
7단계	자립체험프로그램	자립체험 단계 (고등학생)	주거+사례관리	자립체험관(아동권리보장 자립지원단) 자립통합지원센터(모금화-삼성) 현 10개 지역 실시
	프로그램		보호아동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Ready 단계 바람개비서포터즈	
8단계	보호종료 전 자립점검		현금	디딤씨앗통장
9단계	보호종료	자립생활 전환단계 (종료 후 1년)	주거+사례관리	LH 임대주택 + 주거지원통서비스,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서울시자립형그룹홈 자립통합지원센터(모금화-삼성) 현 10개 지역 실시
	프로그램		보호아동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Action 단계 바람개비서포터즈	
10단계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현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전자금, 자립수당, 기초수급
		준독립 생활단계 (종료 후 2~3년)	주거+사례관리	LH 임대주택 + 주거지원통서비스,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서울시자립형그룹홈 자립통합지원센터(모금화-삼성) 현 10개 지역 실시
	프로그램		보호아동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Action 단계 바람개비서포터즈	
	현금		자립수당, 기초수급	
		독립단계 (종료 후 3년 이상)	주거+사례관리	LH 임대주택,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현금		기초수급	

자료: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김성경 외(2020) 보호아동청소년자립통합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라.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인력 배치 및 전문성·역량강화 필요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의 보호아동 대상 자립 준비 교육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대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시설별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 관련 업무는 별개의 업무들과 함께 진행되고, 1인당 관리해야 할 보호(종료)아동이 적게는 30명 이상 많게는 20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형식적인 형태와 사후관리의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근황 파악에 머물러 있음
- 이에 시설별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지원을 면밀하게 준비시키고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 인력 배치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사례 수도 적정 수준까지 낮추어 현 자립전담 업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립 지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지역적 단위로 묶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로 보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별표12])〉

-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에 1인 이상배치(1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필요인원배치하며,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 권고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센터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반드시 1명 배치하며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추가 배치

- 또한, 시설의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현실적인 자립 준비와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 즉 자립 8대 영역별 실천 교육 방법, 자립 지도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립 지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사례공유와 전문가의 슈퍼비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업무 소진 예방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마. 심리·정신건강 지원 강화 및 심리적 지지체계 기반 조성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현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경제적 지원을 아무리 채워도 심리·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질적 자립이 어려워짐을 현장 실무자들은 지적하고 있음. 즉 전북지역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 90% 이상이 아동학대와 방임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학대 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

해 분리 조치되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폭력 피해경험으로 한두 가지 이상의 심리·정신건강의 문제와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음. 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에서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정신과 병원치료를 실시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치료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임. 이에 시설 퇴소 후 보호종료아동의 많은 수가 1년을 전후로 심리·정신건강 문제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으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함을 현장 실무자들은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심리상담·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 뿐 아니라 인생기술교육 등의 지원도 포함해야 하고 이런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이 원하는 연령까지 지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보호 시설에 있는 동안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치료 지원은 관련 예산 확보로 보호아동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지체계기반 조성)** 시설을 퇴소 한 보호종료아동은 아주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고민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까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며 도움을 받거나 자신을 인도해 줄 심리·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줄 부모 같은 어른이 없다는 점에 가장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음
- 시설에서는 고민이나 문제 및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설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줬지만 퇴소 이후에는 혼자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이 컸고, 도움을 청하거나 구할 곳이 시설 친구 이외 없는 것에 불안하고 막막해 했음. 이에 보호종료아동이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중요한 결정과 고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의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등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기반 형성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자립수당을 지원 하는 3년 동안이라도 의무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기반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사례관리나 1:1 멘타-멘토 연계 등을 시도하여 종료아동의 마음의 병부터 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호종료아동간의 자조모임 형성·유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함께 함으로써 느끼면서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등 외로운 홀로서기에서 함께하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도 필요함

바. 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지원 및 보호종료 취약계층 특화 자립지원

- **(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지원 필요)** 시설 퇴소 후 부모 있는 종료아동의 경우 심리·정서·경제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원가족으로 복귀하도록 하지만, 많은 경우 종료아동이 원가족 복귀 후 자립지원정착금만 떼이고 다시 버려지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부모와 다시 분리가 되어 나오거나, 오히려 종료아동에게 돈을 벌도록 강요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함.
- 이에 시설에서는 보호아동과 부모간의 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원가족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이 두 번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원가족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원가족 복귀 결정시 부모역할과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귀 프로그램이 보호아동 전반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 및 지원되어야 함. 원가족 복귀 전 부모 상담과 교육을 통한 부모역할 지도, 부모-자녀간 관계 개선과 증진 교육 등을 통해 원가족이 원만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 받은 뒤 원가족 복귀가 필요함. 반면,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후 원가족 복귀 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함
- **(보호종료 취약계층 특화자립 지원)** 전복지역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보호 조치되는 대부분의 보호아동은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학대 피해아동이며, 이 중 많은 비율이 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되거나 추정되는 경계선지능 아동임.
- 경계선지능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보다는 연장보호가 많고, 연장보호가 만료되어도 홀로서기가 힘들기에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립지원담당요원인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계선지능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는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일이 복잡하고 더디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봉착하는 힘든 사례로 어떻게 지도 및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사업방향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함. 그리고 자립담당요원의 자립 업무가 경계선지능 아동 사례 수만큼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하여 그 외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복지역 시설에 경계선지능 아동의 보호조치 비율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호종료아동과 별도로 경계선 지능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후관리 지침과 추진체계 및 인프라와 사업 발굴 등의 방안 모색이 다차원적으로 필요함

제 2 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정책분석과 자립실태·정책적 욕구 관련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점들을 토대로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방안을 3개의 정책목표별 8개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총 2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표 5-2>와 같음. 또한 과제의 시급성과 필요도 및 중요도를 고려해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함

<표 5-2> 정책목표별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방향 및 세부 과제(안)

정책목표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안)	추진기관
보호종료 아동 자립역량 강화	심리·정신건강 치료 지원 강화	(단기) 보호종료아동 전문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단기) 지역 거점별 양육시설 임상심리사 공유 배치	여성청소년과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단기) 지역·시설 맞춤형 퇴소선배그룹과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기) 혈연가족 및 대안가족 연계·교류 강화 (단기) 자립한 퇴소선배와 토크 콘서트(퇴소선배의 자립이야기)	
자립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보호아동 자립 준비 현실화	(중기)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기)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진로·진학 컨설팅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퇴소 직후 초기 자립 지원 강화	(단기) 자립 초기정착을 위한 생활꾸러미 지급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후원 협조
		(중기) 보호종료아동 (준)자립생활시설 설치·운영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단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전북차원의 사례 수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취업준비과정 지원 확대	(단기) 면접 정장 구입비 및 증명사진 쿠폰 지급	여성청소년과, 후원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단기) 현장종사자와의 만남 및 멘토 연계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장기) 지역 기업 연계 우선 채용 MOU체결	
보호아동 자립 지원정책 기반 조성	추진체계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장기) (가칭) 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단기)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여성청소년과
	시설 특성별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중기)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상시 운영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중기) (공동생활가정) 사춘기 보호아동 양육코칭 교육 지원	
		(중기) (가정위탁) 지역 센터 추가 건립 통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충원	
	(중기) (공통) 사후관리 예산 지원		
자립지원전문요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단기) 자립 지원 업무 역량강화 (장기) 자립지원전담요원 소진 예방·회복 프로그램 및 힐링시간	여성청소년과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 최근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 현장에 있는 보호종료아동과 시설 종사자(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경제적 지원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조성 및 자발적인 자립 동기와 의지의 필요성을 꼽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와 함께 홀로 모든 것을 선택·결정하여 책임지고 감당해야 함에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의지할 곳, 도움을 청할 곳을 찾으나 이에 대한 부재로 심리·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하여 성인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자립을 결과가 아닌 과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역량, 사회적 역량, 관계적 역량 등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치와 기회 마련이 필요함

1-1.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신건강 치료 지원 강화

1-1-1

보호종료아동의 전문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아동의 90% 이상은 아동학대와 방임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학대 피해아동으로 대부분 심리·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하고, 깊은 심리적 상처와 문제를 갖고 있음.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내에서는 계획되어진 일정에 맞춰 생활지도사 선생님의 지도·감독 하에 공동생활을 하고 제한적이지만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지속하면서 심리·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
- 반면,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후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 없이, 도움 청할 곳도 도움 받을 곳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압박감, 심리적 위축 속에서 긴장감과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불안감, 두려움, 무기력증, 과거의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들이 시설 퇴소 후 1년을 전후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어려움 호소하는 많음 사례와 사회적 문제(자살 등)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적 및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고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

도록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심리정서 상담치료와 정신과 병원치료)이 필요하며,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심리·상담치료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전북 시설 퇴소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타지역 거주자 포함)
 - 사업비 : 약 1,000만원 (1명 당 15회, 연 20명)
 - 사업기간 : 1년간 시범사업 운영 이후 지원대상자와 지원회기 등 변경 개선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차원의 심리·상담치료 및 정신과 치료비 예산 확보하여 관련 업무 전북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위탁
 - 지역 거점별 심리·상담치료센터 및 정신과 병원 등과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지원 협약
 -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천, 참여자 모집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지역 거점별로 협약된 심리·상담치료 센터 및 정신과 병원에서 전문 치료
 - 심리·상담치료 센터 및 정신과 병원 치료 내역과 정산은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일괄 처리
 - 시설별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관련 사업 홍보 및 사업 추진
-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사업 홍보 창 띄우기 등으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 조치되는 보호아동의 대부분인 아동 학대와 방임 및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분리 조치되어 보호대상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와 정신·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보호대상아동 중 지적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되거나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아동도 비율도 높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대상아동 대상 심리종합검사, 심리치료, 재활치료, 문제행동 치료 등을 위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전문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 한편,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매뉴얼 상 30명 이상 양육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임상심리사 2급 이상)이 법정배치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실행되고 있지 않음
- 이에 가능하면 양육시설별 임상심리상담원 배치를 추진되어야 하나 2급 이상의 전문임상심리사의 인력 부족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14개 시·군을 크게 4개 지역(전주·완주, 군산, 익산, 정읍·고창)으로 구분하여 거점별로 임상심리상담원 공유 배치를 통해 심리·정서적 치료와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더 나아가 공동생활가정 내 보호아동 대부분도 폭력 피해아동이기에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임상심리상담원도 별도 지역 거점별로 배치될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대상 : 전북지역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도 포함 필요)
- 사업비 : 임상심리상담원 4명의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 전북 양육시설 지역 거점별 임상심리상담원 공유 배치를 위한 임상심리상담원 4명 공모·선정
 - 임상심리상담원 4명 선정
 - 4개 지역 거점별(전주·완주, 군산, 익산, 정읍·고창)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 임상심리상담원 시설 보호아동 심리치료 관련 업무(심리종합검사, 심리치료, 재활치료, 문제행동 치료 등) 추진

〈표 5-3〉 종사자 배치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참조

직종별	법정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14참조)
• 시설장	• 시설당1명
• 사무국장	•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 상담지도원	• 양육, 일시보호 필요인원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 1명, 아동 10명 이상-30명 미만 - 2명, 아동 30명 이상 - 3명
• 임상심리상담원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 생활복지사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 간호사(간호조무사)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상담소 30명 이상 1명
• 직업훈련교사	• 양육, 보호치료 시설은 필요인원
• 사무원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10명 이상 1명
•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인원

자료 : 2021년 아동사업 안내

〈표 5-4〉 개정 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2 참조)

직종	현행	개정	적용시기	
			기존 종사자	신규 종사자
임상심리 상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16.7.1

※ 종전 규정('12.8.4 이전)의 자격기준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는 경과조치 기간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료 : 2021년 아동사업 안내

1-2.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1-2-1

지역·시설 맞춤형 퇴소선배 그룹과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분석 결과,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후 경제적 지원이나 후원보다도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에 더 힘들어 했음. 즉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후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자신을 인도 해 주고 이끌 어줄 부모나 어른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 구할 곳도 없다는 막막함과 불안감, 두려움 등에 처해있었고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지 등을 알려주고 안내해줄 어른역할을 해줄만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전 생애 주기 동안 부재하다는 점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했음
- 이에 연구결과에서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모든 것을 홀로하기보다는 지역 출신의 시설 퇴소 선배들과의 만남과 모임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상황에 대한 동질감·소속감을 갖고 퇴소 선배가 앞서 경험한 자립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상담 등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지역 및 시설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타지역 거주자 포함)
- 사업비 : 약 500만원
- 사업기간 : 1년간 시범사업 운영 이후 추진
- 사업내용
 - 지역거점별 및 시설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소)그룹별 자조모임 형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자 참여와 관리 지도
 - ※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천과 보호종료아동의 참여 신청으로 대상자 모집
 - 분기별(1년에 2번 정도) 자조모임을 지역 거점별 및 시설별 추진
 - ※ 타 지역 거주 보호종료아동 참가 대상자 상황 보며 지역 구분
 - 최신 정보제공, 경험담과 상담·고민 나눔, 맛있는 식사 혹은 힐링 이벤트 등 진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설 퇴소 전부터 보호종료아동은 사회로 나가 홀로 모든 것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막연함,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내 던져진 외로움, 각박함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음. 이런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힘듦은 퇴소 이후 심리·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원 해주고 지지해주며 함께 해줄 지지체계가 부재함에서 초래됨
- 즉,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이라 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한 친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립 역량은 어떤 경제적 지원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이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밀한 유대 관계 구축의 힘은 보호종료아동의 연줄을 보다 확장하고 늘리기는 것, 즉 보호종료아동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인도해 줄 어른, 심리·정서적 조언자이자 지지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조부모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혈연 관계자와 연계 강화 및 언제든지 심리·정서·경제적 지원을 해줄 후원 가능한 대안 가족 찾기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구축과 그 연계 및 교류의 강화가 필요함

[1] 혈연관계 가족 연계 및 교류 강화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시설유형별 시설장과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역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사업대상 :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혈연 관계자(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조부모 등)와 보호종료예정아동
- 사업내용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가족관계 및 기본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혈연 가족 찾아 연계·교류 방법 모색
 - 혈연 가족과의 유대관계, 애착,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류·관계증진 프로그램 진행, 혈연가족의 역할과 기능 등 안내
 - 퇴소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2] 대안가족 연계 및 교류 강화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시설 유형별 시설장과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업대상 : 대안가족(보호종료아동의 대리가족이 되고 싶은 자원봉사자), 보호종료 예정아동
- 사업내용
 - 대안가족이란 시설 보호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주말 및 방학 등 일정 시간동안 일반가정에 대한 체험과 지속적인 연계·교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대리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가족이라 할 수 있음
 - 시설 보호아동과 참여를 희망하는 대리가족을 1:1로 매칭하여 주말, 방학, 입학, 졸업, 생일, 명절 등 인생의 중요 시점에서 일반가정 체험의 기회 제공과 시설 퇴소 후에도 서로 연락하기, 밥 같이 먹기 등 먼 친척처럼 보호종료아동의 생활을 챙겨주고 지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지지 체계 조성 가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과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보호아동의 자립의지와 동기가 매우 저조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겠다란 의지도 없으며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즉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은 인내성, 자발성, 책임성, 자립 관련 의지 및 동기, 능동성, 주체성, 주인의식 등에 대한 의식 등이 매우 저조했음
- 보호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립 의지와 동기 부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및 훈련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자립 의지와 삶에 대한 목표의식 형성 및 자발성과 능동성 등을 토대로 성공적인 자립으로 발 디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시설 보호아동의 자립 의지 및 동기 강화와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퇴소 선배들의 만남을 통한 퇴소 이후의 자립 경험담, 어려움 등을 듣는 기회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흔히 잘 풀린 시설 퇴소선배를 중심으로 시설 내 보호아동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경험담과 자립 이야기, 어려움, 그리고 성공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전북지역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업대상 : 시설별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3년
- 사업내용
 - 시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시설유형별 토크 콘서트에 참가할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선정된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 토크 콘서트 진행 내용과 관련 업무 안내 및 교육
 - 시설유형별 찾아가 퇴소 이후의 경험담, 어려움, 관련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하기
 -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의 인센티브 등 지원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자립 지원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 보다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법률로 정해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있지만, 시설에서의 자립 준비 단계 보다 단순화 되어 있고 사후관리 개념 보다는 1년에 1회 근황을 파악하는데 치중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면밀하고 실제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직후부터 보다 세분화된 단계별로 체계적·종합적 및 개인 맞춤별 및 보호종료아동의 위기 수준별로 차별 지어 차등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 생활로의 전환이 필요함

2-1. 보호아동 자립 준비 현실화

2-1-1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생활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성공을 위해서는 시설에서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시설 내 보호아동 대상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서 향후 자립 주거공간이 될 원룸 형식의 자립체험생활공간에서 자립 생활에 대한 실제 체험이 필요하고 이런 자립체험관에서의 자립 경험과 실천 및 실습은 자립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 자립 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됨
- 전북 지역 내에 자립생활 훈련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자립체험관은 전주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거점별로 분산 마련해야 하며, 단계별 자립체험프로그램을 담당자의 진행과 안전·보호·관리 하에서 추진되면서 보호아동이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체험 중심의 다각적 경험과 다양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거나 혹은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실제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전북 지역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업대상 :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이상의 보호아동과 연장보호아동
- 사업비 : 약 500만원 (자립공간 운영·관리 비용 등)
- 사업기간 : 자립 체험 프로그램 기간별 운영
- 사업내용
 - 원룸 형식의 지역 거점별(전주, 군산, 익산, 정읍 혹은 고창) 자립체험관 마련 및 운영
 - 시설별로 자립체험관 참여 희망 보호아동 모집 및 선정
 - 아동 당 1인실 배정 이후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전북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업무담당자 관리
 - ※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는 삼성전자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을 '21년~'23년까지 3년간 운영
 - 자립체험관 5호실 마련 및 운영(전주지역에만 소재해 있음)
 - 자립체험관 프로그램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도입 진행
 - 자립체험관(단기) 1단계 : 2박 3일(고등학생 아동 대상)
 - 자립체험관 2단계(단기) : 5박 6일 (1단계를 수료하고 자립 체험을 원하는 고등학생 아동 대상)
 - 자립체험관 3단계(단기) : 3박 4일(자립을 앞둔 고 3학년 및 연장아동 대상)

2-1-2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진로·진학 컨설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현장 실무자들(자립지원전담요원 및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등)은 보호아동의 진로·진학 결정이 보호아동의 취업과 연결되고 이 취업은 실질적인 자립과 연계 되는 중요 요인 임에도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정보 부족으로 보호아동의 진로·진학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함

-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면접조사 결과, 적성과 맞지 않은 직장으로서의 취업생활 어려움, 적성과 하고 싶은 꿈에 대한 진로와 대학 전공과의 불일치로 편입과 자퇴를 고민하는 경우 등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과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위해 시설 퇴소 이후에도 오랜 방황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음
- 따라서 시설 내 보호아동의 개인별 적성과 진로에 대한 관심 및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 직업을 탐색하고 탐색된 직업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 기회를 통해 보호아동 적성에 맞춰진 제대로된 진로 및 직업 찾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소년(보호아동) 대상 진로·진학·직업 관련 분야의 다양하고 깊이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함 /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탐색과 직장체험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등 보호종료와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의 적성을 모름'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9.8%, 취업정보 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및 진로·진학 컨설팅 전문 민간 회사
- 사업대상 : 시설별 보호아동 대상 중 중 3년생부터
- 사업내용
 - 시설별로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시설 보호아동 진로탐색(적성검사, 성격검사, 직업탐구, 진로 관련 다양한 검사)
 - 진로·진학 선택과 결정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미래사회 유망한 직업 설명 및 안내
 - 관련 진로를 위한 공부방법, 진학해야할 전공 등 진로 맵 안내 등
 - 보호아동의 진로·진학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 체험장 현황조사 및 다양한 기업(발굴된 체험일터) 체험 활동 지원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유망 직업분야 특화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 보호아동들을 위한 청소년진로박람회 참석, 대학교 투어, 다양한 기업체 등 방문 등

2-2. 퇴소 직후 초기 자립 지원 강화

2-2-1

자립초기 정착을 위한 생활꾸러미 지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내에서 공동생활 시 자기 것 없이 물려 입고, 신고, 또 물려 주기 때문에 퇴소 시 가장 기본적인 물건과 옷가지들만 가지고 나오기에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생활 물품과 더불어 학교 및 직장생활 시 입을 만한 괜찮은 옷가지도 거의 없음
- 따라서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해 기숙사 입소 및 LH 주택 마련 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침구류, 생활용품, 식기세트, 주방용품, 치약칫솔, 가구 및 일반식품 등)이 당장 필요하며, 구입해야 할 기본 물품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비용도 꽤 소비되어 부담된다고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과 보호종료아동은 토로하고 있음
- 이에 시설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초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침구류, 식기류, 가루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 물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후원 및 지원 해 주어 안정적인 자립 초기 생활을 지원해 줄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22년부터 시설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신청 100명
 - ※ '19년 전북 보호종료아동 현황 : 만기퇴소 60명(45.5%), 연장종료 72명(54.4%)
- 사업비 : 약 1,000만원 (도비 100%)
- 사업기간 : 1년간 시범사업 운영 후 추진
- 사업내용
 - 시설별 퇴소를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 18세 만기퇴소 보호종료아동 우선적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일상생활 물품들 관련 후원 업체 발굴 및 협조 요청
 - ※ 자립 초기 기본 물품(안) : 침구류, 생활용품, 식기세트, 주방용품, 치약칫솔, 가구 및 일반식품류 등

-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주소지를 기입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우편으로 관련 생활용품 꾸러미를 우편 배송함
- 생활용품 꾸러미 신청과 함께 전복지립지원전담기관에 사후관리 아동으로 DB에 등록됨과 동시에 의무교육(자조모임, 자립정보 온라인 제공 등) 등을 지원 받아야 함

2-2-2

보호종료아동 (준)자립생활시설 설치·운영

- 본 연구의 자립 실태 분석 결과, 현장 종사자들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한 직후 아무 도움 없이 홀로 각박한 사회에 곧바로 진출하여 경제적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퇴소 직후 일정기간 동안 전문 사례관리사가 안전한 주거 공간 내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생활 적응을 직접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즉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 생활 적응과 지원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은 경제 및 재정적 역량 제고, 일상생활의 지식과 경험 축적,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및 의사소통 기법, 다양한 결정 사항과 고민 등에 대한 상담 등 다방면의 안내와 관련 교육·정보·안내를 제공하고 도움 받음으로써 초기 자립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무엇보다 시설 내 경계선지능 보호종료아동이 증가 추세이며 이들에 대한 퇴소 후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는 더 긴 기간 동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 퇴소 직후부터 시설 지역 근거리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혹은 사례관리사) 등이 직접 왕래하며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초기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준) 자립생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22년부터 시설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 사업운영비 : 2024년부터 도비 100%(희망디딤센터 운영 종료 후부터)
- 자립시설공간 : '22년 25개소 설치 운영 예정(희망디딤돌 전북센터)

○ 사업기간 : 입주일 기준 최대 2년간

○ 사업내용

- 시설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등에게 관련 사업 내용 안내 및 참여자 신청
- 1인 1실 주거 공간 제공
- 초기 자립생활 적응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 일상적 기본생활지원(요리방법, 반찬 만들기, 청소, 빨래, 화장실청소 방법 등), 기본주거생활지원(공과금 납부, 가전제품작동법 등), 재정 관리 및 금융교육과 자문, 심리정서 전문상담치료 등 직·간접적인 서비스와 모니터링

2-2-3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전북도 차원의 사례 수 확대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보호종료아동과 현장종사자의 면접조사 결과,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사후관리에 대한 보호종료아동의 사업 체감도는 낮고 사후관리가 보호종료아동의 근황파악에 머물러 있어 자립지원제도 상 사후관리의 취약함이 지적됨
- 무엇보다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업무와 겸하고 있으며, 관리해야할 아동 사례 수도 비현실적일 정도로 많음.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임
- 이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에서 관리하는 사례 수 정원을 전라북도 차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례 수를 확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전북도 차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위기수준이 높은 보호종료아동 중심의 면밀한 사례관리로 현실적인 자립 지원과 성공적인 자립 도모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중 위기수준이 높은 아동 10명
- 사업기간 : 최대 2년 지원

※ '19년 전북 보호종료아동 현황 : 만기퇴소 60명(45.5%), 연장종료 72명(54.4%)

- 사 업 비 : 연 24,000천원 (도비 100%)
- 사업내용
 -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동일한 참여조건자 중 위기수준이 높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 요원의 추천 및 보호종료아동의 신청자 중 평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사가 배정되어 담당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전문 사례관리사 월 1회 이상 주기적 상담, 자립경비 월 20만원 지원)

2-3. 취업준비과정 지원 확대

2-3-1

면접 정장 구입비 및 증명사진 쿠폰 지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준비 과정 시 면접을 위해 정장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됨
- 보호종료아동은 보통 면접 시 정장을 주로 대여하여 착용하였지만 요즘과 같은 취업난이 심각할 경우 취업이 면접 1회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정장 1일 대여 비용도 여러 번 쌓이니 이 또한 경제적 부담스러워 했음. 이에 취업 준비를 위해 한 번만 대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면접용 정장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면접 서류 응시에 필요한 증명사진 또한 여러 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면접 증명사진 관련 지원사업도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 관련사업 후원업체 발굴·협조지원
- 사업대상 :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 사 업 비 : 약 600만원(아동 1인당 20만원씩, 총 30명 지원)
- 사업내용
 - 남성정장, 여성정장, 정장구두 및 증명사진 찍어줄 사진관 등 후원업체 발굴·협조요청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시설유형별 관련 사업 안내

-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보호종료아동 추천 및 보호종료아동 직접 신청
- 면접용 정장과 구두 지원 및 증명사진 쿠폰 지원
- ※ 전북지역 시설 퇴소 아동이면 모두 지원 가능(타 지역거주자도 가능)

2-3-2

현장 종사자와의 만남 연계 및 멘토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요구함. 예로 바라는 직장 및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와 학원비, 면접을 위한 정장 구입비, 면접 보는 방법, 자기소개서의 전문가 컨설팅, 시험을 위한 교재비, 인터넷강의비, 개별 맞춤형 취업관련 최신 정보, 그리고 희망하는 동일 직종의 관련 현장 종사자와의 간담회 혹은 초빙 연계 등을 요구함
- 취업이야 말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취업준비 할 때 지원들이 더 확대되어지길 요구함. 이 중 향후 취업하기 원하는 직종의 현장 종사자, 예를 들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어린이집 교사, 공무원 등 오셔서 관련 분야의 면접 방법, 근무형태, 근무 경험 및 합격 노하우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더불어 현장 종사자와의 멘토 연계도 필요로 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전북지역 관련 다양한 직업군의 현장 근무자 발굴 및 협조 요청
- 사업대상 :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담당관련부서는 보호종료아동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직업군의 현장 종사자 발굴 및 연계 협조
 -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군별 보호종료아동 참여자 모집
 - 취업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군별 현장 종사자와의 모임회(간담회) 추진 및 멘토 연계
 - 희망 취업 직업 분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공유
 - 면접 절차 및 방법(면접질문, 면접복장, 면접태도 등), 합격 노하우
 - 업무 내용, 근무 형태, 다양한 업무 관련 경험 공유, 성공담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종료아동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취업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받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자격이 갖추어진 보호종료아동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우선 채용 기회를 부여해 주기를 요구함. 정규직 채용도 중요하지만 계약직 및 인턴십(급여 지급과 함께 3~6개월간의 직업 체험) 관련 채용에 대한 기회 확대도 필요로 했음. 이러한 체험 기회 마련과 확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전교육과 직업체험 등을 통해 취업 관련 시야와 분야를 넓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함
- 따라서 전북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과 MOU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계약직 및 인턴십(급여 지급과 함께 3~6개월 경험) 그리고 정규직 채용 시 우선권 채용 기회와 배려를 제공해 줄 필요 있음. 그리고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취업 관련 구인 구직 연계 및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도 함께 연계해 주는 사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보호종료아동 우선 채용 및 인턴십 지원 가능한 전북지역 다양한 기업들
- 사업대상 : 취업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담당부서는 전북 도내 기업·사업체들 대상 보호종료아동 우선 채용 및 인턴십 기회 제공 관련 협조 요청
 - 협조 및 지원하기로 체결된 기업·사업체 관련 채용과 인턴십 관련 정보 제공
 - 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안내,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에게 정보 제공
 - 추천 지원 및 참여신청한 보호종료아동 대상 관련 기업·사업체 연계 취업 채용 지원과 인턴십 기회 부여

- 전북지역 보호아동의 현실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 도모를 위해서는 자립 관련 업무를 전문적·종합적·체계적·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체계화시켜 예산을 수반하여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복지법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자립지원,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 등)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정책과 사업 실행이 추진되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과 자립 지원 사업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라북도 차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그리고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설유형별 자립 지원 사업 발굴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1. 자립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3-1-1

(가칭)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체계화시켜 예산 수반하여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자립지원,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 등)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정책과 사업 실행이 추진되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과 자립 지원 사업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전라북도 차원의 보호대상아동 자립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 책정 및 자립 관련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조례 내용에는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이외 청소년복지시설(중장기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청소년 대상까지 확대 포괄하여 체계간 차별과 격차 없이 시설(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아동과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인 자립 준비 지원과 보호종료 이후의 다양한 자립 지원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의회
- 조례내용
 - (목적)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시설의 보호아동 및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대상 다양한 자립준비·자립·자활 지원
 - (도지사 책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및 퇴소·보호종료 한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준비 지원과 자립 지원을 위해 시책 개발 및 시행,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
 - 전라북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역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 3년마다 보호대상아동(보호아동 및 퇴소아동)의 자립능력 및 생활실태 조사하고 시책에 반영
 -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_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부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례 관리
4. 자립체험관 운영,
5.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8.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방과외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아동 사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모금회, 기타 자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역할) 협의체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결과,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준비와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전문적·종합적·체계적·일괄적으로 담당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전라북도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중앙기관과의 전달체계에 있어 전북도 단위의 전담기관 부재로 사업 전달에 혼선과 사각지대 및 공백이 발생하고, 자립지원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나 관련 내용의 정보 부재로 시설유형별(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 지원서비스가 중구난방이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 지원 내용도 제한적이었음
- 이에 전북도 차원의 관련 담당 인력 확보와 예산이 투입된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중앙 기관과 시군구 및 각 시설간의 중간 전달체계 역할 및 전북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종합적인 통합시스템 구축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있음
- 그리고 삼성전자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2020년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삼성희망디딤돌 사업 지역 2기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희망디딤돌 자립통합지원 전북센터)가 선정되어 자립준비사업(자립교육 등), 자립체험관(5호실)운영, 자립생활지원사업(25호실) 등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50억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이에 3년간의 희망 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이후 전북 도비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 운영 가능하나 도비 확보가 명확치 않는다면 관련 지원 사업은 사장될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고민과 관련 사업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운영비 : 전북 도비 100%
- 사업대상 : 위탁 업체 선정(굿네이버스 전북본부, 아동복지협회 전북지부 등)
 - ※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 현재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전북 자립통합지원센터) '21년~'23년 추진

※ 아동복지협회 전북지부 : 2007년경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실적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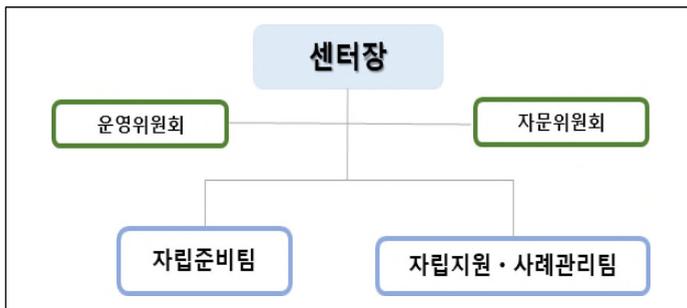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형별 시설 모두를 고려하며 자립 지원할 수 있는 위탁 기관 선정 필요

○ 사업내용

-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 전문화된 자립지원 업무 총괄·관리·감독, 자립영역별 관련 정보 취합 및 취합된 정보 시설별 제공, 자립지원데이터 통합관리, 다양한 사업 추진 창구의 일원화
- (자립준비) 시설유형별 자립지원업무 지원, 지역특성과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맞춤형서비스 발굴 지원,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운영·관리
-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위기 사례 집중관리, 보호종료아동 긴급위기지원사업
- (종사자 역량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교육(워크숍), 자립통합사례회의, 소진예방 교육 및 힐링캠프 등
- (홍보 및 네트워크) 자립지원 사업 홍보, 지역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조직 구성

- 조직 현황 : 센터장, 2팀(자립준비팀, 자립지원·사례관리팀)
 - 자립준비팀 : 8대 영역 자립준비교육 지원, 자립준비 프로그램개발·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홍보 등
 - 자립지원·사례관리팀 : 전북도와 연계 자립지원사업, 자립생활관 운영,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 인력 현황 : 센터장(1명), 자립준비팀(팀장 1명, 팀원 2명), 자립지원·사례관리팀(팀장1명, 자립지원 2명, 주거지원통합사례관리 2명)



〈그림 5-1〉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직 구성(안)

〈표 5-5〉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지역	위탁 운영 기관	조직구성 및 직원	주요 사업 내용
서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맞춤형 자립지원국, 운영지원팀, 자립지원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사례관리(자립관련 상담, 자립지원전담요원 회의) • 자립프로그램(자립교육 '내일을 잡아라', 리더십교육, 진로금융교육, 청년인턴십 체험과정) • 주거지원(자립형 그룹홈, 자립생활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직업역량강화교육, 장학지원, 교육지원, 미용 관련 취업희망자 지원사업, 자격증취득 지원, • 기타사업(현황조사, 정책건의, 자원개발 및 관리, 홍보 및 후원사업, 문화지원 사업, 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
부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	센터장, 자립지원팀, 사례관리팀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자립지원교육 • 온라인교육 • 자립체험 • 종사자지원교육(소양교육, 양육기술강화교육, 자립지원역량강화교육) • 사례관리(최대 3년, 이후 사후관리) • 생활관 입주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기	교육복지재단 에벤에셀	관장, 자립지원팀, 자립교육팀, 사례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찾아가는 자립교육, 자립체험관, 자립지원캠프, 문화유산 탐방) • 자립지원프로그램(심리정서, 진로탐색, 직업역량증진, 원가정교류, 자립 프로그램컨설팅) • 자립준비컨설팅, 재정관리, 자격증취득지원, 멘토링, 사례관리 • 종사자 교육 및 사례회의, 종사자 힐링여행, 자원개발
강원	강원도 아동복지협회	원장, 자립지원국, 운영지원팀, 자립지원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체험관(장기/단기), • 통합사례관리 • 자립성장지원사업(심리정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종사자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충남	충남 아동복지협회	관장, 자립지원팀, 교육연구팀, 사례관리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지원사업(찾아가는 맞춤교육, 개인맞춤형 자립서비스제공, 자립체험관 운영) • 자립생활지원사업(심리정서지원, 경제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자립역량강화지원) • 자립업무지원사업(보호유형별 자립업무지원,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워크숍/종사자교육)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자립지원홍보사업
전남	전남 아동복지협회	단장, 팀장, 자립지원사업팀, 주거지원사업팀, 퇴소청년지원사업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립프로그램, 찾아가는 (경제)자립교육, 장학금지원 • 자립직전아동 교육지원(자립체험관, 자격증취득 지원 등) • 자립아동 사후관리(사례관리 및 생필품지원, NEET청년 지원사업 등) • 종사자 자립역량강화사업(워크숍, 시설유형별 역량강화교육 등)
경북	경북		
제주	제주 아동복지협회		

자료 :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3-2. 시설 특성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3-2-1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심리·정서·경제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원가족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지만, 많은 경우 종료아동이 원가족 복귀 후 자립 지원 정착금만 떼이고 버려지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부모와 다시 분리가 되어 나오거나, 오히려 종료아동에게 돈을 벌도록 강요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수 발생하여 긴급위기의 보호종료아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부모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원가족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이 두 번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원가족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원가족 복귀 결정시 부모역할과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귀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 원가족 복귀 이전에 부모 상담과 교육을 통한 부모역할 지도, 부모-자녀간 관계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원가족이 원만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 받은 뒤 원가족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 전반을 대상으로도 원가족 복귀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시설 공동생활과 원가족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 교류하며 점점을 찾아 원가족으로 복귀하여 결국에는 심리·정서·경제적 지지체계를 영원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양육시설 시설장과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 사업대상 : 원가족과 보호대상아동 전반
- 사업내용
 -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원가족 기능과 부모역할 회복을 위한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상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안내·시설별 배포
 - 보호대상아동과 원가족 대상 시설 내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상시 운영과 더불어 퇴소가 예정된 보호종료아동과 원가족 부모가 퇴소 후 아동의 원가족 복귀 요구 시 원가족복귀프로그램 집중 진행

- 원가족 가족기능과 부모역할 진단·평가 → 원가족이 가족기능과 부모의 역할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개선 교육 등 실시
- 퇴소 이후 보호종료아동 원가족 복귀로 심리·정서·경제적 지지체계 마련

3-2-2

(공동생활가정) 사춘기 보호아동 양육코칭 교육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과 여건 안에서 양육·보호, 그리고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임. 최근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조치 되는 아동의 대부분 또한 아동학대·방임·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학대 피해아동이 대부분으로 깊은 심리적 및 정서·행동 문제를 지니고 있는 보호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특히 보호아동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보호아동의 양육·가정 내 교육(훈육, 규칙 지키기 등)·관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남. 무엇보다 인권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양육·보호·교육하기가 어렵고, 어디로 될지 모르고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르는 보호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음. 따라서 사춘기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을 인권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병행하여 보호·양육·관리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으로 양육코칭교육 실시
 - 연 1회 정도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모임 시 양육코칭교육 진행
 - 공동생활가정 사춘기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사춘기 아동 대상 전문가의 양육코칭
 - 심리적 상처가 많은 공동생활가정 사춘기 아동의 심리 이해기와 의사소통 기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의 가정위탁 보호 관련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가 있음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자립 준비해야 하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약 500명과 전북지역 이외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전국적으로 약 440명 이상('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12)이 넓게 흩어져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지원전담요원 총 3명(팀장 포함 4명)이 자립준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자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사례 수나 지역적 범위가 넓게 흩어져 있어 지원 및 관리하기가 담당인력 부족으로 상황임
-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하였고, 보호(종료)아동이 지역적으로 넓게 흩어져 분포되어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 추가 설립과 자립지원전담요원별 담당 사례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했음
- 현재 전북 14개 시·군의 보호아동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보호종료아동을 1개의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그 한계가 크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동부·서부 혹은 북부·남부 등 2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2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면서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사례 수는 줄이면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은 충원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협력주체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2개소로 분리 운영
- 사업내용
 -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동부·서부 혹은 북부·남부 등 2개 지역으로 분리 고민
 - 전북지역에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추가 설치·운영과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
 - 전북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별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사례 수 적정수준 관리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현실적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아동 면밀한 사후관리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 동안 매년 주거, 진학, 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근황을 파악하여 위기상황 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해야 함
- 그러나 법상으로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사례관리가 사례관리 개념 보다는 1년에 한 번 근황을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고, '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12)에 의하면, 전북지역 시설 퇴소 후 연락두절 비율(38.7%)과 기타의 비율(24.7%) 합이 63%가 넘어서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5년 기간 이내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후관리 하라는 업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관련 예산이 없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기에 제한적임이 연구결과에서 도출됨
- 이에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의 면밀한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투입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보호종료아동 연계와 연락두절의 방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 사업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전체
- 사업비 : 보호종료아동 1인 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 약 200명 정도
- 사업내용
 - 시설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사후관리 예산 지원(1인당 월 5만원)
 -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후관리 예산 비용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 지침 작성 및 관련 지침을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그룹홈 시설장 등)에게 안내
 -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예산은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그룹홈 시설장) 관리 하의 시설 자립지원 통장으로 입금되며, 관련 행정 처리는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담당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 예산 관련 사업 지속 개선 필요

3-3. 자립지원전문요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3-3-1

자립 지원 업무 역량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립지원전문요원은 시설 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의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업무도 겸하고 있어서 대부분 업무에 대한 과중을 느끼면서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갈등과 혼란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자립지원전문요원의 자립 지원 관련 업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실무중심의 체험 위주와 경험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협력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타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협조
- 사업대상 : 시설 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 사업내용
 - 연 4회 전문가 워크숍 실시 : 주요 영역별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류, 8대 영역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내용 지원과 관련 교육,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수사례 공유,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활동
 - 연 1회 이상 시설유형별 자립역량강화 교육 : 개선·변화된 자립지원 업무안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자료) 지원, 사례관리와 사후관리의 개념 및 체계적인 사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무 중심의 교육
 - 연 2회 자립지원 통합사례회의 및 전문가 자문 : 보호아동 사례와 보호종료아동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사례자문 및 슈퍼비전 회의 진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양육시설의 경우 시설별 1인이 배치되어 있고, 가정 위탁지원센터위 경우 3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부재한 상황임. 시설별로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혼자서 시설 내 보호아동과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 약 30~50명 이상을 담당해야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는 3인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위탁보호아동 400명 이상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호종료아동 약 400명 이상의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임.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없이 시설장이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자립 지원 관련 업무를 위해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많은 아동에 대한 자립 관련 업무와 시설의 기타 주요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는 상당히 과중함을 알 수 있음
- 이에 자립지원전문요원의 업무 관련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업대상 : 시설 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 사업내용
 - 연 2회 업무 소진 예방·회복 프로그램 : 마음챙김 명상, 부정적감정 다루기, 힘든 관계 다루기, 내적 역량 키우기 등 관련 내용 진행
 - 연 1회 힐링 시간 : 자립지원전담요원간의 모임 갖고 화식자리나 야외회 하기 등
 - 연 1회 우수 자립지원전담요원 포상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민지(2017) 대구지역 보호아동·청소년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김성경, 김소영, 김희성, 정민아, 박미희, 오양태, 민진홍(2020).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랑의 열매
- 김성경, 정민아, 김희성, 이경혜(2019).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59~88.
- 김형모, 손병덕, 최권호(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보건복지부. 2020 아동사업 안내
-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간의 역할모색(2019). 아름다운 재단
- 보호종료청소년자립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2019. 4. 23, 국회입법조사처
- 송이은, (2019)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유정원(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과 대안. 경기복지재단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2019). 가정 외 보호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및 효과성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완(2018). 충남지역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충남연구원
- 전민경(2018).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정선옥,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2018).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8회자립지원포럼 : 아동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포럼. 2019. 12. 6. 아동권리보장원
- 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18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2019. 1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2020. 1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2020).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2020).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정책연구 2021-02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23-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